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Ⅲ)

2019. 9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Ⅲ)

2019. 9

기 획 재 정 부

보조사업평가단

목 차

제1부 서 론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3
2. 국고보조금의 기능 ····· 5
3. 국고보조금의 유형 ····· 6
4.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 10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 13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 14
3. 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 14
4.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 15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1. 법적근거 ····· 24
2.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특징 ····· 24
3.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 25
4. 2019년 평가단 구성 ····· 28
5. 평가 절차 ····· 30
6. 평가 기준 ····· 31

제2부 평가결과 분석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 ····· 37
2.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 ····· 37
3. 판정유형별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 ····· 38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1. 부처별 최종 판정결과 ····· 39
2. 부처별 세부사업 최종 판정결과 ····· 45

제3장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1. 보조사업 재평가 개요 ····· 66
2.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 66

제3부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1. 대법원 ····· 77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87
3.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 99
4. 기획재정부 ····· 109

5. 교육부 ····· 1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91
7. 외교부 ····· 299
8. 통일부 ····· 319
9. 법무부 ····· 381
10. 국방부 ····· 411
11. 행정안전부 ····· 431
12. 문화체육관광부 ····· 541
13. 농림축산식품부 ····· 935
14. 산업통상자원부 ····· 1303
15. 보건복지부 ····· 1521
16. 환경부 ····· 1787
17. 고용노동부 ····· 1917
18. 여성가족부 ····· 1997
19. 국토교통부 ····· 2073
20. 해양수산부 ····· 2187
21. 중소벤처기업부 ····· 2387
22. 국가보훈처 ····· 2507
23. 식품의약품안전처 ····· 2527
24. 국가인권위원회 ····· 2581
25. 방송통신위원회 ····· 2595
26. 금융위원회 ····· 2695

27. 국민권익위원회 ····· 2703
28. 방위사업청 ····· 2713
29. 경찰청 ····· 2725
30. 문화재청 ····· 2735
31. 농촌진흥청 ····· 2847
32. 산림청 ····· 2901
33. 특허청 ····· 2981
34. 새만금개발청 ····· 3011
35. 해양경찰청 ····· 3019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여성가족부

가족사업관리및연구
글로벌여성리더포럼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미래여성인재양성
아이돌봄지원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사전시관
일·가정양립사회환경조성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취약·위기가족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0.2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연례적인 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민간위탁 공모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 ·가정의 달 및 가정의 날은 법정기념일로서 이를 위한 기념식의 행사 필요함 ·보조사업의 내용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민간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및 사회적 차별 해소, 가정친화적 문화 함양 등 보조사업의 내용을 사회의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건강가정기본법
○ 제12조(가정의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기념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 별표 : 19. 부부의 날 (5.21.)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책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 법규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 지원근거가 있음

○ 가정의 달 행사에 관한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법정기념일로 판단됨

○ 가정의 달 기념행사의 내용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가 가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적절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음

- 가정의 달 기념식의 경우도 법령을 검토할 때 내용이 명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회적인 캠페인이 필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가정의 달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통하여 건전한 가족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다만 현재의 보조사업의 내용이 이런 관점에서 내용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정과제 65번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라는 과제의 목표와 행사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함

- 기념행사와 기념식에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옹호하는 내용과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정의 날, 가정의 달의 지향점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초점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조사업 일차적, 이차적 수혜자의 범위는 사회 전체에 해당

- 가족가치 확산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사회 전체에 표명할 필요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표가 가족가치 확산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목표의 내용이 일정부분 사회의 가치체계의 조정이라는 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다만 건전한 사회문화, 사회제도의 옹호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인 캠페인성 활동은 필요함

- 이런 면에서 기념행사, 캠페인를 통하여 가족가치 확산이라는 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활동으로 효과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고려

-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 자체의 집행은 계획대로 진행하였음

연도	2017	2018
예산	120백만원	108백만원
참석인원	300명	380명
캠페인참여	5만명	8만명

- 참석인원, 캠페인 참여 등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 가족가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 등에 대한 산출적 지표에 대한 관리노력 필요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민간에서 본 사업의 목표에 동의하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조사업에 민간단체,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함

○ 본 사업은 사회가치체계에 관련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체계가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되며 오랜기간동안 국가와 사회에 기능함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정당성 인정할 수 있겠음

○ 본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적 측면 이외의 면에 중요성이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념행사를 수행하는 수준의 적절한 예산규모로 판단됨

○ 정액보조로 이루어지며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소수자들을 포함한 건전한 가족가치라는 면에서 사회적 가치와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사업 대상] 일반적인 공모절차에 따라 추진

- 행사진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한 사업진행은 적합

○ 연례적인 행사 진행이 사업내용이므로 민간위탁 방식의 업무추진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모,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변경을 고려할 필요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민간기관에 의한 행사진행으로 행사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와 보조금 집행의 통제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물이 납품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봄

○ 2차로 교부금 지급을 나누어 사업 관리를 하여 해태에 의한 납품지연, 부정수급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가가 사회의 건전한 문화, 가치체계에 대한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에 해당하며 법정기념일에 대한 기념식 행사는 필요할 것으로 볼 때 사업 자체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봄

○ 사업 내용, 지향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이에 따른 사업 내용의 구성은 필요할 것으로 봄

○ 아울러 연례적인 행사진행이라는 사업 내용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 형태의 업무진행보다 민간위탁 방식의 업무 진행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3-2 정책 제언

○ 가정의 달 및 가정의 날의 행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법정기념일에 의하여 가정의 달, 가정의 날의 중요성 있음

- 사업의 내용이 민간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기본틀을 사업내용에 반영하고자 노력할 필요성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세부사업은 '정상 추진'될 필요가 있음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 기반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 사업과 대외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이 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감안할 때 향후 정상 추진됨이 바람직함 ·단,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의 경우, 공모 및 사업 선정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강화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 기반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과 대외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법령 명 및 조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국제협력)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거주하는 한인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 선임·운영지침
  제13조(지역본부 지원)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담당관이 제출한 각 지역의 제안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본 세부사업은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기반의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과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 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와 관련성이 높으며, 한인여성의 역량강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에 사업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에 해당됨

-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은 KOWIN 지역본부가 설치된 23개국 25개 지역의 현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인 여성의 정체성 및 국가 위상제고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 4개의 NGO 기관이 국제회의에 참여해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을 홍보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본 세부사업의 직·간접적 수혜자는 지원 대상인 재외한인여성, 4개의 NGO기관 이외에 여성의 역량강화 및 권익 증진효과를 감안할 때 국내외 여성으로 확대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의 2개의 내역사업 모두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본 세부사업의 2개의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해외 25개 지역에서 한인여성의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한 여성의 수와 NGO 기관의 국제회의 참여를 통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의 수혜인원으로 설정하여 관리함

-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2016	2017	2018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수혜인원	4160여명	3930여명	사업추진중(~'18.12월)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인원	-	-	360명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재외 한인여성과의 네트워킹과 국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현지 한인여성 단체의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 NGO 기관이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성평등정책을 홍보토록 보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인여성의 연대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가차원에서 보조함이 타당하며, 기존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해외지역본부를 활용하여 해외지역본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별도의 사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므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됨

-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 여성인권 관련 비영리기관이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을 홍보토록 국가차원에서 보조하여 국가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본 세부사업은 타사업과 유사·중복성 및 통합가능성이 없음

○ 본 세부사업은 국내외 한인여성 간 교류와 연대 강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의 경우 예산 대비 사업 수요가 평균 두 배 이상이며, 사업의 직접적/실질적 수혜인원도 연평균 4,000여명('16~'17년 평균)에 달함

-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전세계 100개국 이상 참여하는 국제회의(예 : 유엔여성지위원회, CSW)에 참가하여 국내외 인사들과 워크숍·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과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모두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금의 규모가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은 행정비용이 사업비 총액의 5% 미만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현지 한인여성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되며,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수혜자의 수가 연평균 4,000명에 달하고 있음

-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 비영리기관이 성평등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여비 및 행사 개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별도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본 세부사업의 2개의 내역사업 모두 소액사업으로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하게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음

-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은 해외 25개소 KOWIN 지역본부에서 제안한 사업을 심사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예산의 25~50% 수준임

-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최대 10백만원(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2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외부 평가위원의 사업계획 심사를 통하여 적정 보조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세부사업은 재외 여성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 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및 이주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을 다수 수행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장(보조사업자 선정)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공모 및 교부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절차, 사업자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구성인력, 보조금 교부기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2개의 내역사업 모두 사업추진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계획,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효과 및 자부담 정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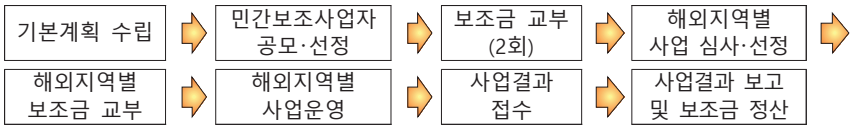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현장점검하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및 현장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단계에서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점검을 수행하여 사업계획 수정 및 사업예산 변경 승인 등을 통한 상시적인 집행점검 및 사업관리를 실시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정산보고서 검증 등 사후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정산내역 검토 등을 수행하여 사후관리절차를 준수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내역 등 상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2차례에 걸친 교부금 지급시스템 하에, 1차 교부금에 대해 당초 목적대로 사용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 기반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과 대외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감안할 때 향후 정상 추진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 중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을 위한 공모 및 사업 선정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강화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세부사업은 '정상 추진'이 필요함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운영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보조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감안할 때 향후 정상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일반회계의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사업과 청소년육성기금의 본 세부사업이 회계를 달리하여 분산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 간 연계성 및 시행효과 증대를 위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운영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청소년보호법'에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법령 명 및 조항>

- 청소년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은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1)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여부 진단, 2)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5)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 전문상담 교육을 제시함

○ 본 세부사업의 2개의 내역사업 모두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보조금 지급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 53번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과 관련성이 높으며,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및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고 과의존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본 세부사업은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다 이용문제를 예방·해소하는 사업으로 직접적 수혜자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 교사 등 광범위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해 중독의 체계적 발굴, 상담·치료 연계서비스, 치유 특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본 세부사업은 지원대상(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지원내용(지원대상 발굴부터 치유까지), 최종목표(청소년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절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주관·협력기관의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음

○ 사업의 성과도 당초 계획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 및 달성도('17년)

주요 사업내용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이용습관 진단조사 위험군 사후조치율		19% (38,463명)	21.24% (43,006명)	111.8	21.5% (42,212명)	21.71% (42,624명)	100.9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상담서비스		-	153,399건	-	-	153,399건	-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료서비스		800명	880명	110.0	800명	859명	107.4
공존질환 검사서비스		-	8,426명	-	-	9,786명	-
치유 특화프로그램 수료인원	인터넷·스마트폰치유캠프	17회	17회	100.0	14회	14회	100.0
	가족치유캠프	33회	33회	100.0	35회	35회	100.0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참여청소년 중독개선율		70.7%	72.53%	102.6	72.7%	72.7%	100.0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인원		1,080명	1,269명	117.5	1,500명	1,501명	100.1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6,000명	6,864명	114.4	7,000명	7,004명	100.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과도한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이용 등 매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적극적인 치유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큰 역할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 보조금으로 추진됨이 타당함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추세

구 분	재학생 수	참여 인원(A)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B)	참여인원 대비 과의존위험군 비율(B/A)
'17(A)	1,447,817	1,413,725	202,436	14.3%
'18(B)	1,316,562	1,291,546	196,337	15.2%
증감(B-A)	△131,255	△122,179	△6,099	0.9%p

○ 본 세부사업은 총리실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과의 중복성 조정 및 역할분담을 기 수행함에 따라 유사·중복성은 없음

- 단,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강화' 사업과 내역사업이 중복되지 않으나, 청소년인터넷 중독 치유 사업으로 관련성이 높으며, 내역사업 간 연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세부사업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이 심해지고 있으며 치유·상담 참여 청소년이 과의존위험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상 및 지원현황('17년)

전체현황*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전체 수)	정책 대상**	지원 현황
1,523,000명	202,436명 (전체현황의 13.3%)	43,006명 (정책대상의 21.2%)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율 30.3%(1,523천명) <'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기정통부>

** 초4, 중1, 고1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 <2017년 이용습관 진단조사, 여가부>

○ 사업이 폐지될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에 대한 조사, 상담·치료가 적기에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매체의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진화될 것으로 판단됨

- 중독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교와 가정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자살 및 탈선, 범죄 노출 등 각종 사회 부적응에 따른 부정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과의존위험군의 약 15% 수준이 상담·치유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한 청소년의 72.53%가 중독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업목표 달성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매년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예산 집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예산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고 있음

-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및 '17년도 사업성과 등을 고려 '18년 사업계획 수립 시(예산규모 조정, 신규사업 개발 등)에 반영함

○ 본 세부사업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해당되며, 100%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자료 미제출)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청소년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청소년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시행하고 있음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0여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위기청소년 지원시스템인 CYS-Net과의 연계 등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현장점검하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및 현장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유기적인 업무연락체계 구축으로 기관 수시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실사(연 4회 이상)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협력 연계망을 구축,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집행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조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단계에서 사업계획 수정 및 사업예산 변경 승인 등을 통한 상시적인 집행점검 및 사업관리를 실시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정산내역 검토 등을 수행하여 사후관리절차를 준수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음

○ 기관 수시 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실사(연 4회 이상)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 주간 상황보고(예산집행 현황 포함)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운영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보조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감안할 때 향후 정상 추진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일반회계의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사업과 청소년육성기금의 본 세부사업이 회계를 달리하여 분산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 간 연계성 및 시행효과 증대를 위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미래 여성인재 양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9.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29.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6.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1.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9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본 사업은 단계적폐지 및 이에 따라 2020년 4억원 예산감축으로 판정함. ·본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사업임. 단 지역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 말까지 단계적 폐지로 판정함. 2020년과 2021년은 교육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예산을 감축하여 운영함. ·양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목적은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목표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장애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본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음.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미래 여성인재 양성' 의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은 효과성이 불분명함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아카데미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개인이 다양한 교육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개인의 부담에 의해 정부 지원없이도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임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 육성), 동법 시행령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동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17조는 관련 시책의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제28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여성인력이 조직 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임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목적은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목표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장애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본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목적이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차별적인 요인 때문이라면 해당 요인을 없애는 시책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시책은 여성인재 양성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떨어짐
- 여성의 인적자원 향상이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면 여성의 인적자원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현재 대학진학 등 정규교육과정에서 여성의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인적자본 수준이 여성인재의 성장 및 사회참여의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함.

- 또한 중간관리자 혹은 고위관리자로 여성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수준을 획득하고자 할 때 여성에게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함.
- 만일 이러한 교육수준을 획득하는데 차별이 있다면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교육수준 획득 과정에 차별적인 요소가 없다면, 교육수준 획득은 자부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시책은 동일한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여성이 보다 높은 위치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분석한 후, 이를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에 대해 육아부담(47.9%), 사회적 편견 관행(22.9%), 불평등한 근로여건(11.3%) 등의 순서로 응답결과가 나옴. 이는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을 해결하는데 본 보조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줌

- 본 보조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인재아카데미는 불평등한 근로여건 개선, 사회적 편견 및 관행의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18년 여성관리자 패널에 따르면 여성으로서 차별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교육훈련 기회 및 내용과 관련하여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6%, 차별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5.9%로 나타남. 이는 승진 승급, 인사고과, 부서업무 배치시, 급여 혹은 임금 등 다른 조사 항목에 비해 가장 차별경험이 적은 항목임

- 여성가족패널조사에 따르면 교육연수기획차별과 관련하여 3차조사에서는 19.3%가 '매우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나, 6차조사에서는 9.6%만이 '매우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음

○ 이상의 조사 결과는 여성인재아카데미사업이 실제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관련된 장애요소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연계가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미래 여성인재 양성' 의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이 다소 불분명함

○ 여성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의 교육수준,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부재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은 성과목표로 여성인재 아카데미 참가자 현황, 교육 효과성, 교육만족도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목표치는 여성 아카데미의 운영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의미가 있는 지표임.

- 여성 아카데미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성 아카데미 참가자 현황, 교육효과성, 교육만족도 등의 지표는 의미가 없음.
- 따라서 여성 아카데미라는 사업 자체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 후, 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아카데미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개인이 다양한 교육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함

○ 기초보고서에서는 여성인재 양성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내용임.

- 이것이 여성인재가 양성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여성인재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인지 선행적인 분석이 필요함

○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기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음. 이를 통해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 인프라 구축에 이어 개인의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은 크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후의 사업은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비 수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량강화는 개인의 부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바 본 사업의 경우 본질적으로는 정부 지원없이도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임

- 2015년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일부 자부담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의 자부담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피교육자의 교육비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본 사업을 폐지하되, 2020년과 2021년의 예산 은 지원

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내역사업부터 감축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2020년의 경우 교육비로 운영이 관리한 중간관리자 과정(132백만원), 고위관리자 과정(24백만원), 청년여성, 신입직원 과정 등(108백만원), 온라인교육운영(88백만원)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에 따라 사업관리 및 홍보비 251백만원 중 일부 삭감하면, 2019년 대비 4억원 규모의 예산 감축이 가능함.

- 2021년의 경우 지역거점교육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체계화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2020년 대비 사업관리 및 홍보비의 추가삭감,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비용의 감액 등을 추진함. 이에 따라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2억원 규모의 감축 편성을 제안함

- 2022년의 경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과 연관되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모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상세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기관역량과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미래 여성인재 양성의 '여성인재 아카데미(민간경상보조)'는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보조금 집행 실적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수행실적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집행실적 등에 따라 2회로 나누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병행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와 보조금 집행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보조사업 집행과정의 점검에 철저를 기함

○ 사업수행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보조금 지급 및 집행', '사업집행실적 및 정산서 보고', '지도·감독' 등의 규정이 포함된 위탁운영 약정서를 체결하여 보조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미래 여성인재 양성의 '여성인재 아카데미(민간경상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외부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은 차년도에 100% 국고 반납 처리를 완료함

○ 사업수행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보조금 지급 및 집행', '사집행실적 및 정산서 보고', '지도·감독' 등의 규정이 포함된 위탁운영 약정서를 체결하여 보조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관리·감독을 주무부처(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담당함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중간보고/결산보고 등을 통해 보조사업 집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어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음

○ 보조금 교부 후 중간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 내역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가능 사유를 명시하는 등 보조금 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사전승인절차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사전에 차단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목적은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목표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장애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본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미래 여성인재 양성' 의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이 다소 불분명함

○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아카데미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개인이 다양한 교육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함

○ 본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량강화는 개인의 부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바 본 사업의 경우 본질적으로는 정부 지원없이도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임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사업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단, 교육인프라 구축이 다소 미흡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말까지 단계적 폐지를 제안함. 2020년과 2021년은 교육비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여 운영함.

○ 양성평등 사회실현 목적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장을 가로막는 차별적인 요인의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아이돌봄지원
보조유형	자치단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보육지원에 대한 국가적 보조의 타당성은 명확하나, 맞벌이 부부 등 필수 서비스 필요계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만성적인 대기수요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의 경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계층이 얼마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과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함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외에 민간 돌보미 이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체 돌보미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우수 아이 돌보미를 선발하고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령이 사업을 의무화하며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단일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연계성도 있음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음. 또한 양육자의 보육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특히 양육자가 시설보육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국가적인 혜택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유연적인 보육서비스를 반드시 국가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요확대를 위해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차적 수혜자는 돌봄을 받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이며 2차적 수혜자는 잠재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 돌봄서비스로 인해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확대로 혜택을 받는 전체 국민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영아종일제 돌봄, 시간제 돌봄,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됨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를 양성·관리하고 담당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이 구체적이며 명확함

○ 성과지표가 기존의 이용가구 수, 아이 돌보미 수 서비스 이용 만족도로 구성되어 사업의 효과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 등이 대기자의 과다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서비스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 필요 계층의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 예시: 전체 이용자 수 대비 맞벌이 가정 이용률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특성상 민간주체에 의해 제공될 경우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위해 민간서비스 비용과의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여 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보육, 아동수당, 양육수당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돌봄서비스의 형태 및 방식에 차이가 존재함

- 다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필요 가정에 아동 및 양육수당을 결합하여 민간서비스 이용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며 사업의 폐지 시 민간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비는 1,084억원으로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비용지원, 아이돌보미 관리비(교육비, 배상보험,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서비스제공기관(222개소)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봄서비스 지원의 경우 서비스 시간당 이용단가가 책정되어 있어 사업비용은 객관적으로 산출되어 있으며 기준보조율을 준수함

- 국고보조율 70%, 지자체 보조율 30%, 평균 국고보조율 65%를 적용하여 반영

○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근거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잠재수요인 12세 이하 아동 수를 고려할 때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서비스 수요 예측 시 이용자 증가 추세, 미연계 가구 수, 특별서비스 수요, 사업 예산 실집행률에 근거하여 재정소요가 추계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아이돌보미를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사회적 가치에 어느정도 기여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 방식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고 보조율을 적용(30~70%)을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지자체의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은 공모절차에 의하며 심사위원회는 보육, 아동복지, 가족학, 가족복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제7조의제1항 관련)을 필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지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사업수행의 적정성여부를 이용가정,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확인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집행점검은 지자체에서 수행

○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지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시·군·구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및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 등 고발접수 또는 관련 정황을 인지한 경우 현장점검 수행 후 여성가족부에 즉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지침을 통해 지자체(관할 서비스기관 포함)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수입·지출의 기본 원칙, 사업 예산 집행 절차, 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예산 조치 사항,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절차를 마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일부 부적격 아이돌보미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체계적인 돌보미 선발관리가 필요함

- 다만, 19.1.1부터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 소득유형 판정 실시와 병행하여 소득 증빙자료 검증 및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 연 1회 확인하며, 서비스 이용자 부정수급 여부 및 소득유형 판정 적정성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임

3-2 정책 제언

○ 다만,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과 지표관리가 필요함

○ 돌보미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타 아동 돌봄 서비스와의 통합을 통해 민간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적격 아이 돌보미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돌보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양성평등문화확산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내역사업인 양성평등기념주간 행사는 법령 사항으로서 정상추진 하되, 공모사업은 '20년부터 '19년 예산 397백만원의 10%정도인 40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할 필요 ·공모사업의 수행기간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인식 향상 정도 등 그 성과를 알기 어려움 ·공모사업은 예산규모에 비해 평균적으로 2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22개 단체('18년 기준)에 지원하고 있으나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사업평가 만족도가 아닌 양성평등인식 지수 등과 같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 향상도 등을 측정하는 노력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가 법령에 의거하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 본 사업은 양성평등주간 행사 및 공모사업을 통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양성평등주간의 기념 및 공모사업을 통하여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 차원의 사업으로, 주요 여성정책 사안에 대해 민간단체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여성정책 연계 프로그램 및 전국적 단위에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정책 효과를 넘어 통합적인 사업 효과 및 정책 연계효과를 위한 것이나 소규모의 행사성에 그칠 우려 역시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사업은 국정과제 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음

○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의 일차적 수혜자는 해당 단체 등이나 일반국민들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조력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공모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96년 이후 매년 양성평등주간(매년 7.1~7.7) 기념행사를 통하여 양성평등촉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홍보해 오고 있으며, 공모사업은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등의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지원해 오고 있음

○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성과지표가 공모사업 추진단체의 사업평가 결과 평균점수로 설정되어 있고'17년 공모사업 추진단체의 사업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6.53점으로, 목표치 86.5점을 달성하였다고는 하나 성과지표가 공모사업 추진단체의 평가점수가 아니라 본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를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등 성과지표의 재 설정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성별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인식 개선과 양성평등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주도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주요의사결정권자의 참석과 대국민 홍보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음

- 또한 민·관협력 사업인 공모사업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단계에서 각 신청단체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내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각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사업 내용과의 중복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사업선정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법령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공모사업은 예산규모에 비해 평균적으로 2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22개 단체('18년 기준)에 지원하고 있어 그 성과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모사업 신청현황 >

('18. 12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예 산	3,050	2,204	2,641	2,591	1,040	905	563	463	417
신청건수	374	366	363	320	160	174	142	128	132
선정건수	150	109	135	122	49	42	24	24	22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모사업의 폐지시 민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방식의 정책수단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민간의 자립기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성평등정책의 추진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관련 보조금은 행사비용으로 적정하나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자체재원이 부족한 비영리단체의 여성정책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주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각각 실정에 맞게 행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국고 100% 지원되고 있음

- 공모사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자부담율을 제시할 경우 재원 마련이 어려운 영세한 일부 단체의 경우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나 단체의 재정 능력에 맞게 자부담을 가점형태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건실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자부담 가점 반영>

· 자부담의 경우 국고기준 반영 비율에 따라 최대 5점 반영

『자부담(5점) 반영 세부 기준』

- ▶ 국고신청액 대비 자부담 20% 이상 부담 : 5점
- ▶ 국고신청액 대비 자부담 15% ~ 20% 미만 : 4점
- ▶ 국고신청액 대비 자부담 10% ~ 15% 미만 : 3점
- ▶ 국고신청액 대비 자부담 5% ~ 10% 미만 : 2점
- ▶ 국고신청액 대비 자부담 5% 미만 : 0점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상대적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를 통로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양성평등주간 수행기관 공모 시 사업선정기준 등을 사전공개하고 있으며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이후에는 사업비 세부내역 등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절차, 선정 기준, 평가 및 환류계획, 사업비 정산 등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공고 시 사업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내·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 선정 및 선정단체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음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은 과제적합성, 사업의 기대성과, 사업단체의 시행능력, 자부담 능력(가점) 등을 고려하여 2차에 걸친 선정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수행기관과 협약서에 의거 사업계획 제출, 정산보고 등을 하도록 하고,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집행하고 있음

- 공모사업의 경우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평가 및 현지점검, 전문가를 통한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양성평등주간 행사 수행기관과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평가 등을 통해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공모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단체 설명회, 워크숍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 주관기관을 통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지 지도하고 이를 전문가의 컨설팅과 연계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수행기관이 회계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동 사업의 협약서에 의거 보조금반환 등 관련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은 '사업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비 집행 관리, 보조금 반환, 정산 등 관련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성평등주간 행사 수행기관과 사업결과보고에 대해 정산내역서를 첨부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집행잔액 반환 등을 시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은 수행단체 선정 이후 선정단체 대상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지침'을 숙지 및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정부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등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민간단체이르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및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양성평등주간 행사 및 공모사업을 통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부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법령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공모사업은 예산규모에 비해 평균적으로 2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22개 단체('18년 기준)에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20년부터 10%정도인 40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성별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인식 개선과 양성평등 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민·관협력 사업인 공모사업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일정부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의 제시와 아울러 사업의 성과지표가 공모사업 추진단체의 사업평가 결과 평균점수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여성사전시관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해당 사업은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여성들의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됨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해당 사업이 계획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성과지표로 제시한 관람객 수의 증가 및 관람객 만족도의 개선의 경우,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제시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 개별 내역 사업이 양성평등의 개선에 기여한 바를 보다 면밀하고 분석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사업방식(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운영)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박물관 건립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양성평등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에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사전시관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과 원칙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문화유산 및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등 그 사업범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근거법령과의 정합성도 높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립여성사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은 여성들의 역사와 양성평등 문화의 전형을 발굴하고 재조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양성평등 의식 고양 및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에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 양성평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여성사전시관의 운영이 1차적으로는 관람객에 대한 양성평등의식과 여성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한 간접적 확산효과 및 인식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수혜대상은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전시관의 홍보와 SNS, 각종 교육과 행사 등을 통해 여성사의 인식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등의 확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역사 속 여성들의 역사와 양성평등 문화의 전형을 발굴하고 재조명을 통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 의식 고양 및 여성사에 대한 관심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구성한 내역사업은 근거 법령상에 명시된 업무와 연계성이 높게 구성되었으나 현재의 예산규모 및 운영방식(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운영)의 한계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임

- 전시(상설전 및 기획전), 교육,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 아카이브 확충,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의 활동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보조사업의 목표가 명확하며 이를 위해 적절하게 사업구성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법령 상의 사업범위와 수단으로써의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즉,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등 사업범위와 이들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전시(상설전 및 기획전), 교육,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 아카이브 확충, 문화행사 및 홍보 간의 연계성이 부족함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해당 사업이 계획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전시(상설전 및 기획전), 교육 및 연구사업,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 아카이브확충,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계획대로 운영한 것 자체를 성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같은 맥락에서 재원의 차질없는 배분 및 집행이 성과는 아님

- 성과지표로 제시한 관람객 수의 증가 및 관람객 만족도의 개선의 경우도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제시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 개별 내역 사업이 양성평등의 개선에 기여한 바를 보다 면밀하고 분석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같은 맥락에서 여성사전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유물 관리,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물 수집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한 ’17년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전문인력 확보 및 예산 확대로만 한정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은 명확한 한계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당 사업은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여성들의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2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동안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다 2014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현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보조사업자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됨

-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여성사전시관을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확대·개편하려는 논의가 있었던 맥락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 및 확대·개편을 통한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편성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 판단됨

○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존재하는 타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고유성이 충분히 인정됨

○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써의 여성사전시관의 역할 및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과 연계한 사업의 존속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재정적 비용의 규모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으로 인한 파급력의 범위를 주요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보조사업 연장의 당위성이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음

○ 여타 민속박물관 등에서 여성사전시관 기능을 대신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사업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다만, '18.8월말 기준 여성사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6,611점의 유물의 처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적·행정적 손실의 사례가 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은 인건비, 전시, 교육, 홍보,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의 잠재적 편익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음

- '19년도에만 한시적인 증액이 있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예산(4.4억) 중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편임(2.2억). 다만,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국립1종박물관의 요건으로서의 전문 학예사를 확보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수준임.

- 이외 운영비는 전시, 교육·연구, 아카이브 관리, 전시관관리 등에 고르게 배분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양성평등기본법(제50조)상에 사업의 내용 및 목표에 따라 사업비는 인건비, 전시, 교육, 홍보,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비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항목, 특히 사회통합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되나 부처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설치 직후부터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다 2014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의 보조사업자 선정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한편, 위탁운영 약정서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현황을 평가하여 위탁연장 또는 위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화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사업 신청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 결정 통지를 진행함

○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예산 산출의 효율성, 그동안의 사업추진실적 및 단체의 재정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내용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는 등 제도화된 절차를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절차를 진행하고 재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보조금 집행 실적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수행실적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위탁운영 약정서를 체결하여 보조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와 보조금 집행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업수행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체결한 위탁운영 약정서에는 보조금 지급 및 집행, 사집행실적 및 정산서 보고,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과정의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여성사전시관과 사업수행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 약정서제11조(약정해지)에는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집행실적 등에 따라 2회로 나누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병행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와 보조금 집행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정수급 등 비리발생의 사례가 없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외부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를 적절히 제도화하고 있음

- 특히, 사업수행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보조금 지급 및 집행'과 '사업집행실적 및 정산서 보고' 규정이 포함된 위탁운영 약정서를 체결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

○ 국고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은 차년도에 100% 국고 반납 처리를 완료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적절히 준수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이의 관리·감독을 주무부처(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중간보고/결산보고 등을 통해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어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실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도 없음

○ 지속적인 중간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 내역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가능 사유를 명시하는 등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절차 및 대책을 적절히 마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사업수행이후 중간보고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정산보고에 따른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해 관리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할 때 여성사전시관의 설립·운영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여성사전시관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과 원칙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양성평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내역사업이 근거법령상에 명시된 업무와 연계성 높게 구성되었으나 개별 내역사업의 효과성 및 전체 목표에의 유기성 및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전시(상설전 및 기획전), 교육,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 아카이브 확충,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의 활동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개별 내역사업이 유기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 및 운영되고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목표가 명확하나, 법령에 명시된 사업 간 중복성이 높은 편이며 정책수단에 해당하는 내역사업과의 연계성도 부족한 편임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내역사업들을 계획대로 운영한 것 자체를 성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같은 맥락에서 재원의 차질없는 배분 및 집행이 성과는 아님. 성과지표로 제시한 관람객 수의 증가 및 관람객 만족도의 개선 외에도 개별 내역 사업이 양성평등의 개선에 기여한 바를 보다 면밀하고 분석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은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여성들의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2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과 연계한 사회적 수요가 충분한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보조사업자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나, 해당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재정적 비용의 규모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으로 인한 파급력의 범위를 주요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비교적 소규모 사업으로 전시, 교육·연구, 아카이브 관리, 전시관관리 등에 고르고 배분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상요구액의 증액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개별 내역사업의 효과성과 연계하여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인 전시(상설전 및 기획전), 교육,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 아카이브 확충,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의 구성적 타당성은 높은 편이나, 개별 내역사업이 유기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 및 운영되고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해당 사업이 계획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보다 객관적을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도 이에 합당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로 제시한 관람객 수의 증가 및 관람객 만족도의 개선의 경우도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제시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 개별 내역 사업이 양성평등의 개선에 기여한 바를 보다 면밀하고 분석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17년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전문인력 확보 및 예산 확대로만 한정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전문성의 확대, 아카이브 및 컨텐츠의 개선, 교육방식 및 대상의 확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산 규모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의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사업수요(인력의 증가 및 관리비용의 증가)에 근거하기 보다는 개별 내역사업의 효과성과 연계하여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사업방식(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운영)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박물관 건립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일가정양립 사회환경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과 사업방식변경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 기간연장, 재인증에 대한 지원 과다.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율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단체의 일부 부담을 유도하여 보조율 하향 조정하는 노력할 필요. 이를 통해 예산감축(5%) 권고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이 주된 사업의 내용으로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 인정됨. 담당 조직의 변경에 따라 예산코드 변경을 통하여 사업의 체계화했음 ·실질적 수혜자 또는 사업계획에 비해 재정 지원 규모가 다소 과다함. 중소기업에 대한 전액지원은 자기책임원칙에서 다소 벗어남.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기업들의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체계적 분석 필요 ·보조금 규모가 다소 증가. 민간경상보조율이 100%인 점은 국고보조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은 점이 있음. 장기적으로 예산형식을 바꾸어 공공기관의 출연사업으로 진행하거나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안 검토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됨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08.6.15. 제정, '17.6.21. 개정)
○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
○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가족친화사회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과 가족친화기업 인증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사회의 일삶균형이라는 분위기를 정부가 유도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증을 통하여 중요한 역할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노동과 관련된 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문화를 사회에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정부가 간접적인 유도를 하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사업은 가족친화인증기관(인증 사무국) 지정·운영,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지원, 인증심사원 양성, 인증설명회 및 홍보,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을 추진

- 본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본 사업의 내용인 인증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나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인증활동에 대한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계획

○ 전반적으로 계획된 목표에 맞게 행재정 재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일가정양립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책적 유도를 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 간접적인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볼 때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봄 -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음

○ 현재 사회분위기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정부의 인증활동은 이에 적합한 시점임

- 당분간 지속적으로 인증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규모의 증가도 크지 않으며 인증활동이 적정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

○ 민간경상보조율이 100%인 점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봄.

- 보조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전문성을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단체를 발굴하는 방안

- 또는 예산형식을 바꿔어 출연사업으로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자체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사업 대상] 한국경영인증원에 대한 보조사업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보조사업자로 적합

- 인증 및 심사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운영 규정 및 전담조직, 전문인력, 시설을 보유하고, 가족친화인증 사업을 다년간 수행한 실적이 있어 보조사업자로 적합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자 선정 공모과정에서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참여기관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인증업계의 기관들, 공공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공모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
- 법적 근거를 갖추어 공공기관에서(예: 양성평등교육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선정 및 교부절차 준수

- 보조금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활용, 본 사업에 맞춤형 지침 개발 필요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련 일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가능성은 있음,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할 필요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사업이 주된 사업의 내용으로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 인정됨

- 보조금 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큰 변화는 아님

- 담당 조직의 변경에 따라 예산코드 변경을 통하여 사업의 체계화한 점 바람직함

3-2 정책 제언

○ 보조금 규모가 다소 증가. 민간경상보조율이 100%인 점은 국고보조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음. 보조단체의 자체적인 활동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보조율 하향 조정해야 함

○ 지속적이고 연례적인 업무로서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안 검토 필요함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으로 판단함.

○ 예산감축(5%) 권고

-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심사비 지원에 지원 비율 하향(현행 100%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을 적용

-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의 경우 50% 자부담으로 진행할 시 본 사업의 5% 정도 예산감축 가능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사업의 관리 운영 방식 변경 필요함. ·사업의 목적이나 대상의 중요성에서 보조금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은 필요함. 단,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지적된 것처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업을 치유와 관련된 관련 사업과 회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 필요함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의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나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이나 지방비 자체 수행 등 다른 재정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사업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8조의2,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48조 등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차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정과제 53-2번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부합됨

○ 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다양한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전국단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혜택이 전달되며 이를 통해 가정, 학교, 사회의 유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개입 타당성이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운영,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등으로 구분되는데, 사업범위나 나용이 넓기 때문에 유해환경개선과 예방에 집중하여 보조율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총리실 주재 인터넷 중독사업 부처간 회의에서 정한대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 차원의 제도운영과 진단조사, 상담·치유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자체사업이나 치유관련 사업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관련 사업 통합편성 필요('16년, '18년 예산 여가위 검토보고)
-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사업(청소년육성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인터넷 중독 단일사업으로 추진 필요('15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양하고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환경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 내역사업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치유를 위한 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운영사업이나 청소년 대상 치유사업과 통합 가능성이 높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은 인건비(17개 센터 31명)로 구성되는데, 장기적으로 지자체 자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급격한 매체환경 변화 및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증가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그 숫자가 적은 수준이며, 유사시설 종사자에 비해 처우가 낮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추가적인 재정확보만으로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음.

-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재정지원 방안 등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한 계획이 요구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청소년의 정당한 근로권익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지원사업의 사업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전문성과 관련 사업의 역량은 인정되나, 이 사업 자체를 치유사업이나 개발원 고유사업 등 관련 사업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요망

○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장기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 조항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됨

- 매년 각 시·도에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국고보조금 회계정산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국고보조금 재원을 집행하는지 검토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현재 지자체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업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짐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지침을 만들어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관리·감독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목적이나 대상의 중요성에서 보조금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은 필요함

○ 단,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지적된 것처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업을 치유와 관련된 관련 사업과 회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 필요함

○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의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나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매칭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별로 사업목적에 맞도록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변경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은 정부예산 범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예산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취약·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부모·조손가족 및 아동학대·가족해체 우려 등 취약가족, 가정폭력·자살·재난·사고 등 위기상황을 겪은 긴급위기가족, 이혼전·후 위기가족 등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위기가족을 사업 대상으로 하므로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부모 무료법률구조사업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비추어볼 때, 법률전문기관으로서 법률구조를 수행하되 실제 법률복지가 절실한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구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주체차원의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제안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 2에 의거, 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명시됨

- 동법 제21조의 4에서는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국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명시됨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의4(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5. 29.]

○ 취약가정에 대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등에서 한부모가족, 미혼가정, 공동생활가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정이 원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정과제(65-4.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함

○ 본 사업은 취약·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아동복리적 관점에서 이혼가정의 기능 강화, 법률보호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법률분야 복지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됨

○ 본 사업의 수혜자는 일차적으로 취약 및 위기가족의 구성원이지만, 이러한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업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다양한 취약·위기가족 및 이혼전·후 위기가족의 가족기능 강화 및 자립역량 강화라는 보조사업(취약·위기가족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의 내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관리가 잘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한부모·조손가족 및 아동학대·가족해체 우려 등 취약가족, 가정폭력·자살·재난·사고 등 위기상황을 겪은 긴급위기가족, 이혼전·후 위기가족 등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위기가족을 사업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취약 및 위기가족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 광범위하므로, 취약 및 위기가족을 위한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역량 강화와 이혼전·후 부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법률보호취약계층인 한부모를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규모가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근거해볼 때, 보조금 지원 주체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률복지가 절실한 한부모가족에게 적극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본적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도록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 주체차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은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능력,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여건,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예산,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결정하여 선정하는 과정이 적절함

○ 전국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지원을 위해 전국에 지소를 보유하고 있는 보조사업자(대한법률구조공단,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함

- 특히 법률구조법 제1조에 따라 법률보호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법률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법률전문기관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중간 현장점검과 월별 실적 취합·분석 등을 통해 사업수행 현황과 보조금 집행 현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사업수행 중간 또는 이후 정산 시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통일부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각 하부 법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등의 교부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여 통보하고, 현장점검 및 사후 정산과정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한부모·조손가족 및 아동학대·가족해체 우려 등 취약가족, 가정폭력·자살·재난·사고 등 위기상황을 겪은 긴급위기가족, 이혼전·후 위기가족 등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위기가족을 사업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인정됨

3-2 정책 제언

○ 한부모 무료법률구조사업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비추어볼 때, 법률전문기관으로서 법률구조를 수행하되 실제 법률복지가 절실한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구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주체차원의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4.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6.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4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8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8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복지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 개발,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사 양성 등 기관 본연의 목적은 타당하지만 운영방식이나 지출구조, 인력운영의 효율성 재검토 차원, 즉 국가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 감축권고함 ·2019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최근 2년간 인건비만 약 6억여 원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거의 동결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봐도 실제로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적시 상담과 복지지원이 이루어졌고, 위기청소년들은 상담결과 무엇을 더 원하고, 상담사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여부 등 사업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상담복지개발원의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본 사업의 최종수혜자가 청소년이나 그 가족 등이어야 함에 불구하고 총 예산의 61.5%가 인건비와 유지비, 나머지 사업비의 약 50%가 상담사 자격연수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사업은 성과지표를 재검검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업의 수혜자는 위기청소년이고 상담사는 중간지원자의 역할을 하므로, 상담사가 만족해야 궁극적으로 위기청소년이 만족할 것이라는 인식의 지표는 개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의 향상정도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의 지표가 발굴되어야 할 것임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와 동법 제25조(보조금 출연 등)에 따라 기관설치 및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연구,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청소년 상담·복지관련 기관간의 연계 및 지원,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지원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청소년 상담·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한 부수사업 등을 규정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5조(보조금 출연)에서는 청소년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은 여가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의 연수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사업과 상담복지개발원 내역사업별 보조금의 지급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설립목적인 청소년 대상 상담·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특히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지도·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자격인 청소년 상담사 양성사업도 궁극적인 청소년 대면자인 상담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이라고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의 수혜범위를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청소년, 2차적으로는 청소년 가족과 관련 주변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수혜범위가 일정 지역이나 대상을 넘어선 전국적 범위라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3년도에 설립되어 약 25년간 운영되어온 본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그간의 실적과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등을 통해서 효과성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속사업의 경우는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제시내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사업의 자체 평가 효과성 항목을 살펴보면 궁극적인 본 사업의 수혜자가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사업별 목표나 수혜자를 청소년상담사로 설정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효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즉, 청소년상담사의 연수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에게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성과지표는 연수받는 상담사 기준이 아니라 청소년임에 따라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만족도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청소년 상담복지관련 연구개발한 내용도 실제로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관련 연구보고서, 청소년의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아닌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 정도로만 인식됨

○ 추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정보 제공건수나, 상담건수, 만족도 결과 등 대부분 선언적이고 사실 나열중심의 사업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 민간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효과성이란 단순히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적 효율성과 반하더라도 공익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을 때 상담복지개발원은 운영해온 것을 살피고 분석한 결과 다음 단계에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분석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상술한 본 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연계하여 실제로 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인 청소년상담복지 정책 연구, 상담기법의 개발 및 운영지원 등의 내용을 지금까지 수행해왔는가, 그래서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가 본 평가항목의 핵심이라고 생각됨

○ 2019년 기준 약 79억5천만원의 국고를 매년 투입해서 지원할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별로 최종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전년대비 각종 개선도 등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효과성 항목을 통해 미루어짐작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자 입장에서 아무리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건수를 늘리고 청소년상담사를 많이 양성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인지하는 또는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9년 예산 79억5천만원 중 인건비와 유지비가 약 6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3억8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사업비는 38.5%로서 전년대비 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8년의 경우도 2017년대비 총예산 증가분 3억원은 전액 인건비 증가분임

○ 상담복지개발원의 내역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 연구개발,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체계 활성화, 청소년 상담복지 교육연수, 청소년 상담복지 경영고도화 등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소년 상담복지 교육연수사업비가 2019년 기준 69.4%(21억2천7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연수사업비 중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즉, 본 사업의 최종수혜자가 청소년이나 그 가족 등이어야 함에 불구하고 총 예산의 61.5%가 인건비와 유지비, 나머지 사업비의 약 50%가 상담사 자격연수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 청소년을 상담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이 궁극적인 기관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이를 운영하고, 상담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왔음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의 자부담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점이 있으나 지원비용을 최소화하고 자격제도 관리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사업은 정부혁신 종합계획 추진상의 5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즉,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체평가자료의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에도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됨

○ 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청년과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및 녹색제품 구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자체평가서의 청소년지도자나 위기청소년 지원의 경우, 우선 청소년지도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수혜자라기보다는 중간지원자라고 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임

○ 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4조, 제4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 기관의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제출 및 검토 후 승인절차가 이루어짐

- 즉,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상담복지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상담복지개발원 정관 제34조에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함

○ 즉, 공공기관인 상담복지개발원은 법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에서는 자유롭지만, 여성가족부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검토시,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79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을 검토하여 기관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정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본 사업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부신청~정산단계까지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 뿐, 실제 집행점검을 실시했는지,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안되고 있음

○ 비록 운영경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예산이 아닌 목적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목적한 대로 쓰이고 있는지, 계획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등 중간점검 및 개선조치 등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해보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정산토록 되어있는데 불용액의 반환이 언제 이루어졌고 이자 또한 반납했는지 등 실태파악이 필요함

○ 특히, 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고투입에 따른 국민들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 따라 청소년 상담사나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전문성 검토,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다음 해의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임

○ 결과적으로 주무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상담복지개발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후 결과들을 환류시켜서 기관 본래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이므로 각종 보고와 감사 등으로 상담복지개발원이 여가부에 대해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은 없음

- 부정수급은 상담복지개발원이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수혜자 중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 각 센터를 통한 청소년 권리교육이나 이러닝 직무연수의 실질적 인원 등 상담복지개발원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즉,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상담복지개발원이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업들 중 부정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피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복지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 개발,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사 양성 등 기관 본연의 목적은 타당하지만 운영방식이나 지출구조, 인력운영의 효율성 재검토 차원, 즉 국가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 감축권고함

○ 2019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상담복지개발원은 최근 2년간 인건비만 약 6억여 원 증가하였고(2018년 12월 29일자 뉴스핌,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사건도 참조) 사업비는 거의 동결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봐도 실제로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적시 상담과 복지지원이 이루어졌고, 위기청소년들은 상담결과 무엇을 더 원하고, 상담사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개선했는지 등 사업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 즉, 상담복지개발원의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본 사업의 최종수혜자가 청소년이나 그 가족 등이어야 함에 불구하고 총 예산의 61.5%가 인건비와 유지비, 나머지 사업비의 약 50%가 상담사 자격연수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 또한 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사업은 성과지표를 재검검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업의 수혜자는 위기청소년이고 상담사는 중간지원자의 역할을 하므로, 상담사가 만족해야 궁극적으로 위기청소년이 만족할 것이라는 인식의 지표는 개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의 향상정도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의 지표가 발굴되어야 할 것임

3-2 정책 제언

○ 공공기관들도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고객을 제대로 정의하며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임

○ 법상 설립근거와 목적,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관의 역할과 기여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매년 예산이 보조될 것이라는 생각은 자칫 기관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에 따라 내부 기관운영과 추진사업들의 성과들을 돌아보고 외부 기관 등을 통한 조직진단과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 및 사업운영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보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5.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4.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4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2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8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 본래의 목적은 매우 양호하나 운영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매우 다양한 사업들의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 운영성과나 지출구조, 인력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측면, 즉 국가예산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3% 감축 권고함 ·정원 288명인 활동진흥원은 2018년대비 증액된 8억1천만원 중 인건비가 91%(7억3천만원)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6.3% 증가하였음 ·사업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들을 일몰시키거나 개선을 고려한 성과목표나 성과지표가 매우 소극적이며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성이 약해보임 ·향후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여부, 성과평가지표 다양화 등을 통해 사업들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 내에 내역사업 없이 단순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소 산만한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들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본 세부사업 하위에 내역사업들을 두고 그 내역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의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설립된 기관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의 수행을 위해 활동진흥원을 설치토록 함

- 국고보조금 지원근거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6(보조금 등)에서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중 국비 70% 지원사업임

○ 활동진흥원의 수행사업별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동법 제8조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동법 제9조 학교와의 협력 등, 동법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동법 제35조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동법 제65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동법 제9조의2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 신고, 동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각각의 사업을 수행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활동진흥원은 상술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 및 청소년활동 안전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무엇보다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잠재역량을 계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관운영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수혜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체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6년~2019년의 전체 청소년 전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을 수혜자로 제시하고 있음

- 신규사업이라면 청소년관련 전체를 수혜범위로 볼 수 있으나 약 20여 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임을 감안할 때 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 단위 청소년정책위임사업 및 전국 5개 권역 국립수련원 위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혜자의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8년도에 설립되어 20여 년간 매년 약 3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어 온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효과성을 자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참여인원이나 개발프로그램 배포 수 외에 프로그램 만족도나 시설만족도, 요구사항 반영 등을 통한 효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것처럼 청소년수련원이 성인들의 대관시설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활동진흥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확산되지 못함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 등을 미루어볼 때 활동진흥원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진흥원의 기능들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별로 비교, 약점과 강점을 분석해서 약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강점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관을 운영함에 따른 효과성을 강조하고 설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숫자나 비율 정도로만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무사안일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

- 국립수련원을 이용한 전체 인원 중 청소년이 연령대별로 몇 명 다녀갔고, 프로그램별 만족도는 어떠했으며, 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조정해서 만족도를 높여갔다는 등의 적극적 기관운영이 필요해 보임

- 또한 5개 수련원의 운영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취한 조치나 적극적인 기관의 기능 홍보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청소년정책 위임사업과 국립수련원 위탁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국청소년진흥원의 운영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20여 년간 다양한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을 해온 것으로 보임

- 우주 청소년활동 발굴 및 지원, 청소년지도인력 대상 전문연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시스템 개선, 수련시설 안전점검관련 사업 외 2018년에는 중장기 전략을 재수립하고 조직개편 및 사업의 다각화 방안과 혁신안을 마련하였음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지원,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까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지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9년 예산은 전년대비 8억1천만원 증액된 333억원인데 이 중 인건비가 126억원, 운영비가 8억1천오백만원, 사업비가 187억7천만원임

- 전년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7억3천6백만원 증가, 운영비는 동결, 사업비는 5천1백만원 증가하였음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2018년대비 13명의 6개월 증가분 2억4천5백만원과 처우개선비가 4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비의 경우 활동진흥사업이 1억원 증가하였고, 국립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비가 4천9백만원 감소하였음(토지임차료가 물가상승률에 따라 2천3백만원 증가하였음)
-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총 8억1천만원의 증가액 중 약 91%가 인건비 증가에 배정되었고 사업비는 약 6.3%가 증가하였는데, 사업규모는 거의 동일한데 인건비가 많은 부분 상승되었음

○ 반면, 본 사업의 유일한 성과지표인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는 2017년 98.3%, 2018년 98.0%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이후 목표대비 실적이 하향하고 있고 목표치 산출도 학령인구 감소추세 및 의무인증제 시행을 감안하여 0.5%만 산출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구성이나 규모 및 신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해 보임

1-6 사회적가치 실현

○ 활동진흥원의 설립목적과 기능은 사회적가치 분류 2번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에 해당함

- 즉, 청소년의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인 활동진흥원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활동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위생 점검 및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컨설팅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했다고 생각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임

○ 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 기관의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제출 및 검토 후 승인절차가 이루어짐

- 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4는 활동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활동진흥원 정관 제26조에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함

○ 즉, 공공기관인 활동진흥원은 법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에서는 자유롭지만, 여성가족부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검토시,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을 검토하여 기관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정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본 사업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부신청~정산단계까지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 뿐, 실제 집행점검을 실시했는지,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안되고 있음

○ 비록 운영경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예산이 아닌 목적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목적한 대로 쓰이고 있는지, 계획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등 중간점검 및 개선조치 등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고투입에 따른 국민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 따라 국립수련원을 찾거나, 프로그램 수요자, 자원봉사 참여자 등 고객에 대한 만족도 체크 및 환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기재부 주관 고객만족도조사나 경평 등 조사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본 사업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담아내지 못하므로 본 사업의 특성에 맞는 만족도 조사나 성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물론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이므로 각종 보고와 감사 등으로 활동진흥원이 여가부에 대해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은 없음

- 부정수급은 활동진흥원이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수혜자 중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교류사업의 경우 실제로 취약계층인지에 대한 불시 검증이 필요할 수 있음

○ 즉,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활동진흥원이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업들 중 부정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피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잠재역량 개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운영지원 사업 본래의 목적은 매우 양호하나 운영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매우 다양한 사업들의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 운영성과나 지출구조, 인력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해보인다는 측면 즉, 국가예산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3% 감축 권고함

○ 정원 288명인 활동진흥원은 2018년대비 증액된 8억1천만원 중 인건비가 91%(7억3천만원)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6.3% 증가하였음

○ 사업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들을 일몰시키거나 개선을 고려한 성과목표나 성과지표가 매우 소극적이고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성이 다소 약해보임에 따라 향후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여부, 성과평가지표 다양화 등을 통해 사업들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사업 내에 내역사업 없이 단순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소 산만한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사업들을 범주화하기 위해 본 세부사업 하위에 내역사업들을 두고 그 내역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민간쪽보다는 사실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공공분야도 최근에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 따라 진흥원도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자세가 필요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문화진흥
광역BIS지원(보조)
국민임대출자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관리비
물류산업지원
스마트시티기반구축
영구임대출자
전세임대경상보조
전환교통지원사업
지하시설물전산화(보조,정보화)
철도핵심인력양성
첨단도로교통체계
청소년국토교육지원
택시산업지원
항공전문인력양성
행복주택출자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일반)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개발제한구역관리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를 증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높고,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리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고 (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편익 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3) 개발제한구역 내에 누리길, 여가녹지 등 여가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강제성이 높음

○ 본 사업은 (1)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지자체경상보조와 (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자체자본보조 2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내역사업들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명시적으로 근거하고 있어서 내역사업과 법적근거 간의 연계성이 높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타당성이 명확하고 이런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70-90%의 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지급함

○ 본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지만 최종수혜자는 국민전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지자체경상보조사업과 지자체자본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됨

- 지자체경상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1)출장비, (2)경계표시석 설치비, (3)단속 장비 유지비 및 항공사진 판독비 등으로 구성되어 합리적임

- 지자체자본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1) 생활 기반 사업, (2)환경문화 사업, (3)생활 공원 사업, (4)생활비용 보조 사업으로 구성되어 합리적임

○ 본 사업 대부분의 내역사업들은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음

- 생활 공원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녹색여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2014년과 2016년에 실시된 사업으로 2019년에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2018. 4. 국무회의)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미집행 공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발제한구역지원 사업은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역시 주민 삶의 질 향상도나 기반시설 확충률 등을 목표에 맞게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인정되고 중앙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함

○ 본 사업은 타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매우 낮음

○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시급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와 해당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후 막대한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근거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율을 70%~90%로 차등지원하고 있어 보조율 산정이 합리적임

○ 본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중기 재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우고 있는데, 이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평균(1,690억)과 최근 5년 간 지자체 사업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 수준인 46%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8	2019	2020	2021	2022
추계금액	1450.25억	1224.25억	1174.25억	1174.25억	1374.85억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를 비롯하여 PPT 평가,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하녀 지자체의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기준 보조율을 차등화하여 적절하게 지자체에게 집행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40% 초과	30%초과 - 40% 이하	30% 이하
기준보조율	70%	80%	9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자체(국토교통부) 및 보조사업자(14개 시도)에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실집행률 우수 및 저조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 배분시 실집행률에 따라 저조한 하위 3개 지자체(광주, 경기, 대전)은 예산 일부(19,57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상을 상위 3개 지자체(충남, 세종, 충북)에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등과 같은 사후관리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본 사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매년 1-2회 이상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주민 지원 사업 시행규정」에 근거하여 반납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으나 단속경비 등과 같은 일부 내역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가능성이 존재

○ 본 사업은 지자체의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적발 시 생활편익 예산에서 10%를 삭감하는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를 증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자체경상보조)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지원(지자체자본보조)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높고,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건축문화진흥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1.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0.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3.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감축(2019년도 예산 282백만원 중 80백만원 감축)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한국건축문화대상·신진건축대상(44백만원) 및 대한민국국토대전(36백만원) 등 내역사업은 이미 민간부문의 자발성에 의해 충분한 성과가 기대되는 부문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성격이 불분명해짐. 이 내역사업은 2016년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이미 단계적 폐지로 판정됨. 그러나 이후 기재부 예산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어 진행되어온 사업임 ·감축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가며, 2019년도 신규 반영된 내역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건축기본법 제20조(2항)에 근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됨.

□ 건축기본법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은 한국건축문화대상·신진건축사대상,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지원을 통한 건축문화진흥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

- 1차적 수혜자는 약 120명에 해당하는 수상자임. 건축관련 종사자로 그 효과가 한정적임
-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지는 불명확함.

○ 사업의 목적과 수혜대상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목적이 수준높은 공간환경, 경관, 건축물 등 관련분야 기여자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내용과 목표는 명확함

○ 내역사업의 구성(2018년 기준)

- 한국건축문화대상·신진건축사대상 : 우수한 준공건축물 및 계획건축물에 대하여 공모 및 시상/ 우수한 신진건축사의 작품에 대해 공모 및 시상하여 건축설계 업계의 신진인력 육성기반 마련(대한건축사협회 시행)

- 대한민국 국토대전: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국토경관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주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 시상(파이낸셜뉴스 시행)

○ 최근 3년간 사업의 내역사업이 폐지되거나 통폐합 등 변화가 있었으며, 지난 3년간 참가자 수의 변화폭이 크고 감소하는 등으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파악이 안 됨

- 한국건축문화대상 참가자수가 '16년 1,138명, '17년 611명, '18년 722명으로 일관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신진건축사대상 참가자수가 '16년 38건, '17년 49건, '18년 54건으로 소폭 증가함
- 대한민국 국토대전 참가자수는 '16년 99건, '17년 105건, '18년 47건으로 일관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18년의 경우 오히려 대폭 감소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보조금(28%)과 민간단체(72%)의 부담으로 진행되며, 민간부문의 자발성에 의해 충분한 성과가 기대되는 부문으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음

○ 2016년 국고보조사업평가에서 유사사업에 이관하여 통폐합 판정이 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와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및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에 대한 기여부분을 제시하였으나, 직접적인 기여로 평가되기 보다는 간접적인 기여부분으로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건축사협회의 정부 위탁사업 보조금 방만 사용에 대한 지적 이후에도 동일사업 수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2014년 국토부 감사에서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보조금의 방만한 운용이 지적된 바 있음

○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단체에게 집행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회에서 연구개발비 예산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연례적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점이 지적된 바, 이후 관련된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함

- 2015.6 예결위, 국회지적사항인 '연구개발비 예산을 목적 외 사용 등 연례적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하였기에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 용역비 집행 관리 철저히 할 것'에 대해 이후 조치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2개 사업자에 대해 각기 업무협약서를 통해 예산의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함

- 업무협약서 제9조(예산결산 및 정산),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의 관련 규정 포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에는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없으며, 대한건축사협회와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외부감사 등을 통해 회계 및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이 사업은 이미 민간부문의 자발성에 의해 충분한 성과가 기대되는 부문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미 2016년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단계적 폐지로 판정하였으나, 이후 기재부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반영됨

- 2017년도 폐지사업 판정된 국토디자인대전이 2018년 대한민국국토대전 사업으로 명칭변경되어 진행됨

- 건축문화대상과 신진건축사상 사업을 '유사사업에 이관하여 통폐합할 것'으로 판정하였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건축문화진흥행사내에서 여전히 두가지 영역을 포함한 채로 사업명만 통폐합하여 진행함

○ 과거 국토부 감사(2014년)나 국회 예결위(2016년)에서 지적된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위탁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됨

3-2 정책 제언

○ 한국건축문화대상·신진건축대상(44백만원) 및 대한민국국토대전(36백만원) 등의 사업은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함

○ 2019년도 신규 반영된 신규 내역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광역BIS 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5.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6.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1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8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광역BIS 지원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이 요구됨 ·동 사업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실집행률에 대한 관리·운영이 미흡함 ·'17년을 제외하고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향후 사업방식변경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 ·BIS시스템이 미구축된 46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하며, 통합BIS센터 구축을 권장하여 미도입 지자체의 신속한 도입을 도모하여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토교통부의 '광역BIS(Bus Information System)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가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정보를 일반인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은 타당한 법적 취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동법의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법적 근거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그 근거가 부족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정보시스템(이하 BIS) 구축 사업비를 지원하여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시내·광역버스의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민의 중요 이동수단인 시내·광역버시의 교통정보를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고자 하는 동 사업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기 어려운 외부성을 지닌 서비스이므로 국가 개입에 있어 타당한 사유를 지니고 있음

○ 동 사업의 수혜자로 사업소관부처에서는 실제 통행인 54억명이 실시간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수혜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BIS시스템이 작동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약 110여개로 실제 수혜범위는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BIS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명확한 편익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BIS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목표와 비교하여 내역사업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내역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추진되었고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함

- '1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의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함('18년 약 47%)

- 이는 특정 지역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며, 사업소관부처는 실집행률 향상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공모시 예산집행능력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 및 국고지원 대상 지자체 조기 선정을 통해 집행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제고될 것인가에 대해선 추가적 검토가 필요

- 즉 사업소관부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 2016년 국고보조사업평가에 지적된 바와 같이 BIS시스템이 미구축된 지자체에 대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2016년 국고보조사업평가에 지적된 바와 같이 민간에 의해 제공될 순 있으나, 민간에 의해 제공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의 문제 역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보조사업의 실적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는가에 대해선 근거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기 어려움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당 약 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역사업 예산은 BIS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 감리비, 장비비, 설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비용에 대한 부담은 낮음

○ 다만, 동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이에 따라 목표 달성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은 기존보조율에 의해 보조율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 ITS 국고보조 업무지침'에 의해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 평균 지방자치단체 지원비율은 30~40%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대중교통 데이터 공개를 통해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공개에 기여한다는 점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해당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자체의 비용 부담능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음

-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축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 다만, 지속적으로 당해연도 실집행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음

-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여부, 기존 실집행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상황 점검 등 적정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수시(분기 1회)로 누계공정률, 구축물량, 예산 집행실적 등을 점검함
-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있을 경우 당초 사업계획 변경 사유,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집행상황 점검

- 다만,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집행절차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보조금 교부 시기와 지자체 예산편성 및 실집행 시기 간 불일치로 인해 실집행률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 BIS 구축사업은 '대중교통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준공 전까지 기술기준에 따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와의 연계를 완료하여야 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정산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함께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함

○ 개별 지자체는 정산 및 사후관리와 별도로 BIS 구축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사업 준공 후 3개월내 사업소관부처에 제출하여야 함

- 만족도 조사는 BIS구축 이전과 이후의 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전조사는 사업착수 후 1개월내, 사후조사는 사업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사업소관부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함

- 보조사업 확정설계 승인 시 목적 외 편성여부 및 정산 시 부적성 사용내역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BIS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인정되나, 각 지자체별 사업실적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방식변경을 통한 효과적 운영이 요구됨

3-2 정책 제언

○ BIS시스템이 미구축된 46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보조하는 사업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

- 미구축 지자체에 대한 가점 확대 또는 동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50% 이상을 미구축 지자체로 할당하는 등의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미구축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 미구축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율 확대 방안 역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미구축 지자체에 대한 구축계획 및 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구축계획에 따라 BIS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속한 구축을 독려하는 것이 요구됨

○ 통합 BIS센터 구축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

-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BIS 도입을 위해 미도입 지자체 중 다수의 지자체를 묶는 통합 BIS센터 구축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국민임대출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7.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6.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국민임대출자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실질적 수혜자를 위한 사업 관리·운영에 한계가 발생하였음 ·임대주택 관련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 사업의 목표 달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 ·복잡다기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여 국민의 접근이 쉽고 용이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목표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됨 ·또한 지속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역별 공급물량과 실제 수요 간 분석을 통해 실제 필요한 지역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토교통부의 '국민임대출자'사업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거기본법」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공공주택 건설계획 및 재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13조(주거정책 자금) 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임차하거나 건설·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동 사업의 주요한 법적 근거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동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확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조의2제3항에서는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핵심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임

-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임차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06년 715만호→'16년 826만호) 약 130만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동 사업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국정과제 46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는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러한 무주택 서민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편익은 명확하게 발생함

- 다만, 지속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지역별로 공급물량과 임대 수요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수요를 가진 수혜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됨

-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영구임대주택이 지역별로 입주 대기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

  * 인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4,404명이나 2018년 100가구 착공 예정이며, 충남의 경우 대기자는 639명이나 임대주택은 699가구 착공 예정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목표와 비교하여 사업의 구성은 구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입주대기기간이 12개월이라는 조사결과(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선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제주도 68개월,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등

○ 동 사업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비를 보조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목표는 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어 입주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공급되는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는가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목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17년 임대주택 누적착공실적, 고객만족도, 미임대율, 지자체 공공건설임대 공급누적 준공실적 →'18년 임대주택 사업승인실적, 고객만족도, 미임대율→'19년 미임대율, 공공임대주택 준공실적

- 또한 유사한 성과지표로 보이는 지표이나 실질적인 측정산식이 변화함으로 인해 연도별 성과달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함

- 연도별로 제시된 성과목표 중 임대주택 착공실적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미임대율 등의 성과지표는 '18년의 경우 100%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연도별 성과목표의 준수한 달성을 위해 사업소관부처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당초 계획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정책수단이 유지될 필요성이 존재함

-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차원에서 수익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운영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사업소관부처는 동 사업의 경우 유사·중복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공급형태가 복잡하다는 점은 추가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소관부처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 중임

- 실제 공공임대주택은 세부적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공급형태 역시 매우 다양함

- 임대주택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업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하나의 임대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시급한 추진이 필요함

-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라 '18~'22년까지 5년간 매년 7만호를 공급할 예정임

- 다만,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이 실제 지역별 수요와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파악이 병행되어야 함

○ 동 사업의 폐지는 대규모의 매몰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건설사업의 특성 상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승인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지원되고 있어, 사업폐지 시 준공이 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의 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음

- 또한 입주가 예정된 임차인에게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고 있음

- 지원단가는 현실적 수준에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지원단가의 적정성과는 별개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동 사업의 규모가 목표 달성에 적정하도록 구성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요인임

○ 동 사업은 기존보조율에 의해 보조율을 정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를 통해 매년 보조율을 정하는 사업임을 확인함

○ 동 사업은 연간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보조사업으로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나, 중기재정계획 소요액 추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므로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별도의 공모절차가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조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또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여부를 검토할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관리체계 등을 검토하고, 사업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급계획 및 재정지원 등을 사전 협의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집행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제26조(보조사업 집행점검 등)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사업승인, 착공, 준공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어 실적이 발생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정산받는 구조로 집행액과 실집행액이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짐

-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라 교부내용 및 교부조건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 교부신청 후 사업소관부처 사업부서에서 사업실적, 신청금액 등 사실 및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지출부서에 교부 요청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연도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실제 점검 전 사전에 각 공공주택 사업자와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반납액 등을 최종 결정함

- 반납액(이자포함)의 경우 사업소관부처로 반납액 산정 검토를 사전 요청하면 이를 검증한 후 반납고지서 발급을 통해 반납 조치

-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배제 등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대응체계를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역별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업의 목표달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

3-2 정책 제언

○ 복잡다기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여 국민의 접근이 쉽고 용이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됨

○ 지속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역별 공급물량과 실제 수요 간 분석을 통해 실제 필요한 지역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함

○ 또한 동 사업 성과목표에 대한 소관부처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6.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7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8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8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20백만 원) 및 사업방식 변경** – 지난 3년 간 실집행률이 70%대에 머물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산절감 노력을 감안하여, 약 16%에 해당하는 20백만 원 감축 · 사업의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함 · 2012년 이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관리 및 성과관리에 대한 노력이 미흡함 · 국회 지적사항인 “차량 직접 구매 및 관리 주체 변경”을 가급적 빨리 시행하도록 해야 하고, 교육 실적으로 제시된 성과지표를 수료율 등 사업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법령으로 제시되지 않고,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2006년 7월 7일 개최된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에서 차량은 한국철도공사(구 철도청)에서 소유하되 제반 비용은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됨

-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상용 컨테이너화물자동차의 법적 제반 비용인 보험료 및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 물류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체운송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를 유지 관리한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함

○ 군 위탁 차량에 대한 제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접적 수혜자는 한국철도공사와 국방부로 볼 수 있으나, 재해 발생 시 국가 신인도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므로 동 사업의 혜택은 광범위함

○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에게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한 국회의 지적(제354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2017.11.06.) 등을 반영하여 사업방식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차량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노후차량 교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 물류 비상사태에 따라 실제로 투입된 실적이 있음

<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수송실적 및 투입효과 >

구분	투입기간	수송실적	효 과
'08	'08.6.12 ~ 6.20	8,907 TEU	3.8억$(4,453 억원)
'12	'12.6.25 ~ 6.29	4,022 TEU	1.7억$(2,011 억원)
'16	'16.10.10 ~10.19	2,663 TEU	1.2억$(1,419 억원)

○ 그러나 동 사업의 성과로 제시한 화물차 운전인력 양성률이 2017년의 경우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효과성이 높지 못함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화물차운전인력 양성률 (단위:%)	목표	신규	신규	90	60	61	국방부 교육실적자료	(교육참석자 수/400) ×100	국방부
	실적			67	-	-			
	달성도			74%	-	-			

○ 또한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60~70%에 머무는 등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200	200	200	200	-	200	125	-	-	62.5
2016	160	160	140	140	-	140	129	-	-	79.4
2017	140	140	140	140	-	140	109	-	-	77.9
2018. 6월 기준	140	140	140	120	-	120	74	-	-	52.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주무부처는 화물운송시장의 불안전 요인이 상존하는 동 사업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년 보조사업 연장 평가 시 “2012년부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을 감축하거나 사업 자체 폐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 감축 및 사업 방식 개선이 요구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준보조율이 없는데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현행 관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저조한 실집행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 규모 감축이 필요함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부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주관 부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한다고 하였는데, 통합관리지침 제5장(보조사업 집행관리)을 준수한 내부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무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집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주관 부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통합관리지침 제6장(보조사업 사후관리)을 준수한 내부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주관 부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통합관리지침 제7장(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을 준수한 내부 규정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법령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리방식 개선 및 실집행률 제고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2019년 예산 대비 2020년 예산 20백만 원 감축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국회 지적사항인 “차량 직접 구매 및 관리 주체 변경”을 가급적 빨리 시행하도록 해야 함

○ 교육 실적으로 제시된 성과지표를 수료율 등 사업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물류산업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3.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20년 120백만 원) 및 사업방식 변경** - 19년 예산의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600백만 원)에서 지원 대상 학교의 자부담 비율을 20%p 상향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120백만 원 감축 · 내역사업인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 및 필요성이 낮음 · 전문기관 설립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취업률 제고를 지적하는 등 사업 효과성이 높지 못함 ·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두 내역 사업(물류 효율화기반조성,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간 우선순위와 연관성을 분석한 뒤 이에 따른 사업설계와 예산 배분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법적 근거는 물류정책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함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음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4.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 인력의 양성·교육
5. 그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별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3. 물류 정보화·표준화· 공동화에 대한 연구·개발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물류효율화 기반조성사업은 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공동물류 지원 사업,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세부적인 근거들이 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 제37조, 제23조, 제61조에 제시되어 있음

< 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 >

제56조(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그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적 근거 등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물류산업은 제조·건설·유통·식품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반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한 해외 직구·역직구·국내 택배시장 등의 급성장으로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물류 효율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동 사업의 목적은 명확함

○ 하지만 반드시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특히 물류전문인력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및 대학 등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재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목적의 타당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물류 컨설팅 역량 극대화, 전문 인력 양성까지 - 한진물류연구원, CJ대한통운 종합물류연구소, 물류신기술 개발·물류업 종사자 재교육 활발” (해양한국, 2013.7)

○ 물류효율화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한국 물류시장에서 효율화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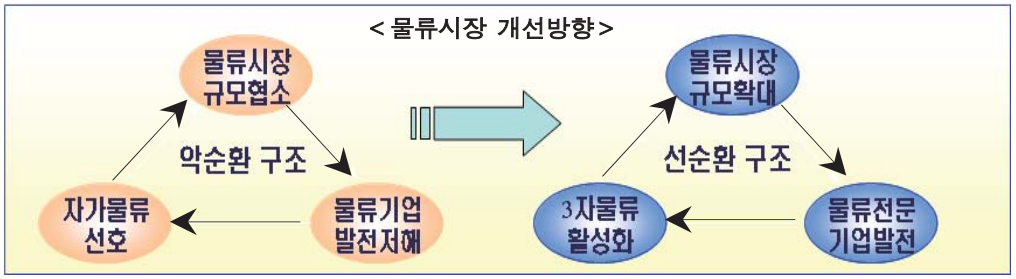

○ 하지만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물류산업의 영세성, 낮은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을 통해 효율화 기반 조성은 일부 인정되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에서 스스로 추진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후 중앙정부 지원을 축소”해야 함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무부처가 사업목적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약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의 경우 4년제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물류인력양성사업, 특성화 고교 및 전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류효율화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컨설팅 지원, 3자 물류, 공동물류, 해외진출, 인식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구성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글로벌 물류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성과로 제시한 취업률이 일반대학교 평균 취업률보다 높다고 하나, 국회 등에서 취업률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상황임

- 2016년 보조사업 평가에서 “인력양성사업의 특성 상 일정 기간 지난 후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률의 변화 추세”를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조한 취업률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임

○ 물류 효율화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3자 물류 활용율 및 3자 물류 비지출 비중을 제시하였고 당초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효과성이 높은 편임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 연차별 성과-실적(계획)>

구 분	취업률 (%)		
	2015	2016	2017
군산대학교	64.7	80.8	65.4
대전대학교	56.3	58.7	73.7
순천대학교	60.0	63.6	65.9
인하대학교	79.7	78.9	81.4
한국항공대학교	68.4	73.0	79.8
한국해양대학교	87.8	81.8	62.2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 >

성과지표	단위	'16	'17	'18
3자 물류 활용율	%	67.4 / 67.5	68.2 / 68.2	68.9 / 69.0
3자 물류비지출비중	%	33.7 / 33.7	35.1 / 35.1	36.9 / 41.3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에서는 국가보조금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2016년 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산업 인력 수요에 맞춰 대학 학과의 정원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PRIME 사업" 등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동 사업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하겠음

- 주무부처는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과는 달리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비교과과정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으로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교과과정 중심의 교육부 사업에 비교과과정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향후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에서 수행하는 교육들이 대부분 고용노동부 재원이 지원되는 재직자 대상 교육이라고 하나, 고용노동부 ICT 유통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경우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학원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다른 사업과의 일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물류효율화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물류산업의 영세성,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국내 물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일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을 전문 인력 양성사업과 효율화 기반조성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보다는 영세기업 지원 등 물류산업 진흥에 초점에 맞추는 사업방식 전환이 필요하며, 물류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됨에 따라 물류 전문 인력의 취업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전문기관 설립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감축하고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6년 평가에서도 국고보조율이 높게 적용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재정지원 규모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원 대상 학교의 자부담 비율을 10%p 상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처럼 자부담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물류 효율화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먼저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폐지 또는 예산 감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여도가 없는 것으로 평가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정함

-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보조사업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모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 세부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역량 및 사업내용, 성과평가 등을 심의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위탁기관	⇒	운영위원회	⇒	국토부	⇒	국토부	⇒	위탁기관
사업계획서 수립		평가·심의		사업계획서 승인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 물류 효율화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대행기관(대한상공회의소)을 통하여 공모 및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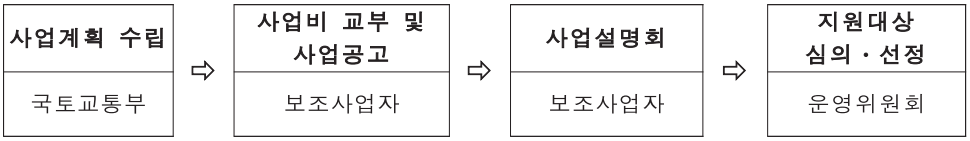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상시적으로 보조금의 집행단계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어 적정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토교통부 자체 국고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에 대해 적정히 관리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토교통부 내 전문 감사부서를 통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법령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 및 필요성이 낮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자부담 비율을 20%p 상향하고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에서 120백만 원을 감축하도록 함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을 전문 인력 양성사업과 효율화 기반조성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보다는 영세기업 지원 등 물류산업 진흥에 초점에 맞추는 사업방식 전환이 필요함

○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두 내역 사업(물류 효율화기반조성,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간 우선순위와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사업설계와 예산 배분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6.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4.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0.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5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8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은 '감축('19년 360백만원)'을 권고함 ·사업목표에 비해 재정 지원규모가 과다함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내역사업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핵심인재 450명 양성의 타당성 및 산학연계프로그램 지원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18년 증액된 산학연계프로그램 강화 관련 예산은 타부처 지원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존재함에 따라 감축 필요 ·또한 향후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교육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향후 사업 진행의 면밀한 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내역사업 공히 동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구체성은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당초 동 사업은 '17년 'U-City 기반구축'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었으며, '19년 현재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으로 추진 중임

- 동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한 가지는 지능형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스마트시티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한다는 측면은 산업 육성 기반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인력양성의 경우 R&D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과거 1차·2차 인력양성계획의 성과분석에 따라 동 내역사업의 필요성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글로벌 산업구조의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계 수요와 비교하여 실제 필요한 인력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동 사업 수혜자 범위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내역사업별 검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의 경우 지원이 이루어진 지자체 주민만을 수혜자로 한정하더라도 상당히 폭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인력양성의 경우 '17년~'18년 합계 151명의 졸업생을 수혜 가능자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118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편익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반구축과 인력양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내역사업은 지자체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지능형 도시기반 조성 및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내역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 국내외 스마트시티 시장 확대에 따라 스마트시티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임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개별 목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되나, 그 구성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19~'23) 관련 분야 인력수요 증가 예상 12만명 중 동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450명을 양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지난 1차 인력양성사업에 비해 2차 사업의 경우 석박사과정 교육인력이 1차 1,038명에서 1,369명으로 331명 증가하였으나 논문게재 및 특허 출원·등록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인력양성 필요 인력의 과다 계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함

- 즉 '19년부터 인력양성 수행대학의 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행기관의 수가 늘어나야 할 만큼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내역사업은 '18년에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예산 이월·불용 등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진행에 제약이 존재함

- 사업소관부처는 '18년도 지방선거로 인한 문제점임을 소명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부터는 연내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 중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산업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역시 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지원이 인정되나, 실제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예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 정책수단이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적정 수요 도출을 통해 사업의 질적 성과 역시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부처별로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다수 ICT기술의 접목이 인력양성의 핵심임

- 따라서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커리큘럼 등에 있어 유사·중복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19년 예산 증액의 주요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대학내 창업 동아리 지원, 인턴십 등 산학연계프로그램 강화'는 기존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등과 유사·중복성이 존재함

○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22년까지 전국 80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조성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계획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수요는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력수요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도내 사업완료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업 폐지 시 추가적인 재정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사업폐지 시 현재 교육 중인 교육생의 비정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 중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내역사업은 기반구축과 관련된 S/W와 H/W에 대해 물가정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업비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 중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내역사업은 국고보조율 50%로 기준보조율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내역사업의 경우 국고보조비율은 75%로 국토교통부내 유사 인력양성사업의 보조율에 비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스마트시티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로 크게 구분됨

-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계획 공고·선정 및 평가절차를 준수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또한 사업선정과정 역시 분야별 7명 내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 인력양성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스미트시티 관련 학과를 개설·운영 중인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공모 및 요건심사·서면평가·현장평가 등 절차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집행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음

○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 후 선정 지자체로부터 월별 사업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발주, 사업수행, 준공 등의 사업관리 추진함

- 국가보조금의 경우 2회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으며, 1차 교부 후 부정수급 점검,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중감 점검한 후 잔여 보조금을 지급
- 다만, '18년 실집행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스마트시티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 점검, 사업실적 및 계획 모니터링(2개월 주기) 등을 실시함

- 동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성과 등을 매년 2차례에 걸쳐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등을 추진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정산 및 사후관리를 실시함

-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완료 후 각 지자체의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함

-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집행실적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회계법인 검수를 실시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사업소관부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함

- 사업소관부처 재정담당관실에서는 연도별 보조사업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소관 보조사업을 점검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스마트시티 확대를 위해 H/W 차원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S/W 차원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내역사업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수요와 보조사업 구성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3-2 정책 제언

○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의 성과분석 및 향후 5년간('19~'23) 인재양성 목표의 타당성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감축을 권고함

- 예산감축 규모는 360백만원임
- '18년 증액된 '대학내 창업동아리 지원, 인턴십 등 산학연계프로그램 강화'는 타부처 지원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존재함에 따라 감축이 필요

○ 향후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교육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향후 사업진행의 면밀한 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영구임대출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본 사업은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공주택특별법」과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고 있어 강제성이 있음

○ 본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건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일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근거와 연계성이 높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무주택 서민 등에게 제공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로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함

○ 본 사업의 1차 수혜자는 지자체이지만 직접적인 수혜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인 주거 취약계층으로 명확하게 구분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0.3-0.8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0.8만 호를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본 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하고자 2019년에 0.8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됨

○ 본 사업은 사업계획에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음

	구분	2016	2017	2018	2019
임대주택사업승인실적 (만호)	목표	신규	5.9	7.5	7.6
	실적	신규	6.0	6.4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대규모 재원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임

○ 본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들과 유사·중복이 없음

○ 본 사업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들을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을 2022년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임대주택이 완공되지 못해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라 연간 공급 주택수가 계획되었고, 건설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영구임대출자 보조율 85%를 준수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계획에 따라 매년 건설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간 공급호수와 기준단가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있고 재정소요액이 적정하게 추계된 것으로 판단됨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소요액	645억	2,768억	4,465억	5,309억	6,328억	19,515억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와 LH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을 적적하게 집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을 관리체계 및 규정으로 마련함

○ 본 사업은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집행 잔액 또는 교부 받은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받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을 관리체계 및 규정으로 마련함

○ 본 사업은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각 공공주택사업자와 누락 여부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을 통해 반납액을 결정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정수급 발생 정도가 높지 않음

○ 본 사업은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될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전세임대경상보조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9.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사업의 수행이 국가 사무로 적합함. ·세부사업간 이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예산의 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를 통해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는 공공주택의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주거기본법」 제11조1항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구입・임차 혹은 건설・개량)을 규정하고 있음.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5조의2>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정과제 46번(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에 포함하여 연평균 3.9만호 공급 예정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으로 국가사업으로 타당함.

-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LH공사와 지자체(지방공사)이나, 최종 수혜자는 무주택 취약계층이며, 실질적 잠재적 수혜자는 무주택 서민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은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게 구체적이나,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전세임대사업은 수요자가 주택을 물색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계약을 요청한 뒤 재임차받는 사업으로 미임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은 높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 및 민간에서 수행할 경우 접근성 및 형평성에 한계가 있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요에 대한 고려와 사어 폐지시 수반되는 재정 손실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지원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인 시장 기능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전월세 수준의 상당히 높은 주거급여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다른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지원은 유사중복 및 조정 통합 가능성이 없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근거하여 임차형이 매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정지원의 규모는 적정하나, 사업 목간 전용에 따라 사업비의 구성이 절적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 2017년 기준 지자체 경상보조 결산액은 10,555백만원이며, 지자체 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855백만원 목간 전용함.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사실상, 내역사업의 일부분이 전용된 것임.

-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민간 경상보조의 전용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내역사업을 변경하는데 한계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헌법상 보장되는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중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서 지자체 및 LH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에 지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

- 관리규정에는 보조사업자의 선정 기준과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현장조사,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보조금 교부시 재정소요액 수요조사를 매회 나눠서 실시하고, 해당 회차에 필요한 보조금을 조사한 뒤 교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보조사업의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선정에 관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조사업자 집행 점검,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집행점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실적 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실태점검을 통해 집행점검,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보조금 사용기준, 카드사용 및 제한, 보조사업 집행점검, 점검평가단 등 규정 명확함.
-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함(첨부2의 2-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정산보고서의 검증, 자료 보관, 중요 재산의 보고, 재산 처분의 제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 실적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실태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에대한 관리를 실시하였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매우 높고,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사업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하고 있음.

- 2005년 「임대주택개편방안(05.4.27. 국정과제회의)」에서 기준보조율 100%로 매년 1천호씩 추진하기로 계획된 이후 다년간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왔으므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적정함.

3-2 정책 제언

○ 주택의 점유형태에서 전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2020년과 2021년의 전세 물량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시 임차형의 목표치(2020년 3.5만호, 2021년 3.0만호)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시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2020년 예산의 감축은 없음(19년 목표치 3.5만호로 동일).

○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자치단체의 경상보조 사업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해 집행점검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전환교통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97.8%로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인 집행률 제고 노력을 통해 본 사업의 목적 달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임, ·목표치 설정방법이 과거의 추세, 외부 환경을 고려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전체 철도수송 물동량의 감소를 고려하여 전환실적의 증가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2페이지 이상 작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에 구체적으로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이라고 해당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국고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는 비교적 명확함.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승·환적(換積) 시설 및 장비의 설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에게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④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보조금 등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교통혼잡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며, 국가의 보조 없이 민간이 추진할 동기가 부족하기에 국가의 보조가 필요함.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국가주도로 지원하는 예산사업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의 1차 수혜자 뿐만 아니라 철도 수송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고려 시 국민 전체가 수혜자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철도 수송 분담률 1%포인트 증가 시 효과>

구분	내용	절감효과 (억원)
차량운행관련 비용 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1]	196.08
	통행시간 절감편익[2]	238.95
사회환경적 관련 비용[3]	대기오염비용 감소	1,019.2
	온실가스비용 감소	285.3
	소음비용 감소	73.6
	교통사고비용 감소	301.9
	혼잡비용 감소	590.4
	합계	2,270.4
에너지 비용 절감[4]		315.2
총합계		3,020.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목표치 설정방법이 과거의 추세, 외부 환경을 고려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철도수송 물동량의 감소(연평균 감 2.3%)에도 불구하고, 전환실적은 꾸준한 증가 추세(연평균 증 9.7%)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철도수송 물동량의 감소(연평균 감 2.3%)에도 불구하고, 전환실적은 꾸준한 증가 추세(연평균 증 9.7%)를 보이고 있음.

구분	업체수	노선수	물량(만톤·㎞)			보조금(백만원)		
			협약물량	전환물량	%	예산액	집행액	%
합 계	**172**	**567**	**613,645**	**576,939**	94.0	**27,250**	**24,547**	90.1
2017년	22	74	77,910	71,530	91.8	3,200	3,003	93.8
2016년	24	73	79,681	64,633	81.1	3,200	2,452	76.6
2015년	26	101	89,818	77,574	86.4	3,600	3,001	83.4
2014년	20	73	100,237	102,330	102.1	4,000	3,994	99.9
2013년	28	90	98,870	97,484	98.6	4,500	4,488	99.7
2012년	25	96	92,496	87,656	94.8	4,000	3,310	82.8
2011년	12	28	33,222	38,314	115.3	3,000	2,936	97.9
2010년	15	32	41,411	37,418	90.4	1,750	1,363	77.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는 전환교통지원 사업은 동 사업과 성격은 유사하지만 지원대상*이 다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처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토교통부에는 유사 중복사업 없음.

- **(국토교통부)** 도로에서 철도로 화물운송 전환 또는 신규로 철도 화물 운송에 대한 보조 **(해양수산부)**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화물운송 전환 또는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 운송에 대한 보조

○ 철도물류 수송량은 도로대비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감소추세*이나 전환실적은 지속 증가**하여 철도수송 물동량의 타 교통수단으로 전환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음.

<연차별 철도물류수송량 및 전환교통물동량>

(단위 : 만톤·km)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
철송실적(A)	945,240	999,674	1,027,123	1,006,179	932,919	947,925	841,412	822,919	-1.85%
전환실적(B)	27,899	36,080	88,517	97,484	107,544	77,574	64,633	71,530	22.34%
B/A (%)	3.0%	3.6%	8.6%	9.7%	11.5%	8.2%	7.7%	8.7%	

- 국내 수송수단 중 철도화물 분담률 1%p 증가시 사회경제적으로 3,0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전환교통 협약사업자(화주)에게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보조율 100% 지원함.

- 다만, 보조사업자(한국철도물류협회)가 간접보조사업자(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 간접보조사업자(화주)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도로 →철도)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지원함.

○ 보조율 산정기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철도수송 물동량의 전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의 운송수단 전환 최소화를 통해 도로 대비 철도수송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도로혼잡비용 감소 등 사회환경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8년에 전환교통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을 공모하여, 공신력, 전문성(조직, 인력 등), 사업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위탁기관의 적정성 확보

* 자격요건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평가위원회 구성(안) : 5명(국토부1, 외부공무원1,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가3)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

○ 실적물량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협약대상 제외물량을 실적물량으로 제출하는 경우, 협약대상 매월 집행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월별 실적물량이 저조하여 협약물량의 5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제22조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액 교부, 반환 및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위탁 계약서」제6조

- 동 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서 검토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세입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매년 1~2회 실시하고 있음

<2018년 개선 조치현황>

구분	지적사항	개선사항
○'18예산안 상임위('17.11)	○위탁기관 선정방법 개선필요	○위탁기관 선정방법 개선('18.12) - 개선방안마련('18.2), 위탁기관 공모('18.2), 위탁기관 선정('18.5) * 위탁기관선정(수의 →공모)
○사업부서 담당 현장 집행점검 (방문 8.28)	○집행부진사업 해지 및 신규사업자 등 선정 지시(8.30)	○19개구간 감 또는 해지, 19개구간 증 또는 신규협약 체결 보고(9.20)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집행부진 해소 추진	○연도별 집행율 ('15) 83.4%, ('16) 76.6%, ('17) 93.9%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추진(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1년이내) * 해당회계연도 전체물동량에 대한 전환교통 실적관리 지원 가능 - 추진계획마련(11.21) - 행정예고(12.7) - 개정예정('18.1월)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협약체결한 사업자의 철도수송 실적을 철도공사 수송시스템과 비교 확인 검토하여 전환이 확인된 물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협약이행 여부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협약기관이 협약 미이행시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22조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에 구체적으로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이라고 해당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국고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는 비교적 명확함.

○ 목표치 설정방법이 과거의 추세, 외부 환경을 고려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철도수송 물동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환실적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철도수송 물동량의 전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의 운송수단 전환 최소화를 통해 도로 대비 철도수송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도로혼잡비용 감소 등 사회환경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지속적인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운송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4.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1.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발생하고 있는 노후된 상수관의 파열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단절과 파열된 상수관에서 흘러나온 수돗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 발생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비교적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단위에 대한 지원사업인 점, 민간이 수행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전국 단위의 사업이고 특히 국민생활안전 SOC 구축사업인 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매년 실집행액 100% 등을 고려했을 때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중앙에서는 당초 주요 시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군지역의 경우도 도시화됨에 따른 지하안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부터 군 지자체까지 지원을 확대한 결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됨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깊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단위에서는 관심이 낮지만 국민의 실생활과 안전에는 매우 필수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0조(정부의 지원)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본 사업은 동법 제10조 4호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임

○ 이에 동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나 보조금 지원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최근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온수관 파열, 부산 마린시티 가스관 누출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관리 사업임

○ 전체 162개 시·군 중 2018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84개 시와 27개 군에 대해 DB구축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군이 34개, 미착수된 군이 16개 군임을 고려했을 때 본 사업의 수혜 범위는 2019년도에는 46개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국에 고루 분포될 것이라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내용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의 관로위치, 관로직경, 깊이, 재질, 연장, 매설일 등의 속성을 DB로 구축하는 비교적 간단한 목적의 사업이지만 이러한 사전예방조치가 없이 피해가 발생한다면 매우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 이견이 없음

○ 사업목표는 '전국 단위 각 지자체의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구축'으로서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완료하는 것으로서 그 목표가 명확함

- 2018년 기준 상수 119,605㎞, 하수 119,873㎞를 구축한 상태임

○ 국토부는 당해연도 2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교부금 내시 즉시 사업발주 및 계약·착수하여 절대사업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집행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등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자체평가서에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하수도망 확대 등으로 군지자체의 도시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 군 지자체의 37%에 해당하는 28개 지자체는 여전히 과거방식으로 종이도면을 활용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KT통신구 화재, 고양 난방관 파열, 부산 마린시티 가스관 파손 등 지하시설물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하시설물 안전개선방안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상·하수도 수치지도화 및 DB 구축) 성과물은 지하공간통합지도(3D)에 기본이 되는 데이터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또한 지하시설물 매설년도 및 도로굴착 이력정보를 활용하여 신규 도로굴착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고 기 구축한 지하시설물정보를 활용하여 도로굴착 협의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즉시 기관통보 지원을 할 수 있음

○ 신청정보 통합검색을 통해 동일지역에 대한 중복굴착을 방지하며, 노후관 밀집지역 검색을 통해 노후관로 정비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분석 및 인접 지하시설물 정보 파악을 통한 정확한 사고 대응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 궁극적으로 본 사업은 비교적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단위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민간이 수행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전국 단위의 사업이고 특히 국민생활안전 SOC 구축사업임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고 전 기초지자체에 구축이 완료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된다면 매우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2019년 예산 기준 57억원의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율 60%의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임

- 계속사업 33개 군과 신규사업 13개 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0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군지역의 재정자립도(15.7%)를 고려했을 때 중앙과 지방이 6:4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산출기준은 km × 9,834천원/㎞ × 60%(국고보조율)≒5,700백만원으로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번에 따라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어 정률보조됨

1-6 사회적가치 실현

○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 2번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즉 시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에 해당함

○ 공사지역 내 지하시설물 정보파악을 통해 안전한 굴착공사, 노후관 밀집지역 검색을 통한 노후관리 정비 우선순위 결정, 사고발생시 원인분석 및 인접 지하시설물 정보 파악을 통한 정확한 사고 대응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지자체에서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적정한 지자체를 선정함

- 제9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를 선정함

○ 매년 지자체에서는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함

- 지하시설물 전산화의 경우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와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연속사업 여부, 지하시설물 보유물량, 인구수, 도시화율,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시행 전 해에 지방비 확보현황 요청공문을 시행하여 전산화보조사업 구축물량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2월에 예산계상 신청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자인 지자체를 선정 및 지원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장 보조사업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사용기준, 보조사업 관련 계약,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집행점검, 보조사업점검평가단 운영 등의 기준에 따라 관리함

○ 국토부 재정담당관실 주관으로 실시하는 점검계획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이 사업의 관리나 문제점 점검, 성과 측ㄱ면에서 접근기준이 사소 상이함에 따라 상시 집행점검은 사업부서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제24조의2 정산보고의 검증, 제25조 자료보관, 제26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제27조～제28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와 점검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3개 시, 34개 군에 대한 57억원, 2018년도 1개 시, 35개 군에 대한 56.97억원의 국고보조금 정산이 실시되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여부를 중앙부처에서 적발해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자체나 민간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고 관리체계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함

○ 본 사업의 경우도 실제 사업 집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업자들이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지자체들이 관련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정수급의 여지는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밝혀내도록 국토부에서 중간점검과 결과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크해나갈 필요가 있음

○ 디브레인과 e-나라, e-호조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정수급이란 이러한 시스템상으로는 적정하나 이를 벗어난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사업이 SOC 사업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최종단위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부정수급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서 점검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 본 사업은 궁극적으로 상당히 높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자체 단위에서는 관리가 다소 힘든 지하 상수관의 정보를 확보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업목적과 매년의 실집행액 등을 고려했을 때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 본 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발생하고 있는 노후된 상수의 파열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단절과 파열된 상수관에서 흘러나온 수돗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 발생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관 현황을 수치지도화 및 DB구축으로 노후관 교체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중앙에서는 당초 주요 시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군지역의 경우도 도시화됨에 따른 지하안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부터 군 지자체까지 지원을 확대한 결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됨

3-2 정책 제언

○ 자체평가서에도 서술한 바와 같이 기초지자체, 그 중 군단위 지자체의 재정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의 복지시책 요구, 타지자체와의 지원액 비교, 다음 선거에 대한 의식 등의 이유로 지하 상수관과 같이 주민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는 필수적인 지방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깊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단위에서는 관심이 낮지만 국민의 실생활과 안전에는 매우 필수적인 사업들을 향후 많이 발굴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철도핵심인력양성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3.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4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본 사업은 사업목적에 모호하고, 일부 내역사업은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성과가 사업목적이나 타당성이 부합되지 않음. 따라서 본 보조사업은 불필요한 내역사업에 대한 삭제하고 내역사업을 선택과 집중하여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사업은 감축과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전체사업 중 2억 감축을 제안함. ·철도핵심인력양성사업은 내역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연계성이 낮으며 내역사업 전반에서이 사업 전체 목표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법적 근거기 명확하지 않음. ·현재 책정한 성과지표가 사업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각 내역사업은 수혜가 제한적이며, 사업의 외부효과가 불분명하여 내역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사업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이 요구됨. ·사업관리의 전반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며 자료로 확인함.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실제 증빙자료 마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철도인력핵심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본 보조 사업의 내역사업 관련한 정확한 사업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철도인력핵심사업의 내역사업별로 법적 근거가 제시되기보다는 철도인력양성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을 명시할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보조나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전체 사업목적과 내역사업 간의 연계성이 낮아 내역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특정 인력 양성에 제한된 사업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양성된 인력의 과잉공급 가능성을 지적한 바 등을 종합할 때 본 사업의 내역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어려움

- 전문 인력 양성의 범주에 관련학과를 보유한 대학의 학부생 장학금 지급의 내역사업은 본 사업의 취지와 관련성이 낮아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선되어야 함

○ 수혜자 범위의 확장 가능성이 크지 않고, 외부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수혜자 범위 및 외부 효과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개선이 요구됨

- 철도장학금, 국제철도 전문가과정, 연수과정 등의 내역사업은 본 보조사업의 목적 타당성이 부합되지 못함

- 인력양성사업은 양성된 인력의 취업이나 직업적 혜택 등이 수혜 범위에 포함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성과나 효과성에서 개선이 요구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실시한 내역사업의 사업효과성을 파악하기에 현재 제시된 내용이 부합되지 못함

- 지난 3년간(2016-2018년) 내역사업 수행에서 사업내용과 방식을 변경된 점이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사업방식 변경은 사업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져야 하나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재하여 사업수행이 원활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철도전문인력의 논문게재건수나 석사학위 취득률이 핵심인력 양성의 지표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19년도 예산안검토 국토교통 위원회에서도 성과지표의 부적절성이 지적됨.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도록 성과지표(예시: 수혜대상자의 관련 업계의 취업률, 새로운 특허나 기술 개발, 해외 철도관련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해외연수의 효과성 등)를 개발하는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보조금 지급사업으로는 사업목적, 수혜범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본 전체 사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됨. 일부 내역사업은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특성화대학지원에 대한 사업은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2019년부터 새롭게 집중하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사업의 수행성과 및 사업 폐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이나 문제를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연장을 위해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함

- 현재까지의 본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해서 사업목적과 성과, 향후 사업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새로운 주체를 모색이 필요함

- 부처가 제시한 장기투자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 중단 시 야기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의 서술은 명확하지 않음. 본 사업 중단 시에 수혜자 및 잠재 수요자 등에게 미치게 되는 구체적인 손실을 제시하는 개선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으로 구체적인 비용이나 목표와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내역사업별로 연도별 예산 설명서를 제시하였으나 근거 자료가 부재하여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내역사업 전체 규모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규모가 파악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서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하기 어려움

- 내역사업 중 철도특성화지원사업은 전체 사업규모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나 본 사업이 보조사업으로서 적절성이 낮고 사업효과도 매우 낮으며, 실집행률이 높지 않아 사업의 지속이 불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 영역에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철도인력양성사업관리 지침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으로 법적 근거 제 4, 5조에 제시되고 있을 뿐,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절차나 공모, 교부 등에 지침 및 증빙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증빙자료를 검토할 때 위탁기관의 수행업무와 선정과정 원칙이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나 과정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선정과 교부절차 등을 제시하는 개선이 요구됨

○ 본 사업의 선정과 교부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정과정에서의 평가기준이나 실제 선정과정에 대한 해당 자료가 부재하고 관련 지침과 법적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수행자의 선정 과정이 투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철도인력양성사업관리 지침에 본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계획이나 단계별 집행 점검을 위한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고 해당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됨

- 사업집행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집행과 관련한 관리 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사업자 선정과정이나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 내역사업별로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나 감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자료로 확인함

- 철도특성화대학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한 처리 등과 관련한 개선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나 실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자료를 확인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철도인력양성사업관리지침의 20조와 21조에 정산 및 회계감사,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용이 포괄적이며 규정 준수에 대한 해당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산 및 회계감사,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비교적 잘 이루어짐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이 최근 3년간 발생하지 않아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철도인력양성사업관리 지침 제 22조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 발생 시에 환수 조치하는 내용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정수급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철도핵심인력양성사업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적절성이 낮고, 내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 전체 사업목적과 내역사업 간의 연계성이 낮음
- 내역사업의 변경에 대한 검토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사업성과지표 설정 역시 내역사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음

○ 수혜범위가 제한적이며 외부효과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현재까지 수행된 사업의 범위를 반영할 때 보조금 사업으로 수혜자가 매우 한정적이며,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음
- 2019년 사업변경으로 제시한 내역사업은 수혜범위 확대 가능성이 낮으며, 사업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성과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모색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 마련이 필요함

-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지침이 모호함으로 개선이 요구됨

○ 세부 사업 설정이나 변경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이 필요함

○ 사업목적, 사업내용,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함

- 현재의 성과지표(논문 게재율, 장학금 지급율 등)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지표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취업률, 국제적 지원을 통해서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지표로의 개선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첨단도로교통체계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9.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ITS 구축 사업은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혼잡비용 감소 등 공공적 효과가 큼에 반해, 민간이 이윤동기로 담당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국가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정상 추진으로 판정함. ·사업 수행기간 동안 지자체에 따라 자체 부담여건이 높은 경우, 부담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선정된 자체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 ③항 >**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 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국도 및 지자체 시내도로에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1993년 대통령비서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주관에서 국내 도입방안이 검토된 이후 1997년 「지능형교통시스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음.

○ 지자체에서 수집되는 교통정보는 국가 ITS 센터로 연계·통합되어 전국 단위의 교통상황을 운영관리하고, 전국 단위 교통정보를 생성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ITS에 국고보조금 지급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상황 관제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ITS 구축 사업은 교통정보의 관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관리 등 국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이 명확함.

-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수집된 교통정보 및 CCTV 영상 정보는 기초, 광역자지단체 교통정보센터로 취합되어 제공되며, 교통혼잡 및 도로 사고예방에 이용되며,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하여 국가ITS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으로 교통지도, 주요 도시간 소통시간, 소통상태, 공사/사고정보, CCTV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대국민 교통복지서비스로 제공됨.

○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ITS구축과 도심내 신호운영체계 개편에 보조금 예산 50%씩 할당되어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금의 지원 대상 사업이 교통정보 수집, 교통정보 가공, 교통정보 제공, 신호 개선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구성 내역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지자체 도시부 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ITS 구축 지원이라는 보조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임.

○ 사업목표를 2014년 이후 100% 달성하고 있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자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에 교통정보를 연계하여 이를 민간에 제공하는 등 전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민간은 이윤동기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자자체 ITS 구축은 보조금이외 다른 정책 수단으로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는 어려운 사업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다년간 동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ITS 구축 인프라는 상당히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

○ 지자체의 매칭비율을 60%로 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9,403백만원	7,000백만원	10,000백만원
	40%	40%	40%
자치단체부담	14,104백만원	10,500백만원	15,000백만원
	60%	60%	%
민간단체부담*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23,507백만원	17,500백만원	25,000백만원
	100%	100%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ITS 구축으로 인한 도로교통 정체 해소는 연료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부수적인 환경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 수요조사,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 ITS 관련 전문가를 통한 지자체 사업계획서 평가, 대상사업 확정 등 단계적 선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시 해당 사업계획서에 지방비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준수, 목적외 사용 금지, 교부결정 취소사유, 사업 내용 변경 조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정산절차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로 반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대상지자체 사업 내용 변경시 승인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완료시 완료보고회 개최해고 있음.

○ 선정된 지자체 중 보조금으로 요청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내용을 선정절차에 감안하는 것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605호, 2015.11.2.)에 제22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제25조(자료보관), 제26조(보조사업 집행점검),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등을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 자체 보조사업 부정수급 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정산업무 부적정, 보조금 목적외 사용, 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실집행 및 단계별 집행현황을 점검을 위해 사업착수후 월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주요 내용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 구축내용, 주요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표준적용 및 성능평가 결과, 애로 및 건의사항)를 제출받아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사례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 정산 이후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 실시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ITS 구축 사업은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혼잡비용 감소 등 공공적 효과가 큼에 반해, 민간이 이윤동기로 담당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국가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도심내 신호운영체계 개선사업은 ITS 구축과는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지자체에 따라 자체 부담여건이 높은 경우, 부담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2 정책 제언

○ 지자체에서 국비 보조를 통해 구축한 ITS가 국가 정보교통센터와 보다 긴밀하고도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관리. 운영. 유지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

○ 다년간 동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ITS 구축 인프라는 상당히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 지자체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현장 설비 설치공사, 센터 시스템 구축 등이 전체 지자체 중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얼마나 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동 보조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선정된 지자체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7.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6.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관리체계가 복잡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공모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 학생 선발방식이 적절하지 않음 · 내역사업들 - 국토교육 연구학교 지원, 국토교육 동아리지원, 국토탐방대회, 국토교육 교사연수 P/G, 청소년 국토학교 -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국토교육 연구학교 지원, 국토교육 동아리지원), 간접보조사업자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국토탐방대회, 국토교육 교사연수 P/G, 청소년 국토학교),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시 민간대행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국토탐방대회)으로 나눠져 사업관리체계가 복잡하며, 국토탐방대회와 청소년 국토학교 사업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함 · 보조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공모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참여 학생 선발에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은 스티그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국토기본법」 제2조에 두고 있으나, 법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국토기본법 제2조>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은 5개의 내역사업 - 국토교육 연구학교 지원, 국토교육 동아리지원, 국토탐방대회, 국토교육 교사연수 P/G, 청소년 국토학교- 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04년부터 "우리국토 바로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04.3, 협약)하였으나, LH 재정난 등으로 '1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일반회계 사업으로 국토교육사업을 시행해 왔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청소년 국토교육지원의 사업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 등을 배양해 주어 국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국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야와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국토관리의 총괄부처로 국토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함

○ 보조사업은 전국 초·중·고생(청소년)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선정·지원하고 있는데 선정된 수혜자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국토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과 국토 동아리 활동 지원, 국토탐방대회, 청소년 국토학교, 국토교육 교사연수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체험형 국토교육을 제공하므로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함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수혜자 통계>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국토교육 연구학교	5개교	7개교	7개교	4개교	4개교
국토교육 동아리	35개	30개	30개	30개	40개
국토탐방대회	8개교 (488명)	8개교 (297명)	8개교 (283명)	8개교 (273명)	8개학교 (241명)
국토교육 교사연수	12명	37명	52명	59명	60명
청소년 국토학교	-	3개권역 (164명)	7개권역 (397명)	9개권역 (484명)	6개권역 (226명)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에서 시행하는 5개의 내역사업들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내용과 기간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5개 내역사업들은 사업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구 분	목 표	주요 내용
국토교육 연구학교 지원 (중,고생)	올바른 국토관 형성을 위해 국토교육을 실시하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국토교육 방법을 연구・개발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국토 교재학습, 국토사랑 체험학습, 특화사업 등 학교별 자율적으로 추진(2년 단위)
국토교육 동아리 지원 (국토교육관계자 사전교육) (중고생 및 선생님)	전국 중・고교 학생들의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국토의 가치와 소중함을 스스로 일깨울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체험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의 실현	국토체험 학습 및 UCC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우리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하여 동아리별 자율 운영 (6개월)
	연구학교 및 국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국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 실시	국토교육의 다양한 커리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고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행정사항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
국토탐방대회 (초등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토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국토관 형성에 기여	일반탐방과 필요에 따라 다문화가정, 소규모학교, 청소년 시설 등 소외계층 대상 기획탐방으로 구분실시(1박2일)
국토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초중고 선생님)	초・중・고교 교사(교육현장에서 교육제공의 주체)를 대상으로 국토개발 및 정책, 국토계획, 현장교육(Field Trip) 등을 통해 국토교육 능력을 갖춘 교사 양성	하계방학 기간 중 국토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2018 국토정책교실', 2박3일 과정)
청소년 국토학교 (초중생)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국토교육을 통해 우리 국토와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관심 제고	실습·체험형 교육, 학생의 진로결정 및 관심 제고(2일 과정)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었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은 초중고 청소년 및 선생님을 대상으로 국토교육을 시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교육 사업이므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청소년 국토교육은 국토분야의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타 보조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음

○ 청소년 국토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국토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은 없으나 국가 주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특화된 국토교육을 더 이상 실시하지 못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청소년 국토교육사업의 내역사업 예산은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예산규모가 목표 달성에 실효성을 지님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325백만원	309백만원	293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0백만원	0백만원	0백만원
	0%	0%	0%
합계	325백만원	309백만원	293백만원
	100%	100%	0%

○ 내역사업별 예산 규모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하며, 사업비의 지출 항목들이 적절함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비 현황 '18년도>

사 업 명	내 용	사업비
국토교육 연구학교	중·고교 4개교를 지정·지원 (1,000만원/년간/학교당)	73.4백만원
국토교육 동아리	중·고교생 대상, 40개 동아리 선정·지원(동아리당 200만원)	96.6백만원
국토교육관계자 교육		
국토탐방대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토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8개교, 약 240명)	79백만원
국토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풍부한 국토교육 능력을 갖춘 교사 양성 (연간 약 50명)	20백만원
청소년 국토학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국토교육(연간 약 200명)	40백만원

○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사업은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국토교육을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민간기관이 정부 사업을 대행하므로 민간기관에 대한 보조율이 100%인 정액보조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보조율이 적절함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국토탐방대회와 청소년 국토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을 선정할 때 다문화 가정, 낙후지역 학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사업은 사회통합에 기여함

- 국토탐방대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기획탐방을 추진하였고('18년 2개교 60명; '17년 4개교 127명), 청소년 국토학교에서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을 우선 선발함('18년 2명; '17년 12명)

- 국토탐방대회와 청소년국토학교에서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을 선발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자산조사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스티그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토교통부는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에서 공모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인 LH는 국토교육 연구학교 지원, 국토교육 동아리지원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국토교육교사연수, 청소년국토학교, 국토탐방대회 사업은 간접보조사업자인 국토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탐방대회를 민간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청소년국토교육 사업을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하기 위해 국토분야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등 공공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내역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에서 공모 절차를 준수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집행 점검 계획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점검평가단을 구성하고 보조사업의 적절한 집행 등 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함

○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성과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여 모니터링하며, 상하반기 추진실적과 수행 상황을 점검 관리함으로써 보조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집행액 증빙자료 대조를 통해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반납토록 하고 사업목적 외 집행 등 부적정 집행액은 환수 조치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후관리를 시행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발생이 없었음

○ 국토교통부 자체 국고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이 별도로 제정('15.11.2, 국토교통부 훈령 제605호)되어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은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보조사업의 실질적 수혜자 수가 제한적임

○ 내역사업들은 사업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소액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과 교사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내역사업의 사업체계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민간대행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으로 있는데 사업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공모 방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내역사업들 - 국토교육 연구학교 지원, 국토교육 동아리지원, 국토탐방대회, 국토교육 교사연수 P/G, 청소년 국토학교 -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국토교육 연구학교 지원, 국토교육 동아리지원), 간접보조사업자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국토탐방대회, 국토교육 교사연수 P/G, 청소년 국토학교),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시 민간대행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국토탐방대회)으로 나눠져 사업관리체계가 복잡함

- 국토탐방대회와 청소년 국토학교 사업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은 선발 학생에게 스티그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추진되어야 함

○ 보조사업의 집행체계,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적정하게 관리됨

3-2 정책 제언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육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므로 법률 개정과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 국토교육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시급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공모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관리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하도록 함

○ 내역사업(청소년 국토 학교, 국토탐방대회)의 참여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자산조사 방식은 선발 학생들에게 스티그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택시산업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0.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6.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5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택시산업지원 사업은 '감축(88백만원)'을 권고함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 감축이 필요함 ·지속적인 예산 불용과 목표 달성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요에 따라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요구됨 ·내역사업 중 'CNG택시 개조지원'은 당초 계획된 목표 달성에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19년 대비 80%의 예산 감축(88백만원)이 필요하며, LPG 연료가격 조정 등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 ·다만,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의 경우 '19년 3월 7일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에 의해 감차 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동 내역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토교통부의 '택시산업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생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 동 사업의 주요한 법적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7조에서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과 친환경 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적 근거와의 연계성이 존재하고 있음

- 다만, 동법의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법적 근거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핵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택시감차보상으로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택시 감차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둘째, CNG택시 개조지원으로 친환경 택시 확산을 도모하고, 택시연료를 다양화하여 LPG 가격 상승 억제·운송비용 절감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동 사업은 두 가지 이질적인 목표가 병합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찾기 어려움

- 사업소관부처에서는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의 경우 택시 과잉공급은 일부 사업구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 대부분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요 논리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택시면허 과잉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역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존재

- 이에 반해 CNG택시 개조지원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나, 사업의 실제 목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보다 택시 주원료인 LPG가격 상승 억제 및 운송종사자 소득 증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특정 계층의 소득보조를 위해 국가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

○ 동 사업의 수혜자로 사업소관부처에서는 모든 국민을 수혜자로 특정하고 있으나, 실제 동 사업의 수혜자는 상당히 규모가 작을 것으로 판단됨

- 즉 적정대수의 택시가 유지됨에 따라 교통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 주요 논리이나, 실제 감차로 인한 수혜자는 지역별 택시업계 및 운송종사자임

- CNG택시 개조지원의 경우 운송종사자 소득 증대가 강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일부 운송종사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택시감차보상'과 'CNG택시 개조지원'이라는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년의 경우 제4차택시총량 조사용역비 예산이 단년도 편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그 구성내용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임

○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택시산업 지원'을 위해 구성된 상기 두 가지 내역사업은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지속적인 예산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차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의 경우 택시총량조사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과잉공급대수를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감차위원회 논의를 통해 고시 후 추진됨
- 따라서 매년 목표대수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목표 설정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존재하나, 실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초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CNG택시 개조지원' 내역사업 역시 지속적 예산불용과 목표 달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 CNG의 가격경쟁력과 더불어 충전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역사업의 구성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당초 계획한 목표를 위해 현재의 정책수단이 최선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 '16년 국고보조사업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듯이 택시감차보상제도의 목표가 택시감차인 경우 신규 면허 발급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의 면허 취소가 보다 효율적인 대안일 수 있음
- CNG택시의 경우에도 CNG연료가 현행 최선이라기보다 LPG연료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동 사업의 유사·중복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의 경우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라 동 내역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인정됨

- '19년 3월 7일 이루어진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의 합의문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문항이 포함됨
- 즉 택시-카풀 간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함과 동시에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CNG택시 개조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현재의 정책수단이 최선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동 내역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실질적인 수혜자들에게 손실할 가능성은 낮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지속적인 예산 불용과 목표 달성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즉 사업시행 초기 택시 과잉공급문제를 단기에 해소하기 위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음
- 실제 지자체별 택시적정대수를 파악하는 택시총량조사와 더불어 지역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요구됨
- 다만,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라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행 사업예산에 대한 감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
- 'CNG택시 개조지원'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전년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나, 실제 수요조사 결과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사업소관부처에서 면밀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사업은 기존보조율에 의해 보조율을 정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를 통해 매년 보조율을 정하는 사업임

- 실질적인 국고지원은 약 30% 수준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별도 공모절차 없이 수요조사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 '택시감차보상'의 경우 감차위원회 구성 및 고시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교부
- 'CNG택시 개조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소관부처가 지방자치단체로 개조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

○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기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택시감차보상'의 경우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별도 보조사업 집행을 위한 관리 지침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

- 지자체장은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1조(감차보상금의 집행)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음

○ 'CNG택시 개조지원' 내역사업은 보조사업자로서 지자체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사업소관부처에서 소명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부재함에 따라 그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예산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이 담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관련 내용을 명시

-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명시

- 2회 이상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며, 2회차 이상의 교부 요청시에는 집행율 등을 제시한 후 교부함

○ 사업후 차년도에는 규정에 따라 3개월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집행잔액 반납 등을 실시 완료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은 2018년 전국 일제조사결과 부정수급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음
- 'CNG택시 개조지원' 내역사업은 2019년 상반기 중 전국 일제조사 추진 예정

○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평가에 한계가 존재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지속적인 예산 불용과 목표 달성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요에 따라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요구됨

3-2 정책 제언

○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의 경우 기존 목표 대비 성과가 미비한 것은 자명하나, '19년 3월 7일 이루어진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라 감차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내역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CNG택시 개조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 '14년부터 '17년까지의 실집행률 부진을 감안하여 2019년 대비 80%의 예산 감축을 권고함(88백만원)

  * '14년부터 '17년까지 CNG택시 개조지원 내역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은 내역사업 총 예산 대비 20% 수준임에 따라 '19년 예산 기준 80% 예산 감축

- 동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기 어렵다는 경제사회적 제약을 고려하여 LPG 연료가격 조정 등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항공인력양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본 사업은 2023년까지 항공조정인력(120명)과 항공기초인력(80명) 등 항공전문인력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종 인력과 정비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조종 및 정비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이후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연간 항공조종인력 120명과 항공기초인력 80명 등 연간 200명의 항공전문가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항공사업법」 제69조와 「항공안전법」 제48조에 근거하여 한국항공협회에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높지 않음

- 2017년 3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7년 「항공법」 제29조와 제153조에 근거하던 법적 근거가 2018년부터 「항공사업법」 제69조와 「항공안전법」 제48조에 근거하게 됨

○ 본 사업은 항공조정인력과 항공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령과 내역 사업 간의 연계성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2023년까지 항공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 항공산업은 자립적인 발전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나 조종사와 정비사 인력에 대한 양성은 부족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지원을 감소하는 것이 필요

- 향후 10년 간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종사 인력은 25.5만 명('17, CAE 조종사훈련기관)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어 훈련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조정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 본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항공인력양성기관과 관련 교육을 받는 사람들로 이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항공조정인력 양성사업과 항공기초인력 양성사업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내역사업들이 사업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항공조정인력)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비 지원, 저소득층 조종사 훈련비 지원, 취업준비 과정, 산학연계 취업지원, 교육기자재 구매, 주관 사업 기관 운영
- (항공기술인력) 5개 이내 특성화고교 지원,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 사업 기관 운영 등

○ 항공조정인력 양성지원은 훈련사업자 지원 및 취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공기초인력 양성은 항공 기계·전자·정비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 항공특성화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항공기초인력 양성사업은 지난 3년 간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항공조종인력 양성은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2018 회계연도 162명 양성하여 목표 인원인 120명을 초과달성 하는 등 효과성이 있음

- 조종인력 양성 등의 성과지표를 산출하는데 회계연도와 교육연도 간에 불일치로 인해 성과지표가 늦게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향후 항공 산업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민간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나 조종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은 아직 높은 교육훈련비 등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3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까지는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항공종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인 조종인력 수급현황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

○ 본 사업이 폐지되어 조종 및 정비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를 양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항공조종인력양성과 항공기초인력양성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내역사업들은 예산이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내역사업	예산액	비중	내역사업	예산액	비중
항공조종인력양성	24.22억	-	항공기초인력양성	3.92억	
훈련비지원	9.9억	40.9%	특화고교지원	3.3억	84.2%
저소득층지원	3.5억	14.5%	통합기초교육	0.11억	2.8%
취업준비과정	1.8억	7.4%	주관사업기관운영	0.62억	13%
산학연계취업지원	0.7억	2.9%			
교육기자재	5.0억	20.6%			
취업인프라 구축 부대비용	1.5억	6.2%			
주관사업기관 운영	1.82억	7.5%			

○ 본 사업은 항공조정인력 양성사업(24.22억 원)과 항공기초인력 양성사업(3.9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운영비는 7.5%와 13% 수준으로 적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1차 보조사업자인 주관 사업 기관은 대응자금 부담에 대한 의무가 없으나 세부운영기준에서 2차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교육훈련비에 대한 대응자금을 20%를 규정하고 있어 보조율이 적정하다고 판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저소득층 조종사 훈련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항공사업법」에 근거하여 주관 사업 기관을 지정하고 항공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 및 관리지침에 따라 주관 사업 기관에서 훈련기관을 공모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2차 보조사업자의 경우 교육훈련비에 대한 대응자금 요건을 통해 자부담 능력을 선정 시 고려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항공인력양성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연 2회 이상 사업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고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차등 지원 등을 적용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항공인력양성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운영기준을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본 사업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보고와 회계감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감사실의 감사와 해당부서의 연차평가, 중간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사업은 항공인력양성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운영기준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와 해당부서의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2023년까지 항공조종인력(120명)과 항공기초인력(80명) 등 항공전문인력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종 및 정비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향후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조종 및 정비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이후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
- 회계연도와 교육연도 불일치로 성과지표들을 도출하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행복주택출자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1.8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행복주택 사업은 사업 승인 대비 착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하는 사업방식 변경 필요함. ·행복주택출자는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후보지 선정 지연과 민원제기 등으로 계획만큼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함. 사업승인·착공·준공에 대한 일정관리를 효율화하고 공공주택사업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을 관리할 필요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공공주택특별법,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 따라 국민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13조의2(주거정책 자금)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이 타당한 사업임.

-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법의 하나인 행복주택 건설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합동 주거복지로드맵, 장기주거종합계획,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도 추진되는 사업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따라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이외에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자 범위가 넓다고 평가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행복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함. 주거복지로드맵 및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등 연차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중에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포함) 공급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자 자격과 자격별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제도화하였음.

- 13만 호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고 착공 및 1.5만여호의 행복주택에 입주가 이루어졌음.

< 행복주택 추진실적(단위:만호) >

구분	계	'13	'14	'15	'16	'17
승인	13.0	-	2.6	3.8	3.8	2.8
착공	8.1	-	0.6	2.1	2.8	2.7
준공	1.7			0.1	0.4	1.2
입주	1.5	-	-	0.1	0.2	1.2

- 하지만, 임대가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행복주택 미임대율(%) >

구분	'13	'14	'15	'16	'17
목표	0.8	0.8	0.7	0.7	0.66
실적	0.4	0.99	0.54	0.81	-
달성도	150.0	80.8	129.6	86.4	-

자료> 성과계획서

- 2018년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집행율 74%임. 2019년 건설비 지원 단가를 3% 인상('18년 7,420천원→7,643천원/평)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집행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행복주택을 포함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은 민간 시장에서 수행이 어려움. 소셜하우징 사업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회적 금융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업 지원이 필요함.

- 주거복지로드맵은 '18~'22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하여 연평균 건설형 7만호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단위:만호) >

구분	'08~'12	'13~'16	'17	공급 계획 (준공기준)						
				'18	'19	'20	'21	'22	합계	평균
합계	연 9.1	연 10.8	12	13	13	13	13	13	65	13
건설형	연 6.2	연 6.1	7	7	7	7	7	7	35	7
매입형	연 1.4	연 1.2	1.6	2	2.5	2.5	3	3	13	2.6
임차형	연 1.5	연 3.4	3.4	4	3.5	3.5	3	3	17	3.4

자료> 주거복지로드맵

- 만 39세 이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그룹에 공공임대주택은 필요한 주거복지 혜택임. 하지만, 주거는 소득·직장 접근성·가구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요를 예측하여 사업 승인과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히, 지역별로 공급물량 배분 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장기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라 '18~'22년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행복주택의 경우 장기주거종합계획 및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급물량 계획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결정.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단가(3.3㎡당 720만원)와 행복주택의 실제 건설단가(3.3㎡당 821만원) 간 격차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가 명시된 사업이 아님. 하지만, 행복주택출자 보조율 30%로 추진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인정)

○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 중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에 기여하였음.

- '17년말 재고 기준으로 1.6만호를 공급하였으며, '18년도 2.6만호 공급할 예정이며,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하였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 예산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자체 교부전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에 의거 교부절차 및 교부조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받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패널티 부여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국고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지출 증거 서류와 점검체크리스트 등으로 점검을 수행하였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중 부정수급 방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이 타당한 사업임.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나 입주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임대가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 집행과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였는지 명확한 평가 어려움.

3-2 정책 제언

○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이나 저소득층이 입주하기엔 임대료 수준이 높음. 동시에 접근성 좋은 지역에서 행복주택 건설 관련 갈등 또한 유발되고 있으므로 지역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갈등 조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일반)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주체를 확대하는 등의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함. ·동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익성이 크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항상적이지 않음.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에서도 시행하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에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어 보조사업 법적근거가 명확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중장기적으로 14개의 휴게소를 확충할 필요가 법정 계획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종합계획('15~'19)'에 포함되어 있음.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으나,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은 전 국민에 간접적인 수혜 효과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은 단일 내역(휴게소 건설지원)사업이며,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별표6의2에 따라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 식당, 주유소, 세탁실 및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운행 및 국가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종합계획('15~'19)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나, 2016년에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에 따른 충남 서산 휴게소 사업 취소가 있는 등 보조 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운영중인 휴게소 이용률이 2017년말 기준 161%에 이르는 등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고 만족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만족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님(5점 만점에 3.67점)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성은 없음. 대형차 운전자들이 1일 평균 8시간 이상을 초과(87.1%)하여 주로 야간 시간대에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로와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감소에 대한 수요는 큼.

- 하지만, 2016년 서산 휴게소 사업 취소가 있었고 2018년에는 국비지원이 없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요가 크지 않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특성상 운전자들은 타지역에서 운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사업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지역민 이용대상 시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지단체의 판단으로 적절한 사업비를 책정하여 목표달성의 실효성이 높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비율(30%)에 맞추어 지방비(70%)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43.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의 기준보조율은 30%이며,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전(또는 변경시) 보조사업자(지자체)는 시·도지사의 건설계획 승인을 받도록 사전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보조사업자 선정 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중앙(지방)투융자심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및 지자체 비용확보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음.

-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사업 반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와 관련된 지침이나 사업요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매월 집행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휴게시설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운영현황을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자체점검'을 시행

- 실집행 현황 및 단계 집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재정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 반납 또는 장래 예정된 교부액에 대한 보류 조치 등을 추진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고 있으며,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조사업부서에 제출토록 하는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매년 반기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장점검'을 시행하며, 매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화물복지재단 시행)도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안'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고 있음

- 현재까지 부정수급 발생 사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운전자의 휴식을 통한 졸음운전을 예방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사업임.

○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재정을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증가율은 낮으며,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였으므로 지방비 확보 가능성 점검 강화와 실집행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샤워실, 운동실, 수면실 등의 편의시설로 구성됨. 동 사업은 수익성이 크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항상적이지 않음.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에서도 시행하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 있음.

○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와 관련된 지침이나 사업요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해양수산부

관상어산업육성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낚시산업선진화
내수면자원조성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
수산물물류표준화
수산물위생관리
수산물자조금지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수산정보화(정보화)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양식등재해대책비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및용수관리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어촌6차산업화지원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연안국과의협력(ODA)
원양어업활성화
제주외항(2단계)
제주일반항건설
제주항
천일염산업육성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해양관광육성
해양수산연수원지원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화순항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관상어사업육성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본 세부사업은 '감축('21년 1,641백만원)' 및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내역사업 중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은 '20년 종료 예정이며, 관상어산업박람회 개최사업은 향후 관상어산업 활성화 시 민간 자체조달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21년 예산은 관상어생산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 종료에 따라 '19년 예산 대비 1,641백만원을 감축함 - 관상어산업박람회는 유관협회 자체적으로 개최함이 바람직하나, 한국관상어협회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고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 담당자는 매년 한국관상어협회의 재정여건을 검토한 후, 박람회 자체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고보조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차기 보조사업 평가시 협회 재정여건 검토 후 본 세부사업 폐지여부 결정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관상어 산업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관상어 생산·연구·유통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아쿠아펫랜드 조성 등으로 관상어산업 기반 구축 및 국내산업 활성화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지원, 시장개척지원, 아쿠아펫랜드 조성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업내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 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 양식·생산·유통·판매 및 수출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보수·개조 또는 개량
  2. 관상어산업의 판로 확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3개의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세부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전 세계 관상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상어산업 기초연구개발 및 시장판로 확대 등 국가정책 지원을 통한 관상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으로의 육성은 국가차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관상생물 수입국으로 '04년 이후, 년 4백만달러 이상의 관상생물을 수입하고 있음(수산물검사검역연보, 2016)

○ 본 세부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관상어양식·유통·판매업자(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로 볼 수 있으나, 본 세부사업은 관상어산업 확장으로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전체가 간접적·잠재적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은 연구개발지원, 시장개척지원, 아쿠아펫랜드조성 등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관상어산업 기반 구축, 국내산업 활성화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조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됨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계획서 수립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명확함

○ 본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박람회 관람객수 1개의 지표로 관리되고 있어, 성과지표 관리가 미흡함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박람회 관람객수(단위:명)	목표	13,000*	20,000	24,000
	실적	18,000	24,000	-
	달성도(%)	138	120	-

- 해외바이어 상담 수 및 참가업체 수 등 새로운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내 관상어산업이 열악한 현 상황과 관상어 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아쿠아펫랜드조성 및 관상어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내역사업 등의 국고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관상어생산 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은 '20년 종료될 예정임

- 관상어산업박람회 개최는 시장개척지원 성격으로 초기에는 국고 보조의 필요성이 있으나, 관상어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유관 협회 등 민간 자체조달로 추진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관상어협회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국고 보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될 가능성은 없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9년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은 관상어생산 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는 1,641백만원이며, 관상어산업박람회 개최 예산은 200백만원으로 적정한 수준임

- 내역사업 중 시장개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상어산업박람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관람객 규모가 증가하고 국내외 바이어 수주실적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해외바이어 수/상담(수주)성과('17년 51명, 58건 1,067천불 → '18년 61명, 77건 1,410천불), 관상어산업박람회 관람객수('17년 18,000명→ '18년 24,000명)

○ 본 세부과제는 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시장개척지원(관상어산업박람회) 내역사업은 국비보조율 80%로 설정하기로 예산부처(기재부) 심의와 승인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관상어생산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 조성 내역사업은 국비보조율 30%를 보조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사업은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관상어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연구' 이후 공식적인 공모절차를 통하여 추진하고 사업자를 선정함

○ 민간지원사업인 시장개척지원(관상어산업박람회) 내역사업은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예산당국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동 사업예산과 지원대상을 확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사업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집행점검 등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 승인 후 자부담내역이 입금된 보조금 통장사본과 함께 보조금 교부 신청토록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집행정산 보고를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보고에 따른 검토 후 보조금 교부 확정 통지를 함

○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으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사업의 모든 집행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집행, 정산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7년 신규사업 시작 이후 부정수급 사례 없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및 정산과정을 거치며, 자부담 선입금 후 보조금이 입금되는 형태로 거래처 지급여부 등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시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대책을 수립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감축(’21년 1,641백만원)’ 및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내역사업 중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은 ’20년 종료 예정이며, 관상어산업박람회 개최 사업은 향후 관상어산업 활성화 시 민간 자체조달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21년 예산은 관상어생산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 종료에 따라 ’19년 예산 대비 1,641백만원을 감축함

- 관상어산업박람회는 유관협회 자체적으로 개최함이 바람직하나, 한국관상어협회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고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사업 담당자는 매년 한국관상어협회의 재정여건을 검토한 후, 박람회 자체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고보조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차기 보조사업 평가시 협회 재정여건 검토 후 본 세부사업 폐지여부 결정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2.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세부사업은 '정상 추진'이 필요함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및 연안여객항로 안정화지원 등 2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내용 및 목표가 명확하고 성과관리가 철저히 수행되고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사업채산성이 없는 보조항로 및 적자항로/접경지역항로/도서1일 생활 구축항로 등에 재정 지원하여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및 연안여객항로 안정화지원 등 2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해운법'에 사업내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해운법 제15(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2개의 내역사업 중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내역사업은 해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지원에 해당되는 적자항로/접경지역항로/도서1일 생활구축항로도 국가보조항로로 정의할 수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사업성 부족으로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여 도서민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제도로서, 국가 차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

○ 본 세부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도서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이용자이며, 국민의 최소한의 교통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범위한 수혜자의 혜택이 명확함

- 총 104개 항로 중 27개 항로(26척)를 보조항로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17년 기준 보조항로 이용객은 연간 451천명 수준임

('17년말 기준)

항 로 수			척 수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104	77	27	169	143	26

○ 보조사업의 구성이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이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은 국가보조항로에 대한 결손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보조항로 이용객은 연간 451천명 수준으로 도서주민에게 최소한의 교통권을 제공하며, 해상교통 수요 창출로 국가 안전기반체계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보조항로 수송실적('17. 12월말 기준)

(단위 : 천명)

구분	합 계	일 반 항 로	낙도보조항로
'13	**16,063**	15,654	409
'14	**14,271**	13,870	401
'15	**15,381**	14,971	410
'16	**15,423**	15,007	416
'17	**16,910**	16,459	451

-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 작성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보조항로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3.3	4.3	4.09	4.09	보조항로 운영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이용객 만족도 조사(리커드 5점 척도)	이용객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	4.34	3.86	4.53	4.10			
	달성도	131.5	89.8	111	100.2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보조항로, 적자항로/접경지역항로/도서1일 생활구축항로 등에 대해 결손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조금 이외에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은 없음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될 가능성은 없음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은 도서주민에게 최소한의 교통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동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사업이 폐지될 경우 채산성 부족으로 민간 선사의 자율적 운항이 곤란한 낙도 지역은 항로가 두절되어 도서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보조항로(적자항로/접경지역항로/도서1일 생활 구축항로 포함) 결손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단위의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수입금 예정가격 산정시 여객 및 화물, 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해당 항로의 3년간 평균수입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은 보조항로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으로 계약금액을 책정, 지급하고 있음

- 다만,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특별계약조건 제11조에 의거, 운항수입금이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외생변수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음

- 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은 국가 소유의 선박을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과다한 수리비용 청구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 기준의 계약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연안여객항로 안전화 지원사업은 사후정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정산 과정에서 업체가 과다 신청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함에 따라 '18년 약 1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 최근 3년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내역자료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11,551	11,551	-	-	-	-	11,551	11,526	99.8	99.8	-	25
2017	11,741	11,741	-	-	-	-	11,741	11,741	100	100	-	-
2018	14,687	14,687	-	-	-	-	14,687	13,666	93.0	93.0	-	1,021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세부사업은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낙도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써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낙도보조항로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업무지침(훈령)을 제정하여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함

- 해운법 시행령 제10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해운법 시행령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해운법 시행규칙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훈령) 별표2(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등

- 민간지원사업인 시장개척지원(관상어산업박람회) 내역사업은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예산당국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동 사업예산과 지원대상을 확정함

○ 보조항로를 사전 지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원을 집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08.9.4 제정)'을 마련하여 낙도보조항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국가보조항로 경쟁입찰 특별계약조건 제14조(개선명령), 제15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16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에 의해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매년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및 정산결과 검증을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사업채산성이 없는 보조항로 및 적자항로/접경지역항로/도서1일 생활 구축항로 등에 재정 지원하여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및 연안여객항로 안정화지원 등 2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내용 및 목표가 명확하여 정상 추진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낚시산업선진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5.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5.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0.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동사업은 감축(낚시터환경개선 내역사업 폐지, '19년도 예산 660백만원) 및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동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지역, 혹은 관련 산업에 국한되어 있어 국가적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민간 및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낚시터 환경개선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의 형태가 아닌 규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내역사업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동사업의 효과도 명확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내역사업 중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감축 660백만원) ·내역사업 중 낚시산업 수출산업화의 경우 성과 등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18년 신규사업인 만큼 일정기한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폐지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추후 보다 효과적인 사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갖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지만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특히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법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법 관련 사업으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사업의 내역사업 중 낚시터 환경개선과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등이 보조사업임

- 낚시터 환경개선장소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수혜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반드시 국가적 관점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역시 수혜자가 관련 사업자들이므로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적 관점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낚시터 환경개선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의 목표는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낚시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임

○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38여개 지자체에서 총820톤의 낚시터 주변 쓰레기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목표를 달성하였음

-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실적('17년) : 쓰레기 998톤 수거, 쓰레기수거함 25개, 화장실 28개 설치

○ 하지만 성과지표 선정 및 목표의 근거가 명확하거나 도전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7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산자원조성지역 단위면적당 생체량 (단위: kg/㎡)	목표	1.52	1.59	1.65	1.65	1.65	생물 밀도가 높아지면 환경 저항에 따라 환경 수용력 한계 발생하여 생물 생장은 지속적 증가 제한으로 '16년도 목표치인 1.65로 설정	수산자원조성지역(바다숲)을 대상으로 연1회 단위면적당(1㎡) 부착생물(해조류, 저서동물 등) 중량을 측정	자원조성 효과 조사용역결과(바다숲 조성 사업 보고서)
	실적	-	-	1.69	-	-			
	달성도	-	-	102	-	-			

○ 또한 내역사업 중 보조사업인 낚시산업 수출산업화의 성과는 명확하지 않음

- 20개의 업체가 "위해국제박람중심"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으나 MOU 실적은 3건 178천불에 불과한 실정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과 타사업의 중복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동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 혹은 낚시사업 종사자 등의 수혜자에 국한되므로 반드시 국가가 수행하여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오히려 민간 및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낚시터 환경개선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의 형태가 아닌 규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낚시터 환경개선은 '14년 국비 지원율을 해수면 100%, 내수면 40%로 지원하였으나, 사업평가에 따른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모든 수면에 대해 지자체부담을 증가시켜 '17년부터는 국비 30%(지자체 70%)로 지원하고 있으며, 쓰레기정화 면적당 비용, 수거함 설치비용 등에 대한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동 내역사업의 경우 혜택이 지역에 국한되므로 30%의 보조율이 적절하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낚시산업 수출산업화의 경우 80%의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경우 지자체 대상 사업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지 및 비용부담 능력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가내시를 통하여 지자체부담 비용을 준비토록 조치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신청 - 결정 - 결정 및 통지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신청규모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등 선정 및 교부절차를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됨

○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동 지침에 주 사업수행자 및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한 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박람회 참가업체 모집은 '2017년 중국천진국제낚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모집공고'를 한국수산무역협회 홈페이지 게재, (사)한국낚시협회를 통한 업체 개별 홍보, 낚시전문TV 광고 등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접수된 20개 업체 대하여 모두 지원하였음

- 하지만 지원단체 모두를 지원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보조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40호)」에서 정한 사항 및 별도의「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사업 진행 중에는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음

- 또한 보조사업 성실수행 및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추진토록 사업지침에 명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시행 지침에 동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40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사업시행 지침에 동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40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자체 사업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40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 조치토록 규정하여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이한 노력을 하였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시행 지침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중 지자체 담당과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고, 낚시정보종합포털 및 낚시전문교육 사업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보조사업인 낚시터 환경개선과 낚시사업 수출산업화 등의 사업들이 법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동사업의 내역사업 중 낚시터 환경개선과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등이 보조사업임

- 낚시터 환경개선장소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수혜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반드시 국가적 관점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역시 수혜자가 관련 사업자들이므로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적 관점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측정되거나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동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 혹은 낚시사업 종사자 등의 수혜자에 국한되므로 국가 보다는 민간 및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낚시터 환경개선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의 형태가 아닌 규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지원단체 모두를 지원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보조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3-2 정책 제언

○ 동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지역, 혹은 관련 산업에 국한되어 있어 국가적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낚시터 환경개선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의 형태가 아닌 규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박람회 참가업체 모집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 동사업의 효과도 명확하지 않음

○ 이상의 이유로 내역사업 중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감축 660백만원

○ 내역사업 중 낚시산업 수출산업화의 경우 성과 등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18년 신규사업인 만큼 일정기한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폐지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추후 보다 효과적인 사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내수면 자원 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7.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20 년 950 백만 원) 및 사업방식 변경** - 15 년과 16 년에도 상당한 금액이 이월된 점을 감안하여, 19 년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950 백만 원을 연장평가를 받은 18 년도 보조사업에 한하여 20 년에 감축 ·내역사업의 구성 및 필요성 등에서 일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낮은 어도관리 정상화 수준 및 내수면 생산량 증가율 목표 미달성 등 성과관리가 미흡함 ·어도관리를 비롯한 내수면 자원관리에서 지자체간 협업,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업의 주요 내용이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내수면 단체 활성화 지원의 경우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모델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 주요 내역사업이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자부담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내수면어업법 제17조, 제19조의6,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명확함

< 내수면어업법 제17조, 제19조의6, 동법 시행령 제13조 >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수·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淡水魚) 처리·가공·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 그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84-2 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의 수출전략 산업화) 및 한중 FTA 대책사업에 반영되어 내수면어업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어업 활성화로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자원회복을 통한 혜택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사업 성격이 있으므로,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타당함

- 201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역사업의 특성을 지니나 수계의 외부성으로 인해 내수면 자원관리의 공공성은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의 일부는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적절하지 않음

- '내수면인공산란장 조성'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 조성된 인공산란장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성된 인공산란장의 성과 분석을 통해 일몰제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주무부처가 추가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부터 어도관리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미 어도관리를 비롯한 내수면 자원관리에서 지자체간 협업,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2019년 예산 안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구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무부처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기능상실어도의 정상화율 및 내수면수산물 생산량 증가율을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국회의 지적처럼 어도의 정상화 수준이 낮은 상황이며 인공산란장 및 양식장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는 내수면수산물 생산량 증가율도 2017년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어도정보시스템운영, 유휴저수지 자원화,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등 일부 내역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성과 모니터링이 미흡함

< 성과지표 및 실적 >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능상실어도의 정상화율 (단위: %)	목표	7.0	15.8	22.8	29.8	36.8	▪2019 정상화율 36.8%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2018 목표치 (29.8%) 대비 7.0%p 상향하여 설정	(개보수 완료(정상기능) 어도 수/ 기능상실 어도 총수)×100	국가어도정보 시스템 통계자료
	실적	8.8	19.7	29.2	-	-			
	달성도	125.7	124.7	128.1	-	-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증가율 (단위: %)	목표	신규	5.0	5.0	5.0	5.0	▪최근 6년간 ('12~' 17년)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연평균 증가율(1.6%) 대비 3.4%p 상향한 5.0%로 설정 (뱀장어 생산량 제외)	<(당해연도 생산량-전년도생산량)/전년도생산량> × 100	통계청 어업생산 통계자료
	실적	신규	6.4	4.8	-	-			
	달성도	신규	128	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1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속사업으로서의 합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함

- 인공산란장의 경우 기 조성된 인공산란장 외에 추가로 조성해야 할 근거가 미흡함
- 내수면 양식단지 및 내수면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수산 u-IT 융합모델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연계 및 협력 방안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동 사업이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휴저수지 자원화의 경우에도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수면 단체 활성화 지원의 경우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이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조정이 필요함

1-6 사회적 가치 실현

○ 그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관점에서 일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내역사업별로 지자체보조와 민간보조로 나뉘며,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조건에 따른 검증 및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을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은 적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내역사업별로 집행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집행은 적정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내역사업별로 사후 관리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적정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어도관리를 비롯한 내수면 자원관리에서 지자체간 협업,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업의 주요 내용이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어도관리 정상화 수준이 상당히 낮고 다양한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양식장 조성사업의 경우 유사사업과 연계 및 협력 방안을 추진해야 함

○ 동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이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자부담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19년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950백만 원을 연장평가를 받은 18년도 보조사업에 한하여 20년에 감축

3-2 정책 제언

○ 내수면 단체 활성화 지원의 경우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등 사업내용과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함

○ 사업실적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0.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8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이 필요 ○ 본 사업은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 독도 탐방 지원을 통한 영토관리의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 ○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과 각종 전시관 운영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을 감안하였을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업으로 판단됨 ○ 독도를 국토의 일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성이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에 독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보조)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성이 있음

- 지자체 경상보조의 경우 독도이용법 제5조 및 제12조(국가보조)에 지자체 지원을 명문화
- 민간 경상보조의 경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독도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이 수행하기 적절치 않으며 국가적으로도 안보, 경제 등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대체로 광범위함

-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수혜자로 볼 수 있음
-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일반 국민들도 본 사업의 수혜자로 볼 수 있음
- 다만, 직접적/간접적 수혜자가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혜의 크기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독도영토주권 수호임: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 독도 탐방 지원을 통한 영토관리의 강화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임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 위에서 제시한 독도탐방 참가자 수의 추이와 함께 독도탐방만족도를 제시하고 있음
- 독도 탐방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소수개인에 국한되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독도탐방만족도 또한 본 사업의 주요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있음. 다만, 참가대상은 예산적 한계를 감안하여,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우 등 사회적 배려층 자녀와 문화예술인들을 선발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독도 소재 창작물 생산을 장려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법보다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영토주권에 관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본 보조사업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과의 중복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접국가의 독도 영주권 훼손시도에 대한 대응책 개발 등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의 개발이 필요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과 각종 전시관 운영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을 감안하였을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업

○ 사업이 폐지 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가 클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과정이 있으며, 적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목적달성을 위한 실효성이 충족됨

○ 보조금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은 없음

- 독도 영토주권 사업은 기준보조율 122호(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를 준수하고 있음
-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음: (독도주민숙소, 독도관리선 등 기반시설 운영) 70%, (독도박물관 등 역사전시시설 운영) 50%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경상북도(울릉군)가 유일한 지자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지리적 요인에 따른 효율적 행정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근거가 적용됨

- 독도 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제2017-23호)를 마련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해당 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지 제20조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일반적인 차원의 보조사업 관리체계가 수립, 운영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23조의4(보조사업 집행점검)에 따라 현장실사 등 보조사업의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 및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모니터링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일반적인 차원의 보조사업 사후관리체계가 수립, 운영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23조의4(보조사업 집행점검)에 따라 현장실사 등 보조사업의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 및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모니터링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 규정 외 별도의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규정 없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철저한 집행점검과 정산검사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또는 대출금의 회수), 제23조(보조금의 정산) 등 보조금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 독도 탐방 지원을 통한 영토관리의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

○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과 각종 전시관 운영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을 감안하였을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업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독도를 국토의 일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수산물 위생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동 보조사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제시가 미흡하며,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 · 수산물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고 살처분 대상 확대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업이 홍보 실적만 제시할 뿐 성과가 무엇인지, 환류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재함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염병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명확함

> **< 수산업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
>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동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별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방역비, 예방백신 공급, 기생충 구제사업,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운영의 경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5,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하고 있음
- 적조, 해파리, 쑥 등 유해생물구제사업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고 있음
-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5항 제6호에 근거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수산생물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타당함

-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적조, 해파리 등은 지역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사업의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들이 보조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생물 질병 감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어, 동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8년부터 '양식장 법정 전염병 모니터링 실적'을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넙치양식장 질병관리등급 평가'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일부 성과자료에 불과하며, 이를 포함하여 동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감사원, 2018년 11월)에 따르면 양식 수산물 안전관리 부실, 노로바이러스(식중독 유발균), 중금속 오염 우려 생산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박완주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2017)에 따르면 수산물 전염병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연 2,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5년 간 국내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잉어봄바이러스병'만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매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예산이 불용되었고, 해양수산부가 살처분 대상 질병 확대 계획을 계속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수산물 전염병 발생 현황 >

구분	국내산 수산물 전염병 발생 건수	수입산 수산물 전염병 감염 건수	죽거나 병은 수산생물 신고 건수
2013	21	3	25
2014	30	1	40
2015	33	11	45
2016	43	14	71
2017	49		
2018	83		

* 출처: 박완주 국회의원 보도자료(2017.10.9.), 해양수산부 추가제출 자료

○ 내역사업 중 하나인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의 성과에 대해 주무부처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서 교육 실적 및 홍보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러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 성과 점검 및 환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수산물 질병관리 및 재해 대책이라는 점에서 국가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타 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에 대해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주무부처도 인정하듯이 동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월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월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1-6 사회적 가치 실현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라는 관점에서 일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내역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수산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운영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사업자신청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사업수행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자 선정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 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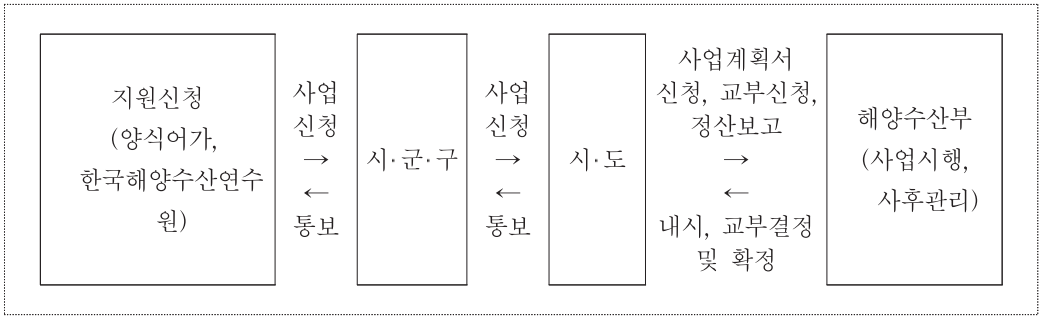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월액 과다로 실집행률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내역사업별로 사후 관리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적정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와 목적은 명확하며 타당하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제시가 미흡하며,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함

○ 수산물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고 살처분 대상 확대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업이 홍보 실적만 제시할 뿐 성과가 무엇인지 환류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재함

3-2 정책 제언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교육 홍보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전염병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수산물 물류표준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48.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27.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4.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0.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대체로 인정되나 아래의 사항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본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측면에서 부처는 적절하고 엄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관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본 사업의 실집행률이 높지 않음. 재정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당초 감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처가 위의 사항을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고, 구체적이고 기속력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실집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 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든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으로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과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본 규정은 정부가 지원을 꼭 해야 하는 기속 규정이 아닌 지원할 수도 있는 재량 규정에 해당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4.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
5.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
6.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기관
7. 제80조, 제89조 및 제99조에 따른 농수산물 검사 및 검정 기관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거래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사용, 규격에 맞는 포장, 이에 필요한 유통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국내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어상자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위판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위생적인 목재 어상자를 규격화된 플라스틱 어상자로 전환을 유도하기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전국단위 회수물류시스템 구축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의 위생성 향상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재활용 효과가 일정 수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부처는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어민과 유통업자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소비자 및 국민이라고 밝힘

- 부처는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본 작업이 미비할 경우, 이해관계자별 니즈와 요청사항이 환경변화에 따라 상이해 지는 것을 포착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에 빠질 우려가 있음.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명확한 파악 및 분류 후 그들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부처는 본 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엄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완될 필요

○ 부처는 본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엄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완될 필요

○ 부처는 본 사업이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엄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완될 필요

○ 부처는 평가위원이 요청한 본 사업의 과거에 대한 평가, 현재 환경의 변화, 미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 과거 2011년 표준 규격화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항이 진행된 바가 없음. 이에 대해 숙려하여야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부처는 본 사업이 보조금 외에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엄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완될 필요

○ 부처는 본 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인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엄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완될 필요

○ 만약 본 사업이 폐지될 경우 재정적 손실은 크지 않겠으나, 어업인, 유통업체, 소비자 등에게 일시적인 손실을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어업인의 경우 플라스틱 어상자에 대한 지원 중단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목재 어상자로 회귀할 가능성이 많아 위생적 물류환경 조성과 물류효율화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예산 규모중 행정경비가 크지 않아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저해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은 93.8%로 높지 않음.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재정 현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재정 현장에서 일시적인 사유에 의해 실집행률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면 예산 규모가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부처는 과거 실집행이 부진했던 사유가 2019년중 해소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시스템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부처로부터 이와 관련된 실효성있고 기속력있는 개선방안을 제시받음

○ 본 사업은 타부처 인근 사업인 농식품부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을 참고하여 보조율을 산정하였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대체로 마련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은 대체로 집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대체로 마련되어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를 대체로 집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결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는 없으며,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보조금 교부결정통보시 분기별 집행현황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사업완료 후 정산을 실시, 2016년부터는 보조금 교부통지서에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추가 명시하는 등 대체로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대체로 인정되나 아래의 사항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본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측면에서 부처는 적절하고 엄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관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실집행률이 높지 않음. 재정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2 정책 제언

○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실집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 아래에 부처의 향후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 등을 담은 공문서를 첨부함

수 협 중 앙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집행실적 개선(안) 보고

1. 관련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4407(2017.12.22.)호

[2018년도 보조사업 세부 사업계획 통보(수산물 물류표준화)]

2. 위 호와 관련, 2018년도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18년도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집행실적 개선(안) 1부. 끝.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수신자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

직원	송상민	과장	2019.3.15. 정준호	팀장	김정우
협조자					

시행 경제-00307 (2019. 3. 15.) 접수 유통정책과-980 (2019.03.15.)

우 05510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

전화번호 02-2240-2452 팩스번호 02-2240-3043 / angel78@suhyup.co.kr / 대국민 공개

【붙임】

2018년도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집행실적 개선(안)

□ '18년도 실집행 부진 사유

○ 어상자 지원대상 규격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실집행 부진

○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수요 확대 제한

* 어업인(선주), 중도매인 등

□ 문제점

○ 오랜 관행에 따른 목상자의 사용 편리함*과 지역·어종마다 다른 규격**으로 인해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지역 확대에 한계

* 어상자에 갈고리를 걸어 끌고 이동하기가 편리하나, 플라스틱은 선상에서 미끄럽고, 갈고리 사용 시 깨지기 쉬움

** (목포) 590×370×90㎜, (통영) 590×365×80㎜, (제주) 590×368×94㎜

□ 개선방안

○ **(사업자 선정)** 당해년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예산액 전체 확정**

* 분기별 사업 실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포기 등의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집 재공고 등을 통해 연내 집행 완료

** '19년도 예산(948백만원) 전액 사업자 선정으로 100% 실집행 전망
어상자 : (신청) 1,530,000개 → (선정) 730,964개, 지게차 : (신청) 68대→(선정) 59대, 파렛트 : (신청) 3,710개→(선정) 3,487개

○ **(어상자 규격)** 어상자 지원규격을 **1종에서 3종**으로 **확대**

- 600x400mm, 600x500mm, 550x365mm 어상자 지원대상 표준규격을 다양화하여 수요 확대 추진

○ **(사업방식)** 공급업체(어상자, 지게차 등) 선정방식을 지역 개별선정에서 **중앙회 일괄 선정**하여 **사업효율화** 추진 검토

* 일괄 공동입찰·계약으로 사업 조기추진 및 품질(강도)이 상향된 어상자 공급

○ **(교육·홍보)** 현장점검 시 수산물 **위생·품질제고**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규격화된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 강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수산물자조금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및 감축(3.9억원) ·동 사업은 생산자단체 스스로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기반을 구축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장가격 안정, 어업인 소득보장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초기단계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임의자조금 단체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촉구, 자조금단체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도록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며, 자부담 비율상향, 임의자조금 졸업제 등을 통한 국고보조금 지원 감축**이 필요함 ·향후 자조금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추진하여 의무자조금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임의 규정)를 두고 있음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FTA체결 등 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나 특정품목에 대한 정부의 가격지지나 시장개입 여지는 축소되고 있음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품질향상, 수급조정 등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자율적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타당함

- 수산자조금은 10개 품목에서 조성되었으며, 이들 모두 임의단체임

- 2018년 기준 정부의 자조금 지원예산 379억 원 중, 축산물에 260억원(68.6%), 농산물에 76억원(20.1%), 수산물에 43억원(11.3%)을 지원함

<분야별 자조금 지원 대상품목>

구 분	품목수	지원예산 (억원)	품목단체
축산자조금	9	260	(의무 7개) 한돈, 한우, 우유, 계란, 닭고기, 육우, 오리 (임의 2개) 사슴, 양봉
농산자조금	25	76	(의무 8개)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임의17개) 포도, 단감, 복숭아, 무배추, 양파, 토마토, 가지, 참외, 딸기, 오이, 마늘, 고추, 풋고추, 절화, 육묘, 밀, 난
수산자조금	10	43	(임의10개) 김, 광어, 전복, 송어, 자라, 민물장어, 향어, 메기, 미꾸라지, 관상어
합 계	**44**	**379**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1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비홍보,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경쟁력제고, 수출활성화,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선거, 징수수수료, 운영관리, 예비비 등의 내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자조금이란 이익집단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을 의미함. 내역사업 중 단체 운영관리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수산자조금 모든 품목에서 어가평균 생산액이 증가하여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인정함

  * 김 어가당 생산액: 45백만원(2008) → 284백만원(2017), 6.31배 증가

  * 전복 어가당 생산액: 43백만원(2008) → 212백만원(2017), 4.93배 증가

  * 광어 어가당 생산액: 636백만원(2018) → 1,100백만원(2017), 1.73배 증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생산자단체 스스로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기반을 구축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장가격 안정, 어업인 소득보장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초기단계에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됨

- 수산물자조금 사업의 경우 10개 품목 모두 임의자조금단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으무자조금 전환을 통한 자조금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수산물자조금 지원 품목 중 송어자조금은 2019년 의무자조금 전환을 목표로 관련 전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농산물 자조금의 경우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 결성후 3년간 지원하고,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두고 운영 중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상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특정품목에 지원이 치우치지 않도록 10억원 이상의 경우는 50%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60% 이상 집행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조금 지원예산은 국비: 사업자단체가 1:1로 매칭하고 있음

  * 수산물자조금 품목단체 어가의 평균소득이 농가 등에 비해 높으며 현저한 성장세를 보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해수부장관이 임의자조금 설치를 승인한 단체에 지원됨

- 지원이 확정된 자조금 품목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설계 적절성과 타당성 검토.승인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사업담당자는 자부담 확보를 필수조건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자조금단체별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있음

-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자조금단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후관리를 집행하고 있음

-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자조금 운용평가)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업운용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운영 및 사후관리를 집행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음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매뉴억에 정산보고 및 집행 완료후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세부사업지침 및 자조금 사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으며, 매년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있어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이 낮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방식 변경 및 감축(3.9억원)

- 동 사업은 생산자단체 스스로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기반을 구축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장가격 안정, 어업인 소득보장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초기단계에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 임의자조금 단체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촉구, 자조금단체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도록 자부담 비율 상향, 임의자조금 졸업제 도입 등을 통한 국고보조금 지원 감축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향후 자조금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추진하여 의무자조금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자조금의 경우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 결성 후 3년간 지원하고,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국고 지원 중단하고 있음

○ 자조금은 집단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도록 사업내용 및 집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화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수산물해외시장개척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수산업 진흥을 위한 수출의 중요성과 정부역할이 인정되어 정상추진함. ·보조사업을 통한 수산업 수출 활성화 효과가 인정되고 사업의 운영 및 재원관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음. ·부처 자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사업계획에서 집행 그리고 성과 확보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이 무난하게 유지되고 있음. 다만,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산업의 여건과 성과에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도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WTO와 FTA에 따른 대응 조치라는 다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 지속되고 있음. 정부의 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인 점을 고려할 때 불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소극적이고 잔여적인 대응 보다는 수산업이 국가의 주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주류화 관점에서 사업운영이 요망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에 근거한 정부의 정책적 보조사업임. 동 법에서 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의 법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수산물 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의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재정사업의 설계·운영에서는 정부의 재량성이 큰 보조사업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WTO/DDA 협상 및 FTA 체결 협상 등에 대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임. 이를 통해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수산물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됨.

○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불안정한 해외 수출 환경 변화 그리고 국내 수산기업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역할이 필요함.

-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수산물 수출확대가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수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위해 8가지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육성, 상품개발, 품질관리, 시장개척,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사업항목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로 목표설정이 명확함.

○ 어업생산 감소, 적조, 고수온, 글로벌 경기침체, 환율 변동,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대내외여건 속에서도 2018년도의 경우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이 예상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기대됨.

※ ('12) 23.6억불 → ('13) 21.5 → ('14) 20.7 → ('15) 19.2 → ('16) 21.3 → ('17) 23.3 → ('18^{e}) 23.7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수출진흥은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책임져야할 사안으로 국가의 지원은 한정적인 수준에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세계무역환경과 국내 수산기업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적극적인 수산 부문 수출기업 지원 역할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수출 경쟁력을 갖춘 수산물을 생산하는 지자체들은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정력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임.

- 이에 따라서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수산물의 수출을 진흥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설계·운영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수산물 수출기업은 2천여개인데 정부지원을 받은 업체는 200여개 정도임.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상당함.

- 하지만 부처의 예산재원 운영 여건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재량적 보조사업의 일반적인 사업운영방식임.

○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사업별로 다양하여 30%~50% 수준임. 재량적인 진흥형 정책사업에서 중앙과 지방이 재정책임을 절반 정도 분담하는 현행 보조율 기준은 적절한 보조율 구성으로 판단됨.

-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30~100%로 상당히 다양한 편임.

- 다만, 보조사업의 특성별로 기준보조율의 체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수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인정되는데, 이는 동 사업에서 기대되는 당연한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산점을 제한적으로 반영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aT,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등과 같은 공적 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들 기관이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데, 보조금의 실제 수혜기관들에 대한 공모가 '수산물 수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 지자체 보조사업은 활어 컨테이너 제작, 물김 세척수정수시설 지원, 지자체연계마케팅 등임.

- 지역여건상 수산업 수출과 관련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간 보조사업 유치 경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량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은 실질적인 신청주의에 따라 국고보조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운영함.

○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는 민간기업의 중복수혜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으며 부처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2017년 현재 기준에서도 중복지원의 쟁점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지원 업체의 다변화와 업체별 지원한도 설정 그리고 지원 횟수와 기간 제한 등 중복지원에 따른 과잉지원 쟁점에 대해 전략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수산물 수출업체는 2,000여개인데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는 500여개 정도임. 이러한 경우, 업체에 대한 공정 지원 쟁점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표1. 수출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업체 수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체 총계	223개(%)	297개(%)	514개(%)	492개(%)
1~2개 사업 지원	170 (76.2)	229 (77.1)	407 (79.2)	408(83.0)
3~5개 사업 지원	40 (17.9)	49 (16.5)	75 (14.6)	51(10.3)
6~10개 사업 지원	13 (5.8)	17 (5.7)	27 (5.3)	30(6.1)
11개 이상 사업 지원	0 (0)	2 (0.7)	5 (1.0)	3(0.6)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 집행점검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 관리 규정에 기초하여 보조사업을 집행함. 사업집행과 관련한 특별한 재정관리의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부처 자체적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해당사업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사업관리의 적정성이 인정됨.

○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복합적인 보조사업이지만 최근 2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없고 언론매체 등에서 비판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보조사업 집행점검)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을 실시함.

○ 단일 보조사업의 예산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부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어 부정수급 등의 쟁점이 발생할 잠재적 여지가 적지 않음.

- 이러한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재정관리 노력이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수산업 진흥을 위한 수출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이와 관련된 정부 보조사업의 의의가 인정됨.

- 그런데, WTO와 FTA에 따른 대응 조치라는 다소 잔여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 지속되고 있음.

- 시장 영역에서 취약 기업에 대한 잔여적 지원은 재정사업의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예산재원의 소비적 지출로 귀결될 위험이 있음.

○ 수산 수출관련 정부의 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인 점을 고려할 때 불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 보다는 주류 산업화로 도약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운영이 요망됨.

3-2 정책 제언

○ 부처 자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사업계획에서 집행 그리고 성과 확보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이 무난하게 유지되고 있음.

- 다만, 수산물 시장의 개방체계가 상당히 지속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산업의 여건과 성과에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도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산기업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현실이 인정됨.

- 다만, 수출진흥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기 책임으로 담당해야할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설계와 정부 역할 비중의 적정 수준에 대한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6.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6억) ·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은 어업인과 수산물 판매 유통업자 등의 사익과의 관련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본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으로 연계된 사업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영홈쇼핑지원, 어업인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디자인뱅크 운영 등과 관련된 예산 600백만원의 예산 삭감이 필요함. 해당 사업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본 보조사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7조(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및 수산물유통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산물 수요 개발 및 소비촉진)에 근거하고 있음

- 수산물유통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의 내용은 법적인 근거에 대체로 부합함. 하지만, 동법은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어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해 어업 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목적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타당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본 사업은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및 수산물 유통판매종사자, 그리고 관련 단체에 의해 추진될 유인이 큰 사업임

- 본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서는 2016년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바 있음

○ 다만, 수산물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어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수산업 및 수산물 전반에 대한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해 일정 정도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어식백세캠페인 중 영유아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산물 우수성 홍보, TV등 대중매체 홍보 등이 수산업 및 수산물 전반에 대한 홍보와 연계된다면 국가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어식백세캠페인 중 청소년산지방문체험교육, 수산물직거래행사 등은 특정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크지 않음. 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19년 예산자료설명서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업예산에서 기 삭감조치 하였음.

○ 동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판매 종사자로 수혜자의 범위가 넓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어업인, 수산물 유통 판매 종사자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므로, 수협 등 관련 단체에서 추진할 유인이 충분한 사업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해 어업 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내용이 구성되어야 함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산물 긴급 소비촉진은 '태풍, 적조,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소비자의 심리변화에 따른 소비둔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

- 이는 재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본 사업의 목적에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19년 예산자료설명서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업예산에서 기 삭감조치 하였음.

- 수산물판로확대 사업 중 공영홈쇼핑 지원,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디자인뱅크 운영 역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본 사업의 목적에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본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신뢰성 타당성 등이 명확하지 않음

- 본 사업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본 사업과 소비촉진 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산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이해도에 대한 인식조사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국민들의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은 어업인과 수산물 판매 유통업자 등의 사익과의 관련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해당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될 유인이 있는 사업임.

- 또한 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산업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유인도 있음

-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수산물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어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수산업 및 수산물 전반에 대한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해 일정 정도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경우 규제완화 등의 행정적 지원보다는 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이 폐지된다고 하여 갑작스럽게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정부 수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중심으로 본 사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수산물판로확대 사업 중 공영홈쇼핑 지원,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디자인뱅크 운영 역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본 사업의 목적에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수산물판로확대 사업예산 중 공영홈쇼핑지원, 어업인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디자인뱅크 운영 등과 관련된 예산 600백만원의 예산삭감이 필요함

- 수산물 판로 확대 사업의 경우 예산 1,200백만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4개의 사업인 공영홈쇼핑지원, 수산물영양교육프로그램운영, 군학교 급식관계자 쿠킹클래스 운영,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디자인뱅크 운영 중 2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라 600백만원 삭감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 시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공모 시 사업자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당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집행실적 및 계획을 제출받아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 필요 시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지출에 대한 점검 및 실제 집행여부를 확인하였음. 또한 행사성 사업의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 20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종료 시 실적을 보고받고 있음

○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실제로 동 사업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예산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 확인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및 정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산하여 잔금을 교부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의 경우 세부계획서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정수급의 전례가 없음. 또한 매년 사업종료 후 정산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제출받고 있으므로 발생가능성 또한 미미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은 어업인과 수산물 판매 유통업자 등의 사익과의 관련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해 어업 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내용이 구성되어야 함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산물판로확대 사업 중 공영홈쇼핑 지원,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디자인뱅크 운영 등은 본 사업의 목적에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3-2 정책 제언

○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본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으로 연계된 사업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재구성에 따라 수산물판로확대 사업예산 중 공영홈쇼핑지원,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디자인뱅크 운영 등과 관련된 예산 600백만원의 예산삭감이 필요함. 해당 사업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수산자원조성지원 사업은 정상추진함 ·동 사업은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 유기적으로 설정되어있음 ·2016년 보조사업 평가결과인 유사중복문제가 지적되어, 통폐합 및 연계를 판정받은 바 있으나, 이를 충분이행하지 않음. 다만 1) '연안바다목장'의 통폐합이 이행되지 않았으나, 2022년 일몰사업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사업완료 후 내역사업을 폐지, 감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2) '건강종묘생산방류' 사업은 '건강종묘방류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내역사업 명칭 및 구성변경, 사업내용 변경(방류사업 제외한 종자자원관리사업만 시행)을 통해 유사중복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정상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수산자원관리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과 내용에 대하여는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에 규정되어있으며, 보조사업자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관련 규정이 있음

○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강제규정은 아님(제6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목적은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키고 연안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풍요롭고 건강한 바다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하며,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와 연계되어있음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84(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어업인이며, 연안생태계 개선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의 사업효과를 볼 때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 있으나, 외부효과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바다숲조성관리', '수산자원증대', '수산종자자원관리',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총허용어획량제도운영', '불법어업방지시설'의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있는데(사업계획서 및 예산자료설명서 기준), 내역사업별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함

○ 성과지표는 '자원조성지역의 단위면적당 생체량(kg/m^2)(~'17년)'과 '갯녹음 해소율(%)('18년~)'로 최근 3년간(2016-2018) 목표를 달성함

- '갯녹음해소율' 지표는 일부 내역사업에만 해당되어 전체 세부사업의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3	'14	'15	'16	'17		
자원조성지역의 단위 면적당 생체량(kg/m^2)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65	1.70	수산자원조성지역(바다숲)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1m^2$) 부착생물(해조류, 저서동물 등) 중량 측정(4월~6월)	바다목장 조성사업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1.69	1.90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갯녹음 해소율(%)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38	갯녹음 해소율 = 1 - (바다숲 조성지역 후 평균 갯녹음율 / 바다숲 조성사업 시작 전 평균 갯녹음률)	바다숲 조성사업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1.3		

○ 사업 실적 면에서는 내역사업별로(① 연안바다목장, ② 바다숲 조성, ③ 수산종자 자원관리, ④ 총허용어획량(TAC)조사, 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⑥ 동해 대게 자원회복사업, ⑦ NLL불법어업방지시설 등) 목표를 달성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1) 주꾸미 산란장 조성을 통한 생산량 증가로 어업소득 176억 원(36 %)증대, 2) 불법어업방지 시설물 설치로 외국어선 출현률 감소(태안해역 84%, NLL해역 59% 감소) 등의 성과가 나타남

- 다만 최근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한 바 있고(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6년 100만톤, '17년 93만톤, '18년 101만톤), 수산경제 및 어업기반의 붕괴, 어업인 소득 감소문제 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동 사업은 2017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보통' 판정을 받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수산자원조성사업은 풍요롭고 건강한 바다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고, 수산자원의 공익성,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2016년 보조사업평가결과 유사중복문제가 지적되어, 내역사업 '연안바다목장사업'('16년 9,561백만원, '19년 7,000백만원)의 통폐합 및 '건강종묘방류사업'('16년 3,667백만원, '19년 3,667백만원)의 타사업과 연계운영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통폐합 및 연계운영은 이행하지 않음

- '연안바다목장'의 통폐합이 이행되지 않았으나, 2022년 일몰사업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사업완료 후 내역사업을 폐지, 감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음

※ 2018년 내역사업명을 '연안바다목장'사업에서 '수산자원 증대'사업으로 변경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내내역 사업을 '연안바다목장 조성'(예산변경없음), '수산자원 산란장 서식장 조성', '동해대게 지원회복'으로 추가 구성

- ‘건강종묘생산방류’ 사업은 ‘건강종묘방류사업’과의 중복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내역사업 구성변경을 통해 수산종자자원관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방류사업을 제외한 종자자원관리사업만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정상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2016		2017년 이후	
내역	내내역	내내역	내역
건강종묘생산방류	건강종모생산	전략품종조성관리	**수산종자자원관리**
	내수면어종자원증강보존		
	회유성어종매입방류		
	유전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구축	유전적모니터링 및 관리	
	종묘생산시설 개선	종자관리시설 개선	
방류종묘인증제구축운영	대상종관리	방류종자인증제운영	
	인증관련장비구입		

[2016년 보조사업평가 최종 판정결과]

○ 동 보조사업 중 연안바다목장(농특회계, 국고50%:지방비50%)과 타사업인 인공어초사업(지특회계, 국고80%:지방비20%)은 사업구조와 내용의 유사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업추진과 사후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 등 효율화 방안이 필요

○ 동 보조사업 중 건강종묘방류사업(연어 등 회유성 어종, 농측회계)과 타사업인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지자체 정착어종, 지특회계)도 사업내용상의 일부 상이함을 제외하면 사업구조 등이 유사하므로 연계운영 등 효율화가 필요.

[부처 조치사항]

○ 수산자원조성사업 협의회(‘16.3.17)개최로 수산자원조성사업 방향 논의 (중장기계획 수립, 사업성과 차별화 등)

○ 연안바다목장사업의 통폐합 불이행 사유

- 연안바다목장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2년까지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지속성 확보를 위해 조성목표 달성이 필요하며, 조성 목표 달성 이후에 추가 예산 투입 계획이 없는 일몰사업에 해당되어 기재부에서도 통합 실익이 없다는 입장으로 양 사업을 통합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었음

  * 연안바다목장 조성은 ‘22년까지 전국 50개소 목표로 총량제 사업으로 ‘18년까지 완공 30개소, 진행 20개 조성, 4년내(‘22) 사업 완료 예정임

- 인공어초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균특, 국비 80%, 지방비 20%)으로 연안바다목장사업(농특, 국비 50%, 지방비 50%)과 달리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편성이 제한적으로 기 조성이 진행 중인 바다목장 해역의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조성목표 미달성이 예상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수산산업의 붕괴, 어민 소득의 감소, 어장 황폐화 심화가 우려되나, 현재 동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폐지시 나타날 손실에 대한 정량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폐지가 야기할 재정적 손실이 입증되지 않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6년 76,570백만원, 2017년 75,869백만원, 2018년 68억원, 2019년 77,338백만원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인건비·경상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바다숲조성관리, 수산자원증대(연안바다목장, 산란·서식장 조성 등), 수산종자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 조사,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등)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

○ 실집행율은 2015년 99.7%, 2016년 99.9%, 2017년 99.9%, 2018년 99.8%이며, 사업비인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실집행율은 2015년 99.9%, 2016년 100%, 2017년 99.9%, 2018년 99.8%임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고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등 법령상 근거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행함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 조건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며 교부절차에 따라 추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고, 승인 이후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 제출이 이루어짐

○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수시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매년 사업평가회를 개최하여 당해 연도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 제출이 이루어짐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수시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매년 사업평가회를 개최하여 당해 연도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체계가 적정하며, 관련규정 및 점검결과보고서가 제출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수산자원조성지원 사업의 목적은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키고 연안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풍요롭고 건강한 바다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하고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있음.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연관규정을 찾을 수 있으나, 재정적 지원은 강제규정이 아님

○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어업인이며, 연안생태계 개선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의 사업효과를 볼 때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 있으나, 외부효과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음

○ 동 사업은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 유기적으로 설정되어있음

○ 2016년 보조사업평가결과 유사중복문제가 지적되어, 내역사업 '연안바다목장사업'('16년 9,561백만원, '19년 7,000백만원)의 통폐합 및 '건강종묘방류사업'('16년 3,667백만원, '19년 3,667백만원)의 타사업과 연계운영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통폐합 및 연계운영은 실시하지 않음

- '연안바다목장'의 통폐합이 이행되지 않았으나, 2022년 일몰사업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사업완료 후 내역사업을 폐지, 감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음

- '건강종묘생산방류' 사업은 '건강종묘방류사업'과의 중복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내역사업 구성변경을 통해 수산종자자원관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방류사업을 제외한 종자자원관리사업만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정상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수산정보화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4.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9.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20년 96백만 원) 및 사업방식 변경** – 최근 3년 실집행률(약 70%)을 감안하여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나 전년도 집행률이 제고되었으므로, 19년 예산 960백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96백만 원 감축) ·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국가 관점보다는 지방 관점이 강조되고 있고, 사업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제시가 미흡하며,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동 사업의 객관적 성과 제시가 미흡하며, 이러한 문제가 2016년 평가에서도 지적되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법적 근거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내수면자원조성사업과 연계 협력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주무부처는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로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1조, 수산물 유통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업융합 촉진법 제17조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소 명확하지 않고 타당성이 약함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1조, 수산물 유통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은 수산업 및 어촌 지역의 정보화, 수산물 유통 정보화에 관한 내용인데 반해 동 보조사업은 수산 분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주무부처가 제출한 기초조사보고서에서는 법적 근거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첨부한 예산설명서 자료에는 산업융합촉진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설명서 자료의 “참고3 수산 u-IT 융합 모델화사업”에서도 지원근거에 산업융합촉진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스스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주무부처가 제시한 것처럼 동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시할 경우,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도 제출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2.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5.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6.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8. 그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21조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또한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사업명칭(수산정보이용활성화)과 사업 내용(수산 u-IT 융합 모델화사업)이 일치하지 않음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수산업 및 어촌 지역의 정보화, 수산물 유통 정보화에 초점을 둔 법령에 의거하여 동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양식장 등 수산업(어업생산·경영·유통·소비) 분야에 IoT기술을 기반으로 ICT 융복합을 통해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특정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되는 정책으로써 국가 관점보다는 지방 관점이 다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과제평가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과제 당 600백만 원(국고 40%, 지자체 50%, 자부담 10% 이상)의 사업비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실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는 달성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성과를 제시할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다소 부족함

-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사업의 객관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주무부처는 동 보조사업이 기존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모델 및 행자부 u-서비스 지원사업과 차별화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차별화는 인정됨

- 하지만 주무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자원조성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연계 및 협력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래 표는 예산 설명자료의 별첨자료로 제시된 동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연도	지자체	과제명	구축(설치) 개소
'15년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	양어장 수질TMS(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스마트관리를 이용한 친환경양식시스템	육상양식장 1
	경상남도 (통영시)	ICT기반 굴박신장(굴껍데기제거장) 생산관리시스템 (자동세척장비 및 자동계근 장비, 통합운영장비)	전자계근시스템, 세척기 보급 : 30
'16년	경상남도 (통영시)	ICT 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구축	가두리양식장 30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	관내 내수면양식장 수질 TMS(원격감시체계) 양식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두리양식장 4
'17년	경상남도 (통영시)	ICT 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가두리양식장 15
	경상남도 (거제시)	친환경 양식어장(종자생산) 현대화를 위한 IT기반 스마트시스템 구축	종자생산장 2 육상양식장 1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	수질원격감시체계(TMS)양t식장 통합 및 웹기반 양어장 기술지도관리시스템 구축	육상양식장 1
'18년	강원 (평창)	u-IT기반 양식장 수질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육상양식장 1
	경남 (통영)	IoT기반 자동사료급이기 표준모델개발 및 스마트어장관리시스템 구축	가두리양식장 5
	경남 (거제)	양식장 수질관리 및 생장관리를 위한 표준 통합관리 모델 개발	육상양식장 1
	경남 (사천)	ICT기반 스마트 양식어장관리시스템 구축	가두리양식장 1
	경남 (남해)	ICT활용 스마트 가두리양식장 기반 구축	가두리양식장 5
	전남 (영광)	ICT기반 용존산소 등 수질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	육상양식장 1
	전남 (강진)	ICT기반 스마트 양식장 관리시스템 구축	육상양식장 1
	경기 (김포)	수질관리제어 등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육상양식장 1
	경남 (고성)	IT기반 스마트 양식어장관리시스템 구축	육상양식장 1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주무부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법적 근거 취약, 사업 효과성 미흡 및 성과관리 노력 부재, 실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오히려 사업내용과 방식에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재정규모를 축소 조정해야 함

1-6 사회적 가치 실현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과제공모 및 선정, 감리절차, 사업단계별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가 선정되고 보조금이 교부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함

< 사업관리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 시행 해수부('19. 2월)	○ '19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해양수산부 (사업 공고) - '19년(안) 지원규모, 대상, 평가등 알림
↓	
과제계획서 제출 지자체('19. 3월)	○ '19년 과제계획서 제출(공모) - 주관기관(시·군·구/시·도) →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내용 및 사업비 등
↓	
과제평가 및 현지실사 해수부('19. 4월)	○ 공모과제 평가 및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 과제 사업계획서 발표(추진의지,부담금, 사업내용, 절차 등) 및 평가위원 검토 ○ 사업이행을 위한 현장적합여부 실사 - 어업인 참여의지, 현장적협성, 자부담, 사후운영 및 관리 능력 등
↓	
과제협의·조정 및 과제선정 해수부 및 지자체 ('19. 5월)	○ 과제별 사업비 규모 및 자부담 비율 협의·조정 ○ 과제 선정(확정) ○ 최종 과제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광역시·도) → 해양수산부
↓	
사업예산 확보 지자체('19. 5~6월)	○ '19년 지방비(추경예산) 확보 - 광역시·도비, 시·군비 확보 및 경영체 자부담 확보 - 확보 결과 알림(주관기관(광역시·도)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주무부처, 주관기관('19. 6~12월)	○ u-IT융합모델화 사업 실시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시·도) ↔ 시·군·구) - 검인수 후 정산 실시 (사업자 또는 시군구 → 광역시·도 → 해양수산부)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실집행률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보조사업 집행관리가 적정하지 않음

< 동 보조사업의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960	960	440	440		440	440			46
2016	960	960	960	960		960	960			100
2017	960	960	624	624		624	624			65
2018	960	960	940	940		94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적정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주무부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부정기적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연 1회 현장점검 실적만 제시할 뿐 부정기적 점검 실적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부정기적 현장점검 필요성'이 지적된 바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관리가 다소 적정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국가 관점보다는 지방 관점이 강조되는 등 사업목적의 타당성도 약함

○ 동 보조사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제시가 미흡함

○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나, 전년도 집행률이 제고되었으므로 19년 예산 10%에 해당하는 96백만 원 감축 필요

3-2 정책 제언

○ 법적 근거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 지원 외에 주무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내수면자원조성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세부내역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명칭 변경과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의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당시에는 '수협경영정상화 사업'이었음. 평가보고서의 정책제언을 수용하여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실제 사업내용은 동일함. 세부사업의 예산에서 수협사업구조개편 지원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며 다른 세부사업의 비중은 낮음. 실제 사업내역 중심으로 보조사업 명칭 변경 및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함.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은 수협의 일반 사업들과 재정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보조사업 단위에 포괄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만,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수협의 어업인 지원기능 확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지원 등 사업목적은 동일한 한시적 사업인 만큼 '21년 예산지원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망됨. ·단위조합 감사 경비 지원금액에서 연도별 변동이 상당함. 매년 일정 규모의 보조금 지원이 타당한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부실조합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감소 소요경비를 측정하여 적정 수준에서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 국가와 공동단체가 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다만, 보조사업의 대상인 '수협지도경제사업'에 국가의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역할은 한정적인 범위에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협경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인정됨. 수협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이 수년동안 계속되고 있음.

- 이는 수협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부처에서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단위수협 감사 지원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및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 개선 등을 통해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로 설정함.

- 하지만 보조사업의 세부항목들을 분석하면 실제 내용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2016년 보조사업 평가결과 수협 경영정상화와 수협사업구조 개편 지원 종료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 권고를 수용하여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로 보조사업을 변경하였음. 그런데, 부처에서 설정한 보조사업의 목적은 과거 보조사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조사업의 목적 설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2019년도 사업비 131.3억원 가운데 102.9억원이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을 위한 것임. 수협구조개편을 2021년도에 종료할 예정이지만 현재 수준에서 세부사업과 보조사업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부처에서는 2016년의 보조사업 평가 당시와 비교하여, 보조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실제 사업내역은 과거와 동일하게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명칭과 내용이 불일치한 것은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사업목적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세부내역 사업 가운데 어업조사통계,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 그리고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 개선 사업 등은 부처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재정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임.

- 따라서 수산업육성정책 분야에서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경비의 보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016년도에 수협사업구조개편을 담은 수협법이 개정되면서 수협사업의 구조개편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으며 수협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졌음. 사업구조개편의 성과가 인정됨.

○ 수협지도경제사업에 속하는 네 가지 세부 사업들은 일상적인 소규모 영세보조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수준의 성과 평가는 제한적임. 어업통계와 정보시스템 운영은 정부업무의 일반 위탁 성격이 강함.

- 다만, 단위수협의 감사경비 지원에 따라 부실우려 단위수협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지원으로 면세유 노후화를 개선한 실적이 인정됨. 하지만 각각의 사업에서 목표설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쟁점이 남아 있음.

표1. '15~'19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수협감사결과 징계처분 인원 감소율(%)	목표	10	10	15	수협감사결과 징계처분 인원 감소율	(당해연도 징계처분실적 / 당해연도 징계처분 목표인원)×100
	실적	31	10.3	15.6		
	달성도	310	103	104		
노후시설개선 실적(누적)(%)	목표	62	81	100	노후시설개선실적(누적)	(시설개선수/C등급이하 시설수(92기))×100
	실적	64	81	100		
	달성도	100	100	100		

※ 91개 회원조합 중 부실/부실우려 수협 개수가 9개로 '17년 대비 4개 감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사업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은행 분리에 필요한 수금채 발행(5,500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도에 종료될 예정임. 이는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보조사업으로 인정됨.

○ 2019년 예산 기준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수협지도경제사업은 단위수협감사지원(12억원), 어업경영통계조사(4억원),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지원(9.8억원),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지원(2.6억원)의 4가지 사업임.

- 이 가운데 민간기업의 감사기능에 정부의 공적 재원을 지원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협법 제1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였지만 경비지원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원하였는데, 수협의 경영정상화 일정과 연계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업경영통계조사와 유통정보시스템운영은 정부사업을 수협에 위탁하면서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밖에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 개보수를 위해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재량사업으로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수협구조개선사업은 수협은행 분리에 필요한 금융지원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이 산정·집행되고 있음.

- 어업통계조사와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은 중앙정부 기능의 일반적인 업무위탁으로 실제 소요 경비로 산정됨.

표2. 단위수협 감사업무 지원의 국비지원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중앙회(A)	3,453	3,643	3,926	4,059	4,310	5,028	5,687	5,380	7,429	6,238
국 비(B)	500	500	500	700	700	800	1,000	1,100	1,400	1,100
지원율(A/B)	**14.5**	**13.7**	**12.7**	**17.2**	**16.2**	**15.9**	**17.6**	**20.4**	**18.8**	**17.6**

○ 국비지원의 규모의 적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매년 임의적으로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 대비 국비 지원금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조합 감사와 관련된 경비는 매년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많은 편임. 부실이 우려되는 단위조합의 수가 매년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재원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대부분의 예산이 수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는 것이며, 소규모 예산이 지출되는 세부사업들은 정부업무의 대행과 관련된 경비지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직접적 관련성은 크지 않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수협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별도 선정 과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절차를 준용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 집행점검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일반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최근 매년동안 예산불용액이 상당함. 2016년도에는 40억원 불용이 있었고, 2017년도는 7.1억원이 불용되었음.

- 그런데,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사업의 수산금융채권발행 금리의 영향으로 불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쟁점으로 지적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단일 기관인 수협중앙회에 대한 지원이며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불용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수행함.

-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한 수협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발생 여지는 크지 않음.

-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사업의 내용과 집행 특성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원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일선수협 경영개선 내역사업이 2016년에 사업종료 되면서 수협지도경제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및 명칭 재편이 필요함에 따라 세부사업 명칭을 “수협경영정상화”에서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로 변경하였음.

- 하지만 보조금의 대부분은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에 대한 것임. 세부 내역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보조사업으로서 타당성과 국민 신뢰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수협구조개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보조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으로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의미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여건이 형성되기 힘듦.

-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의 내용과 예산단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수협지도경제사업의 경우, 사업명칭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듦. 사업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명칭 변경이 요망됨.

- 사업의 실제내용은 단위수협 감사경비지원과 면세유저장시설 개보수, 어업통계 및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임.
- 세부 보조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협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들에 대해 사업성격별로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단위수협에 대한 감사경비 지원 보조를 매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경비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부실 우려되는 단위조합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없이 수협중앙회의 자체적인 독립 사업으로 운영할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 혹은 단계와 연계하여 정부보조사업계획을 재정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이 2028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감사경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혹은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양식 등 재해대책비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47.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6.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3.5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0.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2.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50%) 및 사업방식변경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중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 재정 규모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 참조) ·특히 실집행 수준이 매우 저조함. 최근 3년평균 실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감축('19예산대비 50%)과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사업이 감축되더라도 정부는 유사시 재난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부처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속력있는 사업방식변경 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감축(50%) 의견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해당 사항을 받지 못하여 기존의 의견(감축 50%, 사업방식변경)을 유지함 (아래의 사항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집행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비 이외의 여타 사업에 전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함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서 인재와 천재를 구분하고 인재의 원인 제공자에게 사후에 구상권 또는 반납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에만 특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 집행 및 사후관리 지침의 마련 - 유사시 여타 재원으로부터의 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도록 예산과목구조 개편 ※ 본 보고서는 부처(담당과)가 최초로 제시한 기초보고서를 근거로 함. ※ 부처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판정을 유지하며 향후에도 지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관련 법령에서 재해대책과 관련된 비용을 대상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기속 규정을 두고 있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제4조(보조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이 지방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중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의거하여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부처는 이외에 본 사업이 국가 관점에서 중요한 논리적 근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의 수혜자와 외부효과에 대해, 부처는 국민 모두가 본 사업의 수혜자라고 밝히고 있음. 부처는 이외에 본 사업의 수혜자와 외부효과에 대한 논리적 근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부처는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수혜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본 작업이 미비할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에 빠질 우려가 있음.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명확한 파악 및 분류 후 그들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부처는 본 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본 항목의 경우 본 사업이 재해대책비로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부처는 본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본 항목의 경우 본 사업이 재해대책비로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부처는 본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해당 지표가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이 경우,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 및 지방관리 공공시설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복구 또는 정상에 가깝게 회복하였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고, 본 예산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 수 없음. 이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요청됨

○ 평가위원이 본 사업의 과거에 대한 평가, 현재 환경 변화, 미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부처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해당 사항이 부처 내에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할 경우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사업의 성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게 될 것임. 이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요청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이 법령에 의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대책비라는 사업의 성격상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식 등 재해대책비”는 행안부와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 일정규모 이하는 우리부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타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 “양식등 재해대책비” 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방어항 복구비로어업인의 안전관리 및 어업활동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매년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언급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행정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아 행정비용이 보조사업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 부처는 본 사업의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평가위원이 부처에 [교부집행이 아닌] 실집행 실적을 요청하였고 별도로 dBrain상의 실집행 자료를 분석한 바 있음. dBrain 기준으로 할 때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이 dBrain상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특히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예산이 각각 50억원인데 반해, 예산현액이 각각 약 4천만원, 22억원에 불과함. 당시 재해대책비로 활용하지 않고 부처의 여타 예산으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됨
-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부처는 법령에서 기속한대로 재해대책비를 반드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재해대책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여타 예산으로부터 전용해서라도 집행할 것임. 다만, 유사시 예산 전용을 상대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과목구조를 개편할 필요는 있음
- 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이 부처의 소위 예비비로 활용될 수 있음.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본 사업의 예산규모, 예산현액, 실집행실적 현황 (dBrain 기준) >

	2016	2017	2018
예산 (백만원)	5,000	5,000	5,000
예산현액 (백만원)	42	2,183	5,000
실집행 (백만원)	0	0	0

○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내역사업별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운영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피해가 발생한 해당 시도에 재해대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연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국가지원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는 본 사항에 대해서 위 2-1(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며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재(人災)와 천재(天災)를 구분해야 하고, 인재인 경우에는 원인 발생자와 원인 제공 정도를 밝혀야 하며, 원인 발생자에게는 그 제공 정도만큼 (국가의 재해대책비를 선 지급한 이후) 구상권 또는 반납 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는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처럼 재해대책비가 집행되는 경우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것도 천재로 인한 재해로 간주하여 국가가 재해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경우 인재를 유발한 원인 발생자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인재는 계속 확대하여 발생할 것이며, 다수는 인재를 천재로 오인하고, 결과적으로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으며 사업의 효과성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요청됨
- 관련법에서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만 있을 뿐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에서 구상권 또는 반납 등 행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따라서 인재와 천재를 구분하고, 인재에 대한 원인제공자(기관) 탐색 및 원인제공자(기관)에 대한 구상권 또는 반납 등 행사와 관련하여 부처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부처는 본 사항에 대해서 위 2-1(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은 여타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상당 수준 상이한 측면이 있음. 여타 보조사업처럼 공모방식이 아니며, 재난을 겪은 주민 또는 시설과 그 정도 등을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급 대상별로 적정 지급 금액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재해대책비를 한번 지급하면 반환받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집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에만 특화될 수 있는 별도의 관리 지침이 필요한데 부처는 현재 이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요청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처는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은 여타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 여타 보조사업처럼 공모방식이 아니며, 재해를 겪은 시설의 파손 정도 등을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급 대상별로 적정 지급 금액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재해대책비를 한번 지급하면 반환받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집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에만 특화될 수 있는 별도의 관리 지침이 필요한데 부처는 현재 이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이에 대한 보완이 요청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 재정 규모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2016~2018) 본 사업의 [교부집행이 아닌] 실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dBrain 자료 기준)
- 본 사업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부처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이 요청됨
- 본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재(人災)와 천재(天災)를 구분해야 하고, 인재인 경우에는 원인 발생자(기관)와 원인 제공 정도를 밝혀야 하며, 원인 발생자(기관)에게는 그 제공 정도만큼 (국가의 재해대책비를 지급한 이후) 구상권 또는 반납 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관련 법에서 선언적 규정만을 가질뿐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에서 구상권 또는 반납 등의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처럼 재해대책비가 집행되는 경우 원인 발생자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인재는 계속 확대하여 발생할 것이며, 다수는 인재를 천재로 오인하고, 결과적으로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으며 사업의 효과성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요청됨
- 본 사업은 여타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 여타 보조사업처럼 공모방식이 아니며, 재난을 겪은 시설의 파손 정도 등을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급 대상별로 적정 지급 금액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재해대책비를 한번 지급하면 반환받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집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에만 특화될 수 있는 별도의 관리 지침이 필요한데 부처는 현재 이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이에 대한 보완이 요청됨

○ 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재해대책비를 지급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

- 만약 본 사업의 예산 규모가 재해대책비를 집행하는데 부족하다면 부처가 자체 예산으로 후순위 사업을 전용하여 재원을 만들거나, 정부 예비비를 활용하면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 예비비중 재난 관련 예비비의 경우 통상적인 예비비와 달리 지금까지 정부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만약 정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재해대책비의 지급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희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예산 규모를 최근의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후순위 사업의 집행에 전용되는 등 부처 예비비로 사용될 확률이 매우 높음. 이럴 경우 향후 국회 및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받을 소지가 상당히 높음

3-2 정책 제언

○ 특히 실집행 수준이 매우 저조함. 최근 3년평균 실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감축('19예산대비 50%)과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 부처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속력있는 사업방식변경 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감축(50%) 의견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해당 사항을 받지 못하여 기존의 의견(감축 50%, 사업방식변경)을 유지함 (아래의 사항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함)

- 본 사업 집행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비 이외의 여타 사업에 전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함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서 인재와 천재를 구분하고 인재의 원인 제공자에게 사후에 구상권 또는 반납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에만 특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 집행 및 사후관리 지침의 마련

- 유사시 여타 재원으로부터의 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도록 예산과목구조 개편

※ 부처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판정을 유지하며 향후에도 지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김제품 CODEX 규격화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단계적 폐지(2020년말 종료) ·동 사업은 우리나라 김제품의 산업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CODEX 규격 개발절차별 김제품의 국제규격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김제품의 코덱스 아시아지역규격 내 수분 및 산가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및 관련 분과위 대응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지원**이 필요함 ·당초 사업추진계획(2020년 종료)에 따라 김 제품의 국제규격 개발을 득하도록 노력을 강구토록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5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21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수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 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CODEX(Food Code):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서, 국제교역시 CODEX 국제규격이 공인기준으로 적용(WTO법 규정)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우리나라 김 제품의 산업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CODEX 규격개발 절차별(1~8단계) 김 제품의 국제규격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타당함

○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한국식품연구원)으로 김 양식업자 및 가공업체, 수출업체를 수혜범위로 들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김 제품의 CODEX 규격사업 1개를 내역사업으로 하고 있음

- 김 제품의 CODEX 규격화 사업은 최종 승인되는 단계별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음

< 김제품 CODEX 아시아 지역규격 추진일정 >

'09. 12	CODEX 규격화 신규품목으로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10. 11	제 17 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 지역규격 개발 제안 - 김제품의 지역 외 거래량을 고려한 세계규격 개발 가능성 제기 - 수산제품분과에서 세계규격 개발 제안 권고 - 불가 시, 지역규격개발 제안서를 총회에 직접 제출토록 결정	Project Document 제출
'11. 04	제 31 차 수산제품분과에 세계규격 개발 제안 - 당 분과 업무 위임사항에 해조류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음 - 지역규격개발 우선 추진 권고, 세계규격개발은 위임사항 개정 필요	
'11. 07	제 34 차 총회에서 김제품 지역규격 개발 신규작업 승인	1 단계
'12. 03~07	규격초안 작성 및 한·중·일 실무협의회 개최 - 1차 협의회(한국, 3/26~28), 2차 협의회(중국, 7/16~20) -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표출로 합의안 도출 실패	2단계
'12. 11	제 18 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향후 추진방향 결정 - 전자작업반(eWG)구성 - 규격안 작성 및 김 제품의 안전성(중금속) 검토	
'13. 06	규격초안 1 차 작업안 및 안전성 검토계획서 작성, 전자작업반 참여국에 발송	3단계
'13	규격초안에 관한 전자작업반 참여국의 의견 수렴	
'14. 11	제19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규격초안 심의 (해양수산부 주관) - 일부 쟁점사항에 관한 합의안 도출 실패 및 김제품 규격초안을 2단계로 반려 - 중금속 항목 삭제 합의 - 전자작업반(eWG) 재구성	4 단계
'15	- 규격초안 회람 및 수정 - 9, 10, 11월에 각각 태국, 일본, 중국과 비공식협의회 개최	2, 3 단계
'16. 03	CODEX 사무국에 김제품 규격초안 최종안 제출	
'16. 06	한국, 중국, 일본, 태국과 4자 비공식 사전협의회 개최	
'16. 09	제 20 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규격초안 심의 - 김제품 규격초안 4단계 심의통과 및 5/8단계 추진 합의	4 단계
'17. 03	제 49 차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식품첨가물 조항 심의 - 아세설팜포타슘, 착향료 항목 승인	-
'17. 07	제 40 차 총회에서 김제품 지역규격 5/8 단계 최종채택 승인	5/8 단계
'17. 10	제 44 차 표시분과위원회 표시 조항 심의 - 표시조항 승인	-
'19. 09	제 21 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분석법 유효성 검증결과 제출(예정) - 수분, 산가 분석법 유효성 검증결과 제출	-
'20. 05	제 41 차 분석 및 시료채취방법 분과위원회 분석법 조항 심의(예정) - 수분, 산가 분석법 조항 심의 대응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김제품 CODEX 국제규격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세계 최초 해조류(김)에 대한 코덱스 규격 추진(해양수산부)

  * 농식품부 코덱스 규격사업 추진사례: 김치(2001), 인삼제품, 고추장, 된장(2009)

○ 김제품 코덱스 규격화 사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정한 규격설정 단계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서, 최종 채택 시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김 코덱스 규격설정 단계는 5단계와 최종 8단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5/8단계임 (2017년 제40차 총회에서 지역규격 최종 승인)

  * 농아시아규격: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제품 규격안이 아시아규격으로 최종 채택(2017)

  * 농세계규격: 김에 대한 세계규격을 채택하기 위해 CODEX 수산물 및 수산제품 분과 업무에 '해조류'가 포함되도록 추진

- 김 제품의 코덱스 아시아 지역규격 최종승인(2017.7) 및 등재(2017.12)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김제품의 코덱스 아시아 지역규격내 수분 및 산가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및 관련 분과위 대응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지원 필요함

〈 CODEX 분석 시험법 분류체계〉

▷ **TYPE I** :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석법

▷ **TYPE II** :
1) Type I의 분석법이 없을 경우 사용될 수 있는 reference method임
2) TYPE III 분석법 중에서 분쟁 발생 시 사용되는 공인분석법을 TYPE II로 지정함
3) 선행 예측 값을 측정(calibration)하는 공인시험방법임

▷ **TYPE III** : 분석및시료채취분과(CCMAS)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시험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시험방법을 의미함

▷ **TYPE IV**: 통상 고전적인 분석법(무게측정, 적정분석)을 의미하거나, CCMAS로부터 해당 항목의 측정에 적합하다고 최종 인정받지 아니한 시험방법(유효성 검증 미흡, 검증되지 않은 최신 분석법 등)을 의미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1.2억원의 지원으로, 김제품 코덱스 국제규격 인증을 위한 사업으로 이후 수출 증진 등 사업효과가 기대됨

- 시료분석 및 분과위 대응 등을 위한 경비 지원의 성격임

○ 김 코덱스 규격화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국비 100% 지원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2009년 국제기구 코덱스 규격화 품목에 선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국제기구 대응 및 사업연속성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 선정 및 교부는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단계적 폐지(2020년말 종료)

- 동 사업은 우리나라 김 제품의 산업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CODEX 규격개발절차별 김 제품의 국제규격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 김 제품의 코덱스 아시아 지역규격 내 수분 및 산가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및 관련 분과위 대응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지원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당초 사업추진계획(2020년 종료)에 따라 김 제품의 국제규격 개발을 득하도록 노력을 강구토록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용수관리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이 대체로 인정됨 ·또한 본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의 적정성도 대체로 인정됨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성과지표의 도전성을 높이는 등 성과와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의 목적은 냉·난방 에너지 비용이 경영 부담이 되고 있는 양식어가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양식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는 것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및 제14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정부의 에너지 수급안정과 친환경 농어업 육성 측면에서 본사업의 목적과 대체로 부합함

○ 그러나 해당 법령에서는 본 보조사업을 꼭 해야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일부 법령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자금지원이 아닌 여타 지원을 하여도 법 정신에 부합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에너지절감시설을 육상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켜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안정 측면에서 사업 목적이 명확하며, 신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92번), 농어가 소득증대(31번)와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부처는 본 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사업(에너지절감시설보급)을 통해 어가의 경영비(유류비 및 전력료) 절감이 가능하여 경영안정을 지원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적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이 치열한 환경에서 에너지절감 시설 도입으로 높아져 저탄소 어업기반을 조성

- 본 사업(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통해 지하해수 이용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적조 등 수산재해 피해 최소화

- 전국 육상양식(종묘)장 1,938개소(양식 1,412개소, 종묘 526개소) 중 읍면단위로 밀집지역 및 지하해수조사 수요지역 중심으로 125지구(평균5어가/1지구), 시범조사는 우선적으로 해안선을 따라 2~3㎞ 이내에 육상양식(종묘)어가 밀집지역 중 102지구를 선정하여 시행

○ 그러나, 위 사항으로 본 사업의 효과가 해당 지역을 넘어 파급되는 등 외부효과(spillover effect)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 '25년까지 72만kW 보급계획('17년까지 43.0%인 31만kW 보급)
* 양식장태양광발전 : '30년까지 50만kw 태양광발전설비 보급('18년까지 800㎾ 확보)
* 양식장용수관리 : '20년까지 총 125지구조사('17년까지 70.4%인 88지구 조사)
* 전기추진기 보급 : '19~'30년까지 총 1,000척 보급(내수면어선 500척, 어장관리선 500척)

○ 본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게 사업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사업목적, 근거법령, 성과목표 및 지표, 사업지원대상자,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및 선정 제외대상,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 기관별 역할 등이 사업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성과지표에서 도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이산화탄소 저감율의 경우 2017년 및 2018년 목표가 이전년도인 2016년 실적 및 2017년 실적보다 각각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에너지절감시설보급용량의 경우 2018년 및 2019년 목표가 이전년도인 2017년 실적 및 2018년 실적보다 각각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자체수행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부처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부처는 농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지원하는 냉난방설비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서 지원 대상을 농업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본 사업과는 중복지원 우려가 없다고 주장함

○ 본 사업은 현재 '25년까지 72만 kw 보급목표인데 '18년까지 38만 kw를 보급해 38% 목표를 달성하였음. 히트펌프 설치 후 어가 당 난방비 49백만원 절감(평균 61%) 및 어가당 57백만원의 소득증가(평균 9.3%)가 나타나고 있어서(친환경에너지 보급어가 운영실태조사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2015) 어업인들에게 상당히 도움 되는 사업으로서 연장이 일정 수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매년 수요조사시 평균 10개 광역지자체별로 소요요청액이 330억원 규모로 신청하고 있어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음

○ 만약 본 사업이 폐지된다면 재정적 손실은 없겠으나, 어려운 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해수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설비를 양식장에 보급하여 유류난방기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속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다소 발생할 수 있을 것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 목표 달성에 대체로 적정하며, 사업비가 대체로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됨

○ 법정 보조율 부재로 적정성 판단은 어려우나,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보조율과 유사하며 면세유 배정 축소와 농업용 난방기 영세율 적용 혜택을 감안하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재정투입을 검토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대체로 마련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은 대체로 집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대체로 마련되어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를 대체로 집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결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는 없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응하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중임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지침상에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이 대체로 인정됨

○ 또한 본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의 적정성도 대체로 인정됨

3-2 정책 제언

○ 다만 본 사업의 성과지표의 도전성을 높이는 등 성과와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사업 방식변경 방안이 요청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어업인교육훈련(제주)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9.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0.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0.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3.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9.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차년도부터 예산 반영 없이 「즉시 폐지(2020년)」함이 적절함. ·100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 사업 추진에서 계획한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농특회계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및 제주도 자체 사업인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사업과 유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수혜자 중에서도 중복 교육자가 발생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실효성이 없음. ·동 사업은 폐지하고 농특회계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으로 제주도 어업인 후계자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어업인후계자 육성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은 지방이양 사무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어업인후계자와 자율관리공동체 교육에 국가가 보조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수산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자율관리공동체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정착과 육성을 도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임.

- 공동체 구성과 활동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공유자원적 성격을 띠는 수산자원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어업인들의 자율관리어업 참여 활성화는 수산자원관리, 판매 촉진, 불법어업 추방 및 어장환경 개선, 어업분쟁 해소 등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어촌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데에 기여하므로 동 교육 사업의 수혜 범위는 어촌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수산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단일내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년 간 3-4회의 집합교육(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과 선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를 탐방하는 선진지 견학(해당 지역 외 견학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지만, 사업은 당초에 계획한 교육 참여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교육훈련 만족도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 제주 지역의 어업가구와 어가인구가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교육 대상자의 2% 수준의 교육 목표 인원이 미달하는 사례를 볼 때 사업의 효과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인원		83	100	100
참여자		95	65	
대상자	계	5,442	5,283	4,947
	어업인후계자선정자	78	61	41
	자율관리공동체어업인	5,364	5,222	4,90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수산전문인력으로 육성을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농특회계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및 제주도 자체 사업인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사업과 유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수혜자 중에서도 중복 교육자가 발생하고 있음.

- 경영 교육 등으로 어가 소득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순수 효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어가소득 추이 : ('15) 4,390만원 → ('16) 4,708만원 → ('17) 4,902만원

- 사업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목표 인원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의 교육 예산 사업으로 1인당 평균 150,00원의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음. 지속적 예산 불용액 발생으로 '19년 예산 8.3% 삭감 조치(~'18년 12백만원 → '19년 11백만원, △8.3%)되었음.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유사사업(지방이양사무)의 보조율을 근거로 보조율 100%로 보조율을 산정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단일 시도 직접사업으로 별도의 선정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추진절차를 명시하여 집행하고 있음.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제주도가 사업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 집행점검 등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어업인교육훈련(제주)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제 13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17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집행, 교부조건 위반 시 교부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을 해야 한다는 교부 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지속적 예산 불용에 발생으로 '19년 예산 8.3% 삭감 조치를 취하였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보조금 반환, 정산,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보조금 반환감사원 감사, 국회조사과정에서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 및 대출금의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사업시행지침에 사업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반영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평가 내용은 교육인원, 교육만족도, 예산 집행률, 여성어업인 참여율 등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수행사업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도 낮으며, 부정수급이 발생 사례가 없음

-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사업시행지침에 평가 내용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배정 시 불이익 조치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어업인 후계자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수산자원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명확함.

○ 100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 사업이지만, 계획한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농특회계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및 제주도 자체 사업인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사업과 유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수혜자 중에서도 중복 교육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차년도부터 예산 반영 없이 **「즉시 폐지(2020년)」**함이 적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어촌6차산업화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2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사업명의 변경 및 내역사업의 재구조화)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현행 방식으로는 어촌의 신성장 육성으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어촌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2018년 종료되었으므로, 사업의 목적과 내역 사업 등의 재조정을 통한 사업명 변경 및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어촌체험마을의 다양한 홍보 전략 등 컨설팅 및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 인력 채용 등 내역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 근거의 명확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어촌특화발전 지원특별법」 제4조 등을 제시하는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어업유산 발굴,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등 내역 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명확함.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어촌·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의 자연경관·생태·특산물·고유풍속 등의 개발·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 체험, 도시·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어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를 고려할 때 어촌의 정주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어촌경제 활성화 사업은 국가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어촌관광 수요증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을 지원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 외 소득증대 및 국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으며,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기존 어촌사업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낙후된 어촌에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함.

- 반면에 보조사업의 평가 대상인 '어촌 6차산업화지원'의 시범사업은 2018년 종료하였으므로, 동 사업은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목적과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은 7개로 구성되며, 각 사업은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에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관광 상품화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추진으로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는 '16년 117만명, '17년 131만명, '18년 14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총 35억 7,100만원의 소득증대('17년 17억 8,700만원) 효과가 도출됨.

- 다만, 일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진 마을에서도 사무장을 채용 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의 형태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어촌의 신사업 추진 및 자생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통한 사업의 수행은 적절하나, 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어촌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단체 및 민간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관광축제와 어가 체험마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입장료 및 수입을 재투자하는 방식의 사업단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어촌체험마을이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재정 투입 보다는 지역의 먹거리와 볼거리-체험-스토리를 연계하는 지역 단위 홍보 전략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정 지원 규모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행정비는 전체 예산 대비 21.3% 수준으로 적정함.

-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세계 농어업 유산 등재 사업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0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사한 성격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인정함.

-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84명) 및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인력(52명) 채용의 실적은 있으나, 장기적인 관광 상품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마을 내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어촌6차산업화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내역사업별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선정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선정 절차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적 자료도 제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준수하고 실적 자료도 제출하였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자치단체와 민간(한국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에 교부되는 사업으로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함.

- 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서 시행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과 고도화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정산하고 있음.

- 사무장의 경우 마을운영실적을 바다여행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허위 채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어촌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경영 및 컨설팅이 필요하며, 지역의 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화가 필요함.

○ 당초 보조사업 평가 대상인 어촌 6차산업화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내역 사업을 기준으로 재구조화하고 사업의 목적 및 사업 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어촌관광을 어촌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을 내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무장을 어촌관광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함.

○ 어촌관광 수요가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 및 홍보, 지역 인프라 등 연계 사업 등 전반에 걸친 기획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본 사업의 목적인 어업자원 보호 및 어업경쟁력 제고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실집행률이 2017년 63.4%에 불과하나, 2018년의 경우 12월말 기준 85.7%로 개선됨. 근해어선에 대한 직권감척을 수용하지 않은 어업인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떨어졌으나, 이에 대한 제재조치 이후 감척수용이 늘어나고 있음 ·2019년의 경우 근해어선 30척 감척을 기준으로 근해어선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감척 희망수요가 있어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4조는 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어업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5조는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13조는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 어선·어구의 매입, 폐업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4조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실태조사,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폐업지원을 하는 사업이므로 연계성이 매우 높음. 다만 관련 내용은 법에 의한 의무규정은 아님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어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임

- 어업자원 보호 및 어업경쟁력 제고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근해는 연안과 비교할 때 국가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는 어업인임.

- 감척으로 인해 남아 있는 어업인의 어획량 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들을 간접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연근해어선 감척, 실직어선원 지원 등은 어선 감축을 통한 연근해 어업자원 보호라는 목표와 부합함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물량 및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어업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 보조금 이외의 정책수단을 고려하기 어려워, 본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있음

○ 제1차 연근해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2014~2018)에 따라 감척 목표 수를 설정하는 등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구체적임.

○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은 그 성격상 다른 사업과의 중복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물량 및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음.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단기, 중기, 장기 재정소요액이 추계되고 있음

○ 본 사업의 집행률은 2016년 94%, 2017년 63.4%, 2018년 12월말 기준 85.7%에 불과함. 이는 2016년부터 정부직권에 의한 근해어선 감척을 추진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어업인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초 감척 집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직권 감척 불응 어업인에 대한 연차별 면세유 축소 등의 제재로 인해, 감척 불응 어업인 중 감척에 동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실집행률은 2017년에 비해 상승하였음.

- 다만, 2018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안(해양수산부, 2018.1)에 제시된 2017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실적에 따르면, 직권감척 추진대상 10척 중 4척은 직권감척이 완료되었으나, 6척은 직권감척에 동의하지 않아 제재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향후에도 직권감척 불수용에 의한 집행계획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감척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 한편 2019년의 경우 예산 편성 시 근해어선 감척수를 30척으로 계획하고 있음. 2017년 직권감척대상 10척 중 4척이 감척을 수용한 것을 고려할 경우 다소 과도한 계획으로 보이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상타결 지연으로 인한 감척희망(13척), 2018년 감척 동의 어선(3척), 2016~2017년 감척 불응자 중 감척 동의 어선(3척) 등 총 19척의 근해어선 감척 수요가 확보되어 있음.

- 또한 분류상 연안어업에 속하나 폐업지원금이 높아 근해어업에 상당하는 감척예산이 필요한 닻자망 12척이 감척을 희망하고 있음
- 즉, 2019년의 경우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감척계획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척 희망수요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파악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근해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어업이기 때문에 100% 정부 보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안어업은 시도지사 허가어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비 80%, 지방비 20%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연안어업의 경우 시도지사 허가어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20%에 불과하여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 가치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연근해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근해어선 허가현황은 약 58,803건('17.12월 기준)으로 11개 지자체에 분포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가 감척 수요 정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감척 수요에 따라 예산(중앙 및 지방)을 반영하여 감척을 추진하므로 지자체의 비용부담,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척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음

○ 보조금법에 따라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집행 지침을 통해 매년 사업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을 관리·감독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어선감척시행계획,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에 근거하여,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연근해어선 감척 집행 및 실집행 현황 추진실적 평가(분기별 1회)를 통해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비 배정에 반영

- 특히 이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아 모니터링 하고 있음. 또한,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보고를 통해 개선 방안 모색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어선감척시행계획,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어선감척시행계획,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일반사항, 사업수행시, 정산시) 교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집행지침에 “신청자격이 있는자”와 “자격이 없는자”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사업대상에 배제하도록 지침에 규정하여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였음

- 신청자격이 있는자 :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며,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

○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최소화 모색

○ 어선감척 신청자격(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5. 신청자격 및 조건)을 엄격히 정하여 부정수급 사전 방지

-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대상 어선(선령6년이상)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목적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어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임

- 어업자원 보호 및 어업경쟁력 제고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근해는 연안과 비교할 때 국가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연근해어선 감척, 실직어선원 지원 등은 어선 감축을 통한 연근해 어업자원 보호라는 목표와 부합함

○ 2019년 근해어선 감척수를 30척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감척 희망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직권감척 불응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에 따라 감척 불응 어업인의 감척 수용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한일어업협정 지연 등으로 인한 감척 희망 수요가 존재함.

3-2 정책 제언

○ 실집행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감척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연안국과의 협력(ODA)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본 세부 사업 중 보조사업을 통해 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기술연수사업 등이며, 이는 연안 개도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지원 및 기술연수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2017년 결산의 경우 보조사업 예산 1,300백만원 중 866백만원만 실집행되었음. 그러나 2016년 결산기준 예산 1,300백만원이 전액 실집행되었고, 2018년 12월 말 기준 2018년 예산 1,300백만원 전액이 실집행된 점, 그리고 2019년 예산이 1,200백만원으로 감축된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예산 수준에서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보조사업은 원양산업 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43조(수산업 어촌의 통상정책 등), 44조(수산업 어촌분야의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등을 법적인 근거로 함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 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관련 기관 단체의 국제수산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의 43조는 수산업 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정부의 의무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의 44조는 수산업 어촌분야의 국제협력 촉진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5조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연안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본 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법에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연안국의 수산자원 자국화, 국제기구의 공해상 조업 규제 강화 등 원양어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임

-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토대로 수원국의 빈곤퇴치, 자립 및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은 사업비의 90% 이상이 직접적인 기자재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해 집행되고 있어, 수원국 주민을 직접적인 수혜자로 함.

-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해외 어장 확보 및 수산물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원양어업 종사자가 간접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연안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어장 확보 및 수산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본 사업은 위탁사업과 보조사업, 해외자본이전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보조사업을 통해 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기술연수사업 등이며, 이는 연안 개도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지원 및 기술연수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대체로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었으나, 2017년 결산의 경우 보조사업 예산 1,300백만원 중 866백만원만 실집행되었음.

- 기존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집행점검 등을 통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의 2019년 예산을 보면 비목별로 볼 때, 본 평가의 대상인 민간경상보조와 함께, 일반용역비, 해외경상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일부는 민간경상보조로, 일부는 일반용역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는 본 보조사업이 2006~2013년까지는 일반용역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14년 이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추진되었기 때문임

- 용역의 경우 입찰공고, 유찰 시 재입찰, 사업자 선정평가 및 계약 등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수원국 수요조사, 물품 구매 등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본 보조사업은 수산인프라 지원, 기술연수 등을 통해 연안 개발도상국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협력대상국의 수산인프라가 일정 정도 구축되면, 현재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산인프라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축소될 수도 있음. 이때는 다른 방식과 다른 내용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수산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구축과 해양수산기술 및 정책연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2017년 결산 시 1,300백만원 예산 중 866백만원만 실집행되었으나, 과거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본 사업은 국제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적정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한국원양산업협회(해외수산협력센터)임.

- 해외 어장의 안정적 확보 및 수원국에 대한 물자 수요조사 등을 위해 수원국 수산당국과 체계적인 협력관계가 유지·관리되고 있는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연안국과의 협력사업(ODA)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통지)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음

- 이를 위한 관리계획, 현장실사를 비롯한 실행체계 점검 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회계정산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물품구입시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시 나라장터를 활용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령으로 정하여 놓고 있음

○ 사업지침에 따라 10월 말 중간결과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등 실 집행 현황 과정에 대한 점검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단 실집행에 대한 점검절차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결산 시 1,300백만원 예산 중 866백만원만 실집행되음. 과거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 장관령에 따라 정산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불용액 발생 시 불용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지침에 부정수급과 관련된 규정이 완비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발생 사항이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세부 사업 중 보조사업을 통해 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기술연수사업 등이며, 이는 연안 개도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지원 및 기술연수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 2017년 결산의 경우 보조사업 예산 1,300백만원 중 866백만원만 실집행되었음. 그러나 2016년 결산의 경우 보조사업 예산 1,300백만원이 전액 실집행되었고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 2018년 예산 1,300백만원이 전액 실집행된 점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불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2019년의 경우 보조사업 예산이 1,200백만원으로 100백만원 감축되어 편성된 바 있음

- 기존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상추진하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원양어업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수산물 소비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상추진될 필요 ·본 사업은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 강화 등으로 해외 조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업구역은 축소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어획 쿼터 및 수산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조업쿼터를 확보하고 해외 신어장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다만, 보조사업이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규모('18년, 3,650백만원)에 비해 내역사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내역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에 의거 국제수산 협력,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명예수산관 운영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가 법령에 의거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연안국의 수산자원 자국화 및 공해상 조업규제 강화 등 국제적인 어업환경 변화로 원양업계의 해외수역 조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원 등을 통해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의 신어장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해외수산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 강화 등으로 해외 조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업구역은 축소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어획 쿼터 및 수산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조업쿼터를 확보하고 해외 신(新)어장 개발 등이 필요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외 신어장 개발, 지역수산기구 참여,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명예해양수산관 운영,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지역수산기구 국가의무의 이행, 해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해외어장자원조사,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외선원묘지 관리, 국제기구 의무자료 수집 등은 민간단체의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어업인 등에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원양어업생산량 증가와 지속이용 가능한 수산식량자원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가격이 저렴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원양어업 생산량(합작어업포함) 증가 : ('15) 74.2만톤 → ('17) 78.7(증 6%)
해외어장조사수역 원양어업생산량(천톤) 증가 : ('15) 37.2→ ('17) 44.4(증 19.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들은 해외어장 자원조사,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수산협상전문가 육성 및 국제기구 의무자료 수집 등 사업지원은 해외수산 자원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양어업생산량 증가 및 국제수산기구 쿼터유지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이나 목표치의 도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성과지표 및 달성율>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6년	'17년	'18년
① 해외어장자원조사 수역 어업생산량(천톤)	과거 3개년 평균 해외어장 자원조사 수역 생산량보다 3% 증가	목표	38	38.2	39.3
		실적	39.3	44.4	82.4
		달성률(%)	103.4	116.2	209.7
② 국제수산기구 쿼터유지(천톤)	과거 3개년 평균 쿼터 확보량	목표	35.0	35.5	36.2
		실적	36.7	44.3	45.5
		달성률(%)	104.8	124.7	125.7

○ 본 사업은 '18년 예산이 3,650백만으로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나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규모에 비해 내역사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의 검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 표에서 보듯이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이월·불용액의 비율이 10%이상에 이르렀고, '18년의 경우 집행률이 96.8%로 개선되었으나 집행율 관리는 필요함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4,120	4,120	345	4,465	3,816	92.6	85.5	143	506
2016	3,950	3,950	143	4,093	2,745	69.5	67.1	-	1,348
2017	3,750	3,750	-	3,750	3,343	89.2	89.2	60	347
2018	3,650	3,650	60	3,710	3,593	98.4	96.8	-	117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외조업 조건의 악화 및 안정적인 수산식량 확보를 위해 새로운 틈새 어장개발과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 쿼터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수산물 자급률이 67.3%(16년 기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자급율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1인당 소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외서는 신어장 개발을 통한 수산식량자원 확보 및 국제수산기구 조업쿼터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은 있음

※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 ('03년) 44.7kg → ('16년) 59.9kg (증 33.1%)
(출처: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조업 조건의 악화 및 안정적인 수산식량 확보를 위해 새로운 틈새 어장개발과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 쿼터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원양산업의 업계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선사이고 지속적으로 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국적원양어선 추이 : ('90)800척 → ('00)535 → ('10)342 → ('15)289→ ('17)221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원양어업활성화의 보조사업 규모는 40억원 수준이나 주로 원양업계 및 관련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내역사업이 7개에 이르므로 내역사업을 적절히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보조율은 예산편성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음

구분	내용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 재원분담은 내역사업별 국고 50~100% 지원 - 해외어장자원조사(100%), 옵서버 승선경비지원(50%), 해외선원묘지관리(100%), 국제수산협상전문가 및 국제옵서버육성관리(100%), 러시아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지원(70%)
사업추진 주체	○ 보조 100%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50%인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한국원양협회, 수협중앙회에서 추진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본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집행지침 시달, 업계 수요조사,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개산급 지급, 결과보고, 정산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사업계획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 (원양협회,수협)	⇒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개산급 지급 (해수부)	⇒	국고보조금 집행, 사업결과보고 (원양협회,수협)	⇒	정산・확정 (해수부)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관련 법령, 사업운영 전문성 및 인력, 자부담 확보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원양어업활성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통지)의 해당하는 조항들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리계획, 현장실사를 비롯한 실행체계 점검 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회계정산 제도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점검 실시 후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간보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보다 강화될 필요는 있을 것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원양어업활성화 사업은 관련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정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원양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2년간 사업지원을 제외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이・불용액이 많으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정부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원양어업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예산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 강화 등으로 해외 조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업구역은 축소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어획 쿼터 및 수산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조업쿼터를 확보하고 해외 신어장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다만, 보조사업이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규모('18년, 3,650백만원)에 비해 내역사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내역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이월·불용액의 비율이 10%이상에 이르렀고, '18년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96.8%로 개선되었음. 또한 수산물 소비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은 정상 추진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해외조업 조건의 악화 및 안정적인 수산식량 확보를 위해 새로운 틈새 어장개발과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 쿼터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수산물 자급률이 67.3%(16년 기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자급율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1인당 소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외서는 신어장 개발을 통한 수산식량자원 확보 및 국제수산기구 조업쿼터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은 있음

- 다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외부회계 법인의 검증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제주외항(2단계)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은 단일 내역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산 규모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기에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 2025년까지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종결되어 건설 공사가 추진되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항만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 지급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 항만법 제9조 >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439조>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정한다)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및 제10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2조제5항 단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2항, 제77조 및 제82조의 경우에는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 2항 >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제주외항(2단계) 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은 제주외항 1단계 개발에 따른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며 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제주외항(2단계) 건설은 제주지역의 관문항인 제주항의 외곽시설, 접안시설 등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연안화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국제규모의 관광지원 항만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교통시설인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항만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이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제주외항(2단계) 건설은 국가차원인 해상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항을 이용하는 항만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어업인, 국제 크루즈관광객 및 국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므로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제주외항(2단계) 건설은 제주지역의 관문항인 제주항에 외곽시설, 접안시설, 여객터미널 등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연안화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국제규모의 관광지원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내역사업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제주외항 2단계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제주외항 1단계 개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문업체((주)건일엔지니어링)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 반기별로 지형, 지질, 수질, 대기질 등 측정하고 기준치 초과 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주외항(2단계) 건설은 2025년까지 제주외항에 대형크루즈선 및 화물선 접안시설, 해경함정 전용부두, 진입교량 및 진입도로 등의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국가의 항만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음

○ 제주외항(2단계) 건설은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거 매년 계획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당초 목표기간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몇 년간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이 낮음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집행 실적>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5	17,179	17,179	-	-	17,179	17,179	100	100	-	-
2016	6,729	6,729	-	-	6,729	6,729	100	100	-	-
2017	8,000	8,000	-	-	8,000	8,000	100	100	-	-
2018	372	372	-	-	372	372	100	10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제주외항(2단계) 건설은 해양수산부가「항만법」에 따라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 제주외항(2단계) 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없음

○ 제주외항(2단계) 건설은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기간 까지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제주외항(2단계) 건설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공사 중단으로 국가 항만기본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제주항의 교통 인프라의 기능 축소 및 상실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제적·물질적으로 손실이 예상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사업에서 추진해 온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지님

○ 2017년 사업예산은 해경부주 및 화물부두축조, 감리비, 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하여 8,000백만원이었으나, 2018년, 2019년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만을 포함하였고, 사업비 372백만 원은 사후환경영향조사비로서 환경부 고시(소요인력 산정,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라 작성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8,000백만원	372백만원	372백만원
	100%	100%	100%
자치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8,000백만원	372백만원	372백만원
	100%	100%	100%

○ 제주외항 2단계 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므로 100% 보조율은 적정함

○ 제주외항 2단계 건설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기간(중기)에 따른 소요액을 산출하고 있어 적정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작성되고 있다고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의거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던 업무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지님

○ 해양수산부는 제주외항 2단계 건설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보조사업자로 적법하게 선정하였으며 보조금 교부는 해수부 자체 규정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40호, 2018.09.14)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는 자체 규정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40호, 2018.09.14)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제주외항 2단계 건설을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으로 사업 집행 관리를 적절하게 실행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는 자체 규정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40호, 2018.09.14.)에서 보조사업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및 회계검사 등 - 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없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외항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점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해양수산부는 자체 규정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40호, 2018.09.14.)에서 부정수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서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제주외항 3단계 사업은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중기계획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고, 사업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예산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최근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만 실시하고 건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

○ 보조사업에서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조사업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3-2 정책 제언

○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은 정상추진 함

○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은 2025년까지 건설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3년간 공정률이 정체되었고, 2018년, 2019년에는 제주외항 1단계 개발에 따른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만을 시행해 왔는데, 제주외항 2단계 개발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종료하고 건설 공사가 재개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제주일반항건설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동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제주일반항건설은 국가에서 수립한 서귀포항·성산포항·애월항·한림항의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제주도)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교통시설인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항만교통인프라 구축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 ·보조사업 관리도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성과지표의 달성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목표기간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사업은 2020년까지 완결하여야 할 것임. 단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이 '20년 6월 수립 예정으로 추후 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임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 하에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정한다)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및 제10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2조제5항 단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2항, 제77조 및 제82조의 경우에는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동사업은 이상의 법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일치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서귀포항의 연안화물의 원활한 수송지원 시설확보 및 친수 관광항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성산포항의 외곽시설 축조로 항내정온 및 선박 접안 시 안전 확보
- 애월항에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 계획에 따라 LNG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한림항의 외곽시설의 보수보강으로 방파제 시설물 내구성 및 재해안전 확보

○ 제주일반항건설은 국가에서 수립한 서귀포항·성산포항·애월항·한림항의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제주도)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교통시설인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항만교통인프라 구축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제주일반항건설은 국가차원인 해상 교통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 주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외 항만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어업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므로 비교적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제주일반항건설은 국가에서 지정항 항만인 서귀포항·성산포항·애월항·한림항에 외곽시설, 접안시설 등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연안화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이는 국가 개발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또한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등 내역사업들이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제주일반항건설은 2020년까지 서귀포항·성산포항·애월항·한림항에 화물선 접안시설, 방파제, 어선물양장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국가의 항만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음

○ 제주일반항 건설은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거 매년 계획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당초 목표기간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음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공정률(%)	목표	49.6	54.9	61.4	66.0		{(18년 누계집행액 + '19년예산)/총사업비}*100	(누계 집행실적/ 총사업비)×100
	실적	49.6	54.9	-	-			
	달성도	100.0	100.0	-	-			
물동량 처리실적 (천톤)	목표	3,746	4,777	5,488	5,588		처리계획대비 물동량 처리실적	(물동량 처리실적/물동량 처리계획)×100
	실적	4,576	5,257	-	-			
	달성도	122.2	110.0	-	-			
터미널 이용 관광객 수(천명)	목표	479	1,415.2	659	1,343		최근3년간 연평균 증가율0.1%적용	터미널 이용 관광객 수
	실적	1,231	573	-	-			
	달성도	257.0	40.0	-	-			

○ 2017년도 이후 실적이 없어 달성도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추후 사업의 효과성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제주일반항 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에서는 자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됨

○ 제주일반항 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제주일반항 건설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는 사전 사업시행에 따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기간까지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동 사업은 2020년까지 제주지역의 서귀포항·성산포항·애월항·한림항에 접안시설 및 방파제 등 각종 해상 교통인프라를 구축을 완료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나 사업폐지 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교통인프라의 기능 축소 및 상실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제적·물질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등에서 사업 목표달성의 적정성 여부 및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중기재정운영계획' 에 사업의 규모에 맞춰 예산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제주일반항 건설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사업기간(중기)에 따른 소요액이 산출하고 있어 적정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작성되고 있다고 판단됨

○ 제주일반항 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항으로 100%의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보조율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의거 특별행정기관(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던 업무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집행상황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시 현장 점검 및 회계점검 등 사후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국가사업을 대행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에 따른 각종 절차의 이행 여부 및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발생 정도가 매우 낮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 발생 사유, 해당 조치결과 등 해당사항이 없음

○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 목적외 사용여부 등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보조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제주일반항건설은 국가에서 수립한 서귀포항·성산포항·애월항·한림항의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제주도)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교통시설인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항만교통인프라 구축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제주일반항건설은 국가차원인 해상 교통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 주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외 항만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어업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므로 비교적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관리도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제주일반항 건설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목표기간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사업은 2020년까지 완결하여야 할 것임. 단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이 '20년 6월 수립 예정으로 추후 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임

○ 성과지표의 달성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3-2 정책 제언

○ 제주일반항 건설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목표기간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사업은 2020년까지 완결하여야 할 것임. 단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이 '20년 6월 수립 예정으로 추후 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임

○ 성과지표의 달성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제주항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동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제주항 건설은 국가에서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제주도)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교통시설인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항만교통인프라 구축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 ·보조사업 관리도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이 도전적이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정한다)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및 제10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2조제5항 단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2항, 제77조 및 제82조의 경우에는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동사업은 이상의 법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제주항 건설은 국가에서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제주도)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교통시설인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항만교통인프라 구축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제주항 건설은 국가차원인 해상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 주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외 제주항을 이용하는 항만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어업인, 국제크루즈관광객 및 국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므로 비교적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제주항 건설은 제주지역의 관문항인 제주항에 외곽시설, 접안시설, 여객터미널 등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연안화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국제규모의 관광지원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이는 국가 개발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또한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등 내역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제주항 건설은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거 매년 계획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당초 목표기간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항 건설은 2030년까지 제주항에 대형크루즈선, 대형여객선 등의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국가의 항만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다고 판단됨

○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음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공정률(%)	목표	73.9	64.3	66.3	66.7		{(18년 누계집행액 + '19년예산)/총사업비}*100	(누계 집행실적/총사업비)×100
	실적	73.9	64.3	66.3				
	달성도	100.0	100.0	100.0				
물동량 처리실적(천톤)	목표	9,739	11,686	11,454	13,714		처리계획대비 물동량 처리실적	(물동량 처리실적/물동량 처리계획)×100
	실적	11,204	11,110	13,149				
	달성도	115.0	95.0	114.8				
터미널 이용 관광객 수(천명)	목표	1,714.0	1,500	1,693	1,784		최근3년간 연평균 증가율0.1%적용	터미널 이용 관광객 수
	실적	1257.0	2,760	2,800				
	달성도	73.3	184.0	165.4	-			

○ 다만 지표들의 목표수준이 도전적이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특히 물동량 처리실적이나 터미널 이용관광객수를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8년 물동량처리실적 및 터미널이용관광객 목표치가 '17년 실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제주항 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에서는 자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됨

○ 제주항 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제주항 건설은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는 사전 사업시행에 따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기간까지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제주항 건설은 2030년까지 제주항에 접안시설 및 방파제 등 각종 해상 교통인프라를 구축을 완료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폐지 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교통인프라의 기능 축소 및 상실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제적·물질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등에서 사업 목표달성의 적정성 여부 및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중기재정운영계획' 에 사업의 규모에 맞춰 예산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제주항 건설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사업기간(중기)에 따른 소요액이 산출하고 있어 적정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작성되고 있다고 판단됨

○ 제주항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항으로 100%의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보조율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의거 특별행정기관(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던 업무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집행상황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시 현장 점검 및 회계점검 등 사후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국가사업을 대행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에 따른 각종 절차의 이행 여부 및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발생 정도가 매우 낮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 발생 사유, 해당 조치결과 등 해당사항이 없음

○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 목적외 사용여부 등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보조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제주항 건설은 국가에서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제주도)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교통시설인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항만교통인프라 구축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제주항 건설은 국가차원인 해상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 주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외 제주항을 이용하는 항만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어업인, 국제크루즈관광객 및 국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므로 비교적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관리도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목표달성도는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목표설정이 도전적이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3-2 정책 제언

○ 성과목표를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물동량 처리실적이나 터미널 이용관광객수의 목표를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천일염산업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9.3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천일염 산업의 규모가 작고 개별 사업자들이 영세함에 따라 국가 및 자자체 단위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각 내역사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명확한 내용으로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천일염은 국민의 중요 먹거리로 해당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일부 사업내용에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해당 보조사업이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임을 보다 면밀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음. 즉, 개별 내역사업 등을 통해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천일염 품질향상'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객관적·실증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은 소금산업진흥법 상의 제조시설 현대화, 전시 및 홍보,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운영,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조항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 「소금산업진흥법」 상의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 및 제17조(생산지 소금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각각 근거하여 내역사업을 구성하였으나, 제14조의 제조시설 현대화를 제외하고는 설치·운영 및 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각 내역사업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 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그 목적과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전시 및 홍보,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 생산지 소금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사업내용과 법령 간의 정합성이 높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소금산업진흥법」 제1조에 따른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동법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는 국가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됨

- 「소금산업진흥법」 제3조은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천일염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범위와 이의 우순선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책적 판단일 수 있음

○ 해당 사업의 직접적·실질적 수혜자는 천일염 생산자 및 관련 업·단체, 천일염 소비촉진 홍보 사업자이며, 실질적으로는 이를 최종소비하는 국민이 간접적·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어 그 수혜가 광범위하게 귀속되는 사업이라고 평가됨

- 천일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잠재적 편익은 광범위할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소금산업진흥법」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 및 제17조(생산지 소금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각각 근거하여 내역사업을 구성하였으므로 구성적 타당성은 높다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사업이 시설의 현대화 및 처리·유통시설의 설치 등 민간 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천일염 품질향상'이라는 상위목표와의 정합성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전시 및 홍보 사업의 타당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천일염포장재지원, 염전바닥재 개선, 장기저장시설설치, 염전취배수용배관설치, 천일염생산시설자동화지원 등은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천일염종합유통센터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각의 지원사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명확한 내용임

- 내역사업 중 전시 및 홍보 사업은 구성적 타당성에 비해 그 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한 소명이 미흡함.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근거제시가 필요함

○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에 비해 사업의 효과성은 매우 미흡하므로 목표-사업추진방식-성과 간의 보다 명확한 도식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주요실적으로 보조금 교부집행율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성과목표로 제시한 소금수출실적 및 천일염이력제 구축율도 사업의 목표를 고려할 때 적합한 내용이 아님. 궁극적으로 해당 보조사업이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임을 보다 면밀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음. 즉, 개별 내역사업 등을 통해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천일염 품질향상'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객관적·실증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 개선 혹은 생산된 소금의 품질개선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천일염은 국민의 중요 먹거리로 해당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일부 사업내용에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산업이 규모가 작고 개별 사업자들이 영세함에 따라 자자체 및 특정기관 수준에서의 지원으로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협회나 생산자 조합 등 민간에서도 이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과 병행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현재는 생산자단체가 부재하고 영세성으로 인해 민간 부담이 불가능한 구조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할 과제임

○ 천일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존재하는 타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고유성이 충분히 인정됨

○ 천일염은 국민이 섭취하는 먹거리로 위생, 안전,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천일염포장재 지원, 염전바닥재 개선, 장기저장시설설치, 염전취배수용배관설치, 천일염생산시설자동화지원 등과 같은 생산시설이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조사업들은 지속적이면서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포장재, 염전바닥재, 생산시설자동화 기계 등은 소모성 제품들로 위생, 안전,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또한,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장기저장시설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기반을 조성하가 위한 염전 취·배수관 등도 추가적인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해당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천일염 생산자 및 관련 업·단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최종소비하는 국민이 간접적·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어 그 수혜가 광범위하게 귀속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해당 사업 폐지 시 그 잠재적 피해도 광범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천일염산업은 고령화 및·영세성으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중단될 경우 천일염 생산자 및 관련 업·단체가 영세 정도에 따라 폐업 등 재정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선호하는 천일염의 구매 가격이 올라감으로서 서민 물가 급등이 초래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회수요 분석에 기반하여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도출근거가 다소 미흡하게 제시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계한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규모를 결정하므로 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규모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파악된 수요의 적절성을 검토할만한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것은 명확한 한계임

- 또한, 상위목표와의 정합성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전시 및 홍보 사업의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보조율 산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나 전시 및 홍보 사업의 보조율을 재검토가 필요함

- 천일염포장재지원, 염전바닥재개선, 염전취배수용배관설치, 장기저장시설 설치, 생산시설 자동화지원의 경우, 「소금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소금사업자는 각각 일정부분 분담하도록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구, 자재, 시설물 등은 최종 수혜자의 소유로 자부담율을 40%((국비30%, 지자체 30%, 자부담 40%)로 정한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천일염종합유통센터 건립의 경우, 「소금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역할을 정하고 있어 국비와 지방비 분담율을 50:50으로 정하였으며, 한시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천일염소비촉진홍보의 경우, 「소금산업진흥법」 제15조에 국가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며 사업의 효과성이 면밀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비 100%지원은 타당하지 않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천일염산업은 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①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과 연계한 성과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현재 천일염을 생산하는 지자체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비용의 부담 능력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추진의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 파악된 수요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할만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록 잠재적 수혜자가 한정적인 사업이나 보다 제도화된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의 역할부담과 관련된 사항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선정 및 교부절차 등 보조사업의 추진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천일염산업육성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천일염산업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상으로 정하고 보조금법에 따른 신청·교부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금법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자부담) 재원을 먼저 사용한 후 국비를 사용하도록 정하는 등 적절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정하여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 대상, 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선정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점검단계 등의 표준프로세스에 따라 담당기관별 역할을 설정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금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5조의 2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고 제5조의 3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 2회로 나누어 집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보조사업 집행관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반으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 추진하고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하도록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실적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하고, 총 소요비용에 대해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함(e나라도움 시스템 병행처리)

- 사업의 이행단계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관리주체인 해수부가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타당성 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행 등 추진현황 관리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정하는 등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설(10년), 장비(5년)는 중요재산으로 지정 관리하고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대상 추진 실적보고(반기별)를 통해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 보고토록 정하는 한편,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현황('17.9)을 별도 점검하는 등 적절한 사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보다 촘촘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화 및 운영이 필요함. 가령, 정산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및 관련 보조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증하고 관련 영수증 및 회계자료를 받아서 정산 처리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의 정도에 따라 보조사업자 사업취소, 사업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원내용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으며 지금까지 부정수급 발생 사례가 없으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보조사업 대상자로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하도록 시행지침에 정하고 있는 등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각 내역사업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 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그 목적과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제14조의 제조시설 현대화를 제외하고는 설치·운영 및 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소금산업진흥법」은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원사업의 편익이 실질적으로는 천일염을 최종소비하는 국민에 귀속되므로 그 잠재적 편익은 광범위함

○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에 비해 사업의 효과성은 매우 미흡하므로 목표-사업추진방식-성과 간의 보다 명확한 도식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천일염 품질향상'이라는 상위목표와의 정합성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전시 및 홍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효과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 보조사업의 주요실적으로 보조금 교부집행율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성과목표로 제시한 소금수출실적 및 천일염이력제 구축율도 사업의 목표를 고려할 때 적합한 내용이 아님

- 궁극적으로 해당 보조사업이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임을 보다 면밀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음. 즉, 개별 내역사업 등을 통해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천일염 품질향상'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객관적·실증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천일염은 국민의 중요 먹거리로 해당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일부 사업내용에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산업이 규모가 작고 개별 사업자들이 영세함에 따라 자자체 및 특정기관 수준에서의 지원으로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협회나 생산자 조합 등 민간에서도 이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과 병행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천일염산업은 고령화 및·영세성으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중단될 경우 천일염 생산자 및 관련 업·단체가 영세 정도에 따라 폐업 등 재정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선호하는 천일염의 구매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회수요 분석에 기반하여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도출근거가 다소 미흡하게 제시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계한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파악된 수요의 적절성을 검토할만한 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상위목표와의 정합성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전시 및 홍보 사업의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 100%지원의 방식도 타당하지 않음

3-2 정책 제언

○ 개별 내역사업 등을 통해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천일염 품질향상'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목표-사업추진방식-성과 간의 보다 명확한 도식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해당 보조사업이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임을 보다 면밀하게 소명하기 위해서는 투입-산출-결과 간의 연계성을 염두에 둔 성과지표의 개발·활용이 필요함.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 개선 혹은 생산된 소금의 품질개선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산업이 규모가 작고 개별 사업자들이 영세함에 따라 국가 및 자자체 단위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협회나 생산자 조합 등을 통해 일부 부담하는 방식과 병행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회수요 분석에 기반하여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도출근거가 다소 미흡하게 제시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계한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파악된 수요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할만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위목표와의 정합성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전시 및 홍보 사업의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유지할 경우에도 보조율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3.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 집행 실적이 저조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데 1.5년 소요)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예산 요구안 작성시 예산 집행률 제고에 대한 명시적인 방안 및 계획이 첨부되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수산업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친환경어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제54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사업
2. 외국으로부터의 기르는어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기르는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4. 그 밖에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정과제 84-2번(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의 수출전략산업화)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산물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양식어업인이나, 잠재적 수혜자는 전 국민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은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게 구체적임.

- 보조사업의 구성이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양식 생산량) 달성도는 적정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양식어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투자도 가능하나, 친환경·신기술 보급·적조 예방시설 지원 등은 국가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과년도 불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음.

- 2017년 이후 예산의 요구는 이월 및 불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 사업은 실집행액 실적이 낮음.
- 사업의 특성상 집행 완료가 차년도에 이뤄지고 있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명됨. 다만, 지속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집행지침」에 근거하여 공모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며,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평가한 실적은 제출되지 않아 미흡하다고 판단함.

- 관리규정에는 보조사업자의 자격 및 지원제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자 선정 단계(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의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집행점검 단계를 두어 관리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실태 시점이 너무 늦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연 2회 이상 사업집행점검을 실시하며, 시도는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점검 및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과 사업시행에 대한 점검(연 2회 이상)해야 하나, 2017년 11월 중 점검한 것은 시점 상 적절하지 않고 횟수도 적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집행지침」에서 계약, 정산보고서 검증, 중요재산 등의 항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 지자체의 민간보조사업은 교부조건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도록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계약, 정산보고서 검증, 중요재산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지자체 직접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작성되지 않음.

- 사업의 사후관리 책임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하고 있어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음.

- 사후관리를 준수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의 제출과 제출 공문 등이 제시되어야 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부정수급(횡령 등) 적발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 영구 참여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나,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실증 근거는 제출하지 않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하고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타당하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사업의 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의 잦은 교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가 자주 변경되고 있어 성과 관리를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함.

- 보조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은 명확하나, 이에 근거하여 수행할 실적은 미흡함.

3-2 정책 제언

○ 일부 내역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공모 및 선정, 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실제로 관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 내역사업(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의 집행률이 매년 반복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자치단체 보조 및 사업의 특성 때문이라는 한계는 인정되나 타 부처 및 타 사업 중 시설 건립 사업 등도 집행 실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한 명확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5.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2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LED등(燈) 보급사업과 노후기관·장비·설비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사업내용을 유연하게 추진함이 바람직함 ·어업인과 자치단체가 재정능력에 비례하여 자발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대체기관이 고마력(500마력 이상)인 경우에는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향후 50%로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중임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제17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의 내역사업은 LED등(燈) 보급과 노후기관·장비 등 보급의 두 가지로 구성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환경 에너지절감장비의 보급과 노후기관 교체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장려하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의 보급을 통해 연근해 어업을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 분야의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영세 어업인의 노후기관 교체를 지원하여 사고위험을 줄이고 어업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있음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의 보급과 노후기관 교체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LED등(燈)을 보급하는 사업의 효과는 불분명하고, 노후기관과 장비의 구입(설치)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를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음

- 다양한 어선 장비 및 설비 중 LED등(燈)을 보급하는 사업이 어업 분야의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에 가장 효과적인지는 불분명함

- 노후기관과 장비의 구입(설치)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의 효과는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노후기관과 장비의 교체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정량평가를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부담으로도 노후기관과 장비를 교체할 계획 또는 여력이 있던 어업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졌을 경우 민간투자를 구축했을 가능성도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으나, 사업혜택이 지원대상 어업인 개인에게 귀속되어 개인 스스로의 비용부담으로 추진할 동기도 존재함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의 보급을 통해 어업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면 국가의 보조금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유인이 존재하며, 노후기관과 장비의 구입 및 설치는 수혜자인 어업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옴
- 유사 또는 중복사업은 발견되지 않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LED등(燈) 보급사업과 노후기관·장비·설비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사업내용을 유연하게 추진함이 바람직함
- 현재의 보조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으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와 어업인의 재정능력에 비례하여 자발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시행지침과 세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짐

- 현재 1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과 각 지자체별 세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짐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시행 지침」에 의해 보조사업의 집행을 관리 감독함

- 매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시행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관리감독하며,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률을 파악하고 있음
- 지자체별 담당자 확인을 통해 실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차년도 보조금 교부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규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사후관리 등을 지도·감독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음

-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없음
- 지침위반 사례 적발 시 보조금 삭감비율은 1회 20% 이내, 2회 30% 이내, 3회 50% 이내로 정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은 LED등(燈) 보급과 노후기관·장비 등 보급을 재정보조하는 사업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의 보급을 통해 어업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면 국가의 보조금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유인이 존재하므로, 개인의 투자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고, 자치단체와 수혜자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LED등(燈) 보급사업과 노후기관·장비·설비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사업내용을 유연하게 추진함이 바람직함

- 어업인과 자치단체가 재정능력에 비례하여 자발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대체기관이 고마력(500마력 이상)인 경우에는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향후 50%로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제주항만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으로 정상추진함. ·국가 기간 시설의 성격을 가진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국고보조율 100%로 제주도에 지원하는 자본보조사업임. 사업비 집행관리와 성과관리가 적절히 수행됨.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특성에 따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임. 균특회계 제주계정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지원과는 법적 특성을 달리하고 있음. ·보조사업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역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연도별 재원 운용규모가 불규칙적인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사무로 정착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사무 전환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임. 항만법 제9조에서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예외로 지자체에 권한이 이양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에서 항만법 다수 조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면서 관련 경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동 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동 사업의 법적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판단됨.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제주지역항만의 노후된 항만시설의 적기 유지보수로 시설물 안정성 증대 및 이용자 편의 제공하는 사업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을 지자체가 이양 받아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제주지역항만의 노후된 항만시설의 적기 유지보수로 시설물 안정성 증대 및 이용자 편의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적기 유지보수를 통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는 제주도내 기 개발된 항만시설(방파제, 안벽, 물양장, 배후부지 포장 등)들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화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음.

■ 표1.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 추이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20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공정률(%)	목표	79	79	79	79	{(18년 누계집행액 + '19년예산)/총사업비}*100	(누계 집행실적/총사업비)×100
	실적	77.7	79.2	71.4			
	달성도	98.4	100.2	90.4			
취약 항만 시설물 발생률(%)	목표	≤1	≤1	≤1	≤1	3개년 평균발생률 감안 지표 최대치 1%이하	시특별 적용 취약항만시설/시특법 적용 항만시설
	실적	0	0	0			
	달성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국가사무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례가 적용되어 지방사무로 전환되었음. 이에 따른 경비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항만시설유지보수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기 유지보수를 사업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의 해상교통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를 대행해서 위탁수행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100%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 및 소요 사업비 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검토를 실시함.

- 다만 해양수산부의 '중기재정운영계획'의 합리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중기계획에서는 2019년 이후 매년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2018년 계획에서는 2020년도부터 78.8억원 지원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

- 연동계획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 금액에서 일정 정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년대비 20% 이상의 금액 변동은 적절하지 않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직접적인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기초하여 특별행정기관(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던 업무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함.

○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중앙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매년 불용액 발생없이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시 현장 점검 및 회계점검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자체 시설투자사업으로 부정수급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음. 시설투자 사업 운영 과정의 관리 감독 활동을 통해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가 기간 시설의 성격을 가진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국고보조율 100%로 매년 지자체 지원하는 자본보조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특성에 따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임.

○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매년 지원되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재정적 관점에서 특별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음.

- 과거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속적인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3-2 정책 제언

○ 최근 2년동안 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2019년도의 예산은 58.8억원으로 감축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항만시설 유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보조사업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감소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 재원 징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징발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경우 재정분권과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당초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임. 본 사업의 재원운영에서 '자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보조사업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역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연도별 재원 운용규모가 불규칙적인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예외적으로 자치사무 특례를 적용한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국고보조방식이 지속되고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현행 자치사무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해양관광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8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내역사업이 복잡하고 타 부처 사업과 중복성이 나타남 ·관련법, 국정과제, 관련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 등에 근거할 때 해양관광육성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내역사업이 복잡하고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생존수영교육의 내용은 타부처 사업과 중복성의 문제가 제기됨. ·해양관광육성사업 중 해양치유산업은 분리하여 재편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며, 생존수영교육은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집중하여 사업목적에 맞도록 변경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35조(재정 등의 지원)에 의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해양관광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음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제 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내역사업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사업과 법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음

- 해양관광육성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생존수영교육지원계획은 교육부의 '제2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 (2019~2023) (2018.12.26. 발표)의 생존수영 실기교육 확대 계획과 중복여부 검토가 필요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현정부의 국정과제(84-2)에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세부이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업의 내역사업에 해양치유산업 육성 내용이 부각되지 않음

○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일차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나, 국민들의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관광활동 증가에 따라 전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은 시장원리에 근거해서 민간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지만, 민간사업자의 단기적인 자생적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2014~2023)',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18.7.11.)에 근거하여 추진됨

○ 20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으로 판명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생존수영 프로그램은 해양레포츠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 조정을 통해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교육부의 초등학생 전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확대방안 내용과 차별화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6년 국고보조 평가결과에서, 마리나산업 육성을 초기에만 지원할 것으로 판정하였으므로 마리나산업 육성은 민간시장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비할 필요있음

○ 해양관광육성사업 중 해양치유산업은 분리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재편할 필요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당지역의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 지자체의 공모과정과 선정기준이 명확함

- 지자체 보조금 신청시에는 과거 지자체의 자부담 이행 이력, 유사중복 사업여부, 사업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재원분담은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음(해양관광육성 사업의 지자체 분담 비율은 보조금법령에 의거 50%)
- 지자체 매칭비율에 맞추어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년 지자체 교부결정 통보 단계에서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국비 교부를 하고 있음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은 지자체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거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장실사를 거쳐 제전위원회에서 개최지를 선정함
- 해양레포츠 교실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 수요조사 후 일부 사업은 공모로 선정하는데, 사업수행실적, 사업추진계획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 지원함
-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은 지자체 총 수요조사 후 배정된 예산 한도내에서 지자체별 신청 비율을 고려한 균등교부를 통하여 지역별 편중 또는 자의적 지원 가능성을 차단함

○ 민간사업자의 선정 및 교부에 대한 공모과정과 선정기준이 명확함

-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해양레포츠체험교실 등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전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관리, 유지되고 있으며 매년 별도의 관련 지침(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연례적 집행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분할교부, 점검회의, 현장점검, 사후활용(패널티 부과 등) 등의 방안을 사용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 사업비의 집행관리,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사업추진실태점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마련, 시행 중임

○ 보조사업 사업 종료 후에는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보조금 확정 통보 등 사후관리 및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정산처리를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보조사업은 감사인에 의한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부정수급 등의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음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명기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관련법, 국정과제, 관련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 등에 근거할 때 해양관광육성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세부적인 내역사업들이 위의 근거조항이나 계획에 맞도록 배분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어온 관례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적지원 근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함

- 해양관광육성 사업 중 해양치유산업은 분리하여 재편할 필요가 잇음.
-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산,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 등 해양관광육성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역사업의 추가적 발굴이 필요하고, 생존수영교육은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집중하여 사업목적에 맞도록 변경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이 복잡하고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들의 성격에 맞게 분리하여 고유의 목적성이나 정책방향에 맞도록 사업을 재편하도록 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0.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 추진 ·동 사업은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해기사 양성 및 해기사 등 국가자격시험 지원을 통해 선원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우수한 해기인력 육성으로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이 지원이 타당함 ·연수원 운영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 지원방식 이외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9조 및 제10조, 선원법 제118조에 지원 근거(임의규정)를 두고 있음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9조(운영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0조(보조금) 정부는 연수원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선원법>

제118조(정부의 보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7조제1항 및 제15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해기사 양성 및 해기사 등 국가자격시험 지원을 통해 선원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우수한 해기인력 육성으로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이 지원이 타당함

○ 동 사업의 수혜자는 국내외 수출입관련 전체 업체 및 국제해사기구, 해외선사 등 국제업무 관계자 등임

- 전체 선원수(2017년): 60,397명(한국인 선원 58.1%, 외국인 선원 41.9%)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선박관리비, 교육훈련비, 시험집행경비 등을 내역사업으로 구성함

-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우수한 해기인력을 육성함을 사업목적으로 함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사업)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4. 제3호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동 사업의 성과지표 중 인력교육 목표는 높은 달성도를 보이는 반면, 교육생 평균만족도는 최근 3년간 목표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사업 종사자 교육훈련과 해기사 시험 등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해양수산 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약 100만명 실시하였음

○ 세월호 사고 이후 선원의 안전재교육 면제 제도 폐지(선원법 시행규칙 개정, '15.1월)로 매 5년 마다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6~'17년 안전교육수요가 폭증하였으나 2018~'19년부터는 안정화 추세임

구 분	'13	'14	'15	'16	'17
계	63,432	56,441	61,280	81,353	88,326
교육실적	35,613	29,821	32,526	51,248	56,675
시험실적	27,819	26,620	28,754	30,105	31,651

구 분	'18	'19	비 고
계	64,430	65,430	-
교육계획	36,000	37,000	'20년 교육계획부터 정확한 5년 주기 반영 가능
시험계획	28,430	28,430	연간 약 3만여명 응시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국가위탁사무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국가위탁사업으로 보조율이 적용되지 않음

《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	'16	%	'17	%	'18	%	'19	%
계	33,899	100	34,663	100	39,219	100	45,924	100	62,927	100
국고보조	29,844	88	30,473	88	34,928	89	40,923	89	55,805	89
자체수입	4,055	12	4,190	12	4,291	11	5,001	11	7,122	11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됨

- 시장에서 해결할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국가사무 수행기관으로서 운영경비 전액을 국가가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모절차나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월1회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실적 점검, 분기 1회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 연1회 현장점검, 이사회를 통한 예결산 등 보조사업 집행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 이루어지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정상 추진

- 동 사업은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해기사 양성 및 해기사 등 국가자격시험 지원을 통해 선원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우수한 해기인력 육성으로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이 지원이 타당함

3-2 정책 제언

○ 연수원 운영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 지원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본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변경이 필요함 ·본 사업은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와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 사업 등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두 개의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물류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단, 세계은행 발표 국가물류 경쟁력 순위가 2014년 21위에서 2018년 25위로 하락하는 등 국내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국내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동법 시행령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 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제물류사업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외진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화주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근거법 61조 제1항은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거법 61조 제2항은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 단체가 추진하는 국제물류사업 중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국제물류사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민간이 추진하는 국제물류사업의 내용은 근거법 61조 제2항과 연계되어 있어야 함. 본 사업의 내용은 근거법 6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물류사업 중 8. 그밖에 물류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됨
- 법의 내용을 넓게 해석할 때 근거법과 본 사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사업의 내용은 근거법 61조의 제2항의 1~7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한편 물류정책기본법은 국제물류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61조의 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임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해외법인 설립 등 거점확보, 해외 물류시설 개발, 현재기업 M&A 등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 또한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수요, 시기, 사업내용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적정기업 매칭, 공동컨설팅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물류기업 특성 상 특정 지역보다는 전국 단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단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해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

- 관련 법안에 국제물류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정부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가 분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 등 물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함

- 민간기업 영역에 대한 무기한 지원보다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시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등, 일몰을 정해놓고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함.

○ 본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고, 간접 수혜자는 해외 진출 성사 시 파생되는 물류기지 건설, 물품조달 등을 위한 실행 기업으로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넓다고 보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해외진출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과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 사업 등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두 개의 내역사업은 은 물류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분석의 사전 준비단계 비용을 지원하는 공통성을 갖고 있음. '해외 물류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분석' 이라는 목적 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와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해외진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해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이 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임.

- 그런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기업 수 등과 관련된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음

○ 2011~2018년까지 총 55개 기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지원을 하였고, 이 중 투자성사가 이루어진 기업은 23개, 투자가 예정된 기업은 4개로 투자 성공률은 49% 수준임.

- 투자 성공률은 2016년 43%, 2017년 33%, 2018년 43% 수준임

- 이는 2016년 이루어진 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평가 시 2011~2015년까지 3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조사가 완료된 27건 중 15건이 투자성사 또는 예정되어 있어 성공률이 55.6%라고 밝힌 것과 비교할 때, 투자 성공률이 낮아진 것임

○ 해외진출 지원을 받은 기업 중 2014~2018년 기간 해외 진출에 성공한 기업은 37개 중 13개이고, 진출 예정기업은 8개로 성공률은 57%임.

- 2017년은 지원대상 중 진출 성공 혹은 진출 예정 기업의 비중이 38%로 낮았으나, 2018년은 진출예정 기업의 비중이 70%로 높아진 상태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 상 규제완화, 조세지원 등의 정책수단으로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보조사업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이 폐지되어도 재정적 손실이나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민간기업이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만일 기업들이 스스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기초조사보고서에서는 국가지원이 중단되면 중소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 투자 의지 상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국가 지원이 없다면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포기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실제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 능력이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단, 세계은행 발표 국가물류 경쟁력 순위가 2014년 21위에서 2018년 25위로 하락하는 등 국내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국내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기반 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본 사업 이외에는 없어 중복 가능성이 없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지원 338백만원, 화주 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에 204백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총 542백만원을 2019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17년 634백만원에서 2018년 504백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후 2019년에도 50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2016년 17.8%의 예산이 불용된 바 있음. 2016년의 불용은 한진해운 파산신청 등 해운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해운물류시장 악화로 중소 물류기업이 해외진출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서 본 국가보조금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음. 그 외 연도의 경우 예산이 전액 집행되고 있는 바,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정부예산 편성시 보조금 규모 결정을 위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조금 규모 및 보조율을 최종 결정함.

- 본 사업 중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은 예산은 국고 40~70%, 자부담 30~60%로 사업자별 실제지원하는 보조율 결정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원규모, 보조율 등을 결정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능력 등을 검토함

- 1차 서류심사 시 법령상 지원대상 적합여부,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통해 자부담 능력을 심사함

- 2차로 사업제안서 대면 평가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음

○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자 공모, 선정 및 절차를 사전에 결정함

- 위탁기관(민·관합동물류지원센터)에서 공모,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선정, 사업 시행의 과정을 거쳐 집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물류지원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을 준수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짐

- e-나라도움(국고보고금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국고보조금 운영실태를 점검 받고 있으며, 민·관합동물류지원센터는 화계법인의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정산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 시행지침 및 교부조건에 패널티 적용을 명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종료시 정산보고, 반납 등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물류지원센터는 화계법인의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정산업무를 집행하며, 회계검사 결과에 의한 정산결과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 대체로 보조금이 모두 집행되어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준수하여 매년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음

○ 관련 규정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절차가 존재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물류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민간기업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단, 세계은행 발표 국가물류 경쟁력 순위가 2014년 21위에서 2018년 25위로 하락하는 등 국내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국내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진출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과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 사업 등 두 개의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화순항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화순항 사업은 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음 · 보조사업의 예산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 사업 종료 시점인 2020년까지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화순항 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항만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 항만법 제9조 >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439조>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정한다)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및 제10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2조제5항 단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2항, 제77조 및 제82조의 경우에는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 2항 >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보조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들 - 사후환경영향조사, 관공선 부두, 방파제 보강 -은 화순항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화순항 사업은 국가에서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교통시설인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항만교통 인프라 및 국가의 해상치안 확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

○ 화순항 사업은 국가차원인 해상 교통인프라 구축 및 국가의 해상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외 항만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어업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므로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화순항 사업은 증가하는 연안화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국가의 해상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해경함정부두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이는 국가 개발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관공선 부두, 방파제 보강 등 내역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화순항 사업은 2020년까지 화순항 화물선 접안시설, 해경함정 전용부등의 접안시설, 항만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함

○ 화순항 사업은 보조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거 매년 계획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당초에 계획대로 보조사업이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음

- 화순항 사업은 당초 목표기간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 공정률은 66% 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화순항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에서 자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됨

○ 화순항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타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없음

○ 화순항 사업은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준공기간 까지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화순항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공사 중단으로 국가 항만기본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교통인프라 기능 축소 및 상실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제적·물질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화순항 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 관공선 부두, 방파제 보강 등 내역사업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됨

<사업예산 규모>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20,000백만원	13,685백만원	7,000백만원
	100%	100%	100%
자치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20,000백만원	13,685백만원	7,000백만원
	100%	100%	100%

○ 화순항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100% 보조율이 적정함

○ 화순항 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사업기간(중기)에 따른 소요액을 산출하고 적정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작성되고 있다고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는「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의거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던 업무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는 화순항 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보조사업자로 적법하게 선정하였으며 보조금 교부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수부 자체 규정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40호, 2018.09.14.)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는 자체 규정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40호, 2018.09.14.)에서 보조사업 집행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갖추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화순항 사업을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으로 사업 집행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자체 규정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40호, 2018.09.14.)에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

○ 해양수산부에서 화순항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및 회계검사 등 - 을 적절하게 진행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없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순항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점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자체 규정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40호, 2018.09.14.)에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두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화순항 사업은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고, 2020년 사업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예산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 보조사업에서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체 규정이 구비되어 있고, 보조사업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3-2 정책 제언

○ 화순항 사업은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준공시점까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공고(마이스터고)육성
남북경제협력중소기업육성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캐피탈선진화
소공인특화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소상공인창업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지원기반활용(중기부)
시장경영혁신지원
여성기업육성
장애인기업육성
중소기업재기지원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창업인프라지원(제주)
창업저변확대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3.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7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을 판정함.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보기 어렵고, 수혜자의 범위도 한정적임. 특히 장학금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도 없고, 최근 3년간 이노비즈기업 취업 후 1년 내 퇴사율이 평균 39.6%에 달할 정도로 우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목표 달성에 제한적 효과만 보이고 있음. ·우수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확대해 취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동 사업 내용에서 이노비즈기업과 마이스터고 학생 간 사전 매칭, 직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협의 기여금은 장학금 보다는 취업연계 프로그램 내실화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장학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취업 연계 학생 수를 현재 100명 수준에서 400~5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구미전자, 부산기계, 전북기계) 학생과 이노비즈기업(정부에서 인증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 간 사전 매칭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 사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의무규정은 아니며 포괄적 규정으로서 내역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목적이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높지 않음.

- 동 사업은 지원대상이 국립마이스터고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노비즈기업에 취업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이 반드시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 일회성(3회에 걸쳐 1년 내 지급) 장학금 지급이 취업 시 중소기업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중기부 또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노비즈기업이 일반 중소기업 대비 우수하여 기업선택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한다고 답변하였음.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임.

- 동 사업의 수혜대상은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 졸업생과 일부 이노비즈기업에 국한됨. (최근 3년간 취업연계된 이노비즈기업은 125개사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마이스터고 학생과 이노비즈기업 간 취업연계를 위하여 기업모집 ⇨ 기업과 학생 간 사전매칭 ⇨ 사전직무교육 및 현장연수 ⇨ 취업 및 장학금 지급 ⇨ 장기근속을 위한 멘토링 등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의 구성은 체계적이며 내용과 목표 또한 대부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겠음.

○ 다만, 취업 이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수 학생을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조금 지급의 효과는 한정적인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중기부-이노비즈협회-NH농협은행 간 MOU 체결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노비즈기업에 취업한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NH농협은행에서 자체 마련하고 있음.

- 정부 재원은 취업연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 지원되고 있음.

- 만약 장학금 지급이 이노비즈기업 선택의 유의미한 요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결과가 될 것임.

○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시급성이 약하지만 사업이 폐지될 경우 국립공고 취업률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구직자와 중소기업간 인력미스매치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대기업을 선택하려던 학생들이 200~400만원대(실지급액 기준)의 장학금 때문에 중소기업을 우선 선택할 것인지 의문임.

-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도 없고, 1년간 3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함에도 최근 3년간 이노비즈기업에 취업 후 1년 내 퇴사율은 평균 39.6%에 달함.

- 다만, 국립마이스터고 학생과 이노비즈기업 간 취업연계를 위하여 기업모집 ⇨ 기업과 학생 간 사전매칭 ⇨ 사전직무교육 및 현장연수 등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하여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채용연계활동을 통해 국립마이스터고 취업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개선 필요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립마이스터고 졸업생 1인당 실질적 지원규모(300만원) 대비 행정비용(인건비 및 운영비 합계 115만원)이 약 38%에 달함. 예산규모가 크지 않아 행정비용의 비중이 높은 측면이 있음.

○ 장학금은 NH농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대부분 예산은 취업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이노비즈협회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임. 세부내역 중 취업설명회39백만원(6.5백만 x 3개교 x 2회) 및 직장체험캠프 60백만원(600천원 x 100명 = 60백만원)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중기부-이노비즈협회-NH농협은행 간 MOU 체결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노비즈협회 이외 다른 기관은 사업수행이 힘들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적절한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나, 별도 사업 관리 지침 없이 이노비즈협회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중기부는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을 교부하고,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별도 평가단은 두지 않고, 동 사업 담당자가 이노비즈협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정산 중임.

○ 지원액수가 소규모이고, 주로 국립마이스터고 학생과 이노비즈기업 간 취업연계를 위한 채용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별도 사업관리 지침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장(보조사업 집행관리)에 준수하여 연도별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검증결과에 대한 오류 및 누락결과, 조치결과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최근 3년간('16년 제외) 연도별 정산보고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없음.

○ 동 사업은 취업연계를 위한 채용설명회 등 행사성 위주의 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보임. 다만 채용박람회 등 행사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보기 어렵고, 수혜자의 범위도 한정적임. 특히 장학금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도 없고, 최근 3년간 이노비즈기업 취업 후 1년 내 퇴사율이 평균 39.6%에 달할 정도로 우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목표 달성에 제한적 효과만 보이고 있음.

○ 우수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확대해 취업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동 사업 내용에서 이노비즈기업과 마이스터고 학생 간 사전 매칭, 직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협의 기여금은 장학금 보다는 취업연계 프로그램 내실화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장학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취업 연계 학생 수를 현재 100명 수준에서 400~5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구직자와 중소기업간 인력미스매치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대기업을 선택하려던 학생들이 장학금 때문에 중소기업을 우선 선택하지는 않을 것임. 직접적인 장학금 지원보다 우수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확대시켜 취업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목적이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이노비즈기업에 취업한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 조건 없이 1년 내 3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는데, 1년 내 퇴사율이 39.6%에 이르는 상황임.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중소기업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가중하여 지급하는 것이 우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 될 것임.

○ NH농협은행이 장학금 규모 축소를 희망하고 실제 '19년 1인당 장학금 지원 액수가 줄어들었음. 지금과 같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장학금 정책으로는 우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해결할 수 없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여 민간으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남북경제협력중소기업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9.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 추진. ·보조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인정되나 사업 명칭과 내용 사이에 큰 간극 존재하므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명칭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이 탈북민 기업가 육성사업 1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세 사업명칭과 목적,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일부만 연계되어 있는 실정임. ·향후, 성과관리 지표 개선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 근거의 명확성

○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의 경제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토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내용적으로 부분적 근거 있음.

○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중임이 확인됨.

○ 그러나, 세부사업 명칭과 실제 사업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크고 세부사업 명칭 역시 재고할 필요 있음.

- 세부사업 명칭은 남북경제협력 중소기업 육성이고, 사업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기업가 육성에 한정하고 한국의 경제인으로서 정착 지원을 하는 것임.
- 현재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탈북민 기업가 육성사업 1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세사업명칭과 목적,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임.
- 이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폐쇄되면서 개성공단 진출기업 내역사업이 폐지됨에 연유된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재설계하고 합리적 내역설계를 할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사업목적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에서 지원 및 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이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는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운영방식이 교육 및 컨설팅이라는 직접적 수혜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은 북한 이탈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현재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탈북민 기업가 육성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세 사업 명칭과 목적,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임.

- 이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폐쇄되면서 개성공단 진출기업 내역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은 1개로 고정된 데서 연유한 것이므로, 남북관계 완화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상황에 따라 재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1개 내역사업에 대한 설계와 구성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기업의 실태 파악과 현황 조사로 기업 운영 현황파악과 애로사항 파악을 통한 정책 반영 사항 도출로 북한이탈주민기업 육성을 위한 방향 정립
- 창업교육: 북한이탈주민기업 눈높이에 맞는 창업 교육으로 실제적인 창업 여건 보장
- 컨설팅: 북한이탈주민기업가들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과 경영 애로사항 컨설팅을 통한 북한이탈주민기업가들의 정착여건 보장
- 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기업가 육성사업 관리 이외에 상시적인 탈북민 상담창구 역할 수행 및 정부 지원활동.

○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중 '컨설팅 대상기업 매출액 개선 업체 비율(%)'은 그 내용의 일부가 '탈북민 기업 영업 지속률' 지표에 기본적으로 반영되고, 이 지표는 단순 매출액 개선만으로는 성장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를 도전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률에 구간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의 보조사업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존 탈북민을 위해서는 통일부의 사업이 존재하나 탈북민기업 육성을 위한 역량과 여건, 정책적 경험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필요성 인정됨.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 일부 관련 사업 있으나, 전문성과 경험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현재의 사업은 규모의 영세성, 사업 내용의 심층성 부족, 실제적 효과의 의구 등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명칭과 사업내역을 일치시키고 내역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체 예산 규모가 매우 작아 실질적 효과에 의구심이 존재하며, 이 중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지원, 사회통합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됨. 북한이탈주민을 건강한 기업가로 육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내에서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한 정착과 자립을 위한 기회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공모 절차 준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등 사업자 선정 및 교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이 확인됨.

- 사업자 선정은 현장 평가와 대면평가로 이중적 평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사업자 공모 신청 결과 4개 기관이 지원하였고, 최종 엔케이경제인연합회(FNKI)가 선정되었음.

- 보조금 교부 진행은 사업계획마련 →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 → 교부금 신청 → 보조금 교부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인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억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예산 관리 지침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중이며, 이 지침에는 보조사업의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계획, 집행점검이 포함되어 있음.

○ 규정 제32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에 교부 제한 및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추진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됨. 그러나, 실제 부정수급 발생이나 보고, 이에 따른 조치는 없던 것으로 확인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중소벤처기업 보조사업 관리 규정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에 근거하여 회계 감사 및 잔액 반납 규정이 존재하고, 매년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간접보조사업자를 통해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정산 내역을 검토하는 사실 인정됨.

○ 2억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예산 관리 지침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후관리 중이고, 불용액 이자수입 등에 대해 정산하고 반납금('17년 21만원 '16년 4만원) 세입조치 사실 확인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적은 사업에 해당함.

- 예산 규모가 적고 교육 사업 및 컨설팅 등 간접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이 보조사업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예산 교부를 5회에 나누어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실 확인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인정되나, 현재 사업의 목표와 명칭 그리고 실제 내용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므로 현실의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보조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탈북민 기업가 육성사업 1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사업 명칭과 목적,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실정임.
- 이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폐쇄되면서 개성공단 진출기업 내역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은 1개로 고정된 데서 연유한 것이므로, 남북관계 완화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상황에 따라 재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중 '컨설팅 대상기업 매출액 개선 업체 비율(%)'은 그 내용의 일부가 '탈북민 기업 영업 지속율' 지표에 기본적으로 반영되고, 이 지표는 단순 매출액 개선만으로는 성장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를 도전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률에 구간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2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자전거·해양레저산업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본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실적이나 효과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모습을 엿볼 수 있음 ·그러나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범주화하고 범주화한 사업별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내역 등이 제시되고 매년 실시정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사업의 경우도 단일사업이 아니라 약 2~3개 정도의 내역사업으로 나누어서 내역사업별로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 지원기업에 대한 의견청취,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간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문가 간담회나 지원기업 대상 의견청취 등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 당해 사업에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성을 높여야 할 것임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경륜경정 시행령에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출연토록하고 있음

- 경륜·경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제1항은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100분의 17.5를,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100분의 4를 출연토록 하고 있음

○ 출연한 기금은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산업 육성 용도로 활용하도록 함

-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에 따르면 제1항제1호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사용해야 하고 산업발전법 제33조에도 명시되어 있음

○ 이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데에 있음

- 자체평가서에도 정리된 바와 같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득수준 향상으로 친환경 이동수단 및 해양 레저 활동인구가 증가하며 관련분야의 시장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낮은 기술경쟁력과 전문인력 부재, 인프라 부족 등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경쟁력이 낮음에 따라 다른 선진국과 같이 국가에서 관련분야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사업임

○ 본 사업의 수혜범위를 살펴보면 1차 수혜자는 자전거 및 해양레저분야의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넓게는 관련 레저수단의 이용자가 될 수 있을 것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평가항목에서 증빙자료로 제시한 사업시행공고문을 통해서는 내역사업 추진에 따른 본 사업의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정도를 파악할 수 없음

- 즉, 본 사업은 2019년도 예산설명서를 통해 미루어짐작해 보면 기술개발, 맞춤형 사업화로 나누어 예산 산출내역을 작성했는데, 이를 내역사업화 및 구체화해서 목표를 정해두고 매년 추진할 필요성은 있어보임

○ 본 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연구비 10억원 당 특허 출원 건수의 경우 2017년 기준 4.47건으로서 R&D 사업 특허출원 성과평균인 1.58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개발된 기술의 세계최고기술 대비 기술수준 분석결과도 기술격차는 감소한 반면, 국산화율은 증가하여 관련 기술개발로 국내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분석의 신뢰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세계적으로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은 그 규모가 매우 작아서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의 실패가능성이 높고 고비용이 투입되는 기술개발 단계에서 민간 등의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2015년부터 해양레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이 동 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낮아보임

○ 보조사업의 수요 및 시급성 부분은 자체평가서에 의하면 본 사업에의 지원경쟁률이 2018년 기준 19.5:1이고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본 사업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기술수준과 관련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규모는 13.10억원으로서 2019년 기준 기술개발비 13.1억원, 맞춤형사업화 560백만원, 사업운영경비 196백만원으로 구성됨

- 사업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6.5억원, 2018년 13.29억원, 2019년 13.1억원등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 또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가운데 2017년의 경우 2.9%(74백만원)의 불용이 있는바, 결산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가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사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여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상 6번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즉, 민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부분임

○ 본 사업은 궁극적으로 국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함에 따라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2017년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20개 기관 참여연구원 79명 중 14명이 신규채용자로서 약 18%를 차지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공모절차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9조제2항에 명시되어 시행계획의 공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 사업자 선정기준은 동령 제21조제2항에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및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6조는 평가위원회를 두어 평가 대상과제의 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의 구성 등 과제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토록 함

- 보조금 교부기준 및 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9조에 따라 출연금 지급기준을 정함

○ 구체화된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언제 확정되어 언제 교부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즉, 신청 업체별로로 평가점수가 얼마이고, 교부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보조금이 내려갔는지를 판단할 수 없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단계별로 관리감독계획이나 집행점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 평가지침 등에 관련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실제로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조사업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규정 개정 등 개선조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개선의견 청취나 간담회 등이 대부분 연말에 시행됨에 따라 당해 사업에 반영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세미나 등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의견청취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적고, 전문가와 지원기업이 함께 소규모로 자주 개최되는 것이 사업개선을 위해 효과적일 것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요령 등에 명시됨

○ 매년 발생한 불용한 보조금 반환과 이자 반납, 정산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다음 해에 반영조치해야 할 것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2015년도에도 부정수급한 기업이 적발되어 유죄판별을 받음에 따라 2017년에 공문통보를 한 내용이 있는데, 특히 많은 중소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이러한 부정수급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사업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단이 사업을 공모하고 보조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자전거·해양레저산업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본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실적이나 효과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모습을 엿볼 수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범주화하고 범주화한 사업별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내역 등이 제시되고 매년 실시정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사업의 경우도 단일사업이 아니라 약 2~3개 정도의 내역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별로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 지원기업에 대한 의견청취,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간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임

3-2 정책 제언

○ 사업개선의견 청취나 간담회 등이 대부분 연말에 시행됨에 따라 당해 사업에 반영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세미나 등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의견청취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적고, 전문가와 지원기업이 함께 소규모로 자주 개최되는 것이 사업개선을 위해 효과적일 것임

○ 또한 전문가 간담회나 지원기업 대상 의견청취 등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 당해 사업에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성을 높여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7.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일자리 지원과 벤처기업인프라지원, 여성벤처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적절성 확보가 필요함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절차는 마련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보조사업자가 선정되고 있어 선정 과정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보조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보조사업자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다른 단체나 협회들의 지원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한 보조사업자만 지원하는 경우 공모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특정 보조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을 수행할 단체가 많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공동채용,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일자리지원과 벤처정책 개발에 필요한 실태조사, 여성벤처 창업활성화 등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종소기업기본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높지 않음

○ 본 사업은 (1) 벤처기업일자리지원, (2) 벤처기업인프라지원, (3) 여성벤처활성화지원 사업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내역사업들은 추진근거 규정과 연계되어 있어 구체성이 높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담당해야 되지만 경쟁력 제고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일부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목적이 타당함

○ 본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이고 최종수혜자는 잠재적인 벤처 관련 종사자들로 이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벤처기업들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경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 여성벤처기업 확산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내역사업들이 대부분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역량강화교육지원 사업은 벤처확인기업 재직자 입사 1년 미만자를 대상으로 조직원 자세를 비롯하여 실무능력 배양 등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 수료 여부에 따른 고용유지율과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2015	2016	2017	평균
공동훈련 참여자	79.7%	92.4%	85.3%	85.3%
공동훈련 비참여자	-	-	72.2%	-
공동채용 채용자	93.3%	92.4%	95.0%	95.0%

○ 본 사업은 벤처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3개의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역량강화교육지원 사업은 교육 참여자수와 같은 투입지표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등과 같은 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벤처기업의 성장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유사·중복성이 있는 내역 사업으로 판단된 벤처기업마케팅지원을 수출지원사업과 통합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중복 문제가 없다고 판단

- 벤처기업일자리지원 사업은 다른 일자리지원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벤처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조가 필요한 사업이나 여타의 사업들에 비해 시급성이 높지는 않음

○ 본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벤처기업들이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에 구축된 벤처기업 실태조사 등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추가적인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행사성 사업들이 있으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들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벤처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율 100%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과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선정기준, 평가위원회 등과 같은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공모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등 3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어 선정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체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방문점검을 통해서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있으나 집행에 문제가 있어 패널티를 적용하거나 개선조치를 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사업완료 후 정산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을 통해서 자체 검증을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본 사업은 별도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일자리 지원과 벤처기업인프라지원, 여성벤처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보조사업자 공모와 선정과정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여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
- 보조사업을 수행할 단체가 많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벤처캐피탈선진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7.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본 사업은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벤처캐피탈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신규 도입된 투자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성과지표로 교육수료자수나 수료자 중 취업자 비중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고용 유지율 등과 같은 지표를 도입하여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높지 않음

○ 본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5개 내역사업((1) 벤처투자활성화(엔젤투자활성화 + 외국투자기관투자활성화), (2) 창투사전수평가, (3) 벤처투자정보센터, (4) M&A활성화 지원, (5) 투자전문인력양성)은 추진근거 규정과 연계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벤처캐피탈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투자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담당해야 되지만 현재 벤처캐피탈 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일반 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이고 최종수혜자는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민간으로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벤처캐피탈 선진화를 위해 5가지 내역사업으로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M&A활성화 지원은 중기부의 '19년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한 과목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유사사업인 벤처캐피탈 선진화 사업과 통합됨
- 투자전문인력양성 사업은 2016년 국고보조금평가에서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7년부터 폐지되었으나, 구체적인 양성계획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방식을 변경하여 2019년 신규로 도입함
- 투자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시 도입된 사업으로 양성교육 계획과 과정, 모집절차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 현재 계획된 투자전문인력양성사업은 대졸이상을 대상으로 이론교육(2개월)과 인턴(3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 선발과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벤처캐피탈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등 이전 사업과는 달리 실효성이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함

○ 대부분의 내역사업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투자전문인력양성 사업은 '19년 신규사업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보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벤처캐피탈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보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조금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 본 사업은 유사·중복 문제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본 사업은 벤처캐피탈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보조가 필요한 사업이나 여타의 사업들에 비해 시급성이 높지는 않음

○ 본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되었던 네트워크나 DB들이 유지되지 않게 되고 추후 재구축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행사성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내역사업들이 있으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조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이 있다고 봄

○ 내역사업들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업비를 적정하게 구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투자(주))에 대해 국고 보조율 100%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내역사업별로 공모절차, 선정절차, 교부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벤처투자활성화)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탁
* (창투사전수평가) 한국벤처투자(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탁
* (벤처투자정보센터)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탁
* (M&A 활성화지원)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투자전문인력양성)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 3과 시행령 제32조에 제1항 제1호에 근거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 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집행점검과 집행관리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집행현황 점검을 연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의 패널티 적용이나 개선조치가 발생하지 않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매 분기별 집행에 대해 검사와 정산을 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벤처캐피탈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신규 도입된 투자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 투자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성과지표는 단순히 교육수료자 수나 수료자 중 취업자 비중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고용 유지율 등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기벤처부
사 업 명	소공인특화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지원사업들 간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내역사업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함 ·소상공인창업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소공인특화지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들 간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일부 내역사업(경영교육 및 컨설팅, 창업지원 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비롯한 컨설팅 지원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동법에서는 국가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원목적 및 지원대상 등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함

○ 동 보조사업의 각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동법 제18조)

>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동법 제15조, 제17조)

>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성장희망사다리 구축(동법 제14조)

>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품·기술 가치향상(동법 제9조)

>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소공인 집적지역(밀집지역) 활성화 및 경쟁력·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공인 집적지역 내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공동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판매촉진, 제품·기술 개발(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제조산업 등 국가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은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중요함

○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인정됨

- 공약사항(118P) : 중소제조업·소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밀집지역 환경 획기적 개선 등 종합 지원 대책 마련
- 국정과제(28-2) :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를 위한 소공인 종합지원대책 마련(숙련기술 소공인 양성을 이한 종합지원 강화)

○ 동 보조사업은 특정 지역 소공인에 대한 육성·지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33.2만개 소공인('15년 경제총조사 기준)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혜범위는 국가적으로 광범위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소공인의 성장·발전 및 지속성장을 위한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기반 확대, 개별 소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각 내역사업은 “성장기반 설치·운영”과 “개별 기업지원”의 두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 근거 법령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추구하는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경쟁력 향상의 정책목적 달성에 적합함

- 성장기반 설치·운영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개별 기업지원 : 제품·기술 가치향상,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양호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소공인의 성장·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소공인 지원기업 매출액 증가율을 설정하여 목표 대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 마케팅 및 판로개척 컨설팅 이외에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제품-기술 가치향상 등 제조원가 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는 지원사업의 성과도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매출액 증가율 이외에 순이익 증가율도 함께 측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고함

○ 동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비롯한 컨설팅 지원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소공인의 영세성, 낮은 재무건전성·금융 신용도 등을 고려할 때 소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이 가장 효과적임

○ 또한, 소공인은 자율조직 형성이 미흡하고, 지자체와 연계가 가능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기반시설은 지자체와 기 연계하고 있으나 정책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실정으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효과적임

○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큰 유사·중복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및 지원프로그램 면에서 명확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있음

○ 소공인은 제조업 全 과정에 연관된 산업의 뿌리로서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생태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지원사업들 간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내역사업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함

- 소상공인창업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소공인특화지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들 간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일부 내역사업(경영교육 및 컨설팅, 창업지원 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은 없으나 내역사업별로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66~100%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보조율 100%, 공동기반시설은 보조율 66%, 제품·기술 및 판로지원은 보조율 80%을 적용하고 있음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경우 운영기관이 전용 사무·상담 공간을 보유하고 사무가구·기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자율출자금을('18년 기준, 전체 사업비의 25%)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100% 보조금 지원은 아님

○ 동 보조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동 종합계획에 따라 중기(5개년) 재정소요계획을 적정히 추계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균형있게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일정 부분 기여함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2곳 추가 선정('18년 2차)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화센터 운영기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5:5 비율로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공고 절차, 선정기준, 교부조건 등을 담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역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라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마련하고 있음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 현장, 발표 등 선정평가 →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이라는 선정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적절성 검토 후 일시적 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교부(약 70%) 후 중간점검을 통해 적합 판정에 한 해 2차 교부(잔여 약 30%)를 실시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내역사업별 지침에 점검방법, 점검시기 등 적법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문제사항 발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됨

○ 보조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소공인지원 보조사업 집행 지침에 의거 중간점검, 수시점검 및 현장점검, 진도점검, 사업비 관리, 사업수행,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제재조치 등을 시행함

○ 실집행 현황은 2017년(34,428백만원, 96.9%) 2018년(33,451백만원, 98.4% 12.14기준)로 양호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 2017년의 실집행이 일부 낮은 사유는 선정산 후집행 방침으로 인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공인이 선 지출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불용액 수준이 일부 높아졌던 상황으로 판단됨

- 이에, 집행방식을 선지급 후정산으로 '18년 변경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한 바 있음('18년 12.14 기준, 98.7 실집행)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별 운영지침에 사후관리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정산하는 등 투명성, 신뢰성도 확보하고 있음

○ 사업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정산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이자 등에 대한 사업비 반환,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도 추진하고 있음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차년도 운영 금지 조치 : '17년 3곳(광양 옥곡 금속가공센터, 강진 청자센터, 서울 성수 수제화 센터)
- 보조사업 관련 불인정 금액 : '16년, 359백만원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체계를 통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 낮음

○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시, 관련 교육 실시, 운영지침 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지침개정을 통해 방지노력을 하고 있음

○ 사업참여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정수급 발생 시 사업비 환수가 용이토록 하였으며,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선정 기업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지침을 안내하는 등 경각심 고취 노력을 하고 있음
- 다만, 교육, 지침 안내 수준의 노력 이외에 수혜 소공인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 및 각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중소·제조산업 등 국가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은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중요하며, 현 정부의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인정됨

○ 각 내역사업은 "성장기반 설치·운영"과 "개별 기업지원"의 두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 소공인 성장·발전을 위한 경쟁력 향상의 정책목적 달성에 적합함

○ 소공인의 성장·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소공인 지원기업 매출액 증가율을 설정하여 목표 대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 소공인은 제조업 全 과정에 연관된 산업의 뿌리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소상공인창업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소공인특화지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 간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일부 내역사업(경영교육 및 컨설팅, 창업지원 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교육, 지침 안내 수준의 노력 이외에 수혜 소공인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3-2 정책 제언

○ 마케팅 및 판로개척 컨설팅 이외에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제품-기술 가치향상 등 제조원가 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는 지원사업의 성과도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매출액 증가율 이외에 순이익 증가율도 함께 측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고함

○ 동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비롯한 컨설팅 지원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소상공인 창업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내역사업들(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 상권정보시스템사업,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소상공인사이버평생교육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에 효과적이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정부지원금 2,000만원을 받은 창업자와 생활혁신형창업 성공불융자 2,000만원을 받은 창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필요함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은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의 '정책자금 운영지원'과 마찬가지로 융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내역사업이므로 두 사업의 통합을 고려하기 바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9조, 제13조 >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나. 사업장의 소재지
   다. 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사이버평생교육원, 상권정보시스템운영,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은 각각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지원) 제1호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제2호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에 근거함

- 소상공인사이버평생교육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4호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원) 제1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에 근거함

- 상권정보시스템운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근거함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근거함

  * 생활혁신형 창업은 고급기술이 필요 없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생활 밀착형 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의미함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제 3조 1항)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국정과제 사업이며(국정과제 번호 28-2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 소상공인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제고 및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의 직접수혜자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 내역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수혜자 수가 '18년 기준으로 120여만 명을 넘어서 수혜자 범위가 광범위하며, 보조사업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각각의 내역사업별로 명확하고, 소상공인의 총매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외부효과를 지님

-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규모는 2016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의 85.3%(314만개), 전체 종사자의 36.4%(620만명)에 달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소상공인 창업지원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사이버평생교육원',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으로 각각의 내역사업들은 보조사업의 목표인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국내·외 창업교육, 신사업 아이템 제공, 상권정보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됨

○ 소상공인 창업지원의 내역사업들은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신사업아이디어 발굴, 소상공인 창업교육(일부 소모성 체험비 외 국비무료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며, 6개 지역(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대전)에서 300명을 선발하여 6개월 동안 이론(2개월) 및 체험교육(4개월)을 실시하고 17개 체험점포(꿈이룸)를 운영함

- 소상공인사이버평생교육원은 2018년 신규 사업이며, 스마트폰 확산 등 정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들이 상시 접근이 가능한 원격 교육 제공 시스템 구축・운영함

- 상권정보시스템은 창업과밀지수 개발 및 경고등 표시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액, 입지, 점포수준을 분석하는 점포평가 서비스 무료 제공함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은 2018년 신규 내역사업이며, 고급기술 필요 없는 생활분야 틈새시장의 생활혁신형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계형 업종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멘토링하고, 성공불 융자(최대 2천만 원) 지원 후 성실실패 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며, 본 사업에서는 창업자 발굴 및 멘토링을 시행함

○ 보조사업은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내역사업별로 계획한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

<내역사업 수혜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사 업 명	'17	'18	'19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54	307	300
○ 소상공인사이버평생교육원	-	-	200,000
○ 상권정보시스템	1,090,586명	1,200,000	1,330,000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	4,188	3,000명
○ 소자본해외창업	31	-	-
소계	1,090,971	1,204,495	1,533,30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민간시장에서 수행이 가능하지 않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민간기관이 자체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단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국내·외 창업교육, 신사업 아이템 제공, 신사업 사업화 지원 및 상권정보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없음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은 성공불융자 2,000만 원을 지원받은 창업자가 3년 거치 후 융자금 상환 시점에 고의로 사업의 축소 또는 폐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생활혁신형창업 성공불융자는 타 융자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상환 시점에서 고의적인 폐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제조업의 고용감소와 서비스 고용이 증가하는 탈산업사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폐업이 증가하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함

○ 소상공인 창업지원이 폐지되는 경우 소상공인들 간 과당경쟁과 특정 업종의 집중 등으로 영업이 위축되고 경쟁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어 본인 및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직접 비용,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비 규모를 검토하고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음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13,130백만원	17,100백만원	14,100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13,130백만원	14,001백만원	14,117백만원
	%	%	%

<내역사업별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명	산출근거	
	'18예산	'19예산
○ 소상공인 창업지원	**171억원**	**141억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10억원(300명×037억원)	102억원(300명×034억원)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31억원(5,000명×0.62백만원)	19억원(3,000명×0.62백만원)
- 상권정보시스템	20억원(기능고도화 7억원, 유지보수 5억원, 연구조사 8억원)	14억원(기능고도화 3억원, 유지보수 4억원, 연구조사 7억원)
- 소상공인사이버 평생교육원	10억원(플랫폼 구축 7억원, 콘텐츠개발 3억원)	6억원(유지보수2억원, 콘텐츠개발 4억원)

○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편성지침에 의거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으로서 기준보조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적용에 해당이 없으며,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이 합리적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적단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27호에 보조금 교부절차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적합성, 적정성을 갖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적절하게 교부하고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상권정보시스템을 직접 수행함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추진체계

추진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① 교육생 모집공고(중기부, 소진공단 본부)	• 교육생 모집 (중기부·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매체 홍보 등)
② 신청접수(6개 지역본부)	• 각 사관학교별 온라인 신청접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③ 교육생 선발(지역본부, 각 위원회)	• 서면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교육생 선발
④ 이론교육 수행(지역본부)	• 각 사관학교별 이론교육 수행
⑤ 점포체험교육 · 멘토링 수행 (지역본부)	• 이론교육 수료생 중 지역별 체험점포에서 수행
⑥ 사업화 지원 모집공고 (공단 본부)	• 사업화 지원대상자 모집 (e나라도움 공고)
⑦ 신청접수 (지역본부)	• 각 지역별 온라인 신청접수 (e나라도움 신청접수)
⑧ 사업화 지원대상자 선발 및 협약 체결(지역본부)	• 지역별 사업화 지원대상자 선발 및 협약 체결
⑨ 정부지원금 지급/사업화 수행(지역본부/지원대상자)	• 지역별 정부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지원대상자 사업화 수행
⑩ 사업화 지원 정산 및 점검 (지역본부 · 센터)	• 사업화 지원대상자별 정산 및 현장점검 실시
⑪ 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 (지역본부/지원대상자)	• 정산 및 점검결과 통보(지역본부) •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 반납 및 정보 공시(지원대상자)
⑫ 결과보고 (지역본부→본부→중기부)	•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추진실적, 만족도 등을 성과를 종합하여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사이버평생교육원과 생활혁신형창업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수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사업 추진체계

추진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① 아이디어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자 모집 (중기부·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매체 홍보 등)
②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톡톡' 온라인 신청접수
③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전문 민간기관)	•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구성 • 생활혁신형창업 아이디어 서면 · 면접 평가 및 선정
④ 컨설팅 수행(필요시) (전문 민간기관)	• 멘토링단을 활용하여 맞춤형 창업 멘토링 지원 •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시 사업계획서 등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 컨설턴트 매칭 및 멘토링 수행
⑤ 최종 선정결과 통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 공지
⑥ 결과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추진실적, 만족도 등의 성과를 종합하여 사업결과 보고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27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운영지침",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운영지침"에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조금 집행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소상공인사어버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전문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집행정산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재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적정하게 수행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27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운영지침",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운영지침"에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이 종료한 후 집행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을 국고 반납조치하고 있으며, 간접보조사업자 및 위탁업체의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수시점검, 외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집행함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에서 정부지원금(2,000만원)을 받은 사업화 지원대상자별 정산 및 현장점검 실시하고,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 반납 및 정보를 지원대상자에게 공시하여 사후 처리함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운영지침>

제46조(성공·실패의 판단) ① 대출 실시 3년 후,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심사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성공·실패 여부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성공은 다음 각 호의 경영지표 기준에 의해 판단하며, 실패의 경우 성실실패와 고의실패로 구분한다.
1. 사업소득이 임금근로자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
2. 평균매출액이 해당 업종 평균매출액 이상인 경우
③ 지원대상자가 성공으로 판정 받았을 시에는 정책자금 대출 상환연장, 추가대출 지원, R&D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성실실패로 판정 받았을 시에는 상환 면제를 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자연재해
3.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⑤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고의실패로 판정 받았을 시에는 전액 상환 및 3년 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등 총괄기관 및 주관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기·위장폐업
2. 창업자의 귀책사유(유학, 취업 등)에 의한 폐업
3. 위계에 의한 실패(허위자료제출에 의한 고의실패 유도) 등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에서 융자 3년 거치 시점이 종료하면 사업의 성공 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고의실패로 판정 받았을 시에는 전액 상환 및 3년 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등 총괄기관 및 주관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융자를 받은 창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의 실패를 방지하기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에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2건이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정산 시 고의 누락과 부정 처리에 대한 제재 및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를 시행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수급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불시점검 모니터링 실시, 사업 참여 제한기관 리스트 공유, 부정수급자 고발센터(On-Off라인)를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방지대책을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음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과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운영지침"에서 사업비 정산, 최종보고, 제재,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특별히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융자를 받은 창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3년 거치 후 융자 상환 시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함

○ 보조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상권정보시스템 사업,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소상공인사이버평생교육원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사업들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에 효과적이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생활혁신형창업 융자에서 창업자에게 2,000만원을 성공불융자로 지원하는 것은 타 융자사업과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며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에서 창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에서 내역사업별로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적절하게 관리함

3-2 정책 제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에서 창업자에게 정부지원금 2,000만원을 지원한 후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생활혁신형창업 성공불융자 2,000만원을 지원받은 창업자가 3년 거치 후 융자금 상환 시점에 고의로 사업의 축소 또는 폐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에서 창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은 성공불융자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내용이 유사한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의 '정책자금 운영지원'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소상공인성장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지원사업들 간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내역사업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함 ·소상공인창업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소공인특화지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들 간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일부 내역사업(경영교육 및 컨설팅, 창업지원 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동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및 협업 컨설팅 지원 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기본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등의 정부 지원 근거를 밝히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밝힘

○ 동 보조사업은 '19년 예산안 기준, 소상공인경영교육 및 컨설팅,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중소슈퍼지원, 유망프랜차이즈육성, 업종별경쟁력강화, 소상공인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등 총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관련 법령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소상공인경영교육 및 컨설팅,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중소슈퍼지원, 소상공인제품 홈쇼핑 입점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둠

- 유망프랜차이즈육성의 경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둠

- 업종별경쟁력강화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둠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 및 컨설팅, 조직화·협업화,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국가 전체 사업체 중 차지하는 높은 비중 및 국가경제 영향력과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취약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됨

○ 현 정부 국정과제인 “28-2: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에 「공동판로, 공동 R&D 지원 및 협동조합 규모화·네트워크화 촉진」, 「중소슈퍼 협업화 성공모델 육성 및 확대」 등이 포함되어 동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확인됨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소상공인으로서 ’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총 313.8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85.3%이며, 종사자는 620.2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수혜범위가 넓으며, 이로 인한 간접적 파급효과가 특정지역 또는 단체의 범위를 넘어 국가 전체적으로 광범위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속성장과 자생력 제고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니즈 및 애로사항 평가를 기초로 각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 국정과제(28-2: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의 원활한 이행과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 조직화·협업화,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감 있게 내역사업이 구성됨

○ 사업의 목적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업체 매출증가율, 비나들가게 평균 매출액 증가율 대비 나들가게 평균매출액 증가율 차이 등 두 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 합리적인 준거지표를 제시하여 성과목표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 있음

- 예산 비중이 큰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나, 소상공인 경영교육 및 컨설팅,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등 중요한 내역사업의 성과도 함께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및 협업 컨설팅 지원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최근 자영업자 경영상황 악화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 증가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특정 업종 집중에 따른 자영업자간의 과당경쟁에 기인한바 크므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진입방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크지는 않으나, 과거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였다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소공인특화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가 필요함

-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도시형소공인집적지 내 소공인으로 특화되어 있어 동 보조사업과의 차별성이 있기는 하나, 동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에도 소공인이 포함되어 있고 경영교육 및 컨설팅, 공동장비·시설지원, 협업화지원 등 프로그램 내용 상 일부 중복성도 발견되는 바, 두 사업 간의 지원범위 재조정 등 사업내용 및 예산 효율화를 위한 검토 필요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지원사업들간의 유사·중복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위탁사업자 선정·심사시 소요비용, 관리·감독 비용 등의 행정비용은 보조사업비의 5%이하로 적정한 수준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지원사업들 간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내역사업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함

- 소상공인창업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소공인특화지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들 간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일부 내역사업(경영교육 및 컨설팅, 창업지원 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은 없으나 내역사업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중기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며, 5년 단위의 재정소요액을 적정하게 추계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으로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의 이익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운영으로 고용 창출 등 공공성을 강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적단체이며, 동법 제17조 제6항에 의거 정부는 공단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동 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15.1)됨에 따라 동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법적·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적단체이며, 정부는 재단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동 재단은 수·위탁기업간 거래 공정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적단체이며, 동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법적·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각 내역사업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통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보조금 집행정산을 통해 목적외 사용 등 부정집행금액에 대하여 환수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위탁사업자에 대하여 집행정산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재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별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동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을 국고 반납조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수혜자에 대한 지원방식이 직접 또는 간접지원 형태로, 직접사업은 철저한 보조사업자 선정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간접지원 사업은 부정수급 발생 빈도가 낮음

- 간접보조사업자 및 위탁업체의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수시점검, 외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부정수급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간접보조자에 대한 불시점검 모니터링 실시, 사업참여제한 기관 리스트 공유, 부정수급자 고발접수창구(On-Off라인)를 운영 중임

○ 다만, 수혜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기본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관련 법령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소상공인이 국가 전체 사업체 중 차지하는 높은 비중 및 국가경제 영향력과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취약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 “28-2: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와의 연계성이 확인되고 직간접적 파급효과가 특정지역 또는 단체의 범위를 넘어 국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소상공인창업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소공인특화지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 간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일부 내역사업(경영교육 및 컨설팅, 창업지원 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수혜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3-2 정책 제언

○ 합리적인 준거지표를 제시하여 성과목표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 있음

○ 예산 비중이 큰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나, 소상공인 경영교육 및 컨설팅,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등 중요한 내역사업의 성과도 함께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소상공인지원인프라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7개 내역사업들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내역사업은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소상공인주간 활성화의 내내역사업인 기능경진대회의 참여단체 수와 참가자 수가 작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서 내내역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 근거가 구체성이 부족함 · 기능경진대회에서 다양한 업종단체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연합회 단체회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가입단체 수를 늘리고 회비 금액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사업비 자부담율 설정을 고려하기 바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보조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타당성을 지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 및 개발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은 ①소상공인포털, ②소상공인주간활성화(구.소상공인네트워크구축), ③정책조사연구, ④소상공인연합회지원, ⑤정책자금 운영지원('정책자금지원성과 향상', '금융관리시스템기반구축' 2개 내역사업 통합), ⑥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 ⑦소상공인지능형서비스지원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법적 연계성이 높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국정과제 28번(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 ②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은 2016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의 85.3%(314만개), 전체종사자의 36.4%(62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보조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총매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외부효과를 지님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소상공인지원 인프라 사업의 내역사업들 ①소상공인포털, ②소상공인주간활성화(구.소상공인네트워크구축), ③정책조사연구, ④소상공인연합회지원, ⑤정책자금 운영지원('정책자금지원성과 향상', '금융관리시스템기반구축' 2개 내역사업 통합), ⑥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

⑦소상공인지능형서비스지원 - 은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이라는 세부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 소상공인지능형서비스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 내역사업임

○ 보조사업에서 시행하는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소상공인 포털은 소상공인별 1:1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 및 경영 지원을 목표로, 소상공인 각자의 창업단계 및 현황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성공사례, 법률, 조사연구, 뉴스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함

- 소상공인 주간 활성화는 법정 기념일인 소상공인 주간 및 '소상공인의 날' 활성화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표로 소상인대회(우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발전유공자, 단체 등을 포상)와 업종별 우수기능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함

-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는 소상공인 실태파악,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정책현안조사 등을 실시함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은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업종・이슈별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을 목표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함

- 정책자금 운영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을 목표로 심사전문인력 인건비, 신용정보이용·현장실사·사후관리멘토링, 금융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을 지원하여 사업내용과 목표가 명확함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19년 신규사업)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QR키트 보급, POS기기 업그레이드, 공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함

- 소상공인 지능형 서비스 지원('19년 신규사업)은 지능형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목표로 챗봇 서비스 구축, 연구조사, 공모전, 데이터구입, 서비스모형 개발 등을 제공함

○ 소상공인지원 인프라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내역사업들이 집행되었으며, 소상공인주간 활성화에서 일부 내내역사업은 사업 개선이 필요함

- 기능경진대회는 참가단체가 '16년 8개 단체에서 '18년 11개 단체로, 참가인원은 '16년 3,989명에서 '18년 6,878명으로 72.4%(2889명)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참가 단체 및 인원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다만 기능경진대회 만족도가 '16년 84.1점에서 '18년 87.9점으로 높아지는 등 사업 효과가 향상되고 있고, 기능경진대회 수상자들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이 수여되어 이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참가 단체의 사업비 자부담율 인하 등을 통해 사업 개선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금 외 다른 정책수단이 없으며 민간단체의 자체 수행이 불가능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적 정책대상으로 하는 주관부처로서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타 보조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음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중요성과 지금까지의 정책성과를 고려할 때 보조사업을 연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요가 존재함

- 소상공인 주간 활성화 사업에서 소상공인 유공자 포상경쟁률(3.8:1)과 기능경진대회 포상률(1.36:1)이 높지 않지만, 사업 개선을 통해 참여 단체 및 인원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 단체(83개 소상공인 업종단체 가입)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소상공인회연합회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제안하도록 하여 매년 10여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관련부처 등에 전달하여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보조사업이 폐지되면 소상공인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고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소상공인지원정책이 매몰 비용화 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구분되며, 내역사업별로 보조금 규모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보조사업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경상보조	7,807백만원	11,106백만원	17,006백만원
		100%	100%	94.8%
	자본보조	-백만원	-백만원	940백만원
		-%	-%	5.2%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7,807백만원	11,106백만원	17,946백만원
		100%	100%	100%

-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소상공인지능형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챗봇서비스 구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390백만원),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550백만원)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지원규모가 적정함

- 2019년 신규내역사업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은 인프라 구축 4,500백만 원(QR키트 보급) 2천원×100만개 = 2,000백만원, (보급형단말기) 50천원×50%×5만개 = 1,250백만원, (POS기기) 10천원×12.5만개 = 1,250백만원) 공동마케팅 1,500백만원(10개 프랜차이즈·협단체 등을 지원 150백만원×10개) 공동마케팅 1,500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지원규모가 적정함

○ 본 사업에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과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하여 정액보조금 방식을 취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 관리법」의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보조금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준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적절하게 선정하여 재원을 교부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집행관리체계 및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별로 보조사업의 실 집행현황, 단계별 집행현황 점검 및 개선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내역사업의 집행관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약정을 통해 관리체계 마련하고 재정집행 현황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실시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보조금 교부요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보조금 집행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중소벤처기업부는「보조금 관리법」의 정산 절차를 준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보조금 반환,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보조금 정산, 반환, 회계검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발생 건수가 없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은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함

○ 내역사업들은 소상공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주간 활성화 사업에서 시행되는 기능경진대회 사업은 참여단체와 참여인원 수가 제한되어 사업 개선이 필요함

○ 보조금 규모는 내역사업별로 사업비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사업비를 적정하게 구성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연합회지원 사업비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관리함

3-2 정책 제언

○ 소상공인주간에 실시되는 기능경진대회에 다양한 업종 단체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단체의 자부담율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소상공인연합회 단체회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단체 수를 늘려서 연합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회비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사업비 자부담비율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람

○ 2019년 신규 내역사업(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 소상공인지능형서비스지원)은 평가대상이 아니지만, 소상공인지능형서비스지원에서 추진하는 자본보조(940백만 원-챗봇서비스 구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사업비는 사업추진 실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사업예산에서 선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수출인큐베이터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세부사업은 '정상 추진'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는 내역사업 중 창업진흥원에 의뢰한 글로벌혁신성장센터 1개소(이스라엘) 운영 사업(892백만원)에 해당됨 - 글로벌혁신성장센터 3개소를 '19년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창업위주의 이스라엘 글로벌혁신성장센터 운영을 창업진흥원에 의뢰함(1년차 사업) ·단, 향후 3년간('19-'21년) 창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시범운영하되, 이후('22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권장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세계경제의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고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증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수출BI 운영비 지원 및 글로벌혁신성장센터 운영비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사업내용 관련 법적근거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사업) 등

○ 본 세부과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운용 추진지침'을 운용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 40-4번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와 관련성이 높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속에서 수출 초기 기업의 진출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본 세부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및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이며, 이를 통하여 국가 전체 경제의 활력을 도모함으로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인 수혜자로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의 목표는 세계경제의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내용 및 예산 또한 수출인큐베이터 및 해외 신규센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전액 활용하고 있으므로, 사업내용 및 예산이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평가됨

구분	'15년	'16년	'17년
국가전체 수출증가율	-8.0	-5.9	15.8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수출증가율	-3.7	1.7	23.4

○ 본 보조사업은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목적 : 수출 초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정착 지원
■ 대상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대상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 도매 및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현지 사무공간 제공, 마케팅 지원 등
■ 지원체계

○ 본 세부사업은 과거 4년간의 재정집행을 보면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입주기업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입주기업의 수출 성과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후 매출액 11.5%, 수출계약 체결건수 평균 12.8% 증가 등 전반적인 입주기업의 경영성과 제고

(단위 : 억/건)	입주 전 평균값(a)	입주 후 평균값(b)	평균값 증가율(%)
총 매출액	303.6	338.4	11.5%
수출상담	80.8	108.1	33.8%
수출계약 체결	42.5	48	12.8%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기능 및 재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됨

- 민간경상보조는 내역사업 중 창업진흥원에 의뢰한 글로벌혁신성장센터 1개소(이스라엘) 운영 사업(892백만원)에 해당되며, 해당 내역사업은 정상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혁신성장센터 3개소를 '19년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창업위주의 이스라엘 글로벌혁신성장센터 운영을 창업진흥원에 의뢰함(1년차 사업에 해당)

- 단, 향후 3년간('19-'21년) 창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시범운영하되, 이후('22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권장함

○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독자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최초로 '9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유사사업으로 코트라의 지사화 사업이 있으나, 성격이 상호 다르며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구 분	수출인큐베이터(중기부)	해외지사화사업(산업부)
사업기간	'98년~계속	'00년~계속
지원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7, §7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외무역법 §4, §8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도 포함
지원내용	직접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및 세무·법률 등 자문 * 12개국 20개소 276개실	KOTRA 해외무역관(122개)을 활용한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등 수출성약 지원
수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 본 보조사업의 시행효과 및 입주실적,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본 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 폐지시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은 제약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이 자체진출 할 경우 연평균 186천불(약205백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지원을 받을 경우 연평균 90천불(약99백만원) 소요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는 인큐베이터 운영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예산은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됨

- 사무실 임차료 및 현지 채용직원 임금 등의 고정성 경비 및 입주기업지원사업을 위한 수출인큐베이터 현지 운영 경비를 위해 보조금 대부분을 집행함

-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글로벌혁신성장센터 운영 내역사업은 '19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2백만원 수준임

○ 본 사업은 일반 민간기업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준 보조율 제약이 없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며, 민간경상보조에 해당되는 내역사업인 이스라엘 글로벌혁신성장센터는 창업진흥원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중앙부처(중기부)에서 2년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 관리 등의 종합감사 시행,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운영주체(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보조금 운영기관(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에 대한 전체적 감사 시행, 매년 국회 예산 결산을 통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함

○ 사업 운영실적 및 진행현황을 정기적,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황보고(매월), 내부 심사분석(연 2회), 운영성과 분석 연구용역 및 만족도조사(연 1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및 개선조치를 단행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추진지침에 의거, 코트라는 예산관리, 정산, 자산 관리 등의 책임을 지고 중진공은 코트라의 보조금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진행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위해 허위자료 작성 시 시정요구 및 경고 절차를 마련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발생사례 없음

○ 부정수급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점검대책 마련·운영 중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세계경제의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고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증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명확함

○ 민간경상보조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은 창업진흥원에 의뢰한 글로벌혁신성장센터 1개소(이스라엘) 운영 사업(892백만원)으로 정상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혁신성장센터 3개소를 '19년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중 창업위주의 이스라엘 글로벌혁신성장센터 운영을 창업진흥원에 의뢰함(1년차 사업)

3-2 정책 제언

○ 향후 3년간('19~'21년) 창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시범운영하되, 이후('22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권장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수출지원기반활용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4.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해당 사업은 정상 추진 사업으로 평가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해외마케팅 서비스 공급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산출 중심의 지표를 통해 성과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업의 목적, 성과 관리, 집행 및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나 내역 사업의 통합과 바우처 방식으로의 지원 전환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제품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

- 동법 제26조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해당 하는 사항으로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2018년 내역 사업인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사업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의 수출바우처 사업의 내용은 위의 법률 조항을 통해 명시된 것으로 판단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해외마케팅 서비스 공급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공약사항, 국정과제, 경제혁신3개년계획 등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나 사업 수행기관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목적 달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의 파급 효과가 기대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은 2019년부터 수출바우처로 단일화되는데 이는 2018년 이전 내역 사업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한 조정이라고 판단됨

- 투입 지향의 성과 지표가 아니라 사업의 산출을 중심으로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사업의 집행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표 달성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연도	지원기업과 전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 차이(단위:%p)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비율(단위:%)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실적	달성도(%)
2016	신규	1.6	-	32.7	33.9	103.7
2017	2.4	4.9	204.2	32.7	39.1	119.6
2018	3.2	지원 중	지원 중	35.1	지원 중	지원 중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내역 사업이 구성된 해당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부처별 사업은 통합 공고를 통해 동시에 수혜기업을 선정하며 선정 후 바우처 운영위원회를 통해 동일기업이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이를 통해 부처별 여러 사업에 대한 기업의 중복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부처별 지원 대상 및 정책목적에 따라 차별화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함

○ 국가의 경제적 구조와 경제적 발전의 필요성,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정 지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정소요액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113,341	109,918	104,422	73,095	36,548	
'18~'22		109,918	109,918	109,918	109,918	109,918

- 50~70%로 책정된 보조율은 수익자 부담과 사업 수행기업 및 기관의 능력을 원칙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수출지원기반활용 통합 관리지침 및 각 사업별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위의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후 교부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바우처를 발급하는 등 적절히 재원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련 법률 및 시행령과 수출지원기반활용 통합 관리지침 및 각 사업별 운영지침 등의 규정에 의해 사업별로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정산,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자체점검, 기획재정부 핵심사업평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제재 등의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며 사업종료시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통합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보조사업 불인정 조치 진행하는 등 적정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규정에 따라 정산 및 회계감사,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사례는 없으나 수행기관이 타 기관 공표 내용을 표절하여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 3년 참여제한 조치를 한 사례가 있음

- 수출지원기반활용 통합 관리지침 및 각 사업별 운영지침을 통해 부정행위 제재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하고, 통합 점검, 최종 정산 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적발 사례는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의 관리 체계를 적절히 구축하고 있음

- 2019년 부정행위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부정행위 신고 체계를 갖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 수행기관 추가 등 점검 대상도 강화하고, 적발시 상시 공표하는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해외마케팅 서비스 공급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산출 중심의 지표를 통해 성과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사업의 목적, 성과 관리, 집행 및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국가의 경제적 구조와 경제적 발전의 필요성,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어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목적, 성과 관리, 집행 및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음

- 내역 사업의 통합과 바우처 방식으로의 지원 전환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시장경영혁신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을 판정함. ·꾸준한 전통시장 육성 정책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객관적 성과지표들이 존재함. ·다만, 지속적으로 유사한 지원이 계속되어 왔고 사업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므로 지원규모가 유지되거나 확대될 경우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낳을 우려가 있음.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활성화컨설팅 등이 포함된 시장경영지원바우처 사업의 경우 이미 전국 다수의 전통시장에서 한번 이상 혜택을 받았고 시장 개발의 초기단계 지원인 것인 만큼 향후 이를 축소하고 시장별 특화 전략에 예산의 무게를 옮겨갈 필요가 있음. ·청년상인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창업자의 입점 이후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 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2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해 법률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의 연계성이 높음.

- 시장경영바우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
-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동법 제13조 및 제19조의 7)
-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동법 제16조 및 제17조)
- 온누리상품권 발행(동법 제26조의 2 내지 7)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동법 제 20조의2 및 제24조의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목적이 국가적 관점에서 비교적 타당함.

- 동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소비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등 사회적 가치도 제공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는 비교적 좁음.

- 직접적 수혜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으로 좁으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역상권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 외국인 등 수혜대상이 넓어질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시장특성화 및 상권육성,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등 각 내역사업의 지원목적 및 사업기간 설정이 명확하며, 이들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서 동일한 목표를 향한 연계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각 내역사업별 지원내용과 목표설정 수치가 매우 구체적임.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

- 동 사업의 꾸준한 추진으로 그간 계속 감소하던 전통시장 매출이 '1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고, 화재발생 건수 및 건당 피해액이 크게 감소하였음.

  * 매출추이(조원) : ('09) 22 →('13) 19.9 →('14) 20.1 →('15) 21.1 →('16) 21.8 →('17) 22.6

  * 화재발생(건)/건당 피해액(백만원) : ('16) 64/749 → ('17) 31/68 → ('18.10월) 44/14

- 특성화시장 지원 전후 매출액 증가율, 상인조직지수, 주차장 설치 전후 고객 방문 횟수 증가 등 다양한 연도별 성과지표를 조사하고 있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시장경영혁신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음.

○ 다만, 청년상인의 경험 및 경쟁력 취약 등으로 청년상인의 폐업률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음.

- 단순한 창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이후 교육·컨설팅 등 체계적인 성장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개념 복합청년몰을 도입하고, 사후관리 조직인 '청년상인 스타트업지원단'을 출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들의 향후 실질적 성과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자체 지원이나 민간투자의 가능성이 다소 있으나 보조금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전통시장 상인들의 조직화(92.4%)는 매우 높은 수준임. 상인회가 구성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직화를 추진한 데서 기인한 결과이고, 이는 보조금을 통한 정부 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전통시장의 노후화로 화재 등 발생 시 사회적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지역의 명물 내지 관광자원화된 전통시장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고 지원의 효과가 높음.

- '16년 성과평가 기준, 시장경영혁신 지원시장의 매출액은 12.5% 증가한 반면 미실시 시장은 0.4% 감소함. 또한 지원시장의 빈 점포는 11.8% 감소하고, 미지원시장은 빈점포가 21.2% 증가하는 등 지원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효과가 달라지는 조사결과가 존재함.

○ 다만,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활성화컨설팅 등이 포함된 시장경영지원바우처 사업의 경우 이미 전국 다수의 전통시장에서 한번 이상 혜택을 받았고 시장 개발의 초기단계 지원인 것인 만큼 향후 이를 축소하고 시장별 특화 전략에 예산의 무게를 옮겨갈 필요가 있음.

	2018년('17년 실태조사 결과)	2017년('16년 실태조사 결과)	2016년('15년 실태조사 결과)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수[1)]	1,693	1,661	1,634

사업구분	지원시장(곳)	지원비율(%)	지원시장(곳)	지원비율(%)	지원시장(곳)	지원비율(%)
□ 시장경영바우처						
ㅇ공동마케팅(곳)	245	14.5%	234	14.1%	248	15.2%
ㅇ상인교육(곳)	497	29.4%	636	38.3%	618	37.8%
ㅇ시장매니저(곳)	144	8.5%	244	14.7%	243	14.9%
ㅇ배송서비스(곳)	68	4.0%	65	3.9%	82	5.0%
ㅇ시장활성화컨설팅(곳)	302	17.8%	229	13.8%	348	21.3%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지원 수요와 성과가 높은 만큼 보조금의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로, 직접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00%를 보조하고, 최종 수혜대상인 지자체·상인회와는 상호 부담 방식의 매칭으로 운영하여 50%~10%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매칭 비율을 유연하게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점차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상향 조정해갈 필요는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시설개선, 화재공제 운영 등을 통하여 화재에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문제를 대폭 개선한다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일부 실현할 것으로 평가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장(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요구하는 공모절차 규정, 사업자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구성인력, 보조금 교부기준, 절차 등을 준수하여 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고하였음.

- 신청 시장들을 대상으로 서면평가(30), 고객평가(40), 현장평가(30) 등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공모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한 것으로 여겨짐.

- 개별 내역사업별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담됨.

-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및 분기별 실적보고, 시장 경기 동향 조사를 통해 정기 모니터링 및 워크숍 및 간담회, 현장점검 등 수시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수행하고 있음.

-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업비 지급 시점을 분리(최초 지급 70%, 정산시 30%)하고, 사업비 직접 교부 대신 바우처 지급, 사업참여 제한 기간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내역사업별로 시행한 자세한 집행점검 결과를 자료제출 받았으며 내용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5장(보조금 반환 및 제재) 및 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에서 요구하는 사항별로 내부 운영지침 상 보조금 반환 및 제재사항, 성과활용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장(보조사업 집행관리)을 준수하여 연도별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검증결과에 대한 오류 및 누락결과, 조치결과 등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총 3개의 내역사업에 6개의 부정수급 건이 적발됨.

- 실태조사 및 전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참여 제한, 환수조치 등이 완료되었고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임.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를 기대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중기벤처부의 꾸준한 전통시장 육성 정책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일부는 관광지로 재탄생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예를 들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재탄생한 망원시장은 이른바 망리단길 먹거리 탐방, 성지순례 코스 등 테마에 맞는 코스 개발로 젊은층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임. 이처럼 지역의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특성화 지원에 지속적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함.

○ 다만,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활성화컨설팅 등이 포함된 시장경영지원바우처 사업의 경우 이미 전국 다수의 전통시장에서 한 번 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점차 정부지원을 줄여나가고 시장별 특화 전략에 예산의 무게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청년상인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창업자의 입점 이후 폐점 수가 증가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단순한 창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이후 교육·컨설팅 등 체계적인 성장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신개념 복합청년몰과 사후관리 조직인 '청년상인 스타트업지원단'의 향후 실질적 성과를 기대함.

○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한 시장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전통시장에서의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이를 통해 카드결제 거부 등 기존의 전통시장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젊은 층이 찾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생각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여성기업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7.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주도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여성창업 활성화, 여성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창업보육, MBA 교육 등 역량강화, 조사연구사업 등 타부처 및 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큼. ·타 부처 및 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 유사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 판로지원, 인력지원 사업에 “여성기업인 지원”이라는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보조사업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실태조사),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및 동법 시행령 등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주도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여성창업 활성화, 여성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됨.

- 2016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OECD 평균 63.6%, 한국 58.4%(34개국 중 30위)

○ 정부에서 '여성일자리 대책'(고용부, '17.1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여가부, '17.12),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중기부, '18.5) 등을 발표하여 시행 중이며, 본 사업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은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성창업지원: 여성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확장,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공공구매제도 홍보, TV 홈쇼핑 판매 지원, 해외진출 지원
- 여성기업 인력 지원: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 운영, 최고경영자과정 등 역량강화,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조사연구 등: 여성기업 관련 통계 조사 및 정책연구

○ 세부 사업의 내용과 구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 필요함.

-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세부 내역 사업이 상호 어떻게 연계 되어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입주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19.4% 달성 등, 지원기업의 수출액수 증가 등 사업 효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여성기업의 경우 전체 기업수의 39.0%(약 143만개), 일자리 창출의 24.0%(약 410만명)를 차지하는 등('16년 기준) 비중 및 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수혜) 실적은 이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여성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원중인 창업, 마케킹, 수출 분야의 경우에도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함

○ 동 보조사업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세부 사업은 교육, 보육센터운영, 네트워킹 등으로 해당부처내 유사사업, 타 정부부처, 대학 등 교육기관과 민간 영리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과 유사·중복성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여성기업 수는 약 139만개로 전체 기업의 38.7%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수는 약 396만개로 전체 일자리의 23.6%를 담당하고 있는 등 여성기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다년간 유지해온 지원사업 중단 시 여성기업계 반발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 동 보조사업의 2019년 기준 예산규모는 경상보조에 6,011백만원, 자본보조에 1,400백만원임.

- 여성창업지원: 3,575백만원
- 여성기업 판로지원: 1,952백만원
- 여성기업 인력지원: 1,340백만원
- 조사연구 등: 544백만원
- 창업지원센터 확장(경남)에 1,400백만원을 지출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창업지원센터 확장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컨설팅, 공공구매 홍보사업 등 역량강화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 가치 실현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동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 법정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공모절차가 없음.

- 교부 및 집행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련 법령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계획(안)을 검토 후 승인하고, 매 분기별로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등에 최종 점검 후 정산 실시 등의 절차를 따르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등 비리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집행 계획을 바탕으로 사전 승인 후 집행, 수시·정기점검, 정산 등을 실시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주도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여성창업 활성화, 여성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됨.

○ 동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창업보육, MBA 교육 등 역량강화, 조사연구사업 등 타부처 및 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큼.

3-2 정책 제언

○ 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 유사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 판로지원, 인력지원 사업에 “여성기업인 지원”이라는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장애인기업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4.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9.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장애인들 경제활동의 주체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성과지표를 매출액 증가율, 신규기업 창업개수 등 다양화 할 것을 권고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제9조(자금지원 우대),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에 사업수행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목적은 국정과제의 정책방향과 일치함.

-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_관계부처 합동_2018.03.05.)에 장애인중소벤처기업 지원(중점과제3-4)이라는 세부과제가 반영되어 있음.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장애인은 특정지역 등에 국한되어 거주하거나,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적으로 동사업의 수혜자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이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음.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장애인 창업육성',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등 총 4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매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실천과제를 명시, 구체적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 지표 '장애인기업 영업지속률'은 목표대비 100%이상 달성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 성격의 사업은 아니며, 보조금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을 찾기는 어렵다고 인정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가 시행중임.

- 사업의 중복수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부처, 유관기관과의 중복수혜 부정수급 차단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 등록 장애인기업은 영세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률은 36.3%로 의무고용률(2.9%)보다 월등히 높아 장애인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의 수요는 충분히 존재함.
- 장애인 기업은 장이인 고용율이 전체기업 대비 24.6배, 고용의무사업체 대비 16.8% 높은 등 장애인 기업 육성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비영리 민간재단법인 및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100% 지원은 타당하다고 인정됨.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8,855백만원	7,850백만원	7,975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8,855백만원	7,850백만원	7,975백만원
	100%	100%	100%

1-6.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장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부합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근거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2조에 근거하여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회계법인(감사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하고 있음.
- 「장애인기업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집행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 「센터 정관 및 회계규정」에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조항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센터 홈페이지 내 「보조금부정신고」 페이지를 운영하여 부정 수급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음.
- 센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말에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장애인들 경제활동의 주체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성과지표를 매출액 증가율, 신규기업 창업개수 등 다양화 할 것을 권고함.

-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중소기업재기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해당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정함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 및 성장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 근거도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함 ·공모 및 교부절차, 집행의 관리, 부정수급 방지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중소기업 재도약지원'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 관리 관점의 사업 수행이 필요하고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동일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연차별 실적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제4조의3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60조, 제74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실패 중소기업인의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해당 사업은 실패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혁신 성장과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은 국정과제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의 실천과제인 실패 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

○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지원을 받는 경영위기 중소기업과 성실 실패 중소기업인으로 판단되나 이들의 재도전 성공과 경영위기 해소는 전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에게 동기 부여의 수단이 될 것이고 국가 경제의 발전 및 성장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지원 기업의 재창업 성공과 경영위기 극복 및 회생이고 내역 사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함

-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은 2016년 98명을 지원하여 96명이 재창업하였고 2017년 말을 기준으로 91업체가 생존하였으며 2017년에는 268명을 지원하여 259명이 재창업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 '중소기업 재도약지원' 사업은 2016년의 경우 진로제시 265건, 회생 55건, 2017년의 경우 진로제시 403건, 회생 90건, 구조개선계획 수립 50건, 2018년의 경우 진로제시 357건, 회생 92건, 구조개선계획 수립 33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예산계획서 상의 성과지표와 실적은 지원업체 생존율 단일 지표로 2017년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됨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4년	'15년	'16년	'17년
②지원업체 생존율 (%)	0.5	2년 평균 생존율[(지원기업-휴폐업기업) / 지원기업 × 100]	목표			신규	82.0
			실적				881.
			달성률(%)				107.4

- '중소기업 재도약지원'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 관리 관점의 사업 수행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창업 혹은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우수한 기술력 및 사업노하우를 가진 실패기업인들의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다는 점이 인정됨

-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는 협업체제와 타 부처 사업의 종료 등을 통해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2016년 이후 사업선정 경쟁률은 평균 3.7대 1 수준으로 시장에서의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9년 중기재정계획 상의 재정소요액 추계를 상회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음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20,087	19,650	9,825	6,878	6,190	
'18~'22		19,650	19,650	19,650	19,650	19,650

- 중기재정계획 상의 재정소요액은 위와 같으나 2019년 예산은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22,450백만원으로 편성됨

- 그러나 내역 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재창업 사업에 참여한 재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참여 이전보다 증가하였고 2년차 생존율도 일반 창업기업 대비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동일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연차별 실적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기준보조율 적용 사업이 아닌 상황에서 내역 사업과 내역 사업 내의 세세부사업별로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경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재도약지원의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인데 두 기관 모두 관련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련 사업 전담 조직임

- 각 보조사업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과 재도전 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모절차, 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의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및 교부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 등의 규정과 내역사업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내역사업별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①보조금의 교부 신청 → ②보조금의 교부 결정 → ③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실집행 현황, 단계집행현황 등을 적절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경우는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을 통해 '중소기업 재도약지원'의 경우는 진로제시컨설팅사업 세부운영지침, 회생컨설팅 세부운영지침, 구조개선계획수립 세부운영지침 등의 관련 조항을 통해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절히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각 세부사업별로 사업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사업종료 후에의 사업비 정산도 자체인력 혹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실시한 정산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의 국고 반납조치가 이루어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사례는 없고 규정에 따른 집행 및 관리 체계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재도전성공패키지의 경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재도약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 및 성장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 근거도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함

- 공모 및 교부절차, 집행의 관리, 부정수급 방지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된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중소기업 재도약지원'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 관리 관점의 사업 수행이 필요하고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동일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연차별 실적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사업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중소기업 재도약지원'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 관리 관점의 사업 수행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기업벤처부
사 업 명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3.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1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20억, 2019년예산 기준 3.7%) 및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유통경로를 찾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지원이 중요하지만, 전년대비 예산 증가, 중기계획 사업량이 증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높지만, 전년대비 예산이 1.2배 가량 증가함으로 인해 사업효율성과 실효성이 오히려 저해되었다고 판단됨.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46.9%증가, 전자상거래활용진출 82% 예산 증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이에 전자상거래활용수출 부문 내내역사업을 재편하고, 내역사업 보조율을 약 70%로 조정하여 20억 감축(3.7%)으로 판정함. ·현재 경쟁률(2~3:1)로 보아 급격한 사업량의 증가는 사업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됨. ·소액다수 개별 지원에 대한 개별 사업 보조율의 합리적 근거 및 일관성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이 사업은 다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8년 사업 중 일부를 통합하여 2019년 사업을 구성한 것임.

- 개별 내역사업별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관한법률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 관리
2.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④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제3조(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수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거래알선·수출신용보증·무역보험·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2. 수출신용보증·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
3. 기술·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지원
4.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 활용 능력 등 무역활동 관련 역량의 진단 및 역량별 맞춤형 지원
5. 수출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부여
6.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 사업은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지만, 중소기업의 마케팅능력이 취약하고, 수출전문 인력이 부족한 여건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지원이 가능함.

○ 사업수혜자의 주된 범위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수출컨소시엄(무역촉진단파견, 수출컨소시엄, 업종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임.

- 개별 내역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적정 사업량을 판단하기 어려움.

○ 개별 기업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보조율이 60~90%로 편차가 있음.

-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이나 보조율에 대한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음. 현재 수출 컨소시업 70%, 대중소 60%, 전자상거래 70~90%로 수출단계별, 기업규모별, 정책 성격에 따라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중소의 경우 대기업이 포함되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율이지만, 중소, 중견 기업별로 보조율 차등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세부사업 내 보조율 편차는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해외진출지원사업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수출증가율 차이는 18.8%p로 5년째 유지 중으로 제시된 바, 실제 이 사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계측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자부담, 융자 모두 가능한 내용의 사업임.

○ 2018년 기준 내역사업 무역촉진단사업의 유사 중복 가능성이 높았지만, 수출컨소시엄사업으로 통합운영됨.

○ 사전준비-해외파견-사후관리의 3단계를 수행하는 데 해외파견은 수출상담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전시회 참여도 가능함.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부 해외마케팅 협의회를 통해 사전조율을 하게 되어 있음.(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조율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별도로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대상 및 사업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이라 판단됨. 중복지원수혜방지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추가적 관리감독 노력의 필요성이 요구됨.

○ 중소기업 발전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는 국정과제일 뿐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기 투입된 재정에 대한 재정적 손실이 없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이 사업은 다수의 기업에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임. 개별 내역사업의 경쟁률이 2~3:1 수준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아 사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됨.

- 전체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수요를 감안한 사업량이 제시되어야 이 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소액을 다수의 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기업 보조율의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정부의 역할이 보조율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율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정규모가 재설정 될 필요가 있음.

○ 2019년 이후 사업량 증가의 근거가 부족하여 합리적 이유로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2017, 2018년 588억, 552억 수준에 비해 2019년 다수 내역사업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87억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사업량을 늘리고, 다수 내내역 사업이 추가되었으나 근거가 부족함.

- 예를 들면, 중소기업 경기가 과거에 비해 더 침체되었거나, 해외진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거나, 1~2년전 중요하지 않았던 해외진출경로에 대한 신규지원 필요성이 등이 제시되어야 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중소기업 동반성장 목표로 사회적 가치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개별기업 지원에 대한 선정 절차는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진공, KTR에 대한 보조사업 공고, 선정절차에서 자부담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표. 보조사업자 별 지원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소기업중앙회	50~7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60%이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소기업진흥공단	50~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50~70%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 민간경상보조로 보조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내역사업 간 유사한 방식의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보조율이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표. 보조사업자 별 지원비율 및 실보조율

내역사업명	지원 비율(%)	실 보조율(%)
수출컨소시엄	70%	내역사업별 실보조율(17년) 무역촉진단 : 55.7% 컨소시엄 : 66.2%
대·중소동반 진출	60%	내역사업별 실보조율(17년) 한류연계 : 40% 해외홈쇼핑 : 58% 해외거점 : 50%
전자상거래활용수출	50~90% * 온라인 쇼핑몰 자부담은 수행기관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일 경우 각각 50%, 70%, 90%	내역사업별 보조율 : 50~90%(18년) 실보조율 : 79%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이 규정되어 있음.

- 대중소동반진출사업 세부운영규칙, 중소기업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운용지침,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 운영지침 제시되어 있음.

○ 중간점검, 현장점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중앙부처가 집행점검 노력을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개별 내역사업 지침에 적정한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고, 정산보고서 등을 통해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 부정 수급 관련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높지만, 전년대비 예산이 1.2배 가량 증가함으로 인해 사업효율성과 실효성이 오히려 저해되었다고 판단됨.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46.9%증가, 전자상거래활용진출 82% 예산 증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이에 전자상거래활용수출 부문 내내역사업을 재편하고, 내역사업 보조율을 약 70%로 조정하여 20억 감축(3.7%)으로 판정함.

○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유통경로를 찾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지원이 중요하지만, 전년대비 예산 증가, 중기계획 사업량이 증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현재 경쟁률(2~3:1)로 보아 급격한 사업량의 증가는 사업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됨.

○ 소액다수 개별 지원에 대한 개별 사업 보조율의 합리적 근거 및 일관성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5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은 높고 사업 전반의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역사업의 구분이나 사업관리 적절성에 있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같은 사업내 실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어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 내역사업은 사업대상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분리되어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는 2015년 법률개정에 의해서 분리된 사업임. 내역사업이 분리됨을 각각의 내역사업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역사업명과 내용을 명시하고 사업성과의 추이를 파악하고,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지표 개발이나 노력들의 사업방식 변경 노력이 필요함 · 사업관리 적절성에 있어서 사업주체 선정이나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정책건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정책 입안에 대한 환류 등의 성과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요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방식 개발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의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1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35조에 사업수행의 당위성에 대해서 “해야한다”로 명시하여 사업의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함
- 중소기업중앙회 보조 및 협동조합 활성화 2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은 공약사업, 국정과제, 계획사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국가적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평가됨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관련단체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차 수혜집단까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의 근거자료가 적절함

- 본 보조 사업은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 발굴 및 건의를 위한 사업으로 수혜자를 명확히 제시하거나 혜택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개의 내역사업이 전체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되기는 하나 두 내역사업의 사업대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중복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두 내역사업간 사업내용이 차별화가 되지 않고 협동조합 활성화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보조사업의 일부로 평가되는 혼란감을 줄 수 있음으로 사업명과 사업내용 제시에 있어서 대상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정책반영률과 정책건의건수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보조 내역사업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충분한 자료로 평가됨. 목표달성도와 실정을 고려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잘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 각각의 내역사업별로 사업성과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이 잘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2018년 성과보고서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까지 제시하고 있어 본 보조 사업이 활발하게 잘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에서의 지원 사업으로 성격에 부합된다고 평가됨

-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과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지자체의 지원방안도 향후 고려할 사항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의 사업 중복성은 증빙자료로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 가능성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 폐지 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발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채널이 부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유지되어야 함이 타당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은 재정 규모는 합리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평가됨

○ 기준 보조율 없이 수행되는 사업으로 해당 부처의 검토를 통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산정기준이 적절함

1-6 사회적 가치 실현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 8번과 연계하여 직접적 기여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의 주체는 법적 근거에 의해 지정되어 있어 공모사업은 아니며, 해당 기관의 적정성이나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구비됨

- 정관내용을 사업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자 지정의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집행에 관리와 단계별 집행 점검 등 집행 전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행기관의 기관 운영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등의 지침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사업집행과 관련 계획 및 집행점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과 실태 점검을 실시한 자료가 제출되어 실제 점검이 이루어짐을 확인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집행에 대한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관리 규정을 통해서 보조금 반환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 회계감사 등이 실시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내역사업별로 사업집행의 관리, 감독이나 점검 증빙자료를 통해서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를 확인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의 부정수급이 최근 3년간 발생하지 않아 발생가능성이 낮음

- 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 외부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매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됨

-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승인, 보고, 감사) 등의 과정으로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당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내역사업별로도 법적 근거 명확함

- 전체 사업목적과 내역사업의 목적이 연계성이 크며, 전체 사업과 내역사업의 내용이 적절하게 합리적이 설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은 사업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은 적절함

- 내역사업의 2개 영역 사업내용이 중복 또는 유사성에 대한 혼란감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조정이 필요함

- 사업성과제시에서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책건의건수, 정책반영건수, 정책참여자 만족도를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내역사업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은 사업의 수혜대상자 및 외부효과도 양적, 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타당성이 높다고 평가됨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사업은 보조사업 관리의 적절성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내역사업별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향후 본 사업 수행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안을 찾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현재 2개의 내역사업의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사업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이 필요함

- 내역사업의 성과나 사업내용의 일부 중복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2개의 내역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을 제안함

○ 향후 새로운 지표개발을 제안함. 정책개발 및 건의, 반영에 그치지 않고 반영된 정책 체감도 등을 통해서 보다 기업 눈높이 맞는 정책개발이 되도록 하는 제안을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창업인프라지원(제주)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9.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특정지역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 혜택이 해당 지역에 편중될 수 밖에 없으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와 일치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의 혜택 범위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분담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지원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음.

-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창업보육센터자에 소요자금을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제11조(운영비 지원)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범위가 명시되어 있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을 통해 보조금 산정기준 및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정방향과 일치함.

-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됨.

○ 동 사업은 제주도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지역의 창업자를 지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적임.

- 주 수혜대상은 제주지역 4개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임.

○ 신규 기업으로부터의 입주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신규기업의 창업지원이라는 목표가 분명함.

-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관련 공간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입주기업의 경영성과인 매출액 증가율과 입주기업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음.

- 17년 매출액 증가율 성과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창업보육센터 자체예산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창업보육센터는 보육료 외에는 수익원이 없을 뿐 아니라 자체 재원만으로는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음.

- 제주지역은 2017년 기준 16,833개사의 신생기업이 생겼으나, 창업인프라가 매우 열약한 상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지역 계정으로 별도로 관리가 필요함.

○ 창업보육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 가능성이 적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창업보육센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동 사업관련 기준 보조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지치도기업·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음.

- 사업 성격과 혜택이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지자체의 예산 분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240백만원	240백만원	228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240백만원	240백만원	228백만원
	100%	100%	100%

1-6. 사회적 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7조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전문기관은 (사)한국창업보육협회로 지정하였음.

○ 교부철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정량, 정성평가를 통해 사업자선정 및 교부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사업비 산정 및 집행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지원규모를 결정함.
- 그러나, 평가결과와 지원규모 결정간의 관계는 확인되어야 할 사항임. 사업자 선정내역, 탈락 내역, 탈락에 대한 사유 등의 세부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점검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 집행현황을 점검함.
- 주관기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회계기관을 통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사업기관은 최종보고서 및 정산관련 제반서류를 제출, 회계기관 및 전문기관은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 BI 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신용상태 · 정보제공 · 거래내역 등의 조회 및 입출금 내역도 확인 가능하며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및 장부도 확인 가능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와 일치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혜택 범위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분담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음.

○ 운영비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창업저변확대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감축(2020년 1,700 백만 원). ·내역사업 중 '실전창업 교육'(2019년 예산 5,700백만원) 기업가정신 확산'(2019년 예산 11,603백만원) 사업이 주요 감축 대상임. ·부정수급 사례가 '스마트 창작터' 사업에서 발생한 바, 정상적 모니터링 과정이 아닌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난 바 있음. ·2019년 예산 기준 실전 창업 교육과 기업가정신 확산 내역사업 예산 기준 10%에 해당하는 1,700 백만 원을 2020년 감축 판정함. ·향후 성과관리를 주관적 만족도 중심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창업역량의 제고를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성과관리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보조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타당한 목적을 보유하고 있음.

- 각 내역사업 6개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18.12.11., 일부개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6. 8., 2017. 7. 26.>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정부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 교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과거 우리나라가 부존자원과 자본·기술 부족 등 제약조건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룬 원동력은 왕성한 기업가정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지속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에 접목하여 창업 기반을 진흥하려는 것으로 타당성 보유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 기술기반 창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주저하고 있으며, 창업 교육 등 창업 준비가 부족한 현실 공감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지 고려 [외부효과(spill - over effect)가 존재하는 사실 인정됨.

- 기업가정신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의 교육, 문화 확산, 연구조사 등 사업의 수혜자는 전 국민임.

- 교육사업은 교육자(초중고 및 대학, 민간부분), 여성, 제대군인, 가족 등으로 광범한 외부효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됨.

- 실전 창업교육(스마트창작터)는 전국 20개 주관기관을 통해 17개 광역시도의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 교육, BM 검증, 시장검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창업관리 시스템 역시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내역으로 전국규모의 광범위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함.

○ 국정과제로 분류되어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 내용에 부합하고 있음(국정과제 번호: 39-2-3).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목표로 '초·중·고에서 중장년까지 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역량강화'를 설정하고 노력하여 기업가정신의 생태계 구축에 일정 수준 기여하는 효과성 인정됨.

○ 6개 내역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공감되는 사항들로 설정되어 있음.

- 기업가정신 확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대학 창업지원조직을 통한 창업지원기반 마련함.

- 실전창업교육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시장 검증을 일괄 지원함.

- 도전 K스타트업은 전 국민 대상 우수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창업가 발굴 및 창업 마인드 제고 노력.

- 벤처창업대전은 벤처·창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한 교류의 장(場)을 마련하여 스타트업 육성성과 전시 및 공유 시도함.

-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은 지자체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공간을 조성을 통해,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 기반 강화 의도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스마트 창작터와 기업가 정신 확산 내역사업 부분은 비용절감과 성과 효율화 가능성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됨.

- 기업가 정신 확산의 경우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에서 교육 방법의 개선을 통해 재정 절감 및 효율화 필요하고, 스마트창작터(실전창업교육)는 17개 광역시도와의 체계적 협력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위한 사업의 효율화 제고할 필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관리는 일부 주관적 만족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완 요망됨.

- 예컨대, 지식서비스 지원사업 만족도(점)는 연도별 상향되긴 하였으나, 주관적 만족도로 되어 있어 규모와 노력도, 객관적 실적을 가늠하기에는 어려움 있음.

- 2018년의 경우에도 체험교육, 설명회, 연수, 교육, 협약 등으로 설정되어 있고, 결과평가는 '완수'로 표시되어 있어, 객관적 성과를 가늠하는 데 어려움 존재.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기업가정신 함양사업 등은 근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 민간보조가 불가피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전액 또는 상당한 보조를 활용할 필요성 인정됨.

○ 타 사업과 유사, 조정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창업 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본 기관의 보조사업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됨.

-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타 사업과 통합이 불가하다는 것이 해당 기관의 입장으로 인정됨.

- 예비 창업인들의 초기 창업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대민지원 서비스에 해당

○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사회 전반의 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초·중·고생부터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평생학습체계 마련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적 보조사업 필요성 인정할 수 있음.

- 사업이 폐지되면 직접적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회 경제적 문제와 장애가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높아, 사업의 필요성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 규모는 사업 목표 달성에 대체로 적정하도록 구성되고, 사업비가 배분되는 것으로 사료됨.

○ 스마트창작터 내역사업의 경우, 매년 신규 법인설립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준비된 기술창업자 육성을 위한 기술창업교육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전체 보조사업 내역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조정 배분의 여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2년도까지의 중장기 사업계획은 중기사업계획을 통해 향후 재정소요액을 산출하여 기재부 등 예산부처와 협의 및 심의하는 것으로 확인됨.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 ▪ 법령 및 예산의 목적·내용에의 적합 여부
  -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 ▪ 지방비 및 토지 확보 여부
  -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 ▪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 선정 및 교부 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인정됨.

-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에 따라 평가 및 선정하고 있음.

○ 민간기관에 대하여는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됨.

○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을 통해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각 점검단계별로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중단 등 패널티 적용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 인정됨.

- <비즈쿨 운영지침> 중 보조금 환수규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과 내용 확인됨.

○ 내역사업별 회계감사 및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주관기관별 정산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 부적정한 집행이 있으면 반납처리 실시 중인 것으로 인정됨.

-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계획 첨부)→교부 결정(교부조건 포함)→교부결정의 통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고, 사업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자체인력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스마트 창작터 내역사업의 경우 '17년 1건의 부정수급(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발생하여 수시점검('18.5.23.)을 통해 해당사실 확인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참여제한 5년 등의 제재조치('18.6.26.)를 완료하였으며, 환수금은 매월 분할납부 진행 중에 있음.(환수금액 27,800,000원 중 13,86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매월 분할납부 중으로 확인됨.

○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관리교육 실시, 사업비 집행단계별 수시점검 및 부정 수급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점 확인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타당한 목적을 보유하고 있고, 내역사업 6개가 각각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부정수급이 스마트창작터 내역사업에서(허위 계약서 작성 등) 발각된 바, 일반적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닌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난 사실 있음.

○ 기업가 정신 확산은 온라인 교육의 확대 및 인센티브 활용 등의 교육 방법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효율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예산 기준 실전창업 교육과 기업가정신 확산 내역사업 예산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1,700 백만 원을 2020년 보조금에서 감축 판정함.

3-2 정책 제언

○ 성과관리는 일부 주관적 만족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예컨대, 지식서비스 지원사업 만족도(점)는 연도별 상향되긴 하였고 전문기관에서 모집단 샘플 통해 조사하고 있으나, 주관적 만족도로 되어 있어 규모와 노력도, 객관적 실적을 가늠하기에는 어려움 있음.

○ 성과관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국가보훈처

교통시설이용지원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보훈처
사 업 명	교통시설이용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5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시설 이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균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함. ·교통시설 중 내항여객선은 실제 이용금액을 후불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고 있으나, 민영버스나 고속철도는 감면금액의 30~35% 정도를 예산으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결손금 누적, 경영상의 부담 등이 향후 동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될 개연성이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초고령 애국지사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근거가 법령에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O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 ·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 ·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시설 이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균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함.

○ 보조사업의 직접적, 실질적 수혜자는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적 예우 및 지원대상이며, 아래 법령 및 훈령에 의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혜택이 명확함.

〈대상자 연도별 통계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 대상자 수	119,958	119,081	118,00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수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전국버스운송조합, 한국철도공사·(주)SR, 내항여객선사)와 계약(협약)을 맺어 아래와 같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자간 보조율의 차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버스 : 전국버스운송조합과 매년 계약을 통해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를 무임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 감면금액의 35% 정도 보조하고 있음
- 고속철도(KTX, SRT) : 1997년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정서 체결((주)SR은 2016년 협약 체결)이후 KTX· SRT를 비롯한 모든 열차에 대해 연 6회 무임, 7회부터 50%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의 고속철도 실제 사용액의 34% 정도 예산으로 보조하고 있음(동일한 보조율로 KTX, SRT 보조금 교부)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사업내역: 내항여객선사와 이용협약을 체결하여, 상이국가유공자의 연6회 무임 또는 50% 승선 감면 이용액에 대해 후불로 정산하여 100% 지급하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92년부터 장기간 지속되어온 사업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 타당하며 법적근거도 명확하므로 국가적 관점에서 체계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 다만,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과의 통합을 통한 제도의 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사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교통시설을 감면 이용한 금액을 후불정산하거나 계약된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율을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 정비가 필요함.

○ 교통시설 중 내항여객선은 실제 이용금액을 후불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고 있으나, 민영버스나 고속철도는 감면금액의 30~35% 정도를 예산으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결손금 누적, 경영상의 부담 등이 향후 동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될 개연성이 있음.

〈보조사업(내역사업별) 보조율〉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17년 기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액	32.7%
내항여객선 사업자	정액	100%
한국철도공사, (주)SR	정액	30.1%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이동권이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며, 국가를 위해 상이를 입고 사회적·경제적 약자 위치에 처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전국버스사업조합연합회(민영버스보조), 한국철도공사(KTX운임보조), (주)SR(SRT운임보조), 내항여객선사(내항여객선 후불운임보조)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자로 모두 적합하고 적정함.

- 해당 교통시설을 대표하는 교통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사업자와, 대표사업자가 없을 경우(내항여객선사)에는 개별 교통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감면운임 일부를 보조하므로, 일반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으며,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의 공모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한 별도의 보조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 점검 등 적절한 과리체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 소관 민간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정한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16.12.)」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결정 시 '교부조건'에 결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완료 시 정산 보고 실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변경 시 사전에 승인 필요 등을 명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16.12.)」에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을 통해 보조금 반환,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준수 여부에 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에 의한 부정수급, 부당사용에 의한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미흡함.

- 고속철도(KTX·SRT)는 한국철도공사와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격 및 이용내역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은 보조금 후불정산 지급 시 승선이용권을 구비서류로 받고 있지만, 부정수급의 으므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시설 이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균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함.

○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교통시설을 감면 이용한 금액을 후불정산하거나 계약된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음.

○ 교통시설 중 내항여객선은 실제 이용금액을 후불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고 있으나, 민영버스나 고속철도는 감면금액의 30~35% 정도를 예산으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결손금 누적, 경영상의 부담 등이 향후 동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될 개연성이 있음.

○ 운송사업자에 의한 부정수급, 부당사용의 개연성이 크지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실천이 부족하다고 사료됨.

3-2 정책 제언

○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율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향후 보다 안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도모하기를 권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보훈처
사 업 명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5%, 3천5백만원), 사업방식 변경 ·미집행율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강문화프로그램의 경우 타 부처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사 프로그램과의 연계 모색 필요 ·성격이 다른 건강문화프로그램과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검토를 권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60세 이상의 국가유공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여가·취미·건강·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함.

- 법령상 근거
  * 보훈기금법 제1조(목적) 및 제5조(기금의 지출)
  * 국가기본법 제19조 ②항(예우 및 지원의 실시)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훈령)

□ 건강문화프로그램(관련 법령조항, 내용, 재·개정일)

○ 국가보훈기본법(2005. 5.31. 제정, 2016. 12..20 일부개정)
제 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994.12.31. 제정, 2018. 4. 6.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4. 8. 2. 제정, 2018. 6. 12.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93.12.27. 제정, 2018. 3. 13. 일부개정)
제 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 1.26. 제정, 2018. 6. 12. 일부개정)
제 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

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4. 1.29. 제정, 2018. 6. 12.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훈기금법(1981. 3. 27. 제정, 2018. 4. 17. 일부개정)

제 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지출한다.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 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 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 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 2018년도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사업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제4조, 제7조(2016.3.29, 일부개정)

- 제2조의2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 제4조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 보훈기금법 제5조(국가유공자등의 복지지원비)

○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및 시행규정

○ 소송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11번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강화라는 세부실천과제로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정과제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있음.

- 건강문화프로그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다양한 여가·취미·건강·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노후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국가유공자 법률구조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생활 향상에 기여

○ 본 사업의 1차 수혜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프로그램제공 단체와 상이군경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실질적 수혜를 받는 수혜자는 고령 국가유공자와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본인과 가족 등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양한 건강·문화활동 등을 통해 활기차고 문화가 있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문화프로그램이 일반 여타의 건강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은 인정되며, 이러한 노력이 더욱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여인원 및 만족도 등 단순한 실적 및 성과지표들을 개선하여 실제 국가유공자의 삶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의 사업 내용과 목표는 명확하지만, 최근의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유공자 법률구조 사업의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통한 인권보장, 법교육을 통한 준법정신 거양이라는 법률구조사업 운영은 국가의무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비영리 공익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건강문화프로그램 등 지원의 경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건강문화프로그램, 법률구조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나, 집행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한 예산 편성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사업은 집행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한 사업지원범위 변경 조치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저조한 집행률 실적을 고려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강문화프로그램과 분리한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강문화프로그램의 집행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건강문화프로그램 내역사업 규모 (최근 3년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2015년	796	796	100%	-
2016년	716	697	97.3%	19
2017년	**706**	**654**	**92.6%**	**52**
2018년	706			

※ 국가유공자 법률구조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182	176	176
집행액	159	130	132
집행율	87.4%	73.9%	75%
불용액	23	46	44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법률구조사업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에 기여함.

- 사회·경제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통한 인권보장
-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보장은 전 국가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건강문화프로그램의 경우, '16년부터 공모제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 존치평가 권고에 따라 공모제로 전환하였으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음.

○ 법률구조사업 운영은 국가의무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비영리 공익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가보훈처 소관 민간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정한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처 훈령 제1228호)」, 법률구조사업 수행 관리를 위해 법무부 사업추진현황 관리감독·예산집행실적 감독·지도점검 및 감사·결산승인, 기획재정부 심의 및 평가, 국회 심의 및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집행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여,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 "국고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을 통해 보조금 반환,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한편, 지침 등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 사업 운영관리 메뉴얼」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연도말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하여 차기년도 사업자 선정시 반영하고, 지방보훈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당 사용 방지 및 관리 등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 보조사업자 기관 내 부정수급방지 교육 실시, 지도점검 및 감사, 외부 회계감사 등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 및 프로그램과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부정수급'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부정수급'과 관련한 규정
- 보조사업 점검을 위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 개통에 따라 보조사업 진행 전 과정에 걸쳐 7단계 검증
- 보조사업자 기관 내 부정수급방지 교육 실시, 지도점검 및 감사, 외부 회계감사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11번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강화라는 세부실천과제로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정과제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있음.

○ 집행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한 예산 편성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말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하여 차기년도 사업자 선정시 반영하고, 지방보훈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보다 강화하여 효과적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저조한 예산집행률의 해소를 위해 사업지원범위를 변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강문화프로그램과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을 권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보훈처
사 업 명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사업의 관리 운영 방식 변경이 필요함 ·자체수익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사업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충당하도록 사업방식 변경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시설에 대한 일반인 이용정책과 연계한 자체수입 확보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체육관 대관을 통한 자체수익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적절한 보조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음. ·이에, 자체수익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에 적합하다고 제안됨. 자체수익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훈재활체육센터 설립목적과 사업 목적이 법적 근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일치함

* 설립목적 :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신체적 재활 및 전문 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에 기여
* 사업목적 : 보훈재활체육센터의 개원 이후 체계적인 재활체육시설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우수 장애인 선수 육성 등을 위한 운영비 확보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고취시켜 국가유공상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고보조는 타당함

○ 국가유공자(직접 수혜자)뿐 아니라 일반장애인 및 일반인(간접수혜자)도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훈재활센터의 수혜자는 광범위함

- 체력단련실의 이용대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뿐 아니라 일반장애인이나 일반인까지 확대됨

- 체육센터 대관 승인관련해서, 일정한 불허 및 승인취소 기준 외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되어 있음

- 현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의 이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지자체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에 사업목적이 전도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국가유공자에 대해 탁구, 양궁, 사격, 론볼, 기타종목 등의 재활체육 지원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조사업 목표에 부합됨.

○ 보조사업을 통해 국제대회나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통해 국가유공상이자의 위상을 강화함

- 2017 베이징 장애인양궁 세계선구권 대회, 2018 자카르타-팔레방 아시안게임(양궁), 2018 청주 IPC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에 국가대표 발탁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있음

○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인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운영 위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활체육 지원 육성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이 보조금의 100%로 충당되고 있음. 대관을 통한 자체수익금이 발생하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수익금은 국고에 귀속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에 적합함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모든 수입을 세입에 계상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에 계상하는 방식의 사업방식 조정이 필요함

- 2014년 부터 2018년 까지 평균 13.4%의 수익금 비율이 산정됨.

	소요액(백만원) (A=B+C)	국고보조(백만원) (B)	수익금(백만원) (C)	보조비율(%) (B/A)	수익금 비율(%) (C/A)
14년	2,003	1,790	213	89.3	10.7
15년	2,083	1,811	272	86.9	13.1
16년	2,160	1,832	328	84.8	15.2
17년	2,130	1,859	271	87.3	12.7
18년	2,275	1,923	352	84.5	15.5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연간 19억원의 예산규모 가운데, 재활체육육성지원비는 30% 미만이며, 인건비와 관리운영경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음

- 정규직(9명)의 업무내용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등에 기여함

-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들에게 재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 인격체로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의 효과를 가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 차원에서 적절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상이자들에 대한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병원, 요양원 등 국가유공자 통합 의료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보훈복지의료서비스 전문기관임

○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 8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공단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부담능력과 관련해서 본 사업에 공단의 자부담은 없으며, 수익금에 대해서도 부담 비율을 사전에 계획한 사업계획서는 발견되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 소관 민간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정한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처 훈령 제1228호)」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연간 점검 계획 수립을 통해 지도 감독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조금 반환,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보조사업 점검을 위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조금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18.3)하여 부당사용을 방지 및 적발 등 사후관리에 철저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사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의 타당성은 높음

○ 국고보조 사업의 서비스의 직접수혜자 외에 간접수혜자까지 확대되어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국고보조의 타당성이 높으나, 일반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본래의 기관 설립목적 및 사업목적과 범위확대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

○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시설에 대한 일반인 이용정책과 연계한 자체수입 확보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체육관 대관을 통한 자체수익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적절한 보조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음

○ 이에, 자체수익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 등 예산총계주의에 적합한 방법을 제안함

○ 자체수익금 10% 예산 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제시 필요

3-2 정책 제언

○ 대관을 통해 발생하는 자체수익금은 국고에 귀속하고 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에 적합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제도활성화
농축수산물안전관리
식품안전감시및대응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운영
실험실검사능력강화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지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명	HACCP제도 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5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4.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동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동사업은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HACCP 적용을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영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업체의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투자가 필요하나, 제조·가공업체 중 대다수가 재정 기반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업체로 산업구조가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조는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혜자의 범위도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판단됨 ·동사업은 의무적용 기준을 가지고 있어, 최종단계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적정한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 논리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현장 확인, 시장 조사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실행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 하에 보조금 지급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 동사업 중 보조사업인 HACCP 인증지원 사업은 이러한 법의 내용에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사업은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HACCP 적용을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영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업체의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투자가 필요하나, 제조·가공업체 중 대다수가 재정 기반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업체로 산업구조가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조는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

○ 또한, HACCP인증 적용제품은 특정지역에서만 유통·판매되지 않고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지방의 관점보다 국가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사업이므로, 지방에서 관련 예산을 사용하기 보다는 국내 전반의 안전한 식품 등 제조·환경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해당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은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임. HACCP 인증업체에서 생산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하게 유통·판매됨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간접 수혜자가 있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보조사업은 영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범위가 HACCP 적용과 관련된 위생안전 시설·설비 개선자금 지원하여 영세 소규모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그 내용과 구성이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 해당 보조사업은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HACCP인증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HACCP인증을 돕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HACCP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업체
- 지원범위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는데 최대 2천만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업체당 사용금액의 국고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지원

○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성과지표인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HACCP인증률 연도별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됨

- HACCP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현황(개소): ('15) 231→('16) 365→('17) 386→('18) 457
-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HACCP 인증율(%) 증가: ('15) 15.8→('16) 18.3→('17) 19.8→('18.11) 22.8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정과제인 안전한 식품제조·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추가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 등 16개 식품 유형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식육가공업자는 반드시 HACCP을 적용하여야 하며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시설 개·보수가 수반되어야 하는 실정임

○ 따라서,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하는 영세 소규모 영업자의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며,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보조방식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HACCP을 의무적용해야 하는 영세 소규모업체의 HACCP 시설·설비 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유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되지 않음

○ 동사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적용 기준을 가지고 있어, 최종단계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필요가 있은 사업으로 판단됨

○ HACCP 단계별 의무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식품(2013년도 매출액, 종업원수 기준)
  - 1단계('14.12시행) :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or 종업원 51인 이상
  - 2단계('16.12시행) : 연매출액 5억원 이상 or 종업원 21인 이상
  - 3단계('18.12시행) : 연매출액 1억원 이상 or 종업원 6인 이상
  - 4단계('20.12시행) : 연매출액 1억원 미만 or 종업원 5인 이하
- 축산물
  - 1단계('18.12시행) :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 2단계('20.12시행) : 연매출액 5억원 이상
  - 3단계('22.12시행) : 연매출액 1억원 이상
  - 4단계('24.12시행) : 연매출액 1억원 미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 업체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개·보수 소요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157.5백만원) 대다수 영세업체의 경우에도 2천만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영세 소규모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HACCP적용 유도를 위해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최대 1천만원 한도(국고보조 비율 50%, 자부담 50%)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자금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요금액의 50%을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보조율의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공고 및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여 널리 사업을 홍보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지원가능한 자격요건을 공고문을 통해 사전에 규정하고 있음

○ HACCP인증 완료 후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해당 연도 HACCP인증을 받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후교부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영업자가 HACCP 인증 후 신청 시 사전에 서류검토를 완료하고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현장 확인 결과 적합인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보조사업 집행에 관하여 HACCP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사업 계획 수립 시 관리감독 및 집행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해당 보조사업 신청 시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해 자격요건 및 지원범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사업대상 영업자 해당품목 HACCP적용 후 보조금 사용 목적에 따라 HACCP 인증에 필요한 설비·시설 개선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및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후교부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을 제정('18.4.5.)하여 관리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제3장(보조사업 집행관리)

<제3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관련 조항 발췌>
제16조(보조금 사용방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제18조(별도 계정 등), 제19조(업무처리의 대행), 제20조(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제24조(예산 절감액 등),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제3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31조(자료보관), 제32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제33조(보조사업 집행점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등을 준수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제3장(보조사업 집행관리)

○ HACCP위생안전 시설개선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 및 보조금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수시로 HACCP인증 현황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을 제정('18.4.5.)하여 관리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제4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제5장(보조사업 사후관리)

<제4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조항 발췌>
제3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35조(과오납의 환급), 제36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제37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38조(부정수급 점검), 제39조(부정수급 모니터링)
<제5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관련 조항 발췌>
제4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제4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43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등을 준수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제4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제5장(보조사업 사후관리)

○ 해당 보조사업은 이미 영업자가 HACCP인증에 필요한 위생안전 설비·시설 개선자금으로 사용하고 HACCP인증을 받아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임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영업자가 HACCP인증 완료 후 신청 시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사전에 서류검토를 완료하고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현장 확인 결과 적합인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 및 보조금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수시로 HACCP인증 현황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별도로 부여하고,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등 모든 절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등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4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4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조항 발췌>
제3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35조(과오납의 환급), 제36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제37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38조(부정수급 점검), 제39조(부정수급 모니터링)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는 없음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하여 적합인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후교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현장 확인, 시장 조사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실행이 요구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사업은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영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업체의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투자가 필요하나, 제조·가공업체 중 대다수가 재정 기반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업체로 산업구조가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조는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은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로 볼 수 있으나 HACCP 인증업체에서 생산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하게 유통·판매됨으로 2차적 수혜자는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판단됨

○ 동사업은 의무적용 기준을 가지고 있어, 최종단계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필요가 있은 사업으로 판단됨

○ 현재 1천만원 이내의 범위(국고보조 비율 50%)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율의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는 없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국고보조율의 근거 논리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현장 확인, 시장 조사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실행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명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이 필요 ○ 본 사업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수혜자는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국민과 축산물 제조업체 신뢰도 향상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축산물 관련 영업자 등으로 광범위함 ○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지와 국민의 전반적인 식습관 변화 등을 고려한 수요예측이 필요함. 또한, 또한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식품과 국민의 전반적인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성이 있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제2항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본 사업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정과제(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의 일환: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57-6)’ 및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57-8)’

- 전국의 축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자체의 참여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을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대체로 광범위함

- 해당 보조사업은 17개 시·도 및 2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축산물안전 관리·감독 및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임

-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전 국민과 축산물 제조업체 신뢰도 향상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축산물 관련 영업자 등이 실질적인 수혜자에 해당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국내 유통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 구성: 유상 수거비, 축산물 검사 재료비, 자치단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

  * 유상수거비 : 축산물 수거비 지원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 축산물검사 재료비 : 계란 살충제 검사 등 축산물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으로 안전이 확보된 축산물 유통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에 필요한 감시원의 운영으로 축산물 위생수준 제고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부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인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적합율(%)'을 사용하고 있음.

- 매년 위생감시 위반율과 수거검사 부적합율이 감소하고 있어 계획한 성과지표 등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 기반을 마련함

- 공중위생의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위생감시 위반율과 수거검사 부적합율 외 다른 지표의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법보다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중앙정부의 축산물위생감시원만으로는 전국의 축산물 관련 영업장(92,879개소, '17.12월 기준)을 관리·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17개 시·도와 228개 지자체는 국가의 식품 안전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비영리적이나 민간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에 적절하지 않음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축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자체의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이 폐지 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동 사업 지원을 통해 사전 예방적 축산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면 축산물 사건·사고 발생 예방 등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가 존재함

- 어떠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지와 국민의 전반적인 식습관 변화 등을 고려한 수요예측이 필요함. 또한,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식품과 국민의 전반적인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22호에 따라 국비 50%, 지방비 50%를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이 적절함

- '16년 결산 기준 99.3%, '17년 결산 기준 94.7%, '18년 결산 기준 98.0%를 집행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비 교부요청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17개 시·도에 적정하게 사업비를 교부 집행함

- 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여부 및 사업실적 등을 '식품안전관리지침' 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되는지를 실적보고 등을 통하여 확인함

- '18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비 교부요청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17개 시·도에 적정하게 사업비를 교부 집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일반적인 차원의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을 제정('18.4.5.)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위반시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일반적인 차원의 사후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위반시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을 제정('18.4.5)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위반시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 부당수급 사례는 없으며, 이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교부 후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입이 되므로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은 낮음

○ 사후 관리 외 부정수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수혜자는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전 국민과 축산물 제조업체 신뢰도 향상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축산물 관련 영업자 등으로 광범위함

3-2 정책 제언

○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지와 국민의 전반적인 식습관 변화 등을 고려한 수요예측이 필요함

○ 또한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식품과 국민의 전반적인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명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보조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5조에 국고 보조할 수 있는 보조지원 업무로 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과 직접 연계된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즉,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국 식품안전에 필요한 예산의 국고지원은 타당성이 인정됨 ·동 보조사업은 17개 시·도 및 228개 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감시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파급범위는 관할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는 등 수혜 범위의 파급력이 인정됨 ·보조금 집행 관리에 있어서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지자체에서 수행한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는 등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 대안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식품위생법 제85조에 국고 보조할 수 있는 보조지원 업무로 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해당 보조사업은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식품의 위해방지, 위생관리를 감시· 감독하는 사업임. 주요 내역사업은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현장 점검 업무 등 데이터 처리 및 실시간 공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으로 구성되어있고 식품위생법 제85조(국고 보조)의 제1항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4항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및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를 근거로 국고를 보조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즉,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 위해 사전예방 및 관리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의무이며 책무라고 판단되며, 전국 식품안전에 필요한 예산의 국고지원은 타당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17개 시・도 및 228개 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감시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파급범위는 관할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는 등 수혜 범위의 파급력이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상시적인 식품안전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식품취급업소를 관리하기 위한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의 내용으로 사업의 목표 달성에 맞게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조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지자체의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식품안전성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남

※ 총 지도단속 재위반률 감소 : ('16) 10.4 → ('17) 5.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식품안전 사전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공공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사업수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식품안전 감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인 식약처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부서)에서만 수행하는 업무로서, 유사중복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외식 증가 등 소비형태 변화와 온라인, 편의점 시장의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가정간편식 등 관리 강화, 이슈 제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을 폐지하였을 경우 식품안전 수준이 급락할 우려가 충분하며, 결과적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에 차질 가능성이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금의 규모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업체 위생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향후 지자체 관내 지도·점검과 유통제품 수거·검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지자체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22호에 따라 50% 정률보조를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식음료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관련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점이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경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음

○ 보조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업무성과 및 관할 관리 업체 수, 기초자치단체 수, 현장보고장비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을 제정('18.4.5.)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경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지자체에서 수행한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는 등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보조사업 정산 시 실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전년도 보조금 집행률에 따라 교부금액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을 제정('18.4.5.)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세부 지출내역들을 확인하여 집행잔액 등을 반납받고,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는 없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5조에 국고 보조할 수 있는 보조지원 업무로 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과 직접 연계된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즉,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국 식품안전에 필요한 예산의 국고지원은 타당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17개 시・도 및 228개 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감시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파급범위는 관할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는 등 수혜 범위의 파급력이 인정됨

○ 보조금 집행 관리에 있어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지자체에서 수행한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는 등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 대안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명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이 요구됨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 유기적으로 설정되어있음 ·성과지표, 성과관리체계 및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1) 사업추진 단계별 성과관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 '이력추적 등록업체 수'를 제외한 내역사업('권역별 설명회(교육) 운영', '콜센터 응대율', '전시회 부스 운영')과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운영의 최근 3년 실적이 2016년 대비 감소함 ·사업방식변경이 요구됨. 1) 사업추진 3단계별 성과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후관리(조사·평가)가 강화가 요구됨 2) 콜센터 응대율 향상을 위한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 3) 홍보사업의 경우 전시회, 박람회, 교육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홍보, SNS 홍보 등 홍보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란 '식품 등을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식품사고 발생 시 회수 등의 신속히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을 공공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있는데,「식품위생법」상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둠

- 제67조에는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제68에는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내용이 명시되어있음

○ 식품안전정보원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은 제68조 2항과 제85조에 근거를 두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강제규정이 아님

「**식품위생법**」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68조(정보원의 사업)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8.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5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정보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목적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식품 등에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조치 지원 등 위해식품의 확산을 방지하고, 식품이력정보 확인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운영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에 해당됨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79-3(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부적합 식품 차단 및 추적관리시스템 강화)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운영 사업의 1차 수혜자는 보조사업자인 식품안전정보원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임.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등록된 7,341개('18년) 식품산업체에서 등록한 31,891개 품목은 국내식품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공급·판매되고 있으므로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외부효과 입증자료는 명확하지 않음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 : ('16) 5,901개소 → ('17) 6,493개소 → ('18) 7,341개소

※ 식품이력관리시스템 방문자 : ('16) 65만명 → ('17) 72만명 → ('18) 88만명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권역별 설명회(교육) 운영 및 제도 홍보 강화', '산업체 현장기술지원(컨설팅 및 조사·평가 등)',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운영', '식품이력 적용업체(품목) 확대 및 중간유통(물류)단계 활성화 지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내역사업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며, 보조사업의 단계별 추진체계와 각 내역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있음

1단계	⇨	2단계	⇨	3단계
인식확산 (전시회, 정책설명회, 온라인 홍보 등)		기술지원 (현장 기술지원, 콜센터 운영)		사후관리 (교육 및 조사평가지원)

내역사업	내용	'18 목표
권역별 설명회 운영 및 제도 홍보 강화	- 대국민 및 산업체 제도 인지도 강화 - 산업체 대상 이력정책 변경 등 교육지원	전시회 홍보부스 3회 설명회 30회
식품이력추적관리 산업체 현장기술지원	- 컨설팅 및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지원 등 - 이력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및 사후관리 내실화	현장기술지원 2,850개소
신속대응지원서비스 운영	- 콜센터 운영 - 산업체 이력제도 운영 지원 강화	콜센터 응대율 88%
식품이력 적용업체확대 및 중간유통단계 활성화 지원	-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산업체 품목등록 지원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무등록 품목 확대 지원	등록업소 수 6900

○ 성과지표, 성과관리체계 및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사업이 사업실적이 감소하고 있거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

- 성과지표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체 수'로 최근 3년간(2016-2018)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함

- 1단계(인식확산)-2단계(기술지원)-3단계(사후관리)의 단계별 성과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후관리(조사·평가) 실적과 성과관리가 부족함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14	'15	'16	'17	'18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체수(건)	목표	-	신규	1,610	6,400	6,900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업체의 등록 업체 수(누계)
	실적	1,282	3,287	5,901	6,493	7,341	

- 최근 3년간 내역사업별 실적을 보면 '이력추적 등록업체 수'는 누계이므로 지속 증가추세이지만, '권역별 설명회(교육) 운영(건)', '콜센터 응대율(%)', '전시회 부스 운영(회)' 모두 2016년 대비 실적이 감소함

구 분		'16년	'17년	'18년
식품이력 관리제도 지원	이력추적 등록업체 누계(개)	5,901	6,493	7,292
	권역별 설명회(교육) 운영(건)	36	41	31
	산업체 현장기술지원(개소)	3,618	2,324	3,155
	콜센터 응대율(%)	-	91.1	90.7
	전시회 부스 운영(회)	7	4	5

2016	◦ 부처간 식품이력시스템 연계를 위한 이력협의체 운영 · 개최(6.14, 7.15, 12.29) ◦ 산업체 의견수렴 및 제도발전을 위한 식품이력발전협의체 구성 · 운영(7.22, 11.21, 12.15) ◦ 영업자 · 공무원의 시스템 사용불편해소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고도화('16.7~12) ◦ 정부 3.0박람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등 대국민 정책홍보(전시회 · 박람회, 7회)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및 자율업체 대상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36회, 1,112명) ◦ 산업체별 전문교육 실시(76회, 998명) ◦ 식품이력추적 현장기술지원 (3,617회) ◦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구축·운영을 통한 산업체 기술지원(7,114회)
2017	◦ 부처간 식품이력시스템 연계를 위한 이력협의체 운영 · 개최(6.28, 12.21) ◦ 산업체 의견수렴 및 제도발전을 위한 식품이력발전협의체 구성 · 운영(4.19, 11.15, 12.20) ◦ 영업자 · 공무원의 시스템 사용불편해소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고도화('17.1~12) ◦ 식품안전의 날 행사 등 대국민 정책홍보(전시회 · 박람회, 4회)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및 자율업체 대상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41회, 1,365명) ◦ 식품이력추적 현장기술지원 (2,324회) ◦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구축·운영을 통한 산업체 기술지원(12,541회)
2018	◦ 부처간 식품이력시스템 연계를 위한 이력협의체 운영 · 개최(4.24, 12.20) ◦ 제도발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식품이력발전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업무협의(2.27, 6.27, 7.27, 12.14) ◦ 식품안전의 날 행사 등 대국민 정책홍보(전시회 · 박람회, 5회)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및 자율업체 대상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31회) ◦ 식품이력추적 현장기술지원 (3,147회)

- 최근 3년간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운영 실적은 2016년 대비 감소한 상황으로, 콜센터 응대율 향상을 위한 사업방식 개선이 요구됨

※ 콜센터 연간 콜 수: '16년 19,076콜→ '17년 12,541콜→ '18년 16,498콜
※ 월평균 콜 수: '16년 1,590콜→ '17년 1,045콜→ '18년 1,374콜
※ 상담원 1인당 1일 평균 콜 수(3명, 월22일 근무기준): '16년 24콜→ '17년 16콜→ '18년 21콜

- 홍보사업의 경우 전시회, 박람회, 교육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홍보, SNS 홍보 등 홍보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운영 사업은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산업체가 등록하여 식품이력정보를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력정보를 추적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와 산업체가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상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문제는 발견되지 않음

- 타 부처 유사사업으로는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이력제'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이력제'가 있으나, 관련법령과 대상품목, 사업방식 등이 상이하여 통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유사중복문제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공식품 이력제'는 동일한 제도임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이 크지 않으나, 1)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7.4.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8.2.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8.6.28)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 확대로 대상업소(품목) 증가에 따른 등록지원이 필요하여, 보조사업 연장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6년 431백만원, 2017년 388백만원, 2018년 263백만원, 2019년 263백만원으로, 연간 인건비(18명) 759백만원, 경상비는 130백만원이 소요됨

○ 실집행율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100%로 불용액 없음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국고보조 100%이며, 보조율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산정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와 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함이 인정됨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문제식품의 회수를 지원하여 국민 식품안전에 기여

- 식품 제조 시 원료부터 출고까지 기업이 등록 관리하고 이력정보(원재료 등)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사회적 책임이행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식품위생법」 제68조(정보원의 사업) 등 법령상 근거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수행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8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제9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10조(보조사업자 공모), 제11조(중복수급 확인·점검), 제12조(수급자격 확인·점검), 제13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부터 제33조(보조사업 집행점검)에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

○ 동법 제33조(보조사업 집행점검)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18.3)'을 수립하여 분기별 점검결과를 보고

- 보조금 집행 및 점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제5장(보조사업 사후관리)에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내용을 통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에 따라 검증은 식품안전정보원 결산서로 갈음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과 이자수익은 반납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점검 등 모든 절차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사례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37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38조(부정수급 점검), 제39조(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라 부정수급방지 대책마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며, 외부효과 입증자료는 없으나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 내역사업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며, 보조사업의 단계별 추진체계와 각 내역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있음

○ 성과지표, 성과관리체계 및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1) 사업추진 단계별 성과관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 '이력추적 등록업체 수'를 제외한 내역사업('권역별 설명회(교육) 운영', '콜센터 응대율', '전시회 부스 운영')과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운영의 최근 3년 실적이 2016년 대비 감소함

○ 사업방식변경이 요구됨. 1) 사업추진 3단계별 성과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후관리(조사·평가)가 강화가 요구됨 2) 콜센터 응대율 향상을 위한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 3) 홍보사업의 경우 전시회, 박람회, 교육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 SNS 홍보 등 홍보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됨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명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함 ·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만족도조사방법에 결함이 있는 등 성과관리 노력이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됨 · 검사능력 강화 및 장비·시설 활용 증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의거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건환경연구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물위생시험소법 제9조 등이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 제9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법 시행령 제4조(국고보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 동물위생시험소법 제9조 >

○ 국가는 시험소 및 지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주요 목적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국정과제)를 위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이며, 국정과제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식품·의약품 수거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국민 건강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직접적 수혜자는 전국 시도의 시험검사기관이지만 식의약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시험장비 도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노후화율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이 거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무부처는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각 보조사업자별 계획대로 집행되어 실험실 검사능력을 크게 강화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입 장비 실적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내역사업의 집행비율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동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연도별 구입 장비 실적 >

연도	2017	2018	2019
지자체	14	16	16
구입 장비(대)	16	18	17
주요장비	IR/MS, GC/MS, ICP/MS, HPLC 등 10종류	LC/MS/MS, HPCL, GC, 보건용마스크 검사장비 등 10종류	lC/MS/MS, Microwave, IR/MS 등 8종류

< 연도별 성과지표 및 딜성도 >

연도	2017	2018	2019
배정액(백만원)	1,000	1,000	1,000
집행액(백만원)	974	978	960
집행율(%)	97.4	97.8	96

- 구입 장비 실적은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산출물에 불과하며, 구입 장비로 인해 검사능력이 얼마나 정확해졌는지, 노후화율 개선 및 장비활용도는 증가되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추가로 제출한 시도 검사기관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평가결과, 숙련도 평가결과, 시험검사 건수를 이용한 장비활용도 등을 성과지표로 개발하여 성과관리에 활용해야 함

- 201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시설 이용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도 기관별로 지원 장비 운용 현황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 집행률의 경우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판단되기 때문에 성과지표로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지적한 바대로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

○ 추가로 제출한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사업 만족도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우선 동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보조금으로 구입된 장비 및 시설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주무부처의 의사결정, 지원활동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조사대상도 주무부처 담당자가 81명,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1명으로 되어 있어, 동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위한 정보로써 활용하기 어려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첨단 분석 장비가 부정·불량 식품 등을 판별하는 실험실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고가의 분석 장비 구입 시 예산배정에 우선순위로 책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식·의약품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특성상 매일 일상적으로 유해물질 분석이 실시되므로 중앙부처의 업무이관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분석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무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동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투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의 대부분이 주로 첨단 장비 도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동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1-6 사회적 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추진 여건 검토(회계연도 4월 30일 이전에 장비수요량, 검사건수, 조직 및 인력, 자부담능력 등을 포함한 수요조사) 후 정부안이 확정되면 임시통지 및 지방비 매칭을 실시하고 사업 확정 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확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절차는 적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시·도 각 담당자들이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시스템)을 통해 집행정보를 입력하고 있으며, 장비구입 등의 집행은 조달입찰을 통해 수행되고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집행은 적정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적정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구입한 분석 장비를 확인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및 목적은 명확하고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도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다양한 시책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검사능력 강화 및 장비·시설 활용 증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이를 통한 성과관리 추진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명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 추진.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사항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각 내역사업이 일정한 효과성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됨. · 향후, 급식 관리센터 구성원들의 역량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평가 관리 등을 내실화할 필요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식품 조리·판매환경 기반 구축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보유하고, 같은 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에 국고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5.21.>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2.6., 2014.1.28.>

○ 어린이 식생활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실천과제) 57-7.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먹거리 복지 구현 (일자리 과제) 26.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가 중앙정부에 일차적으로 귀속되어 있음.

○ 국가 보조사업이고 지자체가 경상 지원을 받아 시행하지만, 그 효과는 일차적으로 어린이에게 나타나고 넓게는 전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침. 지방정부는 급식센터를 통해 급식

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의 체계적 지원,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정서저해식품 등 구입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가 미래 국민인 어린이의 건강 확보하는 것으로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이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환경을 조성하고,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의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의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 등의 사업내용이 효과를 발현하는 것으로 평가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센터 등록 집단급식소(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법령 위반율(평균 0.56%)이 미등록 시설(평균 1.77%)에 비해 3배 이상 낮아지고(최근 3년), '식사전 손씻기' , '편식감소율' 등 어린이 식습관도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됨.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대체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임.

-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의 상시 지도·계몽 및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조리·판매환경 조성하는 노력 인정됨.

○ 보조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되고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및 개선할 필요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센터 시설 지원율, 어린이 수혜율, 전체 대상 급식소 등은 모두 활동지표이고 부모만족도는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갭을 보완할 성과와 효과 중심의 지표를 보완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할 필요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인정되고,

○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분담하여 매칭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해당

사업의 직접적 수행자인 지자체 재정 형편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 비율을 30~50%(서울 30%, 그 외 50%)로 분담하여 수행하고,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의 국고보조는 50%를 지원하는 사실 확인됨.

-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시에 국정과제(국정과제 번호 : 57-7)에 해당하는 사업임.

○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사회적 돌봄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위해 국가차원 급식관리 지원이 필요하고 보육 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부실급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급식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커져 보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전담관리원 운영경비'는 국정과제로서 '22년까지 점차 규모가 증가하는 플랜으로 설계되어 있어 재정지원 규모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재정 지원 비율은 전국 50%를 기준으로 하되 서울은 30% 정률 보조를 하고, 경기도 평택시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70%를 지원 하는 것으로 하여 대체로 적정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사회적 돌봄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위해 국가차원 급식관리 지원하고,

-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즐길 수 있도록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개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지방비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비 교부요청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17개 시·도에 적정하게 사업비를 교부 집행함

- 센터 운영, 예산 편성·집행, 주요 업무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수행의 적절성 등 점검하는 사실 인정됨.

○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교부 신청서의 목적, 사업내용의 적정성, 예산, 자기자급의 부담능력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식약처에서는 연 1회 예산 사용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센터 평가 실시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내역 및 활동비 지급액에 대하여 매 분기별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를 받아 보조사업 수행 점검하는 사실 인정됨.

○ 보조사업 실 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을 시 센터 평가에 반영하는 사실 인정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고보조금의 사용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예산 사용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사실 인정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등을 준수하는 사실 인정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 없고, 시민단체의 견제와 감시가 강력한 상태이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보유하고 가동하는 사실 확인됨.

○ 전국 220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및 예산집행지침을 식약처에서 제작 배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확인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등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사항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모두 인정됨.
- 다만, 급식관리센터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평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2 정책 제언

○ 성과지표를 보조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센터 시설 지원율, 어린이 수혜율, 전체 대상 급식소 등은 모두 활동지표이고 부모만족도는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갭을 보완할 성과와 효과 중심의 지표를 보완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핵심 사업인 HACPP 인증을 위탁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정상추진함.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독립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이 명확함.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기관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기능이 체계화되어 있음.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으로서 지속성이 충분히 인정됨.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체계성이 계속 강화되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역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속적인 기관지원과 기관운영의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다만, 부실인증에 대한 언론 비판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관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게 보조사업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48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44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원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등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8조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44조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사업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임.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함.

○ 기획재정부에서 수지차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기관이 설립·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운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 2019년 예산 기준으로 인증원의 자체 수입은 4,258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함.

○ 자체 수입의 비중은 사업환경에 따라 연도별 증감변화가 있음. 기본적으로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목적 타당성이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사업의 내역은 인증원의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등임. 사업비는 통합청사 마련비, 인증심사 등 여비, HACCP 활성화, HACCP 연구개발, 안전관리통합인증구축, 심사관 교육, 경영평가 성과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항들임.

○ 인증원의 활동은 HACCP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위탁되어 있는 인증, 변경인증, 안전관리인증업무의 조사평가, 조사연구, 교육, 기술지원 사업 등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함. 인증원의 핵심 성과지표인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HACCP 적용 생산비율(%)은 매년 목표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기관 설치에 대한 독립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해 매년 안정적인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원료부터 판매단계까지 위해요소 사전 관리를 통해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HACCP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인증 등의 업무는 공신력이 필요한 업무로 전문기관을 통한 인증 등의 업무수행이 필수적임. 이러한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인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인증원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인 HACCP 인증, 기술지원, 교육, 조사연구 등은 대부분 전문인력의 투입으로 현장방문 등의 형식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2018년 총 사업비 22,924백만원(국고 18,985, 자체수입 3,939) 중 인건비 12,120백만원(53.0%), 사업비 7,992백만원(34.7%), 경상비 2,812백만원(12.3%)로 구성됨.

○ 인증원의 예산규모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연계되어 있으며 매년 주무부처의 업무계획에 따라 재원지원 규모가 결정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증원의 핵심활동은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자체가 인증원의 고유 기능임.

-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들은 본 평가의 가산점에서 제한적으로 반영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준정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HACCP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정기관이며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에 대해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음. 동 평가에서 기관운영과 관련된 각종 경비들의 적정성을 계량 및 비계량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있음.

○ 2017년 결산에서 11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경영평가 성과급 평가등급에 따른 차액반납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등 농장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여비 잔액 반납 그리고 상임이사(2명) 공석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잔액 반납 등임.

- 이는 기관운영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으로 집행과정에서 의미있는 쟁점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있음. 동 평가에서 기관운영 전반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받고 있음.

○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보상 조치가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서 적정성이 인정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사례가 없으며, 기관운영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련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이 설치·운영되었음. 이에 따라 기관운영에 대한 일반 경비들을 국가의 보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주요 성과지표에서 목표대비 성과를 적절하게 달성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됨.

○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경영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서 특별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음.

3-2 정책 제언

○ 기관 운영과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살충제 계란'과 지난달 2000명 넘는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켰던 한 식품업체의 초코 케이크에서 기관이 운영하는 HACCP 인증을 받았음.

- 이에 따른 부실인증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기관의 인증제 운영의 엄밀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고, 사업수요가 충분하며, 재정규모가 적정하고,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짐 · 수지차 보전방식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조금 규모 산정방식 개선을 고려하기 바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은 「의료기기법」에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의료기기법 제 42조, 제43조 2항>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정보원의 사업)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료기기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2. 신개발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지원
3.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인증·신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원
4. 의료기기의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등 지원
5. 의료기기 안전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7.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및 의료기기 제조허가·인증·신고 정보 등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이하 "의료기기안전정보"라 한다)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
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정보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이 수행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사업 범위는 「의료기기법」제4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 -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의료기기 안전관련 정책수립 조사·연구, 의료기기 규제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국내외 규격연구 및 정보·기술분석 강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수집·분석 및 평가,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관리, 행정관리시스템 구축 - 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사업범위와 연계성이 높아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은 국내·외 신개발 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 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통해 업체 애로사항 해결 및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로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업계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타당한 사업임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의료기기 규제교육 수강생 및 컨설팅 지원 업체이며,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 및 품질관리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에서 수행하는 내역사업들은 국내·외 의료기기 제도·인허가 및 임상·부작용 등 종합적인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제공과 업체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은 사업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내역사업의 주요내용>

내역사업	주요내용
·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운영 · 관리	·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에 대한 전주기 통합관리 시스템(UDI) 운영·관리 체계 구축
· 의료기기 안전관련 정책수립 조사 · 연구	· 국내 의료기기 관리제도 개선분야 정책연구
· 의료기기 규제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의료기기 신속제품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 국내외 규격연구 및 정보 · 기술 분석 강화	· 국제규격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 국가표준(KS)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내외 표준화 활동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수집 · 분석 및 평가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수집·분석 및 평가 · 의료기기 부작용 안전정보 제공 및 부작용 보고 교육
·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관리	·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운영을 통한 안전성정보 조사·수집

○ 보조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음

-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계획한 목표를 달성함

내역사업	성과지표	'16	'17	'18		
				목표	계	달성률
· 의료기기통합정보 센터 운영 · 관리	- 가이드라인 발간(건)	-	-	5	5	100%
	- 가이드라인 세미나(회)	-	-	2	2	100%
	- 민원설명회 및 교육(회)	-	-	3	8	266%
· 의료기기 안전관련 정책수립 조사 · 연구	- 규제동향 보고서 발간	-	-	1	1	100%
	- 정책제언(건)	-	-	1	1	100%
· 의료기기 규제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양성					
	- 교육 인원(명)	514	640	700	714	102%
	- 교육 횟수(회)	10	16	20	20	100%
	의료기기 품질관리(GMP) 교육					
	- 교육 인원(명)	5,297	438	310	368	119%
	- 교육 횟수(회)	104	21	15	15	100%
	맞춤형 기술지원(개소)	85	87	65	69	106%
	맞춤형 임상지원(개소)	30	40	30	32	107%
· 국내외 규격연구 및 정보 · 기술분석 강화	- 가이드라인 개발(건)	114	65	40	42	105%
	- 표준 동향 소식지 발간(회)	-	6	12	12	100%
	- 실무활용서 개발(건)	-	-	3	3	100%
	- 교육·세미나(회)	6	6	4	4	100%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수집 · 분석 및 평가	- 부작용 수집(건)	5,315	6,078	6,686	28,037	419%
	- 업체 부작용 보고(건)	1,620	2,530	2,783	22,895	823%
	- 후속조치 필요 도출(건)	475	798	878	2,217	253%
·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관리	- 안전성 정보 수집(건)	3,658	3,524	3,740	5,080	144%
· 행정관리시스템 구축	- 행정관리시스템 구축	-	-	1	1	10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내 의료기생산 업체들은 영세 규모 업체가 대다수이므로('17년 기준 생산액 10억원 미만 의료기 업체가 81%에 달하며, 종사자 2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83.5%임)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품질관리, 인허가 등 분야별 지원체계 확립 및 업계 눈높이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이 필요함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유사 · 중복성이 없음

○ 국내 의료기 생산 업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업체 자생력 확보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시장 공급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가 필요하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함

○ 사업 폐지 시 영세한 업계 구조상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최신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하락하고, 기술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른 인허가 및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그 결과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전(全)단계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가 어려워지고, 부작용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평가 및 정보제공 저하로 의료기기 피해·사고 확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수출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규모는 '18년 현재 4,488백만 원으로 이 중 순수 행정비용으로 소요되는 관리 운영비는 1,905백만 원이며, 실제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2,583백만 원으로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에 재정지원 규모가 실효성을 지님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3,994백만원	4,488백만원	4,581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3,994백만원	4,488백만원	4,581백만원
	%	%	%

○ 각 내역사업별 사업비와 예산금액 규모는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를 밝혀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규모는 사업 목표 달성에 적합함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보조금 지급에서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 기관으로 매년 기재부의 심의를 받아 국고보조금을 100% 지원받고 있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 보조율 준수 여부는 해당사항 없음

-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말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재정수입 현황, 2018년>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8,648,22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4,488,000	
자체수입	교육수수료	1,062,092	
	위탁인증수수료	885,699	
	기술문서심사수수료	488,600	
연구용역	수탁사업	1,723,830	

- 2018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재정수입 현황을 보면, 총 예산(8,648,221천원) 대비 보조금 지원은 52%(4,488,000천원)에 해당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보조사업은 의료기기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연계 및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중기('19년~), '18년 시범사업)하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미취업자 대상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청년패키지 과정',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주도형 과정' 등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

- 의료기기 인허가 등 전반에 관한 평가·검증을 위한 자격증을 운영하며, 민간국가공인자격 승격('18.10.12)을 통해 동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의 공신력 확보 및 취업연계 확대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을 제정('18.4.5.)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제2장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조항 발췌>

제7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제8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제9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10조(보조사업자 공모), 제11조(중복수급 확인·점검), 제12조(수급자격 확인·점검), 제13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제14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5조(보조금 교부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능력을 지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적절한 집행관리 체계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제3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관련 조항 발췌>
제16조(보조금 사용방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제18조(별도 계정 등), 제19조(업무처리의 대행), 제20조(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제24조(예산 절감액 등),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제3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31조(자료보관), 제32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제33조(보조사업 집행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조금 부정수급 연간점검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분기별 집행현황, 보조금 정산내역 등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추진하여 보조사업을 적절하게 집행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납 및 중요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제4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제5장(보조사업 사후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조금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사후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정관 및 내부 『회계규정』에서 결산보고서 제출 시 외부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매년) 및 감사담당관실(3년)에서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조금 부정수급 연간점검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발생가능성을 사전 예방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조금 부정수급 연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4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등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갖추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은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구체적임

○ 보조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계획한 목표를 달성함

○ 보조금 규모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예산은 수지차 보전 방식을 적용하여 자체수입을 고려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고, 정액보조방식을 취하여 보조율 100%로 예산을 지원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조사업 사업자 선정, 집행체계,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인허가 등 분야별 지원체계 확립 및 업계 눈높이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업체 자생력 확보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공급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사업에서 수지차 보전방식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자체수입 증대 노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조금 규모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공동협력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인권위원회
사 업 명	인권단체 공동협력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48.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2.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2.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8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8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3.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사업 자체의 취지는 인정되나 이하의 내용과 같은 미비한 점이 상당 수준 노출되고 있음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역사업이 충실히 구성되어야 하나, 내역사업이 유형화되어 있지 않은 등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제반 관리 수단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 등에 대한 다수 정보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제시된 일부 정보의 경우 담당 부처의 전문적이고 엄밀한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닌 상식적 수준에서의 단순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고민과 관리의 정도가 여타 보조사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고 판단됨 ·부처가 당초 제시한 기초보고서의 정보력이 여타 부처의 보고서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재작성을 권고한 바 있으나 수정·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수정·보완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등 사업에 대한 관리 여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당초 감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처가 위의 사항을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고 기속력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제도개선방안: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각 내역을 활동, 목표 또는 특징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내역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 본 보고서는 부처가 당초 제출한 기초조사보고서와 1차 대면심사를 바탕으로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부처가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할 때,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 훈령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즉 본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 부처가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10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중 하나에 해당하며 그것이 곧 해당 임무를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야 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현재 보완 추진중)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조 내지 제3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제1호의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2. 인권 관련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3.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4.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5. 기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적 관점의 사업 여부와 관련하여, 여타 보조사업과 달리 본 사업은 부처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엄밀하고 전문적인 내용 및 방식에 따라 기초보고서에 적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타 보조사업과 달리 적정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음

○ 부처는 기초조사보고서에서 인권옹호 활동의 수혜자가 국민 전체라고 주장하나 인원 옹호가 필요한 특정 국민일 것임. 부처는 본 사업의 직접적/간접적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이 활동, 목표 또는 특징 등에 따라 유형화되어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이러한 사유 등에 기인하여 각 내역사업의 적정 수행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과 관련하여 부처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엄밀하고 전문적인 내용 및 방식에 따라 기초보고서에 적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타 보조사업과 달리 적정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음

○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여겨짐

○ 부처는 인권의 중요성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인권의 중요성과 비영리민간단체에의 지원간 연결고리 및 상관(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와 관련하여, 부처는 관련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부처는 본 보조사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민간에게 국고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민간이 국고지원없이 수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아 부처의 현재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 해당 사업이 폐지될 때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재정적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인권시민단체활성화가 지체되는 측면은 있겠으나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인원 중시 또는 제고 자체가 저하될 확률은 낮다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각 시민단체 지원 예산으로 행정비용은 매우 근소한 수준임

○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부처는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와 관련하여 부처는 적절히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2단계(1단계 요건심사, 2단계 내용심사)의 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본 사업심사위원회에서 기준에 의한 사업별 심사, 지원제외사업,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선정 및 교부와 관련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대체로 적절히 관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를 주당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집행 이후 잔액을 환수 조치한 실적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e나라도움 시스템의 지원으로 향후에도 부정수급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부처는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 자체의 취지는 인정되나 이하의 내용과 같은 미비한 점이 상당 수준 노출되고 있음

○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역사업이 충실히 구성되어야 하나, 내역사업이 유형화되어 있지 않은 등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 본 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제반 관리 수단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 등에 대한 다수 정보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제시된 일부 정보의 경우 담당 부처의 전문적이고 엄밀한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닌 상식적 수준에서의 단순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고민과 관리의 정도가 여타 보조사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고 판단됨

○ 부처가 당초 제시한 기초보고서의 정보력이 여타 부처의 보고서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재작성을 권고한 바 있으나 수정·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수정·보완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등 본 사업에 대한 관리 여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제도개선방안: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각 내역을 활동, 목표 또는 특징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내역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

○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 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 아래에 부처의 향후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 등을 담은 공문서를 첨부함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개선 추진 계획

우리 위원회가 추진중인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보조금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개선추진 계획. 끝.

담당자	최준석	행정사무관	남경혜	정책교육국장	조영호	사무총장	2019.3.20. 조영선
협조자							
시행	홍보협력과-318			접수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13층 홍보협력과 (저동1가)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875 팩스번호 02-2125-0920 / jschoe@nhrc.go.kr / 대국민 공개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개선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2016. 1.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 설정, 필요성에 대한 평가, 정보공시 의무 등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 기획재정부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에서 2019년부터 소액 사업도 연장평가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관리 적정성 중심으로 평가** 실시

○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실효성, 필요성 등 평가

○ 사업의 타당성(70점), 관리의 적정성(30점) 항목을 정량평가하여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등으로 최종 평가. 평가 결과는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 이에 따라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관행적 관리·감독 미비점 검토, 보조사업의 **성과관리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황 분석**(SWOT 분석)

○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의 제도적 개선·보완 사항 도출을 위해 인권위 내부 환경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요소와 외부 환경의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소 파악

○ (**강점, 기회**) 인권위는 인권전담 독립기관으로서 인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 시민사회단체와의 신뢰 회복 등으로 **인권문화 확산에 주도적 역할 가능**. 사람 중심 인권 존중 정부, 국제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강조 등 **인권보장 체계 제도화에 우호적 여건**

○ (**약점, 위협**) 중장기 「인권증진행동계획」과 재정사업의 연계성 부족, 관행적 사업 관리, 성과관리 제도화 미흡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관리 미흡** 지적 우려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환경 분석(SWOT 분석)]

강점	약점
• 인권전담 독립기관으로서 진정 사건 조사, 정책검토, 인권교육·홍보, 교류·협력 등 다양한 기능·역할 수행 • 시민사회단체의 인권위에 대한 신뢰 회복, 사업 공동 추진 확대	• 인권위 중장기 업무계획과 보조사업의 연계성 부족 • 보조사업에 대한 관행적 관리·감독
기회	**위협**
• 사람 중심 인권 존중 정부, 인권 상황 개선 요구에 대한 우호적 정치·사회 환경 • 차별금지법 제정 등 시민사회단체의 인권보장 체계 제도화 요구·지지 • 국제사회에서 인권기구와 시민사회단체 협력 강조	• 인권위 자체 추진 사업과 경계 불명확 지적 우려 • 재정사업의 효율성·효과성 강조 추세에 따른 사업관리 체계 제도화 미흡 지적 우려 •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

□ **문제점**

○ 인권위 3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인권증진행동계획」과 재정사업 자원배분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보조사업의 중장기 목표 제시 미흡

○ 인권 범위의 광범위성·확장성으로 **보조사업 목적과 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사업 목표 설정 및 성과 분석 곤란**

○ **합법적 집행 중심의 관행적 사업 관리**로 사업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미정립

Ⅲ. 사업 개선 추진 방향

□ **기본 방향**

○ 인권위 내부의 강점을 토대로 **외부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취약 요인 보완**

○ 「인권증진행동계획」 실현을 위한 **보조사업의 중장기 목표 설정**

○ 보조사업 목표 대비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관리 지표 개선**

○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성·창의성 존중**,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확대

□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목표 및 범위 설정 구체화**

○ 현행 사업공모 방식(주제공모, 자유공모)을 규정에 반영하여 **사업방식 구분 명확화, 「인권증진행동계획」 전략목표 반영한 주제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의 중장기 추진 목표와 범위 구체화**

- **주제공모** : 혐오표현 확산 대응 등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중장기 주요 전략목표 과제 중심**으로 지원 강화
- **자율공모** :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인권 관련 연대 강화 사업 등 **시민사회단체 자발적·창의적 추진 사업 지원**

○ 2020년부터 **「인권증진행동계획」 역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보조사업 지원 확대·강화하여 **인권위 중장기 전략목표와 연계성 강화**

○ 제6기(2021~2023년)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 시 주요 전략과제와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연계 강화 분야 적극 고려

□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

○ 보조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 추진 방식(인권교육, 정책모니터링, 공론화 등)을 고려한 계량적·비계량적 **성과 목표 사전 검토, 사업 결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

○ 보조사업의 목표 대비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정립

- 보조사업 **기대 성과(수혜대상자, 파급효과 등) 설정, 공고문에 제시하고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사업 유형을 고려한 성과관리
- **주제공모** : 「인권증진행동계획」 전략과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고려한 **성과관리 목표 설정, 공모문에 반영, 사업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자율공모** :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성과 목표 자율 설정**, 사업 결과보고서에 당초 사업 **목표 대비 실적 자체 평가 결과 제출**

○ 공모 신청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사업 목표 및 기대 성과를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심사·평가 기준 보완**

○ 보조사업 성과 관리 관심 제고를 위하여 사업결과보고서에 자체 평가 포함하도록 **규정 정비, 공고문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사업 점검·관리 체계 강화

○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업변경 범위와 한계**, 보조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 규정화**

- 보조사업 **사업비 편성 및 사업내용 변경 기준 마련**하여 사업 집행관리 강화

- **우수사업 인센티브 부여, 문제 사업 불이익 조치 방안**에 대한 규정 마련

○ 보조금 관련 규정,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평가제도, 정보공시제도 및 방법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내실화

○ 보조사업 적정 집행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모니터링 강화

○ 보조사업의 안정적 추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타 기관 규정 등을 참고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치 방안, 관리·감독 등에 대한 규정 반영

□ 보조사업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제10호,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국가인권위원회 훈령)에 따라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추진

○ 인권보장 체계 제도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권기본법안」에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 2019. 3.~4. 보조사업 관련 타 기관 운영 자료 수집·분석

□ 2019. 5.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개선안 마련

□ 2019. 6. 개선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 2019. 7. 개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2019. 8.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개선안 보고

□ 2019. 9.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추진

□ 2019. 12.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

EBS프로그램제작지원
KBS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공익채널운영실적점검평가(민간)
국악방송지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환경조성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아리랑국제방송지원
위치정보활용긴급구조지원체계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인프라개선(민간)
한국방송공사대외방송송출지원(민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EBS프로그램제작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EBS 프로그램의 **사업방식 변경**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타방송사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다소 부족하고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결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는 EBS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및 타방송사 프로그램와의 차별적인 편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보조 사업 목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시청자의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최근 지속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하여 자체 예산과 보조금의 교차 사용과 같은 부적절한 집행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한국교육공사법 [법률 제13074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법률 제13072호]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보조사업관련 법령과 규칙의 구체성: 관련법률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동법령 5항에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을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규칙의 구체성이 인정됨

○ 보조사업과 법령, 규칙간 연계성: 보조금 사업이 한국교육공사법 [법률 제13074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법률 제13072호]에 근거하고 있어 보조사업과 근거법령, 규칙간 구체적인 연계성이 존재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비수익적인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과 품질 제고를 통하여 시청자 권익 증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민간방송에서 수행할 수 없는 비수익적 교육방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의 광범위성, 혜택의 명확성: 방송의 수혜자는 전국민이라는 점에서 수혜자가 광범위하고 혜택이 명확함

- 특히, 사적 민간교육채널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수혜의 혜택이 클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EBS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독서교육 라디오 프로그램, 초중학 안전교육 프로그램, 2TV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수요에 맞춘 구성을 하고 있는 점에서 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은 공익적인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와 청취자의 권익 증진 및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내용과 목표가 명확함

○ 본 사업은 유아·어린이, 청소년, 평생교육,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분야에 다양한 종류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함

- 다만, 시청자의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 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른 민간부분이나 타 공영방송과 좀 더 차별화되는 보다 교육적 목적에 기반을 한 프로그램의 제작하는 노력이 요구됨

○ 사업내용의 유사중복성, 통합가능성: 공익적·공공적 특수성을 지닌 교육방송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 공영방송사인 EBS가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유사중복성은 없음

- 다만, 타 방송사 프로그램의 중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조 사업 목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사업의 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를 제한 할 우려가 있으며 공영방송임에도 전체 재원 중 공적재원이 25.9%에 불과하여 재원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7년 본 사업의 규모는 281억원임

- 본 사업은 매년 소요액을 자체 검토 및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나 개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나 규모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율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없이 정부 지원범위에 대해 예산 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근거나 구체성은 높지 않음

○ 본 사업은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청자 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중기재정 소요계획을 마련·반영하고 있으나 소요계획의 구체성이 높지 않은 편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의 주요 시청자 계층이 경제적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보편적 교육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구현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공모절차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에 의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교육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공영방송인 EBS에서 추진하도록 특화된 사업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매년 본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EBS)의 세부사업수행계획, 중간보고, 종료보고 등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 등을 보고 받고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수시 점검함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제출(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회계검사 실시(연 1회), 회계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정기 및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부적정한 자금집행을 적발했을 경우,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할 수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매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기금사업비 집행의 적절성을 검증받고 있음
-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 사업비를 관리 및 정산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서 각종 보고서 제출, 관리 및 정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 사업비를 관리 및 정산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매년 보조금 관련 법령, 교부조건 준수 및 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기금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 부정수급 관리는 적정하나 최근 지속적인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 예산과 보조금의 교차 사용과 같은 부적절한 집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목적은 비수익적인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보조사업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의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과 중복성, 부적절한 집행가능성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교육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K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일부 프로그램과 중복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최근 EBS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과 전반적인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2.8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11개 언어의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어왔고 방송의 성격상 국비지원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방송 모두 만족도조사, 의견청취 등 사업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성과관리가 안되고 있음에 따라 10% 감축권고함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를 망라한 대부분의 공공분야에도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매년 엄격히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외방송의 경우 상위의 단위사업 성과관리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인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고, 사회교육방송은 정기적인 의견청취 및 개선 등 한계가 있음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 사업을 분석하고 환류를 상시화 함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방송법 제54조(업무) 제1항5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즉, 공사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실시함

- 보조금 지원근거는 동법 제54조 제1항5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KBS가 실시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은 국책방송으로서 국가위탁사무임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중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사업으로 운용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KBS 대외방송 제작지원 사업의 목적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과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위함임

- 이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수행은 지자체나 민간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방송법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사업의 수혜범위를 살펴보면 사회교육방송의 경우 재외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외방송의 경우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국익증진 등 국가 브랜드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혜자는 전 세계인으로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교육방송은 동북아에 집중된 한민족과 분단이라는 한국의 상황으로 인해 국제방송과는 별도로 우리말로 행하는 특수한 방송으로, 북한지역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거주 동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임

- 대외방송은 국제친선과 문화·경제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말 포함 11개 언어로 방송됨

○ 자체평가서에서는 동 사업을 통해 반세기 이상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지내온 북방동포들에게 동일 민족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며, 전 세계인에게는 다양한 한국 관련 프로그램 청취를 통해 문화·경제교류 촉진 등 Korea브랜드 확산에 기여해왔다고 정리함

○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관련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외방송의 경우 방송되고 있는 다양한 언어권의 국민대상 만족도조사와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교육방송의 경우도 대 북한 대상이라는 제한된 조건 내에서도 의견들을 청취하여 다음 방송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활동들이 인지됨

○ 그러나 대외방송의 경우 아래의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성과지표가 비교적 단순한 경향이 있고, 성과목표의 경우도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하여 달성률을 높이고자 하는 점은 있음

구 분	2016			2017			2018		
	목표 (A)	달성 (B)	달성률 (B/A)	목표 (A)	달성 (B)	달성률 (B/A)	목표 (A)	달성 (B)	달성률 (B/A)
· 프로그램 제작실적 (한민족/국제방송통합지표)	18,500	25,387	137%	22,000	24,969	113%	22,000	26,309	119%
· 대외방송 청취자 만족도 조사	80	82.7	103%	81	83.3	103%	81	85.9	106%

○ 사회교육방송의 경우도 제한된 조건이지만 가능한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효과 제고 노력일 기울여야 할 것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자체평가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동질성 증진, 세계인을 대상으로 국제친선 및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국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음

- 사실 이상의 내용은 기초조사표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으로서 물론 이러한 역할을 부정하기 어려움

○ 이상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부터 약 13년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상단의 사업의 효과성 부분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효과성 즉, 기본적인 사업의 목적 외에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현시점에서는 추가될 필요가 있음

- 2019년 예산자료설명서에 나와있는 단위사업의 성과와 같이 본 세부사업의 경우도 정리 및 제시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총예산은 87.1억원이고 이 중 사회교육방송이 37.2억원 대외방송이 49.9억원이 소요됨

○ 2019년도 예산설명서 상 중기재정('18~'22) 소요전망을 살펴보면 '20년도부터 90.4억원으로 증액이 필요함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체평가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방송법 제54조(업무) 제1항5에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대해 적시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의 경우 공모절차 없이 KBS가 수행함

- 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3에 따라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KBS가 수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KBS의 세부사업수행계획, 중간보고, 종료보고 등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 등을 제출받아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내부적인 관리감독체계나 집행점검체계가 별도 규정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서에서는 중간, 최종보고서 검토, 사업종료 후 정산 및 회계보고서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자칫 이러한 절차들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 수 있으므로 점검회의 결과 도출된 문제 및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논의 및 개선내용 등이 정리되어 기록되어야 할 것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고투입에 따른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 따라 각 내역사업별로 추진주체들의 애로사항, 만족도 등을 중간청취 후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다음 해의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임

○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결과들을 환류시켜서 기관 본래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공영방송인 KBS에 특화된 사업임에 따라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은 없음

- 부정수급은 KBS가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중간 추진주체나 수혜자 중에서 발생할 가능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즉, KBS가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업들 중 부정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피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11개 언어의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어왔고 방송의 성격상 국비지원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방송 모두 만족도조사, 의견청취 등을 해오고 있지만 성과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10% 감액권고함

○ 대외방송의 경우 본 사업의 성과관리자료가 아니라 상위 단위사업의 성과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에 따른 한계가 있고, 사회교육방송의 경우도 정기적인 의견청취 및 개선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를 망라한 대부분의 공공분야에도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매년 엄격히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반면 본 사업의 경우는 상위 단위사업 단계 외에 본 사업만을 위한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를 설정, 상반기 점검을 하고 이를 하반기에 반영하고, 연도말 평가결과를 다음 해에 반영하지는 않음

- 이에 본 사업의 경우도 성과관리제도를 도입, 사업을 분석하고 환류를 상시화 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6.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보조사업의 목적은 명확하나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다소 명확하지 않음 ·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환류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법적 근거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운영실적평가에 대한 연도별 종합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및 제15조에 제시되고 있으나, 공익·장애인 복지채널 실적평가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는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타당성도 낮다고 볼 수 있고, 추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
제14조(공익채널 실적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 계획 준수 여부, 공익채널 선정조건 이행 여부 및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적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평가기관의 장은 실적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방송법 등에 따라 선정·인정된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이 제도 취지에 맞게 방송제작·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조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방송 모니터링 및 공익·장애인복지채널 프로그램 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선정·인정된 공익·장애인복지채널이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시청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차기 공익·장애인 복지채널 선정(인정) 심사에 반영되는 환류체계를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추진 내용 및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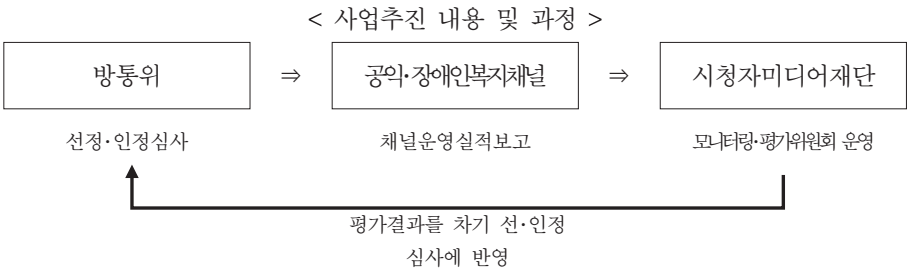

○ 모니터링 결과를 19년 공익채널 선정 심사에 활용한 실적이 제시되고 있으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분기별 실적평가를 1년 단위로 종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환류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16년도 평가에 따르면, 동 보조사업의 대안적 수단으로 방통위가 직접 수행하면서 경쟁에 의한 공모방식을 권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함

- 주무부처는 “방통위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경우 선정(인정)기관과 평가기관이 동일하게 되므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의 훼손 우려, 공모 사업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어렵게 한다는 점, 공공기관 외 민간단체가 수행할 경우 방송채널사업자와 민간단체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을 거론함

○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가 주무부처의 산하기관이자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방통위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방송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전담 평가기관의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221백만 원으로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원 인건비 및 운영실적평가위원회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 등 사업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부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으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신청과 교부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집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산보고서를 집행점검결과보고서로 제출하는 등 다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상시점검 메뉴와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는 적정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3-2 정책 제언

○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운영실적 평가에 대한 연도별 종합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무부처의 직접 수행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국악방송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9.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국악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국악의 저변확대, 비수익적 분야이지만 전통문화의 계승과 전통의 계승 등의 공익적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나 일부 사업의 효과성이 낮고 미집행이 발생한 사업에 내하여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국악프로그램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으나 이를 측정할 있는 결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았음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높은 수준의 미집행액이 발생함 ·국악방송의 질제고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부 만족도와 청취율이 낮은 프로그램을 통폐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하위 및 청취율 하위 프로그램 감액 5%예산 **221백만원 감액** ·일부 프로그램 제작에서 미집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한 철저한 예측을 통해 예산집행을 완료하기 노력해야 함 - 2016년 148백만원, 2017년 110백만원 프로그램제작 집행잔액 평균 **129백만원 감액** *** 총감액규모: 221+129 = 350백만원 (내역사업 프로그램 제작: 4,417백만원)** ·프로그램의 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취율이나 이용률과 같은 결과지표를 사용하길 권고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방송통신발전법 제26조,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법령으로 국악방송을 명시해서 지원의 근거를 두지는 않은 사업임.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법 제26조에 근거 기금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 국악방송을 기금 수혜대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역사업별로 연계성이 부족함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악방송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전국의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전통문화의 유지·발전이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함에 따라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다만, 국악 방송콘텐츠의 제작이 민간에서 추진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민간부문에 있어서 국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간제작 국악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악방송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성격이 있으며, 국악방송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국민 전체를 청취자로 하고 있으므로, 잠재적 수혜의 범위가 넓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국악방송 지원사업은 국악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통문화의 보존 및 대중화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전통 음악과 창작 음악은 물론 문화계 소식, 공연실황 중계, 인물초대석, 국악 교육 등의 국악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매년 7000편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을 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보조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국악이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콘텐츠 수요 등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국악방송의 청취율의 변화 (전체, 혹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성과지표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방송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전파의 매개 장치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국악, 전통문화유산의 제공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전수에 기여함

- 다만, 이러한 방송이 반드시 국가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와 민간에 대한 적정 분담 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국악분야의 지원 중 국악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중복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국악분야에는 방송 외에 공연, 인재육성 등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 적정 지원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악방송의 프로그램 제작비의 절대비율 (100%)가 보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중단 시 국악방송에 대한 사업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국악방송 중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큼

- 다만, 자체사업 비중이 3.6%불과하여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중 확대를 통한 국고지원의 축소가 필요한 사업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행정비용은 크지 않으며 여러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으나 일부 효과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없으며 매년 보조사업자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주무부처, 기재부,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지원금액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 수행계획서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통지 등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보조사업 집행관리)에서 요구하는 사항별을 준수하여 정상 추진함

- 매년 사업 수행계획서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통지를 함

○ 동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사업의 미집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을 고지함

○ 그 외 보조금 관련 법령, 교부조건 및 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기금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내부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은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인정받을 수 없음. 또한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악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국악의 저변확대, 비수익적 분야이지만 전통문화의 계승과 전통의 계승 등의 공익적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함.

○ 다만, 국악방송 분야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고나 사업의 유치, 콘텐츠의 판매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송사업 체계의 구축이라는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런 관점에서 일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국악방송의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에 대한 기관차원이 관심이 필요함

- 이는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ex) 프로그램 청취율 등

○ 타 분야 국가지원비율과 국악방송 지원 비율과의 비교분석 및 국악방송 내 여러 추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국악방송의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적정 지원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미집행 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요예측과 집행점검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동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동사업은 “방송(IPTV 포함)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사업”으로, 방송시장의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여 시장 경쟁상황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송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도 높아 그 필요성이 인정됨 ·동 사업으로 인한 방송 산업 및 시장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고품질 콘텐츠 및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그 수혜의 범위가 대체로 광범위하다고 판단됨 ·보조사업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수행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위탁수행 등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도전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은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절차·방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④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사업은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사업은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IPTV 포함)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사업으로, 방송시장의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여 시장 경쟁상황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송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대체로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동사업은 방송시장의 균형발전 및 미디어 산업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의 실천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에 해당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방송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규제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에 일조하고 있음. 이에 따른 방송 산업 및 시장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고품질 콘텐츠 및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그 수혜의 범위가 대체로 광범위하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이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사업내용이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동사업은 방송산업의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과 경쟁정책 수립을 위해서 방송시장 현황과 관련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임

- 이를 위해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분석 대상 단위 시장 획정(방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련), 경쟁상황 평가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방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자료 수집 및 측정, 시장별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라 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아래와 같이 당초 계획한 성과지표(‘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및 활용도에 대한 인식’)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성과지표 목표 및 달성현황>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구분	'15	'16	'17	'18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및 활용도에 대한 인식*	목표(점)	신규	83	85	86
	실적(점)	-	84	85	-
	달성도(%)	-	101.2	100.0	-

* 측정산식 : [(평가결과의 타당성x0.4)+(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가능성x0.3)+(사업전략 수립 등 기업활동에 있어서 평가결과의 활용가능성x0.3)]x100(%)

- 다만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도전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사업은 '17년도 예산 검토보고서(예결위)에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사업은 방통위가 수행해야 하는 법정 업무로서,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출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 수행 방식 변경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보조금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절차 및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7년 이후 사업방식을 보조로 변경하였음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조금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됨

- 또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정책 및 사업자 규제 등에 활용되므로, 특정 기관이나 지자체, 민간에서 수행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방송법」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타 사업과의 중복성은 낮음

○ 역동적인 방송시장의 변화를 방송분야 경쟁정책 및 규제정책에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방송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평가하는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업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분석 및 연구 업무가 주 내용으로, 보조사업비('18년 기준)의 대부분이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228.9백만원, 60.4%)와 방송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115백만원, 30.3%)로 이루어져 있음

- 인건비를 제외한 행정비용은 평가수행을 위한 운영비(18.8백만원), 여비(1.7백만원), 업무추진비(4.5백만원) 등으로 전체 예산의 6.6% 수준임

○ 이상과 같이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근거법령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그 전문성이 인정됨

- 또한, 해당 기관은 본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예비연구(2008~2011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 수행의 적정기관임을 입증한 바 있음

- '12년부터 '14년까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전문성, 기술역량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외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가진 기관을 파악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동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조건 충족 여부 검토 등 교부절차를 마련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선정은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인정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보조사업의 수행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위탁수행 등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보조금관리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이하 '방발기금 관리규정'), 방통위 사업관리지침 등에서 집행관리 체계 및 규정을 마련하고 보조사업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은 매년 초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통위는 검토 후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함. 이후 방통위는 매달 전월 보조금 집행실적을 포함해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음(7월말 중간보고, 사업종료 후 1월 이내 최종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며, 방통위는 이를 검토한 후 정산 결과를 통보하고 잔액을 반납받고 있음

○ 아울러, 방통위는 정기적인 회계검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현지검사를 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자금집행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사업수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7월말), 최종보고(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를 통해 부적절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인 회계검사와 현지검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 집행은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등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 등에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원금보조형 자산 관리, 회계검사 등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등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적절한 사업비 지출이 있는지 정산자료를 검토·확인한 후 정산결과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통보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계좌에 반납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분요구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하는 등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해당 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사업구조 및 통제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발생가능성도 매우 낮은 편임

○ 해당 사업에 대해 매월 자금 배정 및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수행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정산보고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회계기관의 감사를 통해 집행 실태에 대해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예산통제 및 감사 등 여러 단계의 내부통제를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음

○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부통제를 통해 1차적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관리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조금 집행 점검 및 정산, 회계검사 등을 통해 2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예산사업 수행과 관련한 내부 통제시스템(예산회계시스템 및 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사업의 계획 수립·집행·결과 보고 등 각 단계별로 예산통제 및 일상감사 등 내부통제 실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정기감사 등을 실시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절한 부정수급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관리 사업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집행결과 등을 점검하고, 회계검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사업은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IPTV 포함)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사업으로, 방송시장의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여 시장 경쟁상황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송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정과제인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의 실천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에 해당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동 사업으로 인한 방송 산업 및 시장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고품질 콘텐츠 및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그 수혜의 범위가 대체로 광범위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관리도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도전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보조사업의 수행주체인데 동기관의 전문성 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수행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위탁수행 등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도전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보조사업의 수행주체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전문성 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수행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위탁수행 등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동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동사업은 방송시장과 방송광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전반에 관한 상시적인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행위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가적 관점에서 비교적 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국정과제(정부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와의 연계성도 높다고 판단됨 ·보조사업자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수행 주체가 반드시 동재단이 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활용하고 있는 성과지표가 동사업의 효과를 적절히 측정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좀 더 정확히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은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방송법 제85조의2 ('12.1.15 시행)

제85조의2(금지행위)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3., 2015.12.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08.4.17 시행)

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2.5.23 시행)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방송법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08.2.29 시행)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하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한다)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동사업은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방송시장과 방송광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전반에 관한 상시적인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행위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 비교적 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특히, 홈쇼핑PP의 중소납품업자 대상 제작비 전가와 외주제작 불공정행위, 플랫폼사업자(케이블, 위성, IPTV)와 PP 간 불공정한 채널 및 프로그램 거래 등을 체계적·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적시 조사 및 제재, 제도개선 등으로 연계하는 등 국정과제(정부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전국민의 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고, 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경쟁행위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행정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관련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방송사, 광고대행사, 방송광고판매대행사, 홈쇼핑 납품업자, 외주제작사 등)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방송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혜자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와 '불공정행위 행태 개선' 등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목표 달성에 합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는 약 1,800여개*의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관련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방송법 금지행위 개정으로 등으로 인해 '13년 800개 → '16년 1,300개 → '18년 1,800개로 확대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은 유료방송 민원분석 및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이익저해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사업자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본 사업은 서면조사와 민원분석,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를 발굴하고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며, 이를 통해 발굴된 행위에 대한 심층적 연구·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라는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 조항에서 명시한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발굴 및 분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본 사업 개시 연도인 '1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연간 3건의 불공정행위 개선 목표를 지속 달성하였으며, '16년부터는 연간 목표를 4건으로 확대하고 100% 실적으로 달성하였으며, '19년부터는 연간 5건으로 목표를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14~'1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7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저)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행위 개선건수	목표	3	3	4	4	'16년 개선목표와 '17년도 방송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적지표로 100% 달성하여야 할 당위지표임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 실적	실태점검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실적	3	3	4	-			
	달성도	100	100	100	-			

- 다만 이러한 성과지표가 동사업의 효과를 적절히 측정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좀 더 정확히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서면조사와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자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를 발굴하고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 이를 위한 모니터링 인력운용과 효율적 자료분석 및 결과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이 과정에서 정보 및 시스템 보안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의 행정조치와 연계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수행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 본 사업은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등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련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 중 이와 유사한 분야와 목적을 가진 사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가 다양해짐으로써, 관련 법 상의 금지행위 조항이 신설되는 등 사후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예산(4.92억원, '18년 기준)은 1,800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와 전국 78개 권역 96개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분석 및 모니터링 활동 등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수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비용은 각종 회의비(1,124만원), 출장비(1,078만원), 회의장 임차료(885만원) 등 3,087만원 수준으로 전체 사업비(4.92억원)의 6.3% 수준인 바, 행정비용은 보조사업 금액에 비해 대체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중기사업계획 및 단년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재정 당국과 국회 승인을 얻어 편성된 사업으로, 보조사업비 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의 특성 상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시청자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방송시장의 분석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음

○ 동 보조사업자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수행 주체가 반드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이하 '방발기금 관리규정')과 방통위 사업관리지침 등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 위 법률 및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서 등에서 정한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상황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외부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재단은 매년 초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통위는 검토 후 교부 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함. 이후 방통위는 매달 전월 보조금 집행실적을 포함해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음(7월말 중간보고, 사업종료 후 1월 이내 최종보고)

- 재단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며, 방통위는 이를 검토한 후 정산 결과를 통보하고 잔액을 반납받고 있음

- 또한 방통위는 정기적인 회계검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법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와 방통위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보고받고 있음

- 또한, 매년 본 사업의 세부사업수행계획, 중간보고, 최종보고, 정산보고 등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 등을 보고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수시 점검함

○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동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과 정기적 회계검사를 통해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의 집행은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법과 방통위 사업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보조금 집행과 정산 및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으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 제출, 2개월 이내 정산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정산 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처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 시 취득한 재산목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음

○ 방발기금 관리규정, 방통위 사업관리지침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음

○ 방통위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재단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방통위는 부적절한 사업비 지출이 있는지 정산자료를 검토·확인한 후 정산결과를 재단에 통보하면, 재단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계좌에 반납하고 있음

○ 또한 보조금관리법 및 방발기금 관리규정에 따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분요구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하는 등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사업구조 및 통제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발생가능성도 매우 낮은 편임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 위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반환·제재부가금 징수·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별도의 계좌를 통해 사업비를 관리·정산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시 점검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나, 적절한 관리·점검을 통해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방통위는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매년 보조금 관련 법령, 교부조건 준수 및 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기금 운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부정수급 등과 같은 법령 위반 발생 시,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31조의2, 제33조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수행 배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방송시장과 방송광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전반에 관한 상시적인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행위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됨

○ 특히, 홈쇼핑PP의 중소납품업자 대상 제작비 전가와 외주제작 불공정행위, 플랫폼사업자(케이블, 위성, IPTV)와 PP 간 불공정한 채널 및 프로그램 거래 등을 체계적·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적시 조사 및 제재, 제도개선 등으로 연계하는 등 국정과제(정부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 동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수행 주체가 반드시 동재단이 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활용하고 있는 성과지표가 동사업의 효과를 적절히 측정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자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수행 주체가 반드시 동재단이 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활용하고 있는 성과지표가 동사업의 효과를 적절히 측정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좀 더 정확히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현재 단계에서 사업자체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치정보 생산의 대상을 산업적 가치가 있으나 시청율 등 가치정보생산이 되기 어려운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고부가가치 가치정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 내용 변경 ·본 사업은 방송통신분야의 기초 조사통계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됨. 방송통계포털이나 KISDI STAT과 차별성은 인정됨. 통계 및 자료생산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인정 ·보조사업의 세부사업인 가치정보생성사업의 경우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상업적 콘텐츠의 경우 민간부문의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이 존재. 가치정보 조사 등은 산업 내에서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상업적인 성격도 강함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가치정보 생산에 대한 사업성이 확보된 후에는, 민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공공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방송콘텐츠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원하는 역할분담을 고려한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함.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방송산업의 기초자료 생산의 역할을 하되 민간부문으로 기능을 이전해나가는 노력 필요, 정보의 충실성(integrity)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의 근거규정이 있음, '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인 표현임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 연구개발의 성격의 사업으로 재량적 지원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 법규에서 말하는 지수, 지표,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와 본 사업이 생산하는 자료와 내용상 괴리가 존재
- 가치정보사업의 경우 방송콘텐츠에 대한 가치정보로 인터넷반응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법규상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통계와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음
- 가치정보가 방송산업을 위해 유용성이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 공적인 성격으로 법규상 상정하고 있는 정보와는 괴리가 있음
- 법규상 지수, 지표, 통계는 산업단위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사업의 결과물은 각 프로그램별 가치정보에 초점이 있어 분석단위가 차이가 있음

○ 각종 방송통계 조사결과를 통합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근거규정에 사업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포함된다고 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미디어를 통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여론다양성 측정지표 및 방송산업의 전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내역사업

- 가치정보생산사업과 방송통계생산사업으로 구성

○ 방송콘텐츠에 대한 기초조사자료로서 방송산업에 대한 거래활성화 등에 기여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는 협소함

- 보조사업의 혜택은 일차적으로 방송산업, 방송산업 종사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방송관련 기반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내용임

- 방송통계 및 방송분야 정보 제공하여 방송통신산업 발전에 기여
- 본 사업은 기초연구자료 생산을 통하여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식, 이를 위한 기초자료, 통계를 생산하고 방송컨텐츠 활용을 위한 통계는 민간에서 생산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포털이나 웹사이트에 조사결과물이 게시되고 있으며 유통되고 있음

구 분	가치정보 (사업인지도 / 지표수용도)		방송통계 (주요 방송통계 정보 인지도)	
	'17년	'18년	'17년	'18년
목 표(점)	55 / 55	60.5 / 60.5	55	55
실 적(점)	72 / 80	76.5/78	55.75	59.35
달성도(%)	130 / 146	126/129	101.4	107.9

- 가치정보와 방송통계의 활용도에 대한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상향 조정하여 효과성 확인을 할 필요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경우 가치정보, 통계라는 정보의 특성이 산업적인 특성이 있고 상업화할 가능성이 존재함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시청률 조사 등의 활동이 민간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컨텐츠의 평가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런 면에서 본 사업의 내용은 기초연구, 기반연구조사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가치조사는 상업적 생산과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방송정보산업 초기에 가치조사활동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의 가치조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함

○ 방송통계업무는 유사중복성은 해소되었음

○ 방송컨텐츠산업의 기반, 기초정보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의 사업으로 예산규모에 비하여 산출되는 통계, 정보가 필요성이 있어 적정한 사업규모로 판단됨

○ 국고보조율이 100%인 사업임

- 국고보조율이 100%라는 의미는 국가의 사무라는 의미임.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자와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보조율을 낮추는 작업할 필요
- 국고보조사업의 형식에 맞지 않다면 예산형식을 변경할 필요는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법교부 신청, 교부조건 및 결정, 통지 등의 법규 준수

○ 17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이후 지속

- 공공기관을 지정하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를 검토
-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정이라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적절함

- 사업관리체계와 업무 흐름도, 공공기관의 내부 감독체계, 정기적인 점검활동 등이 정상적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등 준수

- 공공기관으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음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하고 예방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방송통신분야의 기초 조사통계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료생산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됨

- 방송통계포털이나 KISDI STAT과 차별성이 인정됨

- 통계 및 자료생산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임

3-2 정책 제언

○ 통계 및 자료생산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인정

○ 선진국의 예를 볼 때 본 사업이 민간부문의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이 상당히 존재

- 방송콘텐츠에 대한 시청률 조사, 가치정보조사 등은 산업 내에서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상업적인 성격도 강하고 선진국의 경우 전문기업들도 다수 존재

-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간에서 일부 가치정보생산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 초기로서 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상태

- 향후 정부가 가치정보를 직접 생산하기 보다, 간접적으로 가치조사정보의 신뢰성(integrity)를 검증하는 간접적 방식이 바람직함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방송산업의 기초자료 생산의 역할을 하되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으로 기능을 이전해나가는 노력 필요

- 가치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정 방송콘텐츠에 대한 사업으로 주영역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0.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은 목표대비 실적을 초과달성하고 예산도 불용액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추진함. – 다만, 메신저 피싱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좀 더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은 목표대비 실적을 달성하고 예산도 불용액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추진함 · 인터넷 전송구간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보호 사업의 목표대비 실적을 초과달성하고 예산도 불용액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추진함 ·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개선 권고 드림.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방송통신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설립허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및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②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④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⑥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의 추진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인터넷 전송구간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보호 등은 관련 법적근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인터넷 전송구간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보호 등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또는 규제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은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정보 제공과 보호활동을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방송통신 이용자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통신서비스 정보제공과 피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음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은 모바일 앱 마켓 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모바일 앱 이용자 정보제공 홈페이지(앱결제 안심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비록 민원만족도가 50.54%에 불과하나 이는 사업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관련 등 2차 민원을 접수 ·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예방은 물론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 전송구간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보호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모바일앱에 대한 보안서버 모니터링 후 암호화 조치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성과목표 1,430건 대비 실적은 2,299건로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고 등이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사업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은 유관기관과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예방,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제작·보급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시 보조금의 계속적 지원이 필요함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은 스마트폰 앱 결제 피해의 사전적 예방 및 구제와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 전송구간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보호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에게 지속적인 개선유도를 통한 보안서버가 구축되도록 국가의 정책적 지도 감독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민간단체보조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2,319백만원	2,319백만원	2,593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2,319백만원	2,319백만원	2,593백만원
	100%	100%	100%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은 평균 99.9% 수준으로 적절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은 100%로 적절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장노년, 농어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전기통신사업자 31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사전적·자율적인 이용자보호 활동 유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2010년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수행 중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및 인터넷 전송구간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보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 수행 중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지원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이지 보조사업자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가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자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인터넷 전송구간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보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현장 실사를 시행하여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방통위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9조(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반환 등의 사후관리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되었고, 교부 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한 후 철저한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므로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없음으로 자체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관리감독기관이 충실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은 장노년층에 대한 목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메신저 피싱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좀 더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인터넷 전송구간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보호 등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규 앱 서비스의 출현 및 이용자증가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함

○ 특히,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더욱 사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활동이 필요함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및 “인터넷 전송구간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보호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 수행 중임

- 보조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공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위배되고 있음
-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는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이지, 보조사업자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도있는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함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은 장노년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제작·보급과 교육대상자의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대한노인회와 연계한 경로당 순회 교육 등)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은 스마트폰 앱 결제 피해의 사전적 예방 및 구제와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인터넷 전송구간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보호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중요하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사업은 소비자 보호 및 이용자 후생 증진 차원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추진함 – '18.10월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19년부터 조사대상 확대(오픈마켓 가격 반영, 자급제 단말기 추가 등) 검토가 필요함 ·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사업은 이용자 후생 증진과 가계통신비 절감 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상추진함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사업은 변화속도가 빠른 인터넷기반 시장의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용자 편익개선, 시장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등 사업목적을 일정수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추진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제공)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11조(긴급중지명령) 제13조(사실조사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제50조(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사실조사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등은 관련 법적근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등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인 방송통신시장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복잡한 요금제와 상품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사업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이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사업은 국내외 인터넷플랫폼시장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개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정보통신시장 참여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및 상생 환경 구축' 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사업은 이용자 후생 증진과 가계통신비 절감 이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했다고 판단됨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사업은 세부 사업계획(시장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해 급변하는 인터넷플랫폼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효과가 있음

○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사업의 경우 협의체 회의 12회 개최와 조사결과 8회 게시 성과목표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성과지표인가 검토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질적인 규제업무는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장 모니터링 조사와 분석 업무 등은 보조사업자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사업의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업무를 방통위에서 직접수행하고 있으므로

- 다양하고 복잡한 인터넷플랫폼시장의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사후규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1,610백만원	1,800백만원	1,736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1,610백만원	1,800백만원	1,736백만원
	100%	100%	100%

○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사업은 일정 수준의 표본 추출과 전문 조사원 투입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조사원 인건비로써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편성하여 적절하게 계획하고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사업은 일정 수준의 표본을 추출하여 시장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비용, 조사결과 분석 및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등 관련 전문가연구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구성되어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

○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함

- 단말기 출고가 비교사업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사로 하여금 출고가를 정할 때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등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사업과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2010년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수행을 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관련자 의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장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 보조사업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자 집행의 적정성

○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어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방통위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9조(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반환 등의 사후관리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되었고, 교부 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한 후 철저한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므로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없음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음

- 회계 관련 외부전문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자금집행을 적발했을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사업은 이용자 후생 증진과 가계통신비 절감 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좀 더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네이버 쇼핑서비스 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여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조사해야 하는 기종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18.10월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19년부터 조사대상 확대(오픈마켓 가격 반영, 자급제 단말기 추가 등)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의 운영과 기본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정상추진함. ·주무부처로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으며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적인 쟁점은 제기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운영에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본 조치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다만, 방송통신분야에서 정부의 정책개입은 중립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와 책임성 제고 수단을 마련해야 함.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의 재원이 지출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공개 조치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함께 제28조에 위원회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급 근거 및 재원 유형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임.

- 위원회 활동의 영향이 전국민에 파급되는 특성이 인정됨. 다만, 정부의 재정사업에서 수혜자 범위는 실제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업내역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기관운영에 대한 경비임. 이외 방송통신심의활동의 사업비가 있음.

- 이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법률 근거를 가진 핵심적인 정관목적사업임. 따라서 보조사업의 목적 타당성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목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효과성의 적절성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효과로 평가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매년 방송심의와 통신심의 그리고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무 수행량이 결정됨. 방송통신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량도 지속 증가함.

- 다만, 연도별 심의 현황은 상당히 불규칙적인 특성이 있음.

■ 표1. 연도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추이 (단위 : 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방송심의	심의	1,085	1,178	1,303	1,228	375	1,069
	제재건수	990	956	1,207	1,113	348	941
통신심의	심의	110,714	140,421	158,073	211,187	91,853	252,166
	시정요구	104,400	132,884	148,751	201,791	84,872	238,246
명예훼손 분쟁조정	명예훼손 분쟁조정	53	68	46	94	76	75
	이용자정보 제공청구	245	457	507	994	395	506

○ 기관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 방송통신심의 활동인식을 조사하는데, 매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였음. 다만 목표점수가 60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사업성과로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본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며 정부 예산사업 가운데 중복 및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지 않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운영과 고유사업 수행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재원규모 산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기관운영 예산들은 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비전-미션체계에 연계되어 편성되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고유 목적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되는 기능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법적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의 대상자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집행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기관의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운영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기 집행실적 보고와 사후 정산 결산 보고를 적절히 수행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기관운영 및 기본 활동을 위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서 특별한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활동은 제한적일 수 있음.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보조금의 공공 재원에 대한 국민적인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관리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관운영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의 가시적 접근성을 높이는 등 보조사업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부정수급 관리의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정기 및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예산운영의 부정수급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의 운영과 기본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임.

○ 주무부처로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적인 쟁점은 제기되지 않음.

3-2 정책 제언

○ 공공기관의 운영에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본 조치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의 재원이 지출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공개 조치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보조 사업은 보조사업 전체 및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어 사업타당성은 있다고 여겨지나, 내역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재고와 유사사업과의 차별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내역사업별로 사업효과성이나 잠재수혜자가 내역사업별로 모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업폐지 시의 재정적 손실이나 문제점 제시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등의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파악할 수 없음 ·본 사업의 유사성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차별성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지역 내 유사사업, 방통위의 관련 사업과 본 사업과의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의 독자성을 확보하도록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사업집행 관리는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들이 마련되어 있어 확인 가능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사업은 방송법 제90조의2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6조에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을 근거를 갖고 있음. 해당 재단에서 수행해야 하는 세부사업 내용도 해당 법에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음

○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재단운영 지원, 시청자권익증진,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마련이며 내역사업 중 재단운영 지원과 시청자권익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사업은 공약사업이거나 계획사업의 성격은 아니지만 국정과제 70에서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중 미디어복지 측면에서 시청자미디어 센터 확충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연계하여 사업타당성이 있음

○ 수혜자의 범위 제시에 있어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이용자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혜자의 증가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별로 수혜대상자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이 충실히 수행됨

- 잠재수혜자 및 외부효과에 대한 언급이 추상적임. 신규센터 운영 등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중 재단운영지원,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은 전체 사업목표에 부합됨

-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의 내역사업 중 센터 이용과 관련한 사업은 적절함. 그러나 소외지역 시청자의 접근성 제고, 미디어 활용 격차 해소 등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계획한 목표대로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의 참여 프로그램 수의 양적 지표는 향상된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내역사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의 다각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지속사업인 만큼 단순히 연간 이용자수의 증감보다는 신규 이용자의 증가 양상을 파악하거나, 프로그램 제작 참여수가 아니라 사업내실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예시: 참여대상자 특성(연령, 성별, 학력 등), 기자재 대여 등이 이용자들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 등)로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제시하도록 지표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한 재고를 제안함

- 세부사업 자유학기제 연계 미디어 교육, 동아리 미디어 교육, 미디어 나눔 버스 개발 및 운영, 다양한 대상(노인, 장애인, 마을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 교육효과를 양적, 질적으로 제시하는 보완을 제안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방송법 3조와 6조에 근거하여 방송의 공정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과 내역사업 실시가 적절하다고 평가됨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중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역 내의 유사센터와의 사업 중복성 즉, 지역의 영상사업(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영상제작 지원)등의 유사사업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본 사업은 긴급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지능정보사회에서 전 국민이 미디어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하다고 측면에서 본 사업이 연장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체 보조사업 재정이 내역사업별로 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내역사업 중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의 추가예산이 유입되는 등의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조정되고 있음이 확인됨

- 각 내역사업별 선정 근거에 대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통해서 사업비 산정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함

○ 보조율의 산정기준에서 각 내역사업별로 국가와 지역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산정근거가 타당하다고 평가됨

1-6 사회적 가치 실현

○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사업은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제작 참여 등의 내역사업을 통해서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를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의 직접적 기여가 있으나 그 외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 2장의 4조에서 8조, 제 3장의 9조에서 11조에 걸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공모 절차와 선정기준, 교부조전 및 검토, 교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 공문, 교부선정에 대한 공문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서 볼 때 해당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이 실제 공정하고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하다고 평가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 제 4장의 12조-16조에 본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 관리, 감독, 단계별 집행 점검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사업자 선정과정이나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확인함

- 내역사업별로 사업집행의 관리, 감독이나 점검에 대한 자료가 제시하여 내역사업별 사업집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함

-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점검 공문 등을 통해서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증빙자료와 대면심사를 통해서 확인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 제 5장의 17-18조와 6장 19조에서 23조, 기타 29조에 걸쳐서 중요재산관리, 회계감사, 사후관리를 위한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본 보조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집행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정산보고서 제출에 대한 전체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의 부정수급이 최근 3년간 발생하지 않아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기획재정부 평가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대상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따르고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 39조에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회수 및 교부 취소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부정수습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시청자미디어재단사업이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이 부합되며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 내역사업별 사업성과지표가 양적 지표만으로 구성되어 내역사업 전체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사업성과에서 제시한 지표들이 내역 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요구됨

○ 전체 사업목적과 내역사업 간의 연계성은 있으나 지역자치단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해당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지역별 편차가 있고,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음으로 이를 반영하여 수혜자 확장성을 고려하는 사업 구성이 필요함

- 지역 내 유사사업과 내역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간 중복성을 예방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사업관리의 하위 영역별로 규정이나 지침은 비교적 명확하게 갖추고 있으며. 실제 집행을 확인할 있는 근거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제고하여 정책 반영이 필요함

○ 사업목적, 사업내용,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9.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3.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이 필요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명확하고 그 타당성이 있음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함 ○ 신규지원 사업자 대상 지원율 우대 및 기존 사업자 대상 사업평가 등을 통한 지원율 차등 적용, 사업 활성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 등 다양한 기준으로 지원율 적용함에 있어 보다 타당성 있는 과학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명확하고 그 타당성이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89조(시청자평가프로그램); 방송법 시행령 제51조(시청자참여프로그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그 타당성이 있음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방송법시행령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방송법 제89조(시청자평가프로그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방송전파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소비자인 시청자의 직접적인 방송참여를 지원하여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 지원이 타당하며 명확함
-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것으로, 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임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함

-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짐.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은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방송사의 방영실적을 계량화하여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평가하므로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구체적임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모두 정량적인 지표를 주로 제시하고 있음. 정성적인 자료 (예: 시청자 평가원의 활동 내용 - 보고, 출연, 진술 등)도 효과성의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 지원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판단됨

- 방송사가 공익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노력해야 하나, 예산, 인력 등 경영의 어려움을 사유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소극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이 정당화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찾기 어려움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인정됨

○ 사업 즉각 폐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많은 방송사들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19년 예산은 1,520백만원임

- 보조사업이 사업비(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등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채택료 지원) 위주로 사용됨

-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이며, 보조율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7항 및 8항에 근거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100% 보조받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① 인권의 보호,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⑦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⑪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⑪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⑫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부문의 사회적 가치 전부분에 거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연도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영 현황에 있어 '전체 프로그램 대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비중'이 보다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제반 법령과「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등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선정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보조사업자 선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근거가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2항에 제1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함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 및 보조금의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함
- 보조사업자(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제5장에 규정된 보조사업의 적절한 집행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관리, 감독되고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없음.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실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수행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중간실적보고서와 최종실적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인 사업수행상황을 보고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조사와 실적관리 및 사업현장 방문, 사안별 상급기관 감사활동 등을 통해 사업을 관리, 감독함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제17조에 따라 매년 7월 중간실적보고서를 통해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있음

-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6장에 규정된 보조사업의 적정한 정산 및 감사를 위한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관리 감독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없음.

○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수행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보조사업 완료 후 매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이 없으며, 보조금법 등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명확하고 그 타당성이 있음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함

3-2 정책 제언

○ 신규지원 사업자 대상 지원율 우대 및 기존 사업자 대상 사업평가 등을 통한 지원율 차등 적용, 사업 활성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 등 다양한 기준으로 지원율 적용함에 있어 보다 타당성 있는 과학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아리랑국제방송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동 사업은 국내거주·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생활정보, 시사뉴스를 제공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아리랑 국제방송의 가진 타 공영방송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방송사와 차별성이 다소 미흡하고 일부 미집행 사업이 발생함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의 높은 KBS World와 보도 탐사 비중이 높은 YTN World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심층적인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일부 예산 미집행 사업과 용도 외 사용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그 법적 근거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1항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을 동 사업의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이라는 법적 규정은 동 사업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지 않음

○ 보조사업이 내역사업에 있어 사업비는 방송통신기금에서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문화체육부 예산에서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방송통신기금에서 지원되어 지급 근거의 타당성이 높지 않은 편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은 비영리적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국가의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세계를 대상으로 방송을 통해 한국을 알려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국내거주·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생활정보, 시사뉴스를 제공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우리문화, 각종 생활정보에 대한 영어FM 라디오 방송을 제공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동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주한외국인과 해외주요시청자이며, 2차 수혜자는 재외국민, 글로벌 기업, 방송사업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프로그램 제작비, 위성방송사업비, 방송기자재구입비, 방송시설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역사업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필수적 요소로 인정됨

○ 아리랑 TV와 라디오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는 90점이 넘어 방송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아리랑 국제방송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시청률 도달률 조사도 동남아시아 4개국에 불과하여 전체 글로벌 방송시장에서의 방송의 영향력을 판단하기 쉽지 않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아리랑 국제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의 공익적 성격이 강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방송에서 제작하기에 부적절하므로 국고 보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기타 공영방송과 해외 프로그램과 방송목적, 방송의 역할, 시청타깃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부 콘텐츠의 경우 타 방송과 차별성이 부족함 .

-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의 높은 KBS World와 보도 탐사 비중이 높은 YTN World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심층적인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실시하는 비수익적인 공익목적의 방송 사업으로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외 이미지 손실과 같은 사회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 사업은 프로그램에 제작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감독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인 점을 감안, 기관 운영비 및 경상비 성격의 '위성방송사업', '방송기자재', '방송시설운영비', '정규직인건비'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객관적으로 규정된 기준보조율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매년 예산 당국 등과 협의·검토를 통해 해외홍보 방송을 위한 필수 세부사업비를 적정규모로 편성하고 있음. 또한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어 재정소요액 추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재난 안전 등 일부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의 수혜자가 전체 국민 및 외국인이므로 사회적 가치 반영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지침인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매년 사업 수행계획서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통지를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지침인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가 중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및 보조사업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사업에서 미집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를 접수하여 확정하게 되면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의 정산금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사후관리의 적정함

- 다만, 미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2016년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재난알림 목적으로 편성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정부홍보 용도로 목적외 사용

- 이에 '16년도 상반기 중간실적보고서를 받아 사업수행상황을 점검, 문자방송에 사용한 금액을 반환 조치 및 제재부가금 징수

○ 동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상시점검' 메뉴와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TV 프로그램 제작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사업용도와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 발생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1항과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연계성도 높지 않음

○ 아리랑TV는 KBS월드 및 YTN 월드와 방송목적, 방송의 역할, 시청타깃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함

○ 일부 용도 외 집행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 및 재발대책 마련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아리랑 국제방송의 인지도와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기타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다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일부 미 집행사업에 대한 적절수요 예측을 통하여 적정 사업예산 집행이 필요하며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을 막는 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타 사업과 유사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동 세부사업의 타 내역사업(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적 근거 및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동 세부사업의 타 내역사업(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과 통폐합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다만 위치정보법 제3조 및 제35조에 의거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에 구체화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당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위탁사업('14~'16년)으로 진행되었으나, '15년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17년도부터 민간보조로 사업수행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5년도 국회 과방위 결산위원회 예비 검토 >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법적근거가 없어 출연받을 수 없는 민간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을 재위탁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현행과 같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목을 민간보조로 전환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사업은 실내 측위에 주로 활용한 Wi-Fi 기반의 측위를 활용하여 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동 사업의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은 Wi-Fi 정밀측위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방청 및 경찰청의 긴급구조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목적은 명확하고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청 및 경찰청이며, 궁극적으로 취급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이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소방청 및 경찰청에 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끊김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 및 Wi-Fi 기반 정밀측위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 Wi-Fi 기반 정밀측위 값 제공 방식 >

LBSP 자체 측위정보 제공	이통사 측위정보 연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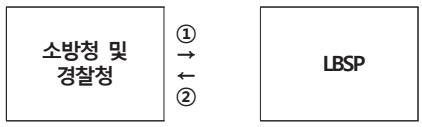	
자체 Wi-Fi AP DB를 활용 측위정보 제공	이통사의 Wi-Fi 인프라 활용 측위정보 연계 제공

○ 긴급구조기관이 동 보조사업의 플랫폼을 활용한 건수를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3년 LBSP 위치정보 제공 건수 >

년도	16년	17년	18년
제공건수	259,795건	1,651,316건	1,810,628건

○ 하지만 LBSP를 활용하는 경찰청 및 소방청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으나,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2017년	2018년	측정방법
긴급구조 플랫폼 활용 만족도(점)	목표치	75	80	위치정보 플랫폼 수요자(경찰청, 소방청) 대상 만족도 조사
	실적	78.6	81.5	
	달성율(%)	104.8%	101.8%	

○ 한편 주무부처는 만족도 조사가 긴급구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피평가자(긴급구조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성과지표를 2018년으로 종료하겠다고 하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긴급구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족도조사 방법을 개선하여 성과지표로 계속 사용하기를 권고함

- 대체지표로 제시한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시스템 안정적 운영 시간 비율은 성과지표로 제시할 내용이 아니라 동 사업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성과지표로 부적절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에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시스템 유지 보수 항목으로 200백만 원(2019년 예산 안)이 배정되어 있는데,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 보조사업(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사업에는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사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긴급구조 요청 시 Wi-Fi 측위의 공백이 발생하여 긴급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사업에 대한 예산 축소 요구도 있었던 만큼 무작정 예산을 감축하기보다 두 사업의 통폐합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220백만 원(2019년 예산 안)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이며 대부분 인건비(24시간 관제 모니터링 인건비, 시스템 취약점 점검비 등)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인 사업이므로, 향후 보조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주무부처는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상 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적법한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이 부적정함

- 주무부처는 최소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자격 또는 요건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정이든 공모든 방식을 활용해야 하며, 선정 이후에도 적격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집행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집행은 보조사업 전용카드 및 적격증빙의 수취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를 위해 적절히 관리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업목적은 명확하고 타당함

○ 사업 효과성의 경우 플랫폼 활용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시스템 유지관리에 개선 필요 사항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동 세부사업의 타 내역사업(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만족도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성과지표로 활용해야 함

○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동 세부사업의 타 내역사업(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과의 통폐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동 사업추진 결과 EBS 방송 시설의 디지털(HD) 전환을 달성하였으나, 재정사업평가결과 미흡 및 EBS TV 수신품질 만족도가 다소 저조하여 사업 개선이 필요함 · KBS와 EBS 간 입장 차이로 EBS의 UHD 방송을 위한 허가 심사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EBS UHD 본방송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인프라 투자계획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설정이 필요함 · 수신료 외 방송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방송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한국교육공사법 제7조, 제19조, 제24조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등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한국교육공사법 제7조, 제19조, 제24조 >

○ 제7조(업무) 4호.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관리, 5호.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24조(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

○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디지털 송출시스템, HD방송제작시스템, 네트워크기반 제작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교육공사법 제7조에 따른 방송시설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보편적·공익적 교육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UHD 방송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방송시스템 보완을 위한 방송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동 보조사업의 목적이 명확함

○ 정부의 지상파 UHD 도입 계획 발표('15.12월)에 맞게 UHD방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연평균 7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이 아닌, 전체 국민에게 양질의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이므로, 국가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디지털송출시스템구축, UHD방송 제작시스템 구축, 네트워크기반 제작시스템 구축)은 방송국 시설에 필요한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EBS 방송시설의 UHD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동일 내역사업 내에서 연도별 사업내용들 간의 연계성이 명확치 않아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2017년 EBS 방송 인프라 시설의 디지털(HD) 전환을 100% 달성하였고 이후 UHD 방송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방송시스템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2018년 재정사업평가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바 있음

- EBS TV 방송 수신품질 만족도의 경우 201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가 2018년에 목표를 달성함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EBS TV방송 수신품질만족도 (단위: %)	목표	신규	75.0	75.0	75.0	75.1	'15년 성과지표 실적치에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치 0.8점을 추가	방송시청 매체와 수신감도에 대한 시청자(1천명 이상)의 만족도 조사 및 측정(10점 척도)	외부기관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74.2	74.4	74.9	75.2			
	달성도	-	98.9	99.2	99.9	100.1			
EBS UHD 전환율 (단위: %)	목표	-	-	-	신규	27.4	UHD 투자 계획의 UHD전환대상시설수 대비 '18년 누계전환완료시설수	(UHD전환완료시설수/UHD전환대상시설수)×100	EBS 집계자료
	실적	-	-	-	-	27.4			
	달성도	-	-	-	-	10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EBS 교육방송은 비용과 편익에 따라 상업성을 추구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학교교육의 보완과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위한 비수익적인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공영방송임에도 전체 재원 중 공적재원이 25.9%('18년 예산 기준)에 불과하여 재원구조가 취약하므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재정규모는 약 28억 원 정도로 전액 EBS 방송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송장비 구축비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함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3,330백만원	2,830백만원
▪ 송출시스템	· 비디오서버 등 1종 1개 - 383백만원	· 송출신호 분석기 등 19종 28개 - 1,445백만원
▪ 방송제작시스템	· 카메라 등 7종 12개 - 1,806백만원	· UHD 야외촬영용 카메라 3개 - 300백만원
▪ 파일기반제작 시스템	· 인제스트시스템 등 4종 25개 - 1,141백만원	· 파일저장시스템 등 5종 10개 - 1,085백만원

1-6 사회적 가치 실현

○ 동 사업의 경우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등의 관점에서 일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한국교육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어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은 적정함

< 사업 추진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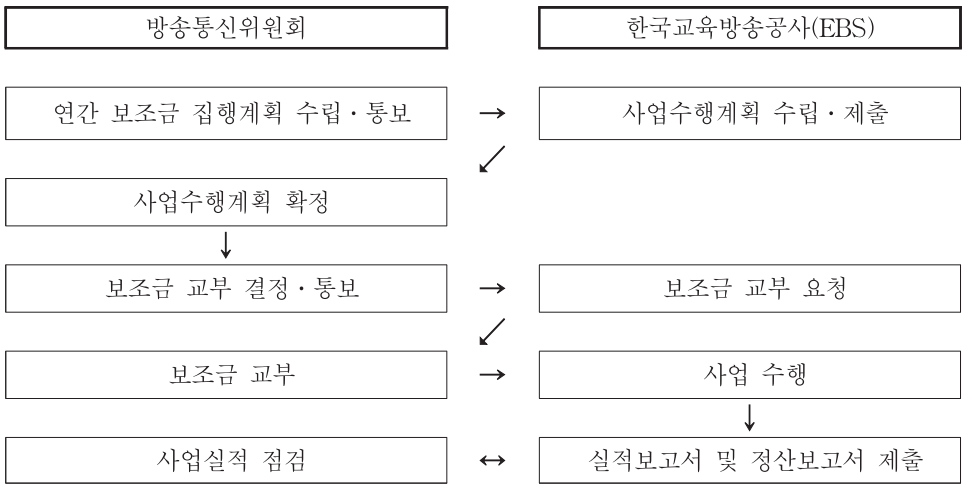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집행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EBS)는 방송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비 도입 선정 후 EBS의 회계규정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하며 장비 도입 시 검수 및 자금 집행 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 사업비를 관리 및 정산하고 있고, 집행실적 점검 및 정산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 수급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사업목적은 명확하고 타당함

○ 동 사업추진 결과 EBS 방송 시설의 디지털(HD) 전환을 달성하였으나, 재정사업평가결과 미흡 및 EBS TV 수신품질 만족도가 다소 저조하여 사업 개선이 필요함

○ 한국교육방송이 공영방송임에도 재원이 취약하여 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KBS와 EBS 간 입장 차이로 EBS의 UHD 방송을 위한 허가 심사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EBS UHD 본방송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인프라 투자계획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설정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수신료 외 방송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방송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 추진 · 본 사업은 KBS의 지속적인 대외방송 송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법률에 따라 KBS가 수행해야만 하는 공익성이 높은 국책방송사업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민족동질성 증진과 국제친선 및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국익증진 등의 명확한 목적을 지닌 공익성·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지속적인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외방송을 시청하는 재외국민 숫자의 증가 등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5년 주기로 송신시설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향후 노후시설 교체 수요와 필요예산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방송법 제54조(업무)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방송법 제54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② 국가는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통해 재외 한민족의 민족 동질성을 증진시키고, 국제친선 및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국익향상 등의 명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방송법 제54조(업무)에 의해 수행되며, 보조사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 사회교육방송 : 동북아에 집중된 한민족과 분단이라는 한국의 상황으로 인해 국제방송과는 별도로 우리말로 행하는 특수한 방송으로, 북한지역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거주 동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

- 대외방송 : 국제친선과 문화·경제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말 포함 11개 언어로 방송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대외방송의 안정적 송출과 고품질 방송을 위해 5개 송신소 운영 지원 및 노후 송신시설 교체라는 명확한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관리를 지속적으로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외국 거주 한민족에게 민족 동질성을 증진하며,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확산에 기여함

- 다만, 지속적인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법률에 따라 KBS가 수행해야만 하는 국책방송으로서, 사업의 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어렵고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회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사회교육방송 및 대외방송은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동질성 증진과 세계인을 대상으로 국제친선 및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국익증진 등의 명확한 목적을 지닌 공익성·공공성이 매우 강한 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효과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9,330백만원	8,790백만원	7,911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9,330백만원	8,790백만원	7,911백만원
	%	%	%

○ 본 사업의 보조예산(87.9억원, 2018년)은 전액 KBS 대외방송의 송출지원 운영비와 노후 송신시설 교체비로 적정하게 예산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대체로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방송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운영을 보조하는 공익성·공공성이 매우 강한 사업으로 공영방송인 KBS에서 추진하도록 특화된 사업으로 KBS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수행 중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자 집행의 적정성

○ 매년 본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세부사업수행계획, 중간보고, 종료보고 등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 등을 보고 받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년 보조금 관련 법령, 교부조건 준수 및 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기금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이행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고 개선여부를 파악하고 점검함으로써 집행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내부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법, 기금사업 관리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매년 본 사업 종료 후 기금사업 관리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최종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 등을 보고 받고 있음

○ 매년 보조금 관련 법령, 교부조건 준수 및 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기금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매년 본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세부사업수행계획, 중간보고, 종료보고 등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 등을 보고 받고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부정수급이 일어나기 않도록 관리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점검을 병행하는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법률에 따라 KBS가 수행해야만 하는 공익성이 높은 국책방송사업으로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공익성·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정상추진함

- 전 세계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동질성 증진과 세계인을 대상으로 국제친선 및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국익증진 등의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업임

3-2 정책 제언

○ 대외방송의 안정적 송출과 고품질 방송을 위해 5개 송신소 운영 지원 및 노후 송신시설 교체라는 명확한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운용·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속적인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외방송을 시청하는 재외국민 숫자의 증가 등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5년 주기로 송신시설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향후 노후시설 교체 수요와 필요 예산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금융위원회

전문금융인양성과정설립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금융위원회
사 업 명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단계적 폐지(2020년말) ·본 사업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부산 금융중심지는 정부지원 없이 민간에서 수행되는 고급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부족하였음. 그런데 정부에서 직접 금융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기는 곤란하므로 보조금 지원이라는 정책 수단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됨 ·'전문금융인 양성과정'은 당초 계획대로 '18.9월 개설되어 운영중이며, 설립초년 인지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과정의 입학생이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사업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본 사업은 '17~'20 4년간 개설·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국고보조금 종료 이후 대학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 예정임(단계적 폐지)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은 부산 지역의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수준 높은 금융교육 역량을 갖춘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금융중심지법은 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금융전문인력양성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

- 부산국제금융센터에 30개 기관 3,800여명이 입주해 있으나, 부산 지역에는 금융(경영)전문대학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목적의 타당성이 비교적 인정됨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므로 일차적으로는 과정입학생들 수혜자이나, 이들이 졸업 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파급효과가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수혜자의 광범위성은 다소 모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단일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산 금융중심지를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금융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달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구성

○ 이 보조사업은 부산 금융중심지에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금융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사업으로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사업기간은 '17년~'20년으로 이후 국고지원 종료예정)

○ '전문금융인 양성과정'은 당초 계획대로 '18.9월 개설되어 운영중이며, 설립초년 인지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과정의 입학생이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부산 금융중심지는 정부지원 없이 민간에서 수행되는 고급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부족하였음. 그런데 정부에서 직접 금융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기는 곤란하므로 보조금 지원이라는 정책 수단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정착될 때까지 '17~'20 4년간 개설·운영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됨. 국고보조 종료 이후 대학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 예정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규모가 작지만('17~'20 4년간 매년 10억원) 행정비용은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과정운영비, 학생장학금 등으로 편성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보조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학의 자체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17~'20 4년간 매년 10억원) 내에서 사업비를 정액(매년 10억원) 보조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디지털시대 금융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참조)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7.4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기본계획(안)」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따라 적절한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절차를 마련

○ 공개 모집 절차를 갖추고 선정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대체로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사업공고) ’17.7.4일「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시행계획을 공고하고 8.14일 접수를 마감하여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서 따른 접수기간 제공

○ 금융위원회는 위에서 마련된 선정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심사기준에 포함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교부조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금융중심지법 및 동법시행령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적절한 집행관리 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업무협약에서 매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업무협약 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에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 및 사업성과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에 따라 유선연락, 대면회의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금융중심지법 시행령과 업무협약에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 업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고 명시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완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7년 사업 신설 이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없음. 또한 , 부산대-한국해양대는 보조금 지출시 보조금 관련 규정 외에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

○ 보조금 집행항목이 학생장학금, 양성과정 운영경비·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한정되어 부정수급 발생개연성이 낮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부산 금융중심지는 정부지원 없이 민간에서 수행되는 고급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부족하였음. 그런데 정부에서 직접 금융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기는 곤란하므로 보조금 지원이라는 정책 수단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전문금융인 양성과정'은 당초 계획대로 '18.9월 개설되어 운영중이며, 설립초년 인지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과정의 입학생이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사업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사업은 '17~'20 4년간 개설·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국고보조금 종료 이후 대학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 예정임

3-2 정책 제언

○ 소관 부처는'전문금융인 양성과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활성화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종료 이후 비금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민권익위원회
사 업 명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자부담비율이 민간단체의 재정적 책임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미흡하며, 보조사업의 사업명인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은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음 · 현행 자부담비율 5% 이상은 민간단체의 재정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보조사업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업명칭이 적절치 않음 · 민간단체 자부담 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서 이를 가중치 형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조사업의 사업명은 "반부패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에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8항>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2008.2.29. 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기본방향)>
제 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12.12.24 제정, 훈령 제85호)을 제정하여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호 및 제20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나 영역을 개발하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및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 부패방지 관련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반부패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는 민간단체의 자율적·독창적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사회의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정과제 2-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반부패 권익증진 확산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며, 민간단체가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보호·증진 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시민의식 수준 향상과 일반 시민들의 청렴에 대한 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보조사업의 혜택이 명확하고 광범위 함

- 2018년 보조사업의 사업범위는 전국단위 사업 5개, 지역단위 사업 3개(경기, 광주, 경남)로 구성되어 전국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보조사업 범위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율적·독창적 청렴문화 확산 활동 및 국민권익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국정과제)를 실현하고자 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구성함

○ 보조사업은 반부패·국민권익 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독창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한 지역사회 만들기, 국민권익 보호·증진,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의 내역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보조사업은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민간단체의 자율적·독창적 청렴문화 확산 활동 및 국민권익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타 부처 보조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조사업(▲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봉사·기부문화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 ▲생태·환경분야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사회안전 ▲국제교

류협력 등 9개 유형)과 유사·중복성이 검토되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음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역사회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자율적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16~'18년)간 보조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16년 32개 사업 신청, 13개 사업 선정, 2017년 19개 사업 신청, 10개 사업 선정, 2018년 19개 사업 신청, 8개 사업 선정으로 사업 신청 단체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왔음

○ 보조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의지와 민·관협력 거버넌스 의지가 미약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질타와 정부에 대한 반목이 이어질 수 있고, UN반부패협약상의 민관 거버넌스 활동 불이행에 따라 국제사회의 평가(CPI-부패인식지수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 결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에서 행정비용은 소규모이며,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조금의 규모는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실효성을 지님

- '19년 기준 국고보조금 규모는 199백만 원인데, 행정비용은 8백만 원에 불과함
  * 선정 심사(300만원), 워크숍+이행점검(300만원), 실적 평가(200만원)

<사업예산 현황>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188백만원	169백만원	199백만원
	94.5%	94.4%	94.3%
민간단체부담	11백만원	10백만원	12백만원
	5.5%	5.6%	5.7%
합계	199백만원	179백만원	211백만원
	100%	100%	100%

○ 보조사업은 민간기관별로 사업 예산을 배분하며,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5% 이상으로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반부패 활동과 국민권익 증진 활동이 시민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사업자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반부패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함
-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등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기여함
- 국민권익 보호·증진 분야에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증진 사업은 인권의 보호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6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제7조(보조금의 신청방법), 제8조(보조사업심사위원회),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제13조(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공고 등), 제14조(보조금의 교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민간단체의 자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여 재원을 집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민간보조사업 공고문에 교부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를 구성함

-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6조(보조금의 내역변경), 제17조(변경사유의 신고), 제20조(보조금의 사용감독) 에서 보조사업자들이 집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음

- 보조사업자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후 1차(70%), 중간점검 후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분기별 정산내역, 중간점검, 모니터링, 종합평가 실시 계획을 공고문에 포함하여 적절한 집행체계를 구성함

○ 보조사업의 집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절차의 미 이행 단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 및 방법을 강구하도록 관리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 종료 후 사업보고서 제출, 보조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함

- 제18조(사업보고서의 제출), 제19조(보조금의 정산)에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보조사업이 종료한 시점에서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사업 평가 심의를 진행하여 심의 결과를 차년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에 반영하여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함

- 보조사업 평가 심의에서는 사업평가와 회계평가를 반영하고, 평가결과는 차년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 평가점수대별 가·감점을 부여하고, 8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 선정 제외하도록 하여 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에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발생 건수가 없었음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및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이 e나라도움에서 이루어져서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사업 예산 변경 시 반드시 권익위에 신고하게 조치하였고, 비목 간 전용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전용을 못하도록 감독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보조금의 반환)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사업은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와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타당하고 구체적이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함

○ 보조사업은 반부패 및 권익증진 확산에 기여해 왔고,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비가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지님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과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음

○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권익위는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적정하게 관리함

3-2 정책 제언

○ 민간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조치함

○ 보조사업의 명칭인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보조사업의 명칭을 “반부패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방위산업수출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위사업청
사 업 명	방산기술보호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4.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3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본 사업은 국가의 방위기술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방산기술 보호의 효과가 크지 않고 지원액이 소수이기 때문에 방산기업 자체 부담확대를 통한 사업비의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본 사업은 기업의 자체적인 보안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지원보다 민간기업의 부담을 늘일 필요가 있으며 지원의 구체적인 효과를 알 수 있는 결과지표도 설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민간 방산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줄여 스스로 보안기술 강화에 노력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감축규모: 방산기업 보완관련 장비 임대료 50백만원 감축(**보안장비 임차료 내역사업: 150백만원 중 50백만원 감축**) (근거: 개별기업 평균 지원금 125만원*40개 기업=50백만원 감축, 전체 지원기업 73개 기업 중 매출 및 이익 상위 40개 기업은 자체 재원으로 임대료를 부담)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의 측정 및 관리체계의 마련을 권고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에 제1항에서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있고 이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함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2항 제1호 나목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운영”을 위한 비용지원 규정이 존재하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방산분야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방산 물자 판매대급금 및 기술보호 보조금 지원이라는 이중의 수혜를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측면이 있음

- 보안장비 임차료는 소규모 간접비로서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단기적으로 수혜업체 대부분이 방산 관련 중소·협력업체로 기술보호 인식 및 보호체계 구축이 미흡하므로 국가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지원이 필요함

○ 본 사업의 1차 수혜자는 방산관련 민간 기업이며 2차 수혜자는 국가방위로 인해 편익을 보는 전체국민이 될 수 있지만 관련성은 다소 미흡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①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1년분을 지원하는 내역사업과 ② 기술유출방지 시스템의 설치비용 50%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은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비 성격의 비용임

○ 본 사업은 국가 방위기술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내용과 목표가 어느 정도 명확한 편임

○ 사업이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하거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민간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임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방산기업의 보안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지원 비율을 줄여 민간기업 스스로 보안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지원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내역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측면에서 적정하게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별도의 기준보조율 해당사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협의로 예산이 책정되어 보다 구체적인 적정 지원금액 수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제정하고 공고, 심사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절차적 적정성이 인정됨

○ 참여기업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검토를 통해 재원을 집행하였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적절한 집행체계를 구비한 것으로 판단됨 검증 및 정산자료 증빙 등으로 집행사항을 검토 관리하고 있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내역사업의 진도보고 및 점검을 실시하였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으며 적절하게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나 참여기업의 자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업자 선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심사기준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급 대책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가의 방위기술 보호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의 스스로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일부 내역사업 중 보안 장비 임차료와 같은 운영비는 지원을 축소하여 민간기업 자체재원으로 보안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중장기적으로 관련 보안기술 시스템 개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인 방산기업에서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성과지표의 측정 및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예) 보안사고 및 해킹 감소율 등.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방위사업청
사 업 명	방위산업수출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3.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2.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방산수출 전시회와 교역지원 센터에 대한 지원은 방산수출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방산기업의 수출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해 민간 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국가보조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감축과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방산수출기업의 수출박람회 참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방산기업의 수출활성화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또한 비용지원을 통해 달성되는 효과가 지원업체 수 증가인 산출지표에 머무르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중소 방산 업체의 박람회 참석을 통해 수출동기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방산장비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개별 참가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비를 타 부처 수준으로 감액 - 유사하게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산자부나 중기부에 비해 지원규모가 높아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민간 방산기업의 자체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음 *방사청 개별 참가 기업당 지원금액: 20백만원 *산자부, 부산시: 약 5~6백만원, *농림부: 약 5~7백만원 (통관비 3백만원 추가지원) - 따라서, 내역사업인 방산전시회 및 시장개척활동 민간경상보조 **1,770백만원 중 5%(85백만원)** 감축하여 기업당 평균 지원비를 타 부처와 비슷한 수준으로 축소 ·또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 수출실적 증가율과 같은 결과지표를 설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조금 관리체계를 구비할 것을 권고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보조사업은 방위사업법 제44조(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2항과 동 법 시행령 제58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2항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함

○ 수출지원과 경비지원은 방위사업법 제44조(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2항과 동 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법적근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보조금)로 연계가 약한 편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방위산업 수출지원은 지자체보다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가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것 보다는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자체부담으로 함께 시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동기부여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수혜자를 일반 국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민간 중소중견기업을 수혜자로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방산전시회 및 방산물자교역센터 지원으로 내역사업이 어떻게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다소 부족함

○ 방산물자등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러한 비용을 민간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다소 부족함

○ 비용지원을 통해 달성되는 효과가 지원업체 수 증가인 산출지표에 머무르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사업의 성과지표를 수출실적의 결과지표로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에 대한 엄격한 성과관리가 요구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방산 물자 수출 절차의 복잡성과 전시회 참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수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추진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음

- 국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것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비용은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방산수출은 해외국가의 국방획득 정보가 요구되므로 중소·중견기업 단독으로는 수출 마케팅 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기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홍보 및 수출추진 지원 필요성은 일부 인정됨

○ 정부 내 사업과의 유사중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코트라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여지는 있음

○ 본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민간에서 비용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영세 중소기업의 방산물자 홍보기회 및 판로 개척이 어려우므로 해외 수출마케팅 활동 지속 지원할 여지는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수출박람회 지원사업의 경우 방산업체의 자체 부담의 증가를 전제로 전시회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타 부처 개별참가기업의 수출 지원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높게 설정되어 있음

* 부처별 예산대비 참여기업수

구 분	방위사업청	산자부	농림부	부산시
지원횟수	2	2	4	1
지원기준	80% 20백만원	5백만원	중소100% 대기업50% (5~7백만원) *통관비3백만원추가지원함	80% (5~6백만원)

○ 보조금법 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이 없어 부처간 예산협의로 보조율을 책정하여 적정 보조율을 판단하기 어려움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공모절차, 선정기준 제시 등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제시되지 않음

- 자격기준,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관리·감독, 집행점검 등 집행의 적정성을 위한 관리체계 및 규정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집행관리 절차가 제시되지 않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세부사항과 실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사후 실적급 집행사업으로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부정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자체 규정 등에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방위산업 수출지원은 국가보다는 방산 수출로 이익을 얻는 민간 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단기적으로 중소 방산 수출기업의 수출 동기제고를 위해 일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2 정책제언

○ 민간 방산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여 수출 확대에 대한 자체적인 동기와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로 수출증가액과 같은 결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경찰청
사 업 명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동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동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 아동들의 움직임이 많고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아동 대상 성폭력·학교폭력·유괴·실종 등 각종 범죄예방 및 직접 범인 검거(지원) 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동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아동이며, 간접적으로 은퇴한 노인전문인력도 수혜자임. 이와 함께 전국의 아동 및 학부모들도 수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의 혜택은 대체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성과지표들이 동사업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은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 동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 아동들의 움직임이 많고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아동 대상 성폭력·학교폭력·유괴·실종 등 각종 범죄예방 및 직접 범인 검거(지원) 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위에서 언급한 법의 내용과 동사업의 연계성이 인정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 아동들의 움직임이 많고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아동 대상 성폭력·학교폭력·유괴·실종 등 각종 범죄예방 및 직접 범인 검거(지원) 활동으로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및 대여성범죄 예방활동으로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고려,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에게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 2차적 목적도 가지고 있음. 다만 2차적 목표에 비해 1차적 목표에 보다 집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찰 고유의 업무인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을 통한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치안 확립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동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아동이며, 간접적으로 은퇴한 노인전문인력도 수혜자임. 이와 함께 전국의 아동 및 학부모들도 수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의 혜택은 대체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단위사업과 내역사업이 일치하고 있어 사업 구성은 '아동이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동사업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상 '국가의 아동보호 책무'와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운용' 규정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경찰청 훈령)을 제정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운영지침·업무메뉴얼 등에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매년 꾸준한 범인검거(지원) 활동 및 각종 범죄예방·비행선도 활동으로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실현하고 있음

(단위: 명)

연도	총계	범인 검거 및 지원					범죄 예방 및 보호					
		소 계	성폭력	학교폭력	강·절도	기타	계	성폭력 예방	폭력 예방	실종 예방	비행 선도	기타
'16년	49,112	628	7	47	4	570	48,484	1,513	6,224	2,200	11,554	26,993
'17년	55,673	912	7	28	2	875	54,761	390	4,600	552	12,745	36,474
'18년	82,681	1,282	5	94	6	1,177	81,399	125	4,693	562	7,229	68,790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하는 만큼 1만여명의 대규모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있음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수혜자수	5,934명	9,007명	9,007명	10,007명
月 활동비	361,800원	388,200원	451,800원	501,000원

○ 대국민 만족도조사 결과, '18년 83.9로 목표인 80.5를 상회하고 있음

○ 범죄예방 및 검거지원 건수는 '18년 9.2로 목표인 8.0를 상회하고 있음

○ 다만 목표치가 도전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17년 만족도가 83.8점에 비해 '18년 목표가 80.5로 예년 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음

○ 또한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즉 동사업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는데 오히려 범인검거 수 등을 중요시하고 있어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형태이나, 사실상 보조사업자는 경찰청 사업계획에 의거, 활동비 지급 및 복제·보험 등 부대경비를 대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자의적 집행은 거의 불가하다고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며,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이라는 특성 상 100%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민간 수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유사사업으로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사업 등이 있으나 활동장소, 보호대상, 수행업무, 주관부처, 법률근거, 관리감독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15년 고용노동부 주관 논의 결과 협업·연계를 통한 효율화 추진 방향으로 결론안 도출하였고('15년 7월), 후속 조치로 경찰청-교육부 실무협의('15년 9월)를 거쳐 양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아동안전협의회' 구축하여 아동안전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 등의 사업 간 협업체계도 구축하고 있음

- 또한, '지역 아동안전협의회' 결과와 관련 우수사례들을 발굴 및 선정하고, '연계 우수사례'를 지역별로 공유하여 사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아동 대상 범죄는 발생만으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예방활동이 중요하며,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여 아동안전보호 및 치안보조활동을 수행할 필요와 활동인원 확대 여론이 대다수인 상황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8년 기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보조금 중 96.7%는 9,007명의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고, 여타 3.3%는 부대경비로 활동에 필요한 복제·지급용품, 단체상해보험비, 설문조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소요액 추계는 연도별 아동안전지킴이 증원인원과 최저임금 인상률(추정치)을 고려한 활동비 증가분 및 부대경비(복제, 단체상해보험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고 있어 대체로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 자체 공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사업 특성에 맞는 응모자격 및 제한요건 등 반영한 평가표를 활용하여 선정하고 있음

○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위주로 편성, 전문성과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 7명 내외(외부위원은 회계분야 2명, 아동전문분야 2명, 시민단체 등 2명 등 6명 선정)로 위원회 구성하고 있음

○ 2018년 보조사업자의 경우 3개 단체가 공모하여 대한중앙노인회를 선정하였음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은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매년 현행 국고보조금 법령·지침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교부 결정 공문과 함께 통보하고 있음

- 보조금 사용방법 및 별도 계정(통합관리지침 제18조, 20조): (보조금 사용) 일체의 지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신고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34조(계좌 구분계리)에 의거, 별도의 보조금 계정으로 관리

- 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여부(통합관리지침 제21조): (조달계약 추진) 관련지침에 따라 점퍼(48,370만원)·조끼(9,008만원)·모자(10,101만원)·보험(25,452만원)·만족도조사(5,434만원)은 조달계약 추진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의2 : 5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 시 조달청 계약

- (자체계약 실태) 마스크(4,331만원)·호루라기(910만원)·활동수첩(1,183만원) 등 자체계약 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접수, 비교견적 등의 절차를 진행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등(통합관리지침 제26조~30조):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 선임) '17년 보조금법 개정 이후 도입·강화된 감사인 선임 및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세목 편성·관리 등 지침 준수

- (집행잔액 반납)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전액 국고로 반납하고 있음

연 도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이월액	반납금액
'16년	22,385,632,000	22,327,522,990	58,109,010	3,626,283	18	61,735,311
'17년	29,054,632,000	29,030,773,737	23,858,263	1,349,842	0	25,208,105
'18년	42,097,630,000	42,083,660,930	13,971,070	93,723,631	0	107,694,701

- 보조사업 자료보관 및 집행점검(통합관리지침 제31조~32조)
- (증빙자료 관리 실태) 보조금 지출 관련 일체의 서류를 파일철로 관리 중(향후 5년)
- (집행 관련 점검) '13년 경찰청으로 사업 이관 이후, 감사원에서 매년 보조금 집행 실태 등 감사 중이나 '13~'18년까지 6회 모두 관련 지적사항 없음

○ 연도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실집행률 99.64%, 2017년 실집행률 99.92%, 2018년 실집행률 99.97%로 준수하고 있음

연 도	교부금액	실집행금액	집행잔액	실집행률
'16년	22,385,632,000	22,327,522,990	58,109,010	99.64%
'17년	29,054,632,000	29,030,773,737	23,858,263	99.92%
'18년	42,097,630,000	42,083,660,930	13,971,070	99.97%

○ 종합적으로 볼 때, 보조사업의 집행은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등의 근거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업임

-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형태이나, 사실상 보조사업자는 경찰청 사업계획에 의거, 활동비 지급 및 복제·보험 등 부대경비를 대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 자의적 집행은 불가능하며 보조금의 대부분(96.7%)을 차지하는 활동비 지급도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집행잔액과 이자는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등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대규모 인력·조직을 보유한 공신력 있는 단일 보조사업자(현 대한중앙노인회)가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사업 특성 상 자산취득 등을 통해 중요재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음

○ 경찰청(여청과)에서도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에 관한 적절한 집행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검사 실시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보조금집행 관련 보조사업자 현장 진출 검사 가능

○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 시 문제점 및 패널티 적용여부를 살펴보면, 보조금 관련 법령·지침 및 경찰청 사업계획·지시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었고, 단순 착오로 일부 활동비 과·오지급 사례가 존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하여 후속조치 완료함

- '16년 과지급 6건, 오지급 3건 / '17년 과지급 12건, 오지급 10건

○ 종합적으로 ①사업 특성, ②감사원 감사 및 경찰청 검사, ③검증기관 선정 및 감사인 선임 등의 절차 등을 통해 충분한 회계감사 및 사후관리 절차·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없음

○ 보조사업자는 경찰청 사업계획에 의거, 활동비 지급 및 복제·보험 등 부대경비를 지출, 자의적 집행은 불가능한 점, 보조금의 대부분(96.7%)을 차지하는 활동비 지급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점,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대규모 인력·조직을 보유한 공신력 있는 단일 보조사업자(現 대한중앙노인회)가 수행하는 점, 활동비 외의 보조금(3.4%)은 복제·장구·보험 등의 계약건으로 조달청(자체) 계약, 세금계산서, 통장 지출내역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 또한 매년 경찰청(여성청소년과) 검사를 실시하는 점, ③검증기관 선정 및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는 점, ④감사인 선임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점, ⑤이나라도움을 통한 지출 및 사업 종료 시 정보공시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 아동들의 움직임이 많고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아동 대상 성폭력·학교폭력·유괴·실종 등 각종 범죄예방 및 직접 범인 검거(지원) 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동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아동이며, 간접적으로 은퇴한 노인전문인력도 수혜자임. 이와 함께 전국의 아동 및 학부모들도 수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의 혜택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보조사업자의 선정을 비롯한 관리 측면에서도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성과지표들이 동사업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17년 만족도가 83.8점에 비해 '18년 목표가 80.5로 예년 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음
- 또한 동사업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는데 오히려 범인검거 수 등을 중요시하고 있어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동사업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문화재청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문화재예방관리강화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보조)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보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운영
조선왕릉보존관리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재청
사 업 명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3.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2.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2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5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은 국민이 염원하는 사업이면서 사업 자체로서도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에서 완비성, 도전성이 부족하는 등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또한, 여타 기관과 유사중복성은 높지 않지만 여타 기관과 긴밀히 연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일한 예산으로도 시너지를 발생시켜 성과를 제고시키거나 예산을 보다 절감시키며 현재 수준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더불어 홍보·활용·협력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인력중 일부를 조사연구 인력으로 전환시키거나 기존 홍보·활용·협력에 대한 도전적인 임무를 부여해야 할 것임 ·국외문화재 환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예산 투입으로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성과제고 방안을 도출할 필요. 실효성과 기속력을 가지고 있는 관련 성과제고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성과 도출을 유인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예산 절감이 필요 ·당초 감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처가 위의 사항을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고 기속력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 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한편 법령은 “보조해야 한다” 방식으로 보조를 기속한 것이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의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단의 설립) 5항 및 6항 >

⑤ 국가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국외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전・관리
4.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동 보조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에 의거,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서, 목적과 근거 법령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단의 설립) 1 >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 · 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 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 · 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의 설립 배경은 1)정부와 민간(재단)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 환수추진 필요성 제기, 2) 민간분야에서의 개별적 환수활동의 한계, 3)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감 형성 및 국제 여론 고조, 4) 문화재 환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부재 등으로,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국외소재문화재 정책을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외소재문화재 전담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임. 따라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유연성을 활용하기 위한 재단 중심의 국외 한국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이 대체로 인정됨

○ 부처는 본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민 전체이며 간접적인 수혜자는 해외 대상 국가의 국민 전체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은 본 사업의 간접적인 수혜자이며, 직접적인 수혜자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사 및 기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1) 국외문화재 환수기반 강화, 2) 국외문화재 조사의 다각화, 3) 국외문화재 콘텐츠 개발 및 가치 확대 (부처의 보고서에서는 유통조사사업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음)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본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의 명칭을 살펴보면 세부사업이 지향하는 국외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중 활용에 대한 내역사업이 충분하지 않고, 환수를 위한 조사 등 환수 기반에 대한 사항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됨

- 즉 내역사업의 명칭과 활동 내용을 환수와 활용에 직접 대응되는 사항으로 수정 · 보완시킬 필요가 있음

○ 부처는 본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음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외문화재 환수활동 및 활용지원 실적 (단위 : 건)	목표	12	13	14	16	17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달성 가능한 최대 목표치 설정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조사 -연구건수, 기관간 협상건수, 국제회의 참여건수, 민간단체 환수활동지원건수(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활동건수 포함) -국외문화재 현지활용 지원건수 등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조사·연구 결과보고서,기관간 협상실적(MOU,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국제회의 참석 결과보고서,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결정서, 국외문화재 현지활용 지원 실적(MOU 및 지원금 송부 공문) 등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적 종합 측정
	실적	12	13	14	16				
	달성도	100	100	100	100				

- 그러나 본 지표는 현재 내역사업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지표의 도전성이 높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상당함

- 즉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성과관리를 할 경우, 본 사업의 기존 예산 규모를 가지고서도 현재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양하거나 기존 예산 규모보다 조금 감액되더라도 현재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우리나라와 외국간 외교적 ·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민간의 유연성을 활용할 필요가 대체로 인정되는 사업임. 따라서 민간보조로서의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대체로 인정됨

○ 유사 · 중복성과 관련하여, 부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한국문화재재단의 설립근거와 임무가 별도로 법률에서 존재하고 활동이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해당 주장에 대해 큰 이견은 없으나 두 기관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 시너지가 발생하는 등 문화재 보존 · 활용,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문화재관련 공적개발원조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인지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대체로 인정됨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적 손실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겠으나 해외 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약 50억원의 보조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약 19억원에 불과함

- 국외문화재환수를 위해 현재와 같이 소규모의 별도의 재단을 설립할 경우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오버헤드 경비가 불필요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기존 재단과의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재단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투자되는 사업비에서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특수법인의 형태로 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의 효율성 등 정부 기능의 보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그동안 민간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종국적으로는 문화재 환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 지원은 사업의 목적 등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여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 작성 보고서에 의하면 교부 신청 및 실적 보고,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정산 및 부정수급 방지 등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전 단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법률 및 내부규정, 지침 등에 의거하여 구축·운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부처 작성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통해 분기별로 실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현황 점검,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등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 작성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통해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적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부처 작성 보고서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 정산과 회계감사를 3단계에 걸쳐 실행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 작성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통해 부정수급 관리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가 현재까지 없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관련사항과 제재부가금 관련사항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국민이 염원하는 사업이면서 사업 자체로서도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러나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에서 완비성, 도전성이 부족하는 등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또한, 여타 기관과 유사중복성은 높지 않지만 여타 기관과 긴밀히 연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일한 예산으로도 시너지를 발생시켜 성과를 제고시키거나 예산을 보다 절감시키며 현재 수준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더불어 홍보 · 활용 · 협력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인력중 일부를 조사연구 인력으로 전환시키거나 기존 홍보 · 활용 · 협력에 대한 도전적인 임무를 부여해야 할 것임

○ 국외문화재 환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예산 투입으로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성과제고 방안을 도출할 필요. 실효성과 기속력을 가지고 있는 관련 성과제고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성과 도출을 유인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예산 절감이 필요

3-2 정책 제언

○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 아래에 부처의 향후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 등을 담은 공문서를 첨부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수신 문화재청장(국제협력과장)
(경유)
제목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출

1. 문화재청 국제협력과-637(2019.3.15.)호 관련입니다.

2. 재단의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1부. 끝.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팀원	팀원	팀장	사무총장
배지영	조행리	강혜승	2019.3.19. 김홍등

협조자

시행 기획운영팀-679 (2019. 3. 19.) 접수 국제협력과-666 (2019.03.19.)

우 04512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남대문로5가, WISE TOWER) 19층 /

전화번호 02.6902.0715 팩스번호 02.6902.0799 / bjy08@okchf.or.kr / 대국민 공개

※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아래에 한글 파일로 첨부함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국외소재문화재재단

C·O·N·T·E·N·T·S 목 차

Ⅰ. 정책성과 및 정책 추진방향

1. 2018년도 정책성과

2. 2019년도 정책 추진방향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일반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Ⅳ. 이행상황 점검 및 환류 계획

Ⅰ 정책성과 및 정책 추진방향

1. 2018년도 정책성과

1 협력 확대를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 여건 조성

□ 경매 모니터링을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

- ㅇ (佛 경매)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환수
- ㅇ (美 경매) <운문사 칠성도> 환수
- ㅇ (美 경매) <봉은사 시왕도> 환수
- ㅇ (美 경매) <덕온공주 동제인장> 환수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운문사 칠성도>

<봉은사 시왕도>

<덕온공주 동제인장>

□ 긴급매입사업을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

- ㅇ 美 개인 소장 <덕온공주 집안 한글자료 등> 68점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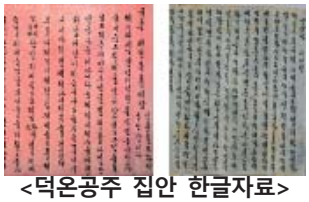
<덕온공주 집안 한글자료>

□ 실태조사를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

- ㅇ 독일 상트 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갑옷> 기증
- ㅇ 독일 뮌스터슈바르자흐수도원 소장 『양봉요지』 반환

<양봉요지>

<조선시대 갑옷>

□ 해외 현지 한국문화재 발굴을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

- ㅇ 美 개인 소장 <독립운동가 송일성 자료> 확인, 기증
  * 제1회 '미국 속의 한국을 찾습니다!' 행사 시 파악

<송일성 자료(사진)>

□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및 성과 공유

○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국외부동산문화재 분야를 포함하여 공모사업 범위 확대

단 체 명	사업 내용	지원액(천원)
(사)경남국외문화재보존연구회	현지 방문을 통한 연지사종 상태 확인, 세미나, 문화행사 등	30,000
(사)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영산회상도 환수 관련 증언 채록, 영상 제작 등	30,000
(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이미륵박사 망명생활 관련 독일 현지조사 등	19,000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미국 소재 중요문화재 현지조사, 국외문화재 교육 등	38,000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	공식방일협상, 사생대회 등 청소년 대상 행사 및 교육	30,000
(재)고산문화재단	운흥사 범종 관련 공동조사 제안, 추가자료 발굴 등	28,000

○ 국외문화재협의회 및 민간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제1회 <미국 속의 한국을 찾습니다!> 행사 개최(LA지역)

○ 재외동포 등 현지 개인소장 문화재 발굴 및 실태파악(240여 점)

○ 향후 국외 개인소장 문화재 현황 파악을 위한 기반 마련

□ 국외 부동산문화재 조사·활용을 위한 사업 범위 확대

○ 문화재보호법 제2조 개정 시행(2017.9.22./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에 따라 국외부동산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초사업 진행

○ 국외부동산문화재 보존·활용 추진 중장기 계획 수립('19.6월 예정)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

○ 국외 역사인물 관련 주요 부동산문화재 홍보 실시

- 독일지역 이미륵 관련 주요장소 홍보를 위한 지도 리플릿 제작

□ 일본 현지 교류협력 활동 확대

○ 재단-도쿄대학 공동주최 심포지엄 <한일공동선언 20주년 : 문화재로 이어가는 한일의 미래> 개최(도쿄)

＊ 연구자, 언론인 등 100여 명 참석

○ 일본 도쿄대학 한국문화재 강의 개설 사업 지원

＊ 지원대상 및 기간 : 도쿄대학 한국학연구센터('18.6월~'19.3월)

○ '한반도 유래 문화재를 생각하는 간사이(關西) 국제워크숍' 후원(나라)

○ 시즈오카 주민단체(조선통신사연구회)와 조선통신사 유적지 등 공동 실태파악 실시

2 조사·연구를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 기반 구축

□ 5개국 10개 기관 및 개인 소장품 4,433여 점 실태조사 실시

○ 연도별 누적 조사수량

'13년 6,602점 → '14년 11,828점 → '15년 19,199점 → '16년 25,760점 → '17년 32,330점 → '18년 36,76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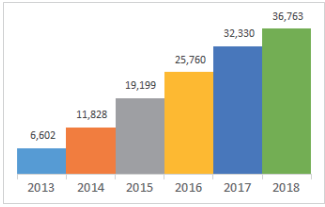

<연도별 누적 조사수량>

<2018년 해외 주요기관 실태조사 현황>

국가	기관명	조사내용	국가	기관명	조사내용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1차)	회화, 전적 등 900여 점	오스트리아	피히트수도원(상트 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위탁보관)	복식, 민속 등 150여 점
스위스	생갈렌역사민속박물관, 베른역사박물관, 바젤문화박물관, 취리히리트베르그박물관, 개인소장가(1차)	회화, 복식 등 250여 점	일본	일본 와세다대학 도서관(1차)	한국전적 1,305책
				일본 고마자와대학 도서관	한국전적 670책
독일	상트 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3차)	복식 등 10여 점		일본 교토대학(1차)	한국전적 1,148책

□ 실태조사결과보고서 '국외한국문화재' 4종 발간

○ 『캐나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국문판)

○ 『일본민예관 소장 한국문화재Ⅱ: 도자·회화편』(일문판)

○ 『일본 세이카도문고 소장 한국전적』(국·일문판)

○ 『일본 도쿄대학 소장 오구라문고 한국전적』(국문판)

□ 경매 모니터링 대상 및 공유 확대

○ <모니터링 대상 경매소> '14년 : 18개국 220개소 → '18년 : 29개국 478개소

○ <모니터링 결과 배포처> '14년 : 6개 기관 16명 → '18년 : 19개 기관 107명

□ 국외 한국문화재 연구 지원

○ 일본 교토대학 소장 이마니시 류 수집 고고자료 정리연구('18~'19년)

*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 : 일본의 동양사학자,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회원

○ 미국 럿거스대학 소장 그리피스 컬렉션 한국자료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18~'19년)

*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 1843~1928) : 미국 동양학자·목사, 그의 수집 자료는 사후(死後) 럿거스대학 도서관에 기증됨

□ 일본 지정문화재 중 한국문화재 조사 실시

○ 일본 국가지정문화재 중 한국문화재 111점 파악

* 일본 정부 공개자료·참고문헌을 통한 간접조사

3 활용·지원을 통한 국외문화재 가치 공유 확대

□ 국외소장기관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지원

○ 4개국 6개 기관 26점 선정 및 지원

* 공모를 통하여 해외 소장기관의 신청서 접수

<국외문화재 보존처리 과정>

□ 제2회 <해외전문가 대상 보존·복원교육 워크숍> 개최

○ 유럽지역 보존처리 전문가 대상 한국서화문화재 보존처리 이론 및 실습 교육 실시
(독일 상트 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 국내 전문가를 해외 파견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 진행

<제2회 해외전문가 대상 보존·복원교육워크숍>

□ 제3회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전문교육> 실시

○ 국·공·사립박물관 및 문화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5명 수강

○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 윤리강령 및 반출입 관련 제도 등 전문 교육 실시

□ 공사관 및 환수 사례 출판물 발간

○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의 외교보고서 『미속습유』 번역 발간

○ '이선제묘지' 반출·기증 과정 소개 『이선제묘지 귀향이야기』 발간

<미속습유>

<이선제묘지 귀향이야기>

□ 조사 결과물 DB시스템 축적

○ 실태조사 및 간접조사 결과물(4,500여 건 11,000여 점) 시스템 입력

- '17년도 재단 실태조사, 유관기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실태조사,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간접조사(하버드 옌칭도서관 조사자료) 결과 반영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관 및 운영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공사 완료('18.3월 준공)

○ 공사관 개관식 개최

- 일시·장소 : '18. 5. 22.(화) 10:30 / 워싱턴 D.C. 공사관 일대
- 참 석 자 : 문화재청장, 공관원 후손, 미(美) 하원의원, 워싱턴DC 부시장, 재외동포단체 대표, 현지 지역주민 대표 등 500여 명
- 시 사 점 : 공사관 개관 130주년 의의 환기 및 113년 만의 태극기 게양

* 대통령 내외 공사관 방문(개관식 당일, 환담 및 방명록 작성)

○ 공사관 관리·운영 및 홍보

* 주요 방문객 : 방미 한국인, 현지 한국 관련 기관·단체장, 주민 등
* '18년 총 방문객 : 5,040명(내국인 2,976명/59%, 외국인 2,064명/41%)

<식전공연 및 행사장 모습>

<주요참석 인사 모습>

<태극기 게양(이상재 선생 종손)>

<대통령 방명록 작성>

<공관원 후손 차담>

<전시관 안내>

2. 2019년도 정책 추진방향

1 대내외 환경 분석

□ 국외 정책환경

○ 대마도 관음사 불상 관련 이슈, 한국인의 일본문화재 파괴 사건 등으로 한일 간 문화재 관련 논의 경색

○ 보존·복원처리 및 활용지원 사업에 대한 국외기관 수요 증가

- 국외기관 소장 한국문화재의 경우 예산 등의 이유로 자체 보존처리가 쉽지 아니함

* 지원신청액 : '15년도 공모 실시 이후 연간 3억원 이상

□ 국내 정책환경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문화재 조사 사업 종료('16년)로 국외문화재 조사 전담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정립 필요

○ 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관심 증가

* '13년 6개 단체 120백만원 지원 → '18년 6개 단체 180백만원 지원

○ 지자체의 민간단체 문화재 환수 지원사업 확대로 인한 협력강화 필요

* 문화재 환수 지원 조례 제정 : 경상북도('12년), 경기도('16년), 충청남도('16년), 서울시('17년), 강원도('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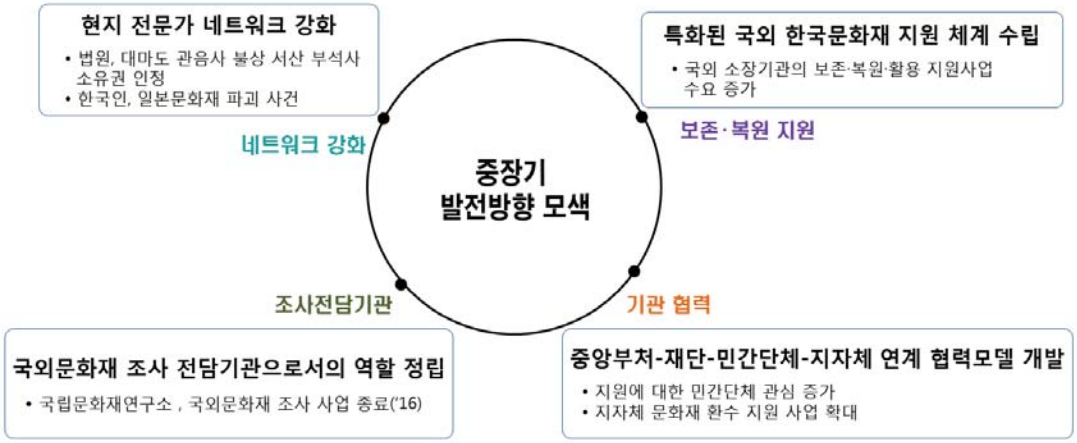

2 SWOT 분석

강점요인(Strength)

- 국외 한국문화재 전담기관이라는 특화된 기관 성격으로 전문성 확보 용이
- 실태조사, 출처조사, 유통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 추진으로 국외 한국문화재 DB 축적
- 국외 한국문화재 소장기관 보존·복원·활용 지원 사업으로 국제적 인지도 증가

약점요인 (Weaknesses)

- 세계 전역에 분포한 국외 한국문화재라는 광범위한 업무범위에 비해 부족한 인력 및 예산
-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복사업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 필요
- 정치권을 비롯 대다수 국민은 재단을 '환수재단'으로 인식, 이에 상응하는 양적 성과 도출 애로

기회요인(Opportunities)

- 국외 한국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재단 역할의 중요성 부각
- 문화재 보호법 개정을 통한 국외문화재 개념 확대(해외유적지, 무형문화재 포함)
- 국외 한국문화재 소장기관의 보존처리 수요 증가

위협요인 (Threats)

- 외교적 상황에 따라 국외문화재 관련 업무 추진 환경 변화
- 국외 한국문화재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불법성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환수 성과 요구
- '환수재단' 이미지로 인한 국외 한국문화재 소장기관과의 업무협의 애로

3 정책 추진방향

강점의 극대화(SO)

- 관련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여 전문기관,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축적된 조사방법 및 환수 경험을 활용한 실질적인 성과 추진
- 보존 복원 지원을 통해 인지도를 넓히는 한편 조사, 환수사업으로의 연계 방안 모색

약점의 개선(WO)

- 예산 확보 및 기업후원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
- 특화된 지원체계 수립으로 유사기관 등과의 사업 차별화 실현
- 다양한 조사, 환수, 활용 사업을 통한 정치권 및 국민 인식 환기

기회의 확보(ST)

- 국민 대상 캠페인 등 국외문화재 이슈화를 통한 사업 재원 확보
- 사업범위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관리 강화
- 국외 한국문화재 소장기관의 보존처리 지원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위협의 대응(WT)

-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국외문화재 관련 사업 추진
- 환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 맞춤형 조사 협의(도록 발간 등)를 통한 기관 협력 도모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일반현황

(1) 조 직

○ 4팀, 2해외사무소 * 2019. 3. 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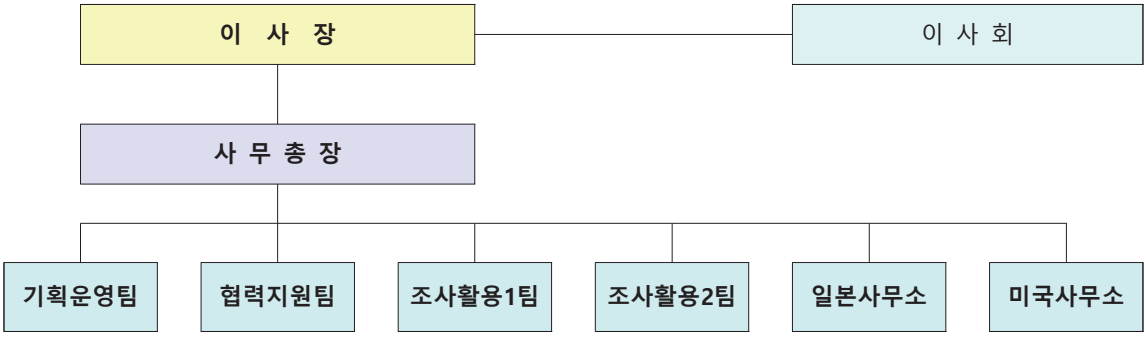

(2) 인 원

○ 정원 31명 / 현원 26명 (2019. 3. 1.현재)

구 분	임원	1-3급	4급	5급	6급	계
정 원	2	5	7	11	6	31
현 원	2	4	4	8	8	26

(3)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18년 예산 (A)	'19년 예산 (B)	증 감 (B-A)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운영	기관운영	2,173	2,273	↑100
	국외문화재 조사·환수	1,931	1,839	△92
	소 계	4,104	4,112	↑8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		891	891	-
총 계		4,995	5,003	↑8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방향

□ 중·장기 사업목표와의 연계

○ 환수실적 확대 등을 통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 국외 문화재 현황 파악을 통한 환수 및 활용 기반 마련

○ 국외문화재 활용 및 콘텐츠 발굴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 전파

□ 설립 이후의 사업성과 및 대내외적 정책 여건 반영

○ 국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환수 실적 확대

○ 해외 소장기관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따른 국외문화재 현황 파악의 실효성 증대

○ 축적된 조사자료 및 환수 경험을 활용한 성과 추진

□ 국외문화재 전담기구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방향 제시

○ 정책성과 극대화를 통한 기구 위상 강화

○ 국외문화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시행계획의 방향

중·장기 사업목표와의 연계

■ 환수·기증·구입 확대 ■ 우리문화재 현황 파악 ■ 문화재 보존 및 가치 확산

설립 이후의 사업성과 및 대내외적 정책 여건 반영

국외문화재 전담기구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방향 제시

전략 목표

Ⅰ. **환수역량 강화로 국외문화재 전담기구로서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Ⅱ. **조사의 다각화를 통해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Ⅲ. **국외문화재 콘텐츠 발굴 및 활용으로 국내외적 관심을 제고한다.**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통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

비전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 전파를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실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Ⅱ	전략목표Ⅲ
환수역량 강화로 국외문화재 전담기구로서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조사의 다각화를 통해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국외문화재 콘텐츠 발굴 및 활용으로 국내외적 관심을 제고한다.
성과목표 Ⅰ-1	**성과목표Ⅱ-1**	**성과목표Ⅲ-1**
민간부문 협력 및 기증·기부 유도를 활성화한다.	체계화된 조사를 통해 국외문화재 현황 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외부동산문화재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사·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목표 Ⅰ-2	**성과목표Ⅱ-2**	**성과목표Ⅲ-2**
전문가와의 교류·지원을 강화하여 환수 여건을 개선한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환수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전문교육을 통하여 문화재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성과목표 Ⅰ-3	**성과목표Ⅱ-3**	**성과목표Ⅲ-3**
국외문화재DB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사업성과를 유도한다.	유통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환수 성과를 도출한다.	현지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환수역량 강화로 국외문화재 전담기구로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 민간부문 협력 및 기증·기부 유도를 활성화한다.
- 성과목표 2 : 전문가와의 교류·지원을 강화하여 환수 여건을 개선한다.
- 성과목표 3 : 국외문화재DB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사업성과를 유도한다.

◇ 추진배경·필요성(중요성)

○ 국내 민간부문 지원 및 협력 강화
- 국외문화재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의 관심 증가

○ 국외 민간부문 협력망 구성 및 운영 확대
- 국외 현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국외문화재 정보 수집 및 해외 동향 파악 필요

○ 국외문화재 분야 민간참여를 통한 환수실적 제고
- 기업 및 개인의 국외문화재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

○ 일본지역 한국문화재 전문가 교류·지원
- 한일 관계 장기간 경색으로 인한 대일본사업 여건 개선

○ 국외문화재 연구 지원
- 국외문화재에 대한 현지 연구 활성화 도모

○ 국외문화재DB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급변한 IT환경 변화 및 국외문화재 범위 확대에 대응하여 국외문화재DB관리시스템 재구축 필요

○ 국외문화재DB 구축 및 관리
- 국외문화재 정보의 효과적·체계적인 입력 및 관리를 통한 정보 활용성 최대화 구현

성과목표 Ⅰ-1 민간부문 협력 및 기증·기부 유도를 활성화한다.

1 국내 민간부문 지원 및 협력 강화

□ 추진배경(목적)

○ 국외문화재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의 관심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외문화재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180백만원)
- 일회적 사업 지양 및 지원사업 모니터링 실시

○ 민간단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 국외문화재 관련 전문가 특강, 사례 및 현안 공유, 전문가 평가 등

○ '민간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문화재청-지자체-재단 간 구성
- 지자체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사업 방지 및 지원사업 효율화 도모 등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외문화재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및 심사, 교부(1차)	1~3월	
	국외문화재협의회 실시(1차)	3월	
2/4분기	주요기관 모니터링 및 회계 교육 등	4~6월	
3/4분기	국외문화재협의회 실시(2차)	7~9월	
4/4분기	국외문화재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 워크숍 실시	11월	
	국외문화재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정산 등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외문화재 관련 민간단체,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중앙부처(문화재청),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 및 민간활동 저변 확대

○ 민간단체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국고보조금 집행 효율성 제고

2 국외 민간부문 협력망 구성 및 운영 확대

□ 추진배경(목적)

○ 국외 현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국외문화재 정보 수집 및 해외 동향 파악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외통신원 제도 확대 및 활성화

- 위촉 대상 : 국외 현지 거주·체류중인 한국인 또는 전문가
- 통신원 역할 : 최신 정보 수집(상시) 및 재단-소장처 간 중개

* 소장유물 관련 단순 질의 및 자문, 긴급한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 대행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반기 국외통신원 활동 독려, 보고 접수	연중	
	신규 통신원 추천 섭외 등	연중	
2/4분기	상반기 국외통신원 활동 결산, 결과보고	6월	
3/4분기	하반기 국외통신원 활동 결산, 보고접수	수시	
4/4분기	하반기 국외통신원 활동 결산, 결과보고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외통신원,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중앙부처(문화재청), 국내외 박물관 등

□ 기대효과

○ 현지의 인적 인프라 조성으로 알려지지 않은 국외문화재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증가

3 국외문화재 분야 민간참여를 통한 환수실적 제고

□ 추진배경(목적)

○ 기업 및 개인의 국외문화재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업 사회공헌 및 개인 기부 촉진

-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참여기업' 등 참여 확대 유도

○ 소장자(개인·기관)와 국내 박물관을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 운영

- 국외문화재 기증·기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기증유물에 적합한 박물관을 연계하는 행정 One-stop 서비스 제공
  - (기관) 독일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조선전기 문인석 2점 반환
  - (개인) 미국 다량소장자 기증 유도(중점조사 후)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독일 현지 반환식 개최 준비 등	1~3월	
	미국 서부지역 다량소장자 실태조사	2~3월	
2/4분기	독일→한국 운송(문인석 2점)	3월	
	문인석 관련 국내 반환식 개최 준비 등	4~5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예정
3/4분기	미국 서부지역 다량소장자 기증유도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외문화재 소장자(개인·기관), 국내 박물관,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중앙부처(문화재청), 국외문화재 소장자(개인·기관), 국내 박물관, 기업 등

□ 기대효과

○ 기업과 국민이 기부를 통해 국외문화재 관련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국외문화재 소장자(개인·기관)의 기증 관련 행정 편의성 제고를 통한 기증 활성화

성과목표 Ⅰ-2 전문가와의 교류·지원을 강화하여 환수 여건을 개선한다.

1 일본지역 한국문화재 전문가 교류·지원

□ 추진배경(목적)

○ 한일 관계 장기간 경색으로 인한 대일본사업 여건 개선

○ 일본 현지의 한국문화재에 대한 이해 심화 및 인식 제고 필요성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일본 현지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자료집 발간 등

○ 한일 문화재 연구 포럼 지원

○ 일본 현지 대학의 강의 개설 및 연구회 개최 지원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내역사업 별 추진 계획 수립	1~2월	
	일본 현지 업무협의 실시	1~2월	
2/4분기	강의지원 관련 내용 검토 및 협의진행	3월	
	포럼 계획안 검토 및 계약 추진	3~4월	
	강의지원 기관 MOU 체결	3월	
	일정 및 진행상황 확인	4~10월	
	제7회 세미나 개최	5월	
3/4분기	제2회 한일 문화재 포럼 용역 수행 중간 감독 진행	8월	
	제2회 한일 문화재 연구 포럼 개최	9월	
4/4분기	제2회 한일 문화재 포럼 용역 최종보고서 검토 및 최종보고회 개최	10월	
	제8회 세미나 개최	10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관련 기관(대학 등) 및 연구자 등

○ 이해관계집단 : 일본 현지 대학 및 시민단체, 한국·일본 박물관 등

□ 기대효과

○ 문화재 전문가 간 교류의 장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지속적 정보 수집 및 문화재 문제 해결책 모색

2 국외문화재 연구 지원

□ 추진배경(목적)

○ 국외문화재에 대한 현지 연구 활성화 도모

○ 국외문화재 수집이력 추적 등 종합적 정보 확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지 기관 및 대학 소속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한국문화재 관련 자료 발굴 및 추가 연구 유도

* 매해 2개 기관 내외 선정 예정

○ 환수 기반 강화를 위한 반출이력 조사 및 관련 법·정책 연구 확대 지원 방안 수립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원 사업 기획안 작성 및 추진계획 수립	1~2월	
	신청서 접수 및 계획안 검토	3월	
2/4분기	지원 대상자 검토 및 선정	5월	
3/4분기	'18년도 지원 대상기관 진행 상황 점검 및 관리	7~8월	
	업무협약 체결	8월	
	예산지원	9월	
4/4분기	'19년도 지원 대상기관 진행 상황 점검 및 관리	10월	
	'18년도 지원 대상기관 결과보고서 검토	11월	
	차기년도 지원 대상기관 발굴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외 박물관, 대학, 연구소, 연구자 등

○ 이해관계집단 : 국외 박물관, 대학, 연구소, 연구자 등

□ 기대효과

○ 연구지원을 통해 확보된 국외문화재 관련 정보의 대내외적 활용 및 공유

○ 연구지원 사업 대상자를 기반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범위 확장

성과목표 Ⅰ-3 국외문화재DB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사업성과를 유도한다.

1 국외문화재DB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추진배경(목적)

○ 급변한 IT환경 변화 및 국외문화재 범위 확대에 대응하여 국외문화재 DB관리시스템 재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DB관리시스템 고도화 모델의 세부설계(ISMP) 추진

*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 고도화 사업 단계 >

현행 시스템		고도화 준비(1차년)		고도화 준비(2차년)		고도화 착수
2013-계속		BPR사업, 2018년		ISMP사업, 2019년		2020년(예상)
- 실태조사 자료 수집 중심 - 연간 1만여 점 내외 입력 - 시스템 노후화로 개선 필요 - 활용시스템 확충 필요	≫	- 사업별 신규 탑재 DB정보 수집 - 시스템 분석 및 타 기관 DB시스템 모델 분석 - 고도화 시스템 소요예산 산출	≫	- BPR사업에 근거한 DB시스템 설계 - IT전문가 시스템 분석 - 고도화 추진을 위한 RFP(제안요청서) 도출	≫	- 예비 고도화 사업을 통한 신속한 고도화 추진 - 사업별 필요DB 세부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ISMP 사업계획 수립	1월	
	ISMP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나라장터 공고	2월	
	ISMP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3월	
	ISMP 사업 진행	3월	
2/4분기	ISMP 사업 진행	4~6월	
	ISMP 사업 완료	6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박물관·미술관 등 국외문화재 관련 유관기관, 연구자,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중앙부처(문화재청), 지자체, 박물관·미술관 등 국외문화재 관련 유관기관, 연구자 등

□ 기대효과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국외문화재 관련 정보 제공

2 국외문화재DB 구축 및 관리

□ 추진배경(목적)

○ 국외문화재 정보의 효과적·체계적인 입력 및 관리를 통한 정보 활용성 최대화 구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DB자료 입력

- 전년도 재단 및 국외문화재 조사 기관들의 작업내용 입력

* 2019년 3월 현재 36,000여 건 92,000여 점 입력 완료

**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해 문화재 전공자를 입력자로 선발 운영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9년도 DB입력계획 수립	1~2월	
	DB입력요원 모집 공고 및 선발	2월	
	DB입력 진행	3월	
2/4분기	DB입력 진행	4~6월	
3/4분기	DB입력 진행	7~9월	
4/4분기	2019년도 DB입력 완료	10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박물관·미술관 등 국외문화재 관련 유관기관, 연구자,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중앙부처(문화재청), 지자체, 박물관·미술관 등 국외문화재 관련 유관기관, 연구자 등

□ 기대효과

○ 조사,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 환수 등 재단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

○ 구축된 정보체계 기반으로 향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용

전략목표 II	조사의 다각화를 통해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 체계화된 조사를 통해 국외문화재 현황 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성과목표 2 :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환수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 성과목표 3 : 유통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환수 성과를 도출한다.

◇ 추진배경·필요성(중요성)

○ 국외문화재 현황통계 산출 및 자료 구축

- 국외문화재 현황통계의 정확성·완전성 제고 필요
- 유관기관에 국외문화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 제공

○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 정확한 국외문화재 정보로 환수·활용 기초자료 구축

○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연구자 및 일반인의 실태조사 결과물 공유에 대한 요구 증가

○ 국외문화재 유통조사

- 국외문화재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조사를 통한 미술시장 상시 파악으로 시의적절한 대응방안 강구
- 현지에서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 가치가 높은 경우 국내 보호·활용을 위한 매입 추진

성과목표 II-1 체계화된 조사를 통해 국외문화재 현황 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1 국외문화재 현황통계 산출 및 자료 구축

□ 추진배경(목적)

○ 국외문화재 현황통계의 정확성·완전성 제고 필요

○ 유관기관에 국외문화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 제공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외문화재 현황통계 산출 및 관리

○ 국외문화재 현황자료 내실화를 위한 현황조사 실시

- (PCRM) 소장처의 정보·인적 교류를 통한 현황정보 확보
- (연구지원)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한 국외문화재 현황자료 구축
- (자료통합) 국내외 유관기관 조사결과물 수합 및 정리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9년도 국외문화재 현황 기준통계 작성	1~3월	
2/4분기	국외문화재 현황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4~5월	
	국외문화재 현황 해외연구 기지원과제 중간평가	5월	
3/4분기	국외문화재 현황 해외연구 신규지원과제 심의 및 선정	7~9월	
4/4분기	국외문화재 현황 신규수집자료 수합 및 정리	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국내 박물관, 연구자,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국내외 박물관, 국외문화재 관련 사업 수행기관 등

□ 기대효과

○ 현황통계 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국외문화재 정보 제공

○ 국내외 유관기관의 각종 정책사업(조사·환수·활용 등)에 기여

성과목표 II-2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환수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1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 추진배경(목적)

○ 정확한 국외문화재 정보로 환수·활용 기초자료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체조사

- 양질의 정보 수집 및 미공개 문화재 발굴

○ 용역조사

- 실태조사 과제 공모를 통한 신규 소장기관 및 국외문화재 발굴

* 재단의 자체조사가 용이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효율성 증진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자체조사	용역조사	
1/4분기	기존 자료 검토 및 목록 정리	조사보고서 양식 개선	1~3월
	조사 목록(안) 작성 및 협의	연구제안서 평가	
	사진 촬영 용역 계약 체결	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	
	조사 계획 및 일정 조율, 자문위원 섭외	용역팀 사전조사 실시	
2/4분기	출장 준비 (항공·숙박 예약 등)	용역팀 본 조사 및 용역 감독 출장	4~6월
	조사 목록 최종 확인 및 조사카드 작성		
	출장자 사전 회의 개최 및 실태조사 실시		
3/4분기	실태조사 실시	중간보고회 실시 후 연구내용 보완	7~9월
	조사결과 점검 및 내부 결과보고 후속 서류 처리 작업		
4/4분기	조사자료 정리 및 도판해설 원고·촬영 결과물 수합	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 납품	10~12월
		연구비 정산 후 사업완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연구자,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국외 박물관, 국외문화재 개인소장가 등

□ 기대효과

○ 국외문화재 소장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문화재 가치 확산

○ 국외문화재의 발굴 계기를 마련하여 국외문화재 현황 최신화

2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추진배경(목적)

○ 연구자 및 일반인의 실태조사 결과물 공유에 대한 요구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19년 2종 발간 예정)

- 『독일 상트 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국문판) 발간
- 『캐나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영문판) 발간

○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준비('20~'21년 4종 발간예정)

- 『미국 클리블랜드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국문판)
- 『일본 데즈카야마대학 소장 한국문화재』(국·일문판)
- 『독일 상트 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영문판)
- 『독일 린덴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국문판)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원고 수합, 도판 정리, 관련계약 체결 등	1~3월	
2/4분기	원고 교정·감수, 보고서 편집·전자조판 진행	6월	
3/4분기	해외 조사대상기관, 집필자 검토 요청	7~9월	
4/4분기	인쇄 및 배포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실태조사 대상기관, 연구자,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실태조사 대상기관, 유관기관, 연구자 등

□ 기대효과

○ 실태조사 결과물 공유를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기반 마련

성과목표 II-3 유통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환수 성과를 도출한다.

1 국외문화재 유통조사

□ 추진배경(목적)

○ 국외문화재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조사를 통한 미술시장 상시 파악으로 시의적절한 대응방안 강구

○ 현지에서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 가치가 높은 경우 국내 보호·활용을 위한 매입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온라인 경매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유통조사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 대응

○ 오프라인 미술시장 조사 및 미술시장 관계자 대면조사를 통한 정보수집 후 매입 진행

○ 국공립박물관 등 국외문화재 매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매입 사업 진행

○ 도난문화재 등 부당반출 문화재 검토

- 전문가 인력풀을 통한 자문 및 검증 작업
- 경찰청, 문화재청, 종단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차검증 및 대응

○ 주요 매입대상 문화재 검토

- 전문가 인력풀을 통한 자문 및 검증 실시
- 경매사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재 출품 정보 확보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외 문화재 유통시장 온라인 모니터링	1~3월	
	매입 한글자료 언론공개 행사	1월	보도자료 배포
	중요 문화재 매입 추진	1~3월	
	일본, 미국 오프라인 유통조사	1~3월	
2/4분기	국외 문화재 유통시장 온라인 모니터링	4~6월	
	중요 문화재 매입 추진	4~6월	
	홍콩, 일본 오프라인 유통조사	5~6월	
3/4분기	국외 문화재 유통시장 온라인 모니터링	7~9월	
	중요 문화재 매입 추진	7~9월	
4/4분기	국외 문화재 유통시장 온라인 모니터링	10~12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후원경매	11월	보도자료 배포
	유럽 오프라인 유통조사	11월	
	중요 문화재 매입 추진	7~9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종단, 박물관,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경매사, 박물관, 개인소장가, 경찰청·종단 등 유관기관, 연구자 등

□ 기대효과

○ 환수 대상의 지속적인 발굴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국외문화재 환수 사례 확보

전략목표 III	국외문화재 콘텐츠 발굴 및 활용으로 국내외적 관심을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 국외부동산문화재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사·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 성과목표 2 : 전문교육을 통하여 문화재 관련 국제규범 이해를 증진시킨다.
- 성과목표 3 : 현지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 추진배경·필요성(중요성)

○ 국외 부동산문화재 조사 및 활용

- 국외소재문화재 범위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 필요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 개정

○ 국외문화재 관련 전문가 교육

- 박물관, 미술관 등 전문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및 현지 활용 지원

- 국외 한국문화재 소장기관의 자체적 보존처리 곤란

○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연계 전시

- 일반인의 국외문화재에 대한 장소적·정보적 접근성 제약을 최소화할 방안 필요
- 재단의 보존·복원 지원 사업에 대한 국내 홍보 기회 마련

○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교육 워크숍

- 외국 전문가는 한국 전통 보존 방식 관련 정보적 접근성이 제약되어 한국문화재의 올바른 보존·복원에 대한 이해 필요

성과목표 III-1 국외부동산문화재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사·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1 국외부동산문화재 조사 및 활용

□ 추진배경(목적)

○ 국외소재문화재 범위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 필요

* 구한말 외교공관, 독립운동사적지 등 국외부동산문화재와 국외에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도 국외소재문화재에 포함('17.9.22.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외부동산문화재의 조사 및 발굴을 통한 역사적 가치 파악

- '북미지역 이민사' 관련 국외부동산문화재 연구용역 실시

* '19년도(문헌조사 중심) → '20년도(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

○ 역사인물(3.1운동 및 항일인물 등) 콘텐츠 발굴

- 이미륵(1891~1950, 독립운동가·소설가)
  - 이미륵 부조동판 설치 및 독일 현지인 대상 탐방프로그램 개최

* ('20년) 이미륵 독일도착 100주년 행사 개최 추진

- 윤동주(1917~1945, 시인)
  - 중국 및 일본 내 윤동주 역사유적지 조사

* ('20년) 韓-中-日 현지 탐방프로그램 개최 및 홍보브로슈어 배포 추진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북미지역 이민사' 관련 국외부동산문화재 연구용역 계약 체결	3월	
	獨 그래펠핑市 MOU체결		
2/4분기	이미륵 부조동판 설치 독일 현지인 대상 탐방프로그램 개최 등	5월	
	韓-日윤동주기념사업회 등 MOU체결		
3/4분기	중국 및 일본 내 윤동주 역사유적지 조사	7~9월	
4/4분기	이미륵 독일도착 100주년 행사 개최 준비 등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현지인 및 현지 지역사회,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중앙부처(문화재청), 현지 지자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

□ 기대효과

○ 이민사 관련 국외소재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조사 기반 마련

○ 역사인물(3.1운동 및 항일인물 등) 콘텐츠를 발굴·공유하여 국민 관심도 향상

성과목표 III-2 전문교육을 통하여 문화재 관련 국제규범 이해를 증진시킨다.

1 국외문화재 관련 전문가 교육

□ 추진배경(목적)

○ 박물관, 미술관 등 전문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4회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전문교육' 개최

- 국·공·사립 박물관 종사자 등 전문가 대상 교육 실시
- 수료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교육 프로그램 확정 및 교육 일정 확정	3월	
2/4분기	사업 홍보 및 수강대상 모집	3~5월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전문교육' 개최	6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교육 수강자,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중앙부처(문화재청), 박물관·미술관 등 국외문화재 관련 유관기관, 연구자 등

□ 기대효과

○ 지속적인 교육 시행으로 문화재 유관기관 종사자의 문화재 국제규범 이해 증진

성과목표 III-3 현지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1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및 현지 활용 지원

□ 추진배경(목적)

○ 국외 한국문화재 소장기관의 자체적 보존처리 곤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모 및 추천을 통한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지원
- 연 1회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유관기관 및 전문가 추천 수시 접수
- 보존·복원 후 결과보고서, 연계 활용 사업 추진

○ 실태조사 및 보존·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국외문화재 현지 활용 지원

< 공모 지원 절차 >

공모접수	→	심사	→	지원기관 선정	→	MOU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보존처리 진행	→	결과보고서 수령 및 검토
1/4분기		2/4분기		2/4분기		3/4분기		사업별 기간 상이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활용) 독일 상트 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한국실 오디오 가이드 계획서 작성 요청	1~2월	
	(보존·복원) 지원 공모 접수	1~3월	
	(활용) 오디오가이드 계획서 검토	3월	
2/4분기	(보존·복원) 지원신청서 심사	4월	
	(활용) 오디오가이드 계획서 검토	4~6월	
	(보존·복원) 지원기관 선정	5월	
	(보존·복원) MOU체결 및 지원금 지급	6~8월	보도자료 배포
3/4분기	(활용) 국문 콘텐츠 자료 수집	7~9월	
4/4분기	(활용) 국문 콘텐츠 송부	10월	
	(활용) 오디오가이드 지원 MOU 체결	10월	
수시	(보존·복원) 보존처리 진행 과정 검토	연중	
	(보존·복원) 기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수령 및 검토	연중	
	(보존·복원) 지원 관련 현지 점검	연중	
	(보존·복원) 지원 추천 접수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해외 현지 관람객,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국제 협력 및 문화 관련 유관기관 등

□ 기대효과

○ 국외문화재 원형 유지 및 현지 활용 지원을 통한 한국문화의 적극적 홍보

○ 재단 지원을 통하여 해당 소장기관 및 해당 기관이 연계된 인적 네트워크에서 재단 신뢰성 확보

2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연계 전시

□ 추진배경(목적)

○ 일반인의 국외문화재에 대한 장소적·정보적 접근성 제약을 최소화할 방안 필요

○ 재단의 보존·복원 지원 사업에 대한 국내 홍보 기회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특별공개전

- 전시대상 : 재단 보존·복원 지원 대상 유물 중 국내 반입 후 보존처리 완료 유물
- 전시내용 : 국외문화재 소개 및 보존처리 과정 설명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외기관 관계자 특별강연회 요청	3월	
	보존처리 대상 유물 사전 촬영	3월	
2/4분기	전시 홍보자료 및 초청장 제작	6월	
3/4분기	보존처리 완료 유물 촬영	7월	
	전시 홍보자료 및 초청장 발송	8월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특별공개전 개최 (국립고궁박물관, 9.11~10.13, 개막식 9.10)	9~10월	보도자료 배포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특별강연회 개최 (국립고궁박물관, 9.26)	9월	
4/4분기	상트 오틸리엔수도원 소장 조선시대 단령 2점 보존복원 특별전시(국립민속박물관)	11월	
수시	보존처리 진행 상황 검토 및 전시 관련 업무협의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국내 전시 기관 등

□ 기대효과

○ 국외문화재 보전·관리 정책에 대한 국내 홍보 및 대국민적으로 국외문화재의 가치 향유 기회 제공

3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교육 워크숍

□ 추진배경(목적)

○ 외국 전문가는 한국 전통 보존 방식 관련 정보적 접근성이 제약되어 한국문화재의 올바른 보존·복원에 대한 이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외 전문가 대상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교육 워크숍 실시

- 한국 전문가를 해외 현지에 파견하여 이론과 실습 교육 진행
- 유럽, 미국, 일본 등 권역별로 현지에서 워크숍 실시

< '19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3회 해외전문가 대상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교육 워크숍(일본 오사카) 홍보자료 제작	1~2월	
	워크숍 지원 신청서 접수	2~3월	
	워크숍 교육 자료집 제작	3월	
2/4분기	현지 워크숍 개최	4월	보도자료 배포
	2020년도 제4회 워크숍(미국 샌프란시스코) 1차 지원금 지급	6월	
3/4분기	2020년도 워크숍 신청서 접수	7~9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해외의 문화재 관련 종사자(보존처리 전문가, 큐레이터) 등

○ 이해관계집단 :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등

□ 기대효과

○ 한국문화재 보존·복원에 대한 국외 기관 관계자의 인식 제고

○ 한국문화재의 올바른 보존·복원 유도 및 한국 전통 보존기법의 국제적 위상 강화

Ⅳ 이행상황 점검 및 환류 계획

□ 기본방향

○ **(점검)**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점검

- 성과관리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추진과정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방안 강구 등 점검

○ **(환류)** 자체점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부진사유, 개선 보완 필요사항 등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자체점검 및 환류 과정을 통해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의 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

□ 기본 계획

○ 점검대상 : '1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목표 및 과제

○ 점검주기

- 반기별 점검 : 상반기(7월), 하반기(익년 2월)

○ 점검내용

- 목표 및 과제 대비 추진실적
- 부진사유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점검 및 환류 절차

- 부서 이행 결과 제출 ⇒ 기획운영팀 취합 및 점검 ⇒ 점검 결과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서식 1]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 결과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 결과

1 개 요

1. 대상 과제 수 :

2. 기 간 :

3. 담당부서 :

2 이행 결과

<총평 작성>
ㅇ
- 총 00개 과제 중 정상추진 00개, 부진 00개, 완료 00

(1) 주요성과

ㅇ

-

※ 부처 전체 수준에서 우수과제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성과를 요약해서 기술

(2) 부진사유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

※ 이행상황이 부진한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전체 수준에서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기술

3 향후 추진계획

ㅇ

[서식 2] 성과관리시행계획 점검 결과

성과관리시행계획 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1. 점검대상 과제 수 :

2. 점검기간 :

2 점검 결과

전략목표				
성과목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19년 목표	'19년 결과	증빙자료	비고
▮. *환수역량 강화로 국외문화재 전담기구로서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국외문화재 환수 역량 제고				
① 국내 민간부문 지원 및 협력				
국외문화재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건수				

3 부진과제 등 관리 계획

세부과제명	개선・보완 필요사항	향후 조치계획(일정 포함)

※ 과제별 점검결과 부진과제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정상추진 과제나 완료된 과제라 할지라도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작성 예정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재청
사 업 명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5.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본 사업은 궁능 안내해설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2개의 민간보조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성과지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현재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이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 단체들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궁능 안내해설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조와 제51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낮음

○ 본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와 제51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인 궁능 안내해설 자원봉사단체 활동과 연계성이 낮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문화재 활용하는 측면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문화재청에서 해설사를 모두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보조사업자이지만 문화재를 관람하는 국민이 광범위한 수혜자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궁능 안내해설 자원봉사 단체활동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안내해설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궁능 안내 해설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람자들에게 궁궐 및 종묘, 왕릉 등에 대한 의미 제고와 관람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있다 판단됨

○ 해설사들의 역량을 키우고 문화재 제고와 관람 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조금 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판단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해설사 사업과 지원하는 두 단체 간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유사·중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해설사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유사한 수준의 해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함

- (사) 한국의 재발견(0.5억 원)과 우리문화숨결(0.3억 원)의 사업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인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실제 활동하는 요일이 다르기 때문(금·토 vs. 일)에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됨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한국의 재발견 (금·토 활동)	511	10 (2%)	22 (4%)	45 (9%)	169 (33%)	210 (41%)	55 (11%)
우리문화숨결 (일 활동)	488	91 (19%)	140 (29%)	134 (27%)	123 (25%)	-	-

○ 본 사업은 여타의 사업들에 비해 연장을 해야 될 시급성이 높지 않음

○ 본 사업 폐지 시 문화재청에서 해설사를 충원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세부 내역사업들이 궁능 안내해설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재 해설을 하는데 집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이 지원하고 있는 두 개의 민간보조단체의 세부 내역사업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별도의 기준보조율이 없으나 사업의 특성상 100% 보조율이 인정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안내해설 자원봉사단체들이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별도의 사업자 선정 절차는 없고 문화재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통해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사) 한국의 재발견과 우리문화숨결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해당 단체들에 대한 선정 절차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점검을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집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정산을 하고 있음

○ 매년 실적 보고와 정산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부정수급 발생 경력은 없음

○ 본 사업은 별도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볼 수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궁능 안내해설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의 민간보조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두 단체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및 과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해설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예를 들어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들과의 전문성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성과관리 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재청
사 업 명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2.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1.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이 다소 미흡한 사항이 노출되고 있음 ·내역사업 구분이 효과적이지 않고, 성과지표 설정과 지표의 도전성 측면에서 미흡하는 등 성과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작지 않음 ·특히 수년에 걸쳐 실집행률이 60% 내지 65% 수준을 보이고 있음. 수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원활한 집행을 추진하는데 억제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을 부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실집행률 수준만큼 예산편성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당초 감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처가 위의 사항을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고 기속력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실집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관리단체(지자체 등)가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보조를 하여야 하는 기속 규정이 아니라 보조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임

< 문화재보호법 51조 1항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국가재정법 37조 1항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시행령 12조 1항 >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 본 사업은 약 1500개의 개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개별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관리단체(지자체 등)가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대체로 명확하며 타당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멸실·훼손을 방지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유지의 매입 등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일정 수준 필요함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직접적 수혜자는 문화재 소유자로서 문화재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으며, 직접적 수혜자로서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으며 일반 국민과 문화인들이 우수 문화를 보유하고 계승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현재 한 개의 세부사업(문화재 보수정비)에 한 개의 내역사업(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역사업을 활동 또는 문화재 유형별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예를 들어, 내역사업을 문화재가치 보호 · 보전, 문화재가치 증진, 문화재가치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보조사업의 내용 및 목표와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문화재가치 보호 · 보전, 문화재가치 증진, 문화재가치 활용 등으로 대체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세가지 활동에 대한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도전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가 제시하는 성과지표(문화재보수 완료율, 문화재보수전문가 모니터링)가 세가지 활동 및 문화재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처가 제시하는 성과지표(문화재보수 완료율, 문화재보수전문가 모니터링)의 달성 수준이 높지 않음.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요청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형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감독 등 개입이 중요하기에 담당 부처가 중요사업에 대해 반드시 국가의 검토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 특성상 매년 보수·정비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비영리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타 사업과의 유사 · 중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매년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지자체 신청액의 약 34% 수준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증가로 인한 보수정비 범위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와 온전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재정확충이 필요하다고 부처는 주장함

○ 그러나, 최근 연도중 실집행률이 60% 내지 65%로서 매우 낮은 수준임

- 1개년의 실집행률만 낮고 대체로 실집행률이 높다면 실집행률이 낮은 연도에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원활한 집행을 추진하는데 억제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을 부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실집행률 수준만큼 예산편성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20년 가량 지속된 동일한 문제점을 부처가 개선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임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 1〕73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70%, 122호에 따라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50%, 전시관 유지보수사업은 30%를 보조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산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개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으며 원활한 집행 추진을 억제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부처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사회적가치를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의 절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로부터 매년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신청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 지침” 및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신청서 검토 방법”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표를 마련, 과반수 이상의 문화재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검토·선정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재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당해연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역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해당되는 조항들을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예산 집행, 집행 후 사후관리 단계별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보조사업 집행 전반에 대하여 관리 · 감독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단에서 분기별로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 등 문화재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현장을 대상으로 계획, 집행, 결과분야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보수정비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또한, 매 분기별로 전체 개별사업에 대한 실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실적보고를 받아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법인 등에 의한 정산보고서 검증 등 정산 절차를 준수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e나라도움 시스템의 지원으로 향후에도 부정수급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부정수급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교부조건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시하고, 상·하반기 집행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이 다소 미흡한 사항이 노출되고 있음

○ 내역사업 구분이 효과적이지 않고, 성과지표 설정과 지표의 도전성 측면에서 미흡 하는 등 성과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작지 않음

○ 특히 수년에 걸쳐 실집행률이 60% 내지 65% 수준을 보이고 있음. 수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원활한 집행을 추진하는데 억제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을 부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실집행률 수준만큼 예산편성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실집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 아래에 부처의 향후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 등을 담은 공문서를 첨부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화재청

문 화 재 청

보도자료 문화재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효율성 제고 계획 수립 및 추진 보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예산 신청 · 편성 · 집행 · 사후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집행률 제고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효율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개선 계획 및 추진 일정	
예산 신청	**o 지원대상 세분화** - 19개 항목 → 10개 대분류 50개 세부항목	**'19.8월 시행 (훈령 시행일)**
	o 사업 신청요건 강화 - 설계 · 시공 분리 신청, 예산 신청서식 세밀화	**'19.4월 시행 ('20년 신청지침에 적용)**
예산 편성	**o 사전통지(가내시) 규모 확대** - 84% → 95%	**향후 3년간 점진적 확대**
	o 예산 반영 검토 강화 - 연차지원 대상 확대 (5억원 → 3억원) - 보존처리 사업도 연차지원 (5천만원 이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확인 후 예산 반영 - 신청액 적정성 검토 (예산 반영 산출근거 작성)	**'19.4월 시행 ('20년 신청지침에 적용)**
예산 집행	**o 설계승인 행정처리기간 단축** (20일)	**즉시 시행 ('19년 사업 설계승인 시)**
	o 지자체 설계승인권한 위임 확대 (51.7%→60%)	**즉시 시행**
	o 집행상황 수시 점검 및 집행 독려	**즉시 시행**
평가 및 환류	**o 반납사업은 3년간 지원 배제** **o 실집행률에 따른 페널티 부여**	**'19.4월 시행 ('20년 신청지침에 적용)**
	o 개별 사업별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	**'19년 평가, '20년 예산 편성시 반영**

* 훈령 제정 전 추진 가능 계획 우선 추진

2. 향후 계획 : 계획의 **실행력, 기속력 있는 추진을 위해 훈령 제정('19. 7.31.까지)**
o 훈령 제정 일정 : 자구수정 등 보완(4월) → 지자체 등 관계부처 협의 · 행정예고(5월)
→ 규제심사 · 부패영향평가(6월) → 훈령 제정 · 시행(7월)

붙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효율성 제고 계획 1부. 끝.

주무관	심유신	행정사무관	이신복	기획재정담당관	고기석	기획조정관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문화재청장	2019.3.18. 정재숙				
협조자							
시행	기획재정담당관-670			접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둔산동)				/ http://www.cha.go.kr		
전화번호 042-481-4793		팩스번호 042-481-4799		/ sysbb@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 지키는 문화재, 함께 나누는 일자리

※ 붙임 문서는 아래에 한글 파일 문서를 첨부함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효율성 제고 계획

2019. 3.

문 화 재 청

목 차

Ⅰ. 계획의 필요성

Ⅱ. 계획의 목표

Ⅲ. 실집행률 현황

Ⅳ. 단계별 부진 원인

Ⅴ. 단계별 개선 대책

Ⅵ. 개선 대책 추진 일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효율성 제고 계획

Ⅰ 계획의 필요성

□ 지원대상의 불명확, 실집행률 부진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업규모 감축 요구** 등

* 국회의 반복 지적, 보조사업평가에서 '16년, '19년 2회 연속 감축 요구

□ 실집행률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한단계 도약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실집행률: '15년 60.0% → '16년 60.4% → '17년 63.9% → **'18년 68.3%**

□ 사업 단계별 **부진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실집행 제고 대책 마련**

Ⅱ 계획의 목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공정성·투명성 강화, 예산의 실효적 집행 -

실행력과 기속력 있는 훈령 제정

예산 신청	예산 편성·집행	사후 평가 및 환류
▪ 지원대상의 명확화·세분화 ▪ 사업 신청요건 강화	▪ 사전통지 규모 확대 ▪ 예산 지원검토 강화 ▪ 행정절차 단축 ▪ 설계승인 위임 확대 ▪ 집행점검 강화	▪ 예산 집행 결과에 따른 페널티 부여 ▪ 사업별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

Ⅲ 실집행률 현황 ('17년 기준)

□ 사업비 규모별 현황

○ '17년 실집행률은 63.9%이며, 1억미만 사업과 10억이상 사업의 실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억미만) 대부분 경미한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실집행률이 높음
- (1억~10억미만) **문화재 수리공사(보존처리 포함)가 73%**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음**
- (10억이상) 주로 토지매입사업으로 서울 풍납토성이 420억원 전액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높음

< 사업비 규모별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억미만	1억~5억미만	5~10억미만	10억이상	계
사업건수	910	374	40	47	1,371
예산액	27,773	86,378	27,178	143,171	284,500
집행액	18,928	44,543	14,578	103,864	181,913
집행률(%)	68.2	51.6	53.6	72.6	63.9

□ 사업 내용별 현황

○ **문화재 수리분야 예산이 전체의 49%**를 차지하나, **실집행률이 52.6%**에 불과하여 **전체 실집행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사업 내용별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억미만	1억~5억미만	5~10억미만	10억이상	계
문화재 수리(보존처리 포함)	예산액	20,026	64,184	18,257	37,527	139,994
	집행액	14,069	33,631	8,096	17,772	73,568
	집행률	70.3	52.4	44.4	50.7	52.6
발굴조사	예산액	535	8,891	1,336	16,660	27,422
	집행액	360	3,270	747	11,788	16,165
	집행률	67.3	36.8	55.9	70.8	58.9
토지매입	예산액	565	7,564	7,585	88,984	104,698
	집행액	311	4,588	5,735	74,304	84,938
	집행률	55.1	60.7	75.6	83.5	81.1
용역 등 기타사업	예산액	6,647	5,739			12,386
	집행액	4,188	3,054			7,242
	집행률	63.0	53.2			58.5

Ⅳ 단계별 부진 원인 ('17년 기준)

□ 예산 신청 단계

○ 현재 예산 반영률은 지자체 신청액 대비 34% 수준

- **현재 신청대상 분류 체계는**(19개 항목) 1,500여개 각 사업에 대한 **집행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정보수집에 한계**
- 교부받은 예산은 명시·사고이월을 거쳐 최대 3년간 집행이 가능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신청 및 **우선 예산 확보 심리 만연**

○ **신청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세분화**하고, **신청 요건의 강화** 필요

< 보조금 신청 및 반영 현황 >

(단위: 백만원)

년 도	시·도 신청		반영		신청대비 반 영 율	국회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2,058	9,716	1,371	2,845	29.3	100
2018	2,047	8,696	1,483	2,950.6	33.9	206.6
2019	2,097	8,938	1,480	3,600.6	40.3	150
평균	2,067	9,117	1,445	3,132	34.4	152

√ 사업 **신청대상(지원대상)의 명확화, 세분화** (19개 → 50개 항목)
√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 신청요건 강화**

□ 예산 편성 단계

○ 예산 신청 및 반영을 2회 함으로써, **추가 반영 사업**(유보액+국회 증액)**은** 지방비의 추경편성으로 **실집행률이 10% 낮게 나타남**

- 추가 사업은 국회 증액 및 최초 신청이후 발생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최소화 필요**

< 예산 편성 시기별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예산확정시기)
사전통지 사업		245,192	160,034	65.3		9월
추가확정 사업	국회 증액	19,427	11,102	57.1	55.7	12월
	추가 반영	19,881	10,778	54.2		

○ 예산 반영 검토 시 **이전 집행현황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 추가 교부**

-'17년 국비 5억원이상 사업중 이월액이 50%이상인 14개 사업에 '18년 154억원 교부

* '18년 교부액 집행률: 15% (예산액 15,413백만원 / 집행액 2,306백만원)

○ 토지매입 사업은 실집행률 81%, 풍납토성 제외 시 68%로 하락

- **토지매입비가 총 사업비의 37%**(1,050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실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큼**

- 감정가 불만에 따른 매도 거부는 불가피, **실집행 우수 사업에 집중 필요**

* 서울 풍납토성: 향후 1조원 소요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집중 투자 필요)

< 토지매입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억미만	1억~5억미만	5~10억미만	10억이상	계
예산액	565	7,564	7,585	88,984	104,698
집행액	311	4,588	5,735	74,304	84,938
집행률	55.1	60.7	75.6	83.5	81.1

√ 사전통지 규모의 확대 (추가 반영 최소화)
√ 지원 검토절차 강화 (예산 반영 시 전년 집행상황 고려 등)
√ 토지매입비 편성은 선택과 집중 (풍납토성 우선 반영)

□ 예산 집행 단계

○ 문화재 수리공사의 경우 실집행률은 52.6%임

* 수리공사 실집행률: 52.6% (예산액 139,994백만원 / 집행액 73,568백만원)

- 착수부터 완료까지 통상 **1년이상 소요되는 절차**로 **실집행률이 낮은 근본적인 문제**

> * 사업추진절차 : 교부(2월) → 지자체 설계용역 추진(3~6월) → **설계검토 및 승인(7월~9월)** → 공사발주(9월) → 공사계약 및 착수(10월) → 전문가 자문(3회),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 → 완료
>
> * 설계검토 및 승인절차(2~3개월 소요) : 설계심사(문화재청) → 설계심사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설계 가승인(문화재청) → 설계보완(지자체) → 최종 승인

- **설계승인 주체가 지자체인 경우 실집행률이 30% 높음**, 이는 문화재청 승인사업은 중요사업 위주로, 여러단계의 승인절차에 기인함

< 설계승인 주체별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문화재청 승인	126,515	60,396	47.7
지자체 승인	157,985	121,517	76.9

○ **보존처리 사업은** 소액임에도(49백만원/건) **실집행률이 39%**에 불과

- 일반적인 문화재 수리와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지나 **사전설계(계획) 미시행에 따른 집행 부진**으로 파악됨

< 보존처리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억미만	1억~5억미만	계
예산액	2,794	2,912	5,706
집행액	1,332	906	2,238
집행률	47.7	31.1	39.2

√ 설계승인 행정절차 단축

√ 설계승인 지자체 위임 확대 (수리품질 유지 가능 범위 내)

√ 보존처리 사업 사전설계(계획) 의무화

V 단계별 개선 대책

□ 예산 신청 단계

○ **사업의 신청대상(지원대상)을 명확화·세분화**

- 신청대상(지원대상) 세분화: (당초) **19개 항목** → (변경) 10개 대분류 **50개 세부항목**
- 세부항목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실질적 대안 마련 가능

○ **사업의 신청요건 강화**

- 총사업비 **3억원이상(보존처리 5천만원)은 설계·시공 분리** 신청
- 사전절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예산 신청 서식 세밀화**

* 토지매입 동의서,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

□ 예산 편성 단계

○ **사전통지 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추경편성사업 최소화

- 국회 증액 제기 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적극 대응

* 사전통지율: (현재) 84% → **(향후) 95%까지 확대**

○ 예산 반영을 위한 **지원검토 강화**

- 연차 지원 대상을 **수리공사는 총사업비 5억원을 3억원이상으로 조정**
- 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존처리 사업은 총사업비 5천만원이상은 사전계획과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 지원 의무화

* 연차지원 대상 확대: '17년 기준 (당초) 112건 785억원 → (확대) 257건 1,038억원

- 토지매입 동의서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 지자체 **신청액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반영액 산출근거 작성 의무화**

□ 예산 집행 단계

○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지자체 설계승인권한 위임 확대**

-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업은 설계심사위원회 심사 제외 (20일 단축)
- 지자체에 설계승인권한 위임 확대

* '17년 46.3% → '18년 51.7% → '19년 60%

○ **집행상황의 수시 점검 및 독려**, 부진 사유 해소 등

- (서면 점검) 매월 점검: 총사업비 7억이상 사업 (128건 2,530억원)
  분기별 점검: 전체 사업 (1,480건 3,600억원)
- (현장 점검) 점검표에 따라 상·하반기 2회 시행

□ 사후 평가 및 환류

○ 보조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예산 **반납사업은 3년간 예산지원 배제**

* '18년 반납사업: 7건 2,687백만원

○ **실집행률에 따른 페널티 부여**

- 실집행률 최하위 각 3개 시도에 대해 3~7% 예산 감액 편성
- 40%이상 이월액이 발생한 시도는 3% 예산 감액 편성

○ **개별 사업별 평가** 및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

- 회계연도 종료 후 개별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 평가 대상: 국비 3억원이상 사업 중 이월사업

* '18년 기준: 1,483건 중 164건 대상 (금액 기준 2,950억원 중 1,801억원 / 61%)

- 평가 시기: 다음연도 사업 사전통지액 확정 전
- 평가단 구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 **평가 결과의 환류: 정상 추진, 예산 감축, 사업 폐지 등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이월사업의 경우 이월 해소 대책 마련 등)

Ⅵ 개선 대책 추진 일정

추진 단계	개선 대책 및 추진 일정	
예산 신청	ㅇ **지원대상 세분화** - 19개 항목 → 10개 대분류 50개 세부항목	**'19'8월 시행** **(훈령 시행일)**
	ㅇ **사업 신청요건 강화** - 설계·시공 분리 신청, 예산 신청 서식 세밀화	**'19.4월 시행** **('20년 신청지침에 적용)**
예산 편성	ㅇ **사전통지 규모 확대** - 84% → 95%	**향후 3년간** **점진적 확대**
	ㅇ **예산 반영 지원검토 강화** - 연차지원 대상 확대 (5억원 → 3억원) - 보존처리 사업도 연차지원 (5천만원 이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확인 후 예산 반영 - 신청액 적정성 검토 (예산 반영 산출근거 작성)	**'19.4월 시행** **('20년 신청지침에 적용)**
예산 집행	ㅇ **행정처리기간 단축** (20일)	**즉시 시행** **('19년 사업 설계승인 시)**
	ㅇ **지자체 설계승인권한 위임 확대** - 51.7% → 60%	**즉시 시행**
	ㅇ **집행상황 수시 점검 및 집행 독려**	**즉시 시행**
평가 및 환류	ㅇ **반납사업은 3년간 지원 배제** ㅇ **실집행률에 따른 페널티 부여**	**'19.4월 시행** **('20년 신청지침에 적용)**
	ㅇ **개별 사업별 평가 → 평가 결과 예산 편성에 반영**	**'19년 평가,** **'20년 예산 편성시 반영**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재청
사 업 명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보조유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49.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28.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1.2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8.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2.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3.3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다소 미흡한 사항이 노출되고 있음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부처는 본 사업의 성과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문화재정책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사항만으로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또한 현재 부처가 관리중인 문화재정책 만족도 지표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60점대로 매우 낮은 수준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부처에게 본 사업의 과거 평가, 현재 환경 변화, 미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기존의 만족도를 대폭 제고시킬 방안과 본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의 예산이 계속 투입될 필요성이 저하될 것임 ·당초 감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처가 위의 사항을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고 기속력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 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1항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문화재정책국) 제2항에서 국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에서 본 보조사업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속 규정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해당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 규정에 해당함

< 문화재보호법 51조 1항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7조 2항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 23. (생략)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나, 본 사업이 여타 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꼭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갈등 완화에 일정 수준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본 사업의 효과가 해당 지자체를 넘어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문화재 지정·관리 등에 따른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감프로그램(교육·체험 등)의 개발·운영 및 여론 형성층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 강화 및 협력관계 유지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목적이 일정 수준 명확함

○ 부처는 본 사업의 성과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문화재정책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사항만으로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또한 현재 부처가 관리중인 문화재정책 만족도 지표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60점대로 매우 낮은 수준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부처에게 본 사업의 과거 평가, 현재 환경 변화, 미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의 과거, 현재를 엄밀히 평가하고 본 사업의 미래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부처는 국고 지원이 없다면 문화재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함

- 현재 수준에서는 국고 지원이 일정 수준 필요할 수 있으나 미래에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부처가 미래 목표와 단계별 액션플랜에 대해 시급히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

○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 사업'은 문화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공감 제고를 위해 문화재 총괄청인 문화재청의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높지 않음

○ 본 사업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나, 사업 추진의 시급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이 폐지될 경우 부처는 문제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사업의 성과가 높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사업 폐지시 문제가 부처의 주장처럼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사업 폐지시 재정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는 1억원인데 고객 만족도가 60점대 수준으로 매우 낮음. 또한 본 사업의 과거 추진 및 현재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 미래 계획에 대해 숙려가 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 수준대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122호에 의거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 사업' 보조율 100%를 반영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부처는 2019년 사업 공모시 사업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반영 시 가점을 부여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해당 사항은 2019년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전 년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 관련 사항은 보고하지 않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모사실을 알리고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 사업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시 지자체의 사업설명을 거쳐 이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10~11월 경 전국 지자체에 공모사실을 알리고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 사업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시 지자체의 사업설명 거쳐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지자제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에 관한 적절성 등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전반 및 진행현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부처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7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8장(보조사업 사후관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등에 따라 매년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음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지자체로부터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금액을 확정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각각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반환을 받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e나라도움 시스템의 지원으로 향후에도 부정수급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에 관한 적절성 등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전반 및 진행현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부정수급 대책이 대체로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 자체의 타당성인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다소 미흡한 사항이 노출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 부처는 본 사업의 성과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문화재정책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사항만으로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또한 현재 부처가 관리중인 문화재정책 만족도 지표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60점대로 매우 낮은 수준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부처에게 본 사업의 과거 평가, 현재 환경 변화, 미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기존의 만족도를 대폭 제고시킬 방안과 본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의 예산이 계속 투입될 필요성이 저하될 것임

3-2 정책 제언

○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 아래에 부처의 향후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 등을 담은 공문서를 첨부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화재청

문 화 재 청

보다나은 문화재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사업 개선대책 추진 계획 보고

문화재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문화재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2014년부터 시행해 온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사업'에 대한 과거의 실적과 최근의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 o 사업명 : 2019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사업
- o 주요 개선 내용
  - 사업 단계별 외부 모니터링 실시 및 환류 기능 강화
  -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의 신설 등
- o 행정사항
  - 성과관리시행계획서 수정 협의 (혁신행정담당관)
  - 개선 대책 안내 (해당 지자체)

붙 임 :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사업 개선대책 추진계획 1부. 끝.

행정사무관 윤태정 정책총괄과장 전결 2019.3.18. 채수희
협조자 주무관 윤민재
시행 정책총괄과-1111 접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립고궁박물관 (둔산동) / www.cha.go.kr
전화번호 042-481-4817 팩스번호 042-481-4829 / sdyb3927@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 지키는 문화재, 함께 나누는 일자리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사업」 개선대책 추진 계획

’ 19.3.18.(월)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Ⅰ 사업 개선 필요성

□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사업’ 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문화재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가 최근 3년간 60점대로 매우 낮은 수준 유지
* ('16년) 61.5점, ('17년) 65.5점, ('18년) 68.7점

□ 2014년 사업 신규 추진 이후 본 사업에 대한 ①과거의 평가, ②최근의 환경변화 대응, ③미래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피드백 노력 부족

□ 효율적인 사업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하향 추세인 사업 수혜자(참여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고할 필요 있음

Ⅱ 계획의 목표

□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품질 제고

□ 사업 수혜자(참여 시민) 만족도 조사의 단계적 상향
* ('18년) 68.7점, ('19년) 75점, ('20년) 80점, ('21년) 85점

Ⅲ 사업의 분석 평가

□ 과거의 평가

○ 2014년 서울 성북구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현재까지 **5년간 27개 지자체에 6.5억 원을 지원**해 왔음

- 각 지자체별 추진사업을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 주변지역 낙후 문제 해소 등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세부 사업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거나, 다른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도 있어 문화재청이 2018년도에는 기존 사업 중에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모델로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사업모델의 제시가 만족도 조사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는 60점대로 낮은 수준임

<연도별 주민공감사업 지원 현황>

연도	선정 사업	지자체		지원액 (백만원)
		광역	기초	
2014	성북구역사문화유산 주민공감정책사업	서울	성북구	30
	성주한개마을, '마을보물 한 개 찾기'	경북	성주군	30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양림동 커뮤니티 포럼 운영	광주	남구	30
	'달서선사유적사람들' 구성 · 운영(교육)	대구	달서구	30
	온정이 넘치는, 화성 동쪽마을 지동 프로젝트	경기	수원시	23
	부안원래청자 발굴하러 갈래 역사보물,	전북	부안군	11
	계	**6개 사업**		**154**
2015	문화재의 숲 사람이 이룬 한 마을 성북구 주민공감 정책사업	서울	성북구	30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길 프로젝트 '교월동 사람들'	전북	김제시	30
	화성동쪽마을 지동! 화성을 품다	경기	수원시	29
	양림다움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	광주	남구	30
	영월군 문화재 '주민공감정책 사업'	강원	영월군	30
	계	**5개 사업**		**149**
2016	시민들과 함께 가꾸는 서봉사지	경기	용인시	30
	600년 역사, 4공과 만나는 병영성	울산	중구	30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길 프로젝트 2016	전북	김제시	30
	성읍민속마을 제주 전통음식(떡) 재현 프로그램	제주	-	30
	1,500년 잠에서 깨어난 창수가야	전북	창수군	20
	조문국과 함께하는 여행	경북	의성군	10
	계	**6개 사업**		**150**
2017	600년 역사, 4공과 만나는 병영성	울산	중구	25
	고려의 별궁 '혜음원지'	경기	파주시	20
	요지가 뭐예 [illegible]	경기	광주시	15
	부여 고도아카데미 운영	충남	부여군	10

	백제 고도에서 즐기는 전통문화체험	전북	익산시	15
	남원가야 기문국의 숨은 보물을 찾아서	전북	남원시	15
	계	**6개 사업**		**100**
2018	병영성 봄, 봄, 봄	울산	중구	30
	깨우고, 함께 하고, 남기는 문화재 공감!	경남	고성군	30
	세가지 특별한 만남, 항파두리 삼별초 역사문화창 운영	제주	-	20
	인터렉티브 솔루션 '고려 별궁 혜음원지'	경기	파주시	20
	계	**4개 사업**		**100**

□ 최근의 환경변화 분석

○ 최근의 문화재 환경을 살펴보면, 춘천 중도 유적에서의 레고랜드 건설,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문화재 등록, 가야사 연구와 복원 등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의 첨예한 갈등 사례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감사업 계획을 수립·실행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음

○ 본 사업은 향후 문화재 지역 주민의 불편을 청취하여 대안을 찾는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재 보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개선 대책

□ 사업 단계별 외부 모니터링 실시 및 환류 기능 강화

○ **(현행 사업절차 : 6단계)**

- 사업수요조사 → 지자체 사업 신청 → 선정심사(외부 위원 3명) → 사업비 배정(청) → 사업추진(지자체) → 사업결과보고(지자체)

○ **(개선 후 사업절차 : 10단계)**

- 사업 수요조사 → 지자체 사업 신청 → 선정심사(외부 위원 3명) → 사업비 배정(청) → 사업추진(지자체) → **사업모니터링 실시(청, 외부 만간 위원 / 계량점수화)** → 사업결과보고(지자체)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청 / 계량점수화)** → **사업 종합평가(모니터링 점수+만족도 조사 점수)** → **해당연도 사업 우수모델 선발 및 차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 성과 지표의 신규 개발

○ **(현 행 : 1개 지표 운영)**

- 현행 성과지표는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사업(753백만원)' 의 내역사업으로 ①문화재위원회 운영, ②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③문화재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④지자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 수혜자(또는 관계자)들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로 본 보조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대표성이 떨어짐**

○ **(개 선 : 2개 지표 운영)**

- 현행 성과지표 '문화재 정책 만족도 조사' 는 유지하며, **본 보조사업인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 사업' 에 실제로 참여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로 신설

Ⅵ 추진 일정

○ 성과지표 신설을 위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협의(혁신행정담당관) : 4월

○ 사업 모니터링 강화 및 성과지표 신설 안내(해당 지자체) : 5월

○ 사업 모니터링 실시(외부 민간위원 위촉) : 5~10월

○ 주민공감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 : 11월

○ ' 19년 주민공감사업 종합평가 보고 : 12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재청
사 업 명	문화재예방관리강화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은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재난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문화재안전관리교육을 주내용으로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보조사업의 근거는 명확함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교육은 문화재업무 총괄청인 문화재청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국가적으로도 타당한 사업임 ·보조사업자인 '한국소방안전원'은 1980년에 설립하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절성과 특수성이 인정됨 ·부정수급 사례 없으며, 소방청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므로 발생가능성도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됨 ·향후 문화재 방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근거한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통해 사업의 소요예산 등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고, 사업의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재난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문화재안전관리 교육을 주내용으로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보조사업의 근거는 명확함

○ 또한 문화재보호범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에도 유사한 근거가 존재하는 등 사업의 추진 근거는 분명한 편임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교육은 문화재업무 총괄청인 문화재청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국가적으로도 타당한 사업임

○ 최근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낙산사 화재(2005년)', '숭례문 화재(2008년)' 이후 국가 수준에서 문화재 안전관리교육의 필요성은 공유되어 왔음

○ 문화재 안전관리교육을 통해 귀중한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관리함으로써 1차 수혜자인 문화재안전경비원은 자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화재의 안전한 보호를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외부효과가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문화재 안전관리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안전관리교육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재 안전관리역량 향상이라는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의 교육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18년에 소방전용교육장 6곳과 문화재현장 15개소에서 교육을 운영 하였음

○ 또한, 소방기기 활용을 위한 참여형 반복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재 안전관리역량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리적임

○ 문화재 안전관리 교육사업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등의 화재초기 대응력 향상을 통해 문화재를 보호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교육내용은 소방 및 전기설비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함

○ 2018년 문화재 안전관리 교육사업은 6개 지역의 소방전용교육장과 15개 문화재현장에서 문화재안전경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800여명을 교육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적은 1,049명으로 계획 목표 달성한 것으로 성과가 우수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문화재는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문화재 안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됨

○ 현재 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이 폐지될 경우 초기대응능력(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도난, 파손 등) 발생 대응) 등 교육기회가 박탈되어 문화재 방재능력 배양에 결손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지원하고 있어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참석자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89%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함

○ 현재 문화재안전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돌봄이 등 까지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경우 예산이 확대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19년도 예산에 반영)

○ 문화재 안전관리 교육사업은 문화재 현장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문화재에 대한 방재 능력 향상을 통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사회적 가치에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문화재 안전관리 교육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인 '한국소방안전원'은 1980년에 설립하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절성과 특수성이 인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총사업비 관리 지침 등에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문화재 안전관리 교육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매년 문화재청에서 사업내용과 예산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수립되고 있음. 착수보고, 현장점검, 제도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등 적절성이 인정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회계연도 종료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29조에 따라 실적보고를 받아 보조금을 확정하고 교부금액과 교부결정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반환을 받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사례 없으며, 소방청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므로 발생가능성도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안전관리교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에서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제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재난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문화재안전관리 교육을 주내용으로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보조사업의 근거는 명확함

○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교육은 문화재업무 총괄청인 문화재청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국가적으로도 타당한 사업임

○ 보조사업자인 '한국소방안전원'은 1980년에 설립하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절성과 특수성이 인정됨

○ 부정수급 사례 없으며, 소방청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므로 발생가능성도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문화재 방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근거한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통해 사업의 소요예산 등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재청
사 업 명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3.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의 경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룸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매우 우수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에 따라 사업목적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방식의 변경이 필요함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사업시행 후 2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지만,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한계점, 지자체의 애로사항 등의 점검을 통해 본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됨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 외에 중규모 이상의 사업은 사업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범주화하고 범주화한 사업별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내역 등이 제시되고 매년 실시정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사업의 경우도 단일사업이 아니라 약 3개(예시) 정도의 내역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별로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에 근거하여 시행됨

- 동법 제19조제2항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동법 제19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해 등재된 날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은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활용 또는 기록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보조율을 70%로 명시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하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2017년도부터 신규사업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의 목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정비를 통해 백제왕도 기본골격 회복, 민족문화 부흥 및 문화융성 기반 확대임

○ 자체평가서를 살펴보면 백제유적은 매장문화재로 발굴·고증 연구가 미진한 상황으로서, 그 특성상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민족문화적 가치 및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주도의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임에 따라 사업의 합목적성 여부에 이견이 없음

○ 또한 본 사업은 1차 수혜자로 볼 수 있는 3개 지역(공주, 부여, 익산) 외에도 국민의 역사문화적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볼 때 국민 전체를 본 수혜의 범위로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이상의 목적에 따라 추진된 약 2년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보면 우선 본 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이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함

- 본 사업은 2019년 기준 233.5억원의 대규모 사업인데 단일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구체성 면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즉, 사업을 추진내용에 따라 내역사업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주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체평가서에서 제시한 보존관리사업별 세부현황은 단지 지출내역일 뿐이지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 사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일 내역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위 내역사업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 성과지표 또한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관리사업별 세부 지출현황을 참고로 했을 때 사업 시작 후 약 2년만이 경과한 시점에서 토지매입을 하였고 관광지로서의 개선을 추진하는 등 사업초기단계임에 따라 후속작업들을 위해 계속지원해야 함을 미루어 짐작함

○ 다만, 본 사업은 유네스코 등재 유산으로서 지자체 단위나 민간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유사중복성이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은 보조금 외 민간 등 다른 수단의 존재여부와 함께 사업의 효과성과 연계되는 것인데, 본 사업의 경우 약 2년간 428억 여원을 투입한 효과는 약하지만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이에 대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해 보임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목표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평가서에서는 신청액 대비 57%만 반영되어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그 근거가 불명확함

- 즉, 본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내역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산출내역과 예산지원액을 구분 비교하여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낮다는 것은 신청액의 허수를 고려했을 때 재정 지원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대규모 사업임에 따라 사업의 재정투입 규모를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의 경우 각 기간별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사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 자체평가서에서는 정부종합추진계획상 사회적 가치 1번에 해당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즉,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으나 관련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즉, 기본권과 본 사업의 목적인 역사적 유산의 계승과 보존에 따른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신청지침을 마련하고 예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함

- 국고보조사업 예산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은 문화재청 정기조사·점검결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전년도 사업 집행률,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으로 구성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예산 지원기준에 의한 평가기준표를 작성, 이에 대한 예산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지자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임

○ 보조사업자의 예산편성 예측 및 사업준비 등 조기 사업달성을 위해 사전에 사업대상을 통지하였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분기별 현장점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연 4회, 1팀 4인 및 각종 승인·허가사항 이행과 절차 준수여부 등을 기준으로 점검토록 계획함

○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나 기준, 현장점검계획에 따라 실제로 현장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미집행 잔액에 대한 보조금과 이자 반환, 정산 등 사후관리절차에 대한 규정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2017년도와 2018년도 9개 유적에 대한 사업시행이나 및 정산결과에 대한 다음 해 반영 및 개선조치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함

- 즉, 9개 각 유적별로 사업시행 상의 문제점, 정산 및 회계감사 감사한 결과 및 문제점 등 실제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과 다음 해의 반영정도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여부를 중앙부처에서 적발해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자체나 민간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고 관리체계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함

○ 본 사업의 경우도 실제 사업 집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업자들이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지자체들이 관련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정수급의 여지는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밝혀내도록 문화재청에서 중간점검과 결과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크해나갈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경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룸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매우 우수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에 따라 사업목적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방식의 변경이 필요함

- 다만,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나 사업의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사업시행 후 2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지만,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지, 오류는 없었고 지자체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등의 점검을 통해 본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됨

○ 약 233.5억원의 사업을 구체적인 내역사업 구분 없이 단일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단계별, 연차별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관리감독하는지, 매년 내역사업별 목표에 따라 제대로 추진되었고, 당해연도 성과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의 단일 내역사업을 여러 개로 내역사업으로 나누어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권고함

3-2 정책 제언

○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 외에 중규모 이상의 사업은 사업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범주화하고 범주화한 사업별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내역 등이 제시되고 매년 실시정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사업의 경우도 단일사업이 아니라 약 3개(예시) 정도로 사업을 나누어서 사업별로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재청
사 업 명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5.4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본 보조 사업은 예산집행의 문제, 법적 근거 및 일부 내역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함 ·예산감축의 효율성을 반영하고, 국회 추경예산, 실집행율 저조사유 등을 반영해도 본 보조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과 법적근거 미흡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체 예산의 감축(1억원)과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보조사업의 예산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사업포기 또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 선정과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내역사업 일부는 사업성과도 제시되지 않아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여 사업효과성 재고가 필요함 ·내역사업 중 활용홍보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기간, 사업예산 책정의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수혜대상자 및 사업연장의 필요성 등에서 사업수행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낮음 ·사업집행 적절성에서 해당항목의 근거와 규정,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 19조와 51조에 근거하여 세계유산 보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 문화재 보호법의 법적 근거는 내역사업 중 세계유산 보존 지원에 관련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세계유산 등재 관련한 내역사업과는 관련성이 낮음으로 해당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은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 재고, 한국을 대표하는 해외 문화상품 육성, 동아사아 역사경쟁에서의 우위확보 등 국가적 관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함

- 민간경상지원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역할이 세계유산 등재에 기여하는 바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해당 위원회 지원에 내역사업의 타당성이 부여될 수 있음

○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사업의 직접 및 잠재적 수혜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지역자치단체 자본 및 경상과 관련한 내역사업의 구체적인 수혜 대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수혜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구체적인 혜택이 제시될 때 사업목적의 부합도 및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 중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의 내용은 지원 대상 등재 유산과 홍보 및 활용방안 예산 제시만 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보존관리 지원 내용이나 홍보 및 활용방안의 내용이 없어 사업목표 달성에 부합된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에 대한 지원방안을 사업내용과 기간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내역사업 중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내용을 제시하고 단체지원이 전체 본 사업과의 연계성을 설명해야 함

○ 본 보조 사업이 계획한 목표대로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시한 실집행율이 사업목표달성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움

- 세계유산 보존사업 수행의 실집행율이 아니라 사업수행을 통해서 구체적인 가져온 성과를 제시해야 하며, 관련 지표가 개발 노력이 요구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적절하나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단체 지원은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등재심사위원 선정 등에 관련됨. 민간단체 지원이 세계유산등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은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 가능성은 낮음

○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사업의 사업이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낮고, 사업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는 본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이나 문제점의 관련 자료나 근거가 없어서 평가하기에 어려움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에 해당하는 3개의 내역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책정된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세계유산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근거가 필요함

○ 보조율의 산정기준은 보조금 기준에 맞도록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음. 각 내역사업별로 국고 보조율이 상이하고 이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있으나 지자체의 사업의지나 사업추진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향후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필요함

-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해당 단체인 이코모스 위원회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한 규정과 증빙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집행에 대한 규정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명시하고 있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부 결정시 구체적인 사업 규정을 함께 고지함

- 내역사업 중 사업집행의 관리, 감독이나 점검을 상하반기 실시에 대한 별첨 증빙자료는 세계유산보존에 대한 국가보조 사업에만 해당하며 그 외 내역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개선조치 등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내역사업별 사업집행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어 사업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회계 감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불용액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나 내용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사업의 부정수급이 최근 3년간 발생하지 않아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0조와 33조에 부정수급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시 조치에 대한 절차들이 근거로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은 다양한 보조사업유형이 수행되어 있고 내역사업 모두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전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만 내역사업의 범위가 넓은 반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내역사업별 사업성과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집행율만을 사업성과로 제시하고 있어 내역사업별 사업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보조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 추가 예산의 발생, 사업취소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효과성에 있어 사업의 수혜대상이 제한적이며,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음으로 이를 반영하여 수혜자 확장성과 외부효과 등에 대한 재고가 적극적으로 요구됨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별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내역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발을 제안함

○ 전체사업과 내역사업 간의 연계성과 사업타당성을 제고하는 검토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역사업이 전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이 요구됨

○ 본 사업의 특성과 예산 교부 상의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수행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재청
사 업 명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사업전체와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사업타당성이 있으나 불용액 및 내역사업의 일부 성과관리 부족으로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으로 최종 판정함(감축금액 : 30백만원) · 사업집행의 적절성에서 해당영역의 근거와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여 사업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내역사업별 사업비 비율에 대한 조정, 사업효율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성과관리에 대한 사업방식 개선으로 사업효과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운영에 있어서 3년간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사업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감축 사유에 해당함(감축: 10백만원) · 2019년도 예산 무형유산 가시성 증진 및 인식제고 내역사업이 성과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향후 성과가 불투명하여 사업 내용 중 도서발간 예산을 2017년도와 동결(감축: 20백만원)하는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설립을 위한 한-유네스코 협정 제12조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7조 5항에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및 재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 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 내역사업 내용의 법적 근거도 한-유네스코 협정의 6조에 명시하고 있어 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은 공약사업, 국정과제, 계획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내용이나 사업대상 등이 국가 간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보조가 필요한 사업임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은 사업자체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수혜자의 범위가 포럼 참석자로 제한됨. 포럼 참석자들은 이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한국의 무형 문화재를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는 센터 운영에 직접 관련자이지만 무형문화재를 해외 소개하고 연계하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혜자와 혜택범주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의 내역사업 4개 영역과 관련 내용은 제시되어 있고 사업 목적에 부합됨

- 보조사업의 내용과 이사진의 구성을 통해서 해외 관련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하여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생산하고 출판할 수 있도록 있도록 구성됨

○ 본 보조 사업이 계획한 목표대로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시한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무형유산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 건수나 무형유산 선양사업 건수가 각각의 내역사업 성과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음

- 네트워크의 양적 지표 자체를 제시하기보다는 내역사업의 목적이 양적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가 제시되어야 함으로 성과나 효과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내역사업 중 무형유산 가시성 증진 및 인식제고 사업은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홍보자료 발간이나 워크숍 개최 자체는 성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료 발간과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 개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관리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은 국가 간 사업으로 특정 지역이나 민간에서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음으로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됨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은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 가능성은 낮으며 보조금 교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주무관청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 독립적 사업으로의 성격이 높음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의 사업이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으나, 사업 성격상 국가 간 신뢰와 상호 연계되어 한국의 역할이 명확하게 부여되어 있는 만큼 연장필요성은 있다고 평가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은 해당센터의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내역사업의 영역이나 사업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비율이 높아 보조사업 목표 달성의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예산 확보 노력, 운영비 절감 노력 등으로 사업예산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난 3년간 발생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불용액 미발생에 대한 대안 필요함

○ 내역사업별 사업비 배분 중 무형유산 가시성 증진 및 인식제고 영역이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 제시가 되지 않음

- 2019년도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중 해당 내역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하고 사업연계성이 낮은 항목(유네스코 정책자료 및 홍보도서 발간 등),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는 항목(무형유산 초중등교육 협력사업, 무형유산 온라인 전시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 가치 실현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사항은 없으나 부처 자체에서 평가한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및 공공성 강화와는 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모 사업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센터로서 사업자 선정, 선정위원회 등이 별도로 구성되어있지 않음

- 별도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는 않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하여 보조금 교부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집행에 대한 규정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명시하고 있어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집행에 규정은 제시되어 있으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집행에 대한 규정들을 명시한다면 사업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회계 감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본 보조 사업은 3단계를 거쳐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검증, 문화재청의 검증, 내부감사 및 국제위원회 보고 등으로 사업집행에서 여러 단계와 과정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서 확인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의 부정수급이 최근 3년간 발생하지 않아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0조와 33조에 부정수급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시 조치에 대한 절차들이 근거로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사업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이 부합되며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 전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만 내역사업의 범위가 넓으므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 내역사업별 사업성과 지표에 대한 적절성 재고가 필요함. 내역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사업효과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 개선이 요구됨

○ 전체 사업목적과 내역사업 간의 연계성이 사업 전체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연속사업으로서 수행되어야 하나 수혜대상자 및 외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사업의 수혜대상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내역사업별로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성과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사업관리의 하위 영역별로 규정이나 지침은 비교적 명확하게 갖추고 있음.

○ 문화재청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사업의 사업 집행에 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 사업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별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내역사업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 노력을 제안함

○ 내역사업 영역별 재정 비율이 사업비와 기관 운영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조사업 집행을 위해서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른 재원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재청
사 업 명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의거,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목적성과 근거 법령의 연계성이 비교적 명확함 ·또한 사업의 목표는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수 영역으로 판단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목적 및 공적영역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국고보조를 통해 문화재 수리 기술등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재단운영 및 사업의 안정화(성숙기)이후 재원구조 개선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17년 예산 산출근거에는 인건비 단가가 3,8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18년에는 단가가 4,890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단계적 인력채용으로 인한 근무기간 차이 등에 의한 예산산출 내역상의 변동으로 판명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관련 조항에 근거가 확인됨

○ 동 보조사업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의거,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목적성과 근거 법령의 연계성이 비교적 명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1차 수혜자이나 전통건축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통해 문화재 수리 관련 업계 및 학계, 그리고 건축문화재를 향유하는 국민도 수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재단은 '17년 2월에 설립되어 현재 조직 운영 및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반(시험·연구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재단 운영, 전통건축부재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보급·전승, 전통건축부재 전시 및 활용 등 사업으로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따라서 현재 사업범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통재료 수급, 수리기술 진흥, 수리 품질 향상, 전통수리 기법 조사 활성화 등 현 사업을 기반으로 중장기 사업 계획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목표는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17년 2월 설립된 조직으로, 설립 이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문화재청 산하 기관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 민간 분야 임무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있음

○ 또한, 재단 법정 임무 중 문화재수리·감리의 경우 그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 수리업계와의 중복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예산을 기반으로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을 종합·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전통건축 수리품질 향상을 선두하는 전문기관으로의 설립 목표를 추진·달성 해나가고 있음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100%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매년 감독관청인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를 진행하여 국고 보조를 받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재단 운영을 통해 지역의 건축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건축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간접적 기여가 인정됨(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참조)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재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4항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국가에서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재단은 2017년 2월 설립된 신생기관으로 관련 제 규정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동 재단은 국정감사(매년), 문화재청 자체감사(격년) 등의 감사를 수감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재단은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제규정(17개)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적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통해 부정수급 관리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비교적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의거,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목적성과 근거 법령의 연계성이 비교적 명확함

○ 또한 사업의 목표는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수 영역으로 판단됨

○ 전통건축재단의 설립목적 및 공적영역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국고보조를 통해 문화재 수리 기술 향상 등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재단 운영 및 사업의 안정화 단계(성숙기)이후 재원구조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신생기관임을 감안하여 초기 국고보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재단의 중장기 재원구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전체 국고보조금 중 사업비의 비중이 현재 20%에 불과하여 향후 사업비 확보 및 재원 투자의 재구조화에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사업 및 재원 확보를 위해 기 수립된 중장기 사업계획의 점진적 고도화 전략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재청
사 업 명	조선왕릉보존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3**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본 사업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에 대한 제향 봉행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200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에 제향봉행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조와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어 강제성이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는 국가와 지자체가 세계유산에 대해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제 준해 유지·관리 및 지원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조선왕릉 제향 봉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역사업들은 행사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법령이 구체적인 내역사업에 대해서 특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성은 높지 않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므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높음

○ 본 사업은 조선 왕릉의 세계 유산적 가치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왕릉 제향 봉행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과 외국인을 비롯한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연간 54회에 해당하는 조선왕릉 제향 봉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역사업들은 제향 봉행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세부 내역 사업은 (1) 왕릉 및 원·묘 제향 봉행 일용임금, (2) 제향준비(입재자 숙식 등) 및 제물구입비, (3) 홍보계획 및 홍보비, (4) 행사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 본 사업은 조선 왕릉에 잠든 주인들의 기일에 맞추어 제향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역 사업도 제향 봉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본 사업은 연간 54회(왕릉 44회, 원 7회, 묘 3회)로 계획된 제향을 모든 정해진 의례에 부합되게 치루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서울·경기·강원 지역에 산재해 있는 조선왕릉 전체에 대한 제향 봉행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됨

○ 유사·중복성 문제가 없음

○ 세계문화유산으로써의 지위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조선왕릉 제향 봉행 의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문화 유산이 손실되거나 세계유산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제향 봉행 의례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 내역 사업들로 구성되어 실효성이 있음

○ 연간 54회에 걸쳐 제향 봉행 의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가 적절하게 구성됨

○ 본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율 100%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제향 봉행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교부절차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제향의 특성상 조성완조의 후손에 의해서 봉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관리체계 및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음

○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문화재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음

○ 본 사업은 정산보고서와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장소에서 실시간 점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직접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과 같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갖추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에 대한 제향 봉행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개선지원(보조)
농산물소득조사분석(보조)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제주)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지역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보조)
농작업재해예방(보조)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보조)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촌진흥청
사 업 명	농가경영개선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본 사업은 농가경영개선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상추진함 · 본 사업은 대·내외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에 대한 위협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경영체 및 조직체 자립역량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존 성과지표 외에 농가경영개선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의 실질적인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래에 새로운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농업경영 사업주를 중심으로 새로 귀농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다양한 파일럿 사업을 개척하는 것을 제안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농촌진흥청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예규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농촌진흥법 >

○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 >

○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강소농 육성 지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등은 관련 법적근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대·내외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에 대한 위협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성장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상태를 진단·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및 조직체 자립역량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새로운 경쟁력요소 자각·도입 및 매력적인 농업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 판단됨

○ 농가의 자립적인 경영역량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하는 강소농 육성모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경영마인드 → 자율·자각·자강 자립의 마인드 고취
- 비즈니스 모델 → 경영분석 및 경영개선 역량을 기초로 수익모델 구축
- 코칭리더십 → 자립적 역량개발·모델수립 전문가와 협조
- 참여연구 모델 → 농업인의 역량증진을 위한 참여연구학습 모델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내역사업간 연계를 통해 세부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과지표의 초과달성을 통해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달성률	'15년	'16년	'17년
경영기술 현장 실천율(%)	목표	-	신규	67.6
	실적	-	64.4	68.3
	달성률(%)	-	-	
농업경영주 능력 향상(점)	목표	-	신규	62.5
	실적	-	-	64.2
	달성률(%)	-	-	
품목별 농가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활용률(%)	목표	54.6	65.7	71.1
	실적	62.6	67.7	74.9
	달성률(%)	**115**	**103**	**105**

○ 보조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 농촌진흥사업 조합관리시스템(ATIS) 운영 등을 추진하여 계획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 미래성장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상태를 진단·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및 조직체 자립역량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

- 다만, 성과지표 외에 농가소득의 실질적인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간 연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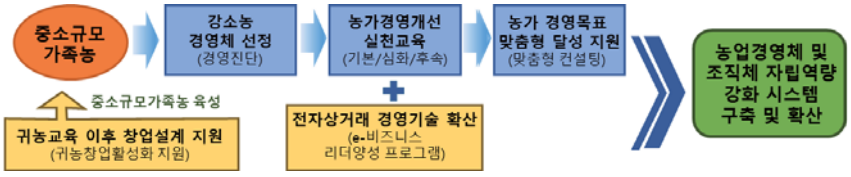

-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을 통해 중소규모 가족농을 확산하고, 중소규모 가족농 중 강소농 경영체 선정을 통해 경영진단, 농가경영개선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및 조직체 자립역량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하도록 충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은 투자효과가 장기간 소요되고, 모든 농촌지도사업의 기초자료로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중소규모 가족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및 경영·마케팅 역량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지원대상 및 사업 추진체계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중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

- 중소규모 가족농 육성사업은 농정과 연계한 대표적 정책으로 보조사업 수혜자가 명확한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청년창업농 육성 정책은 농식품부「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협력 추진으로 농업·농촌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진출을 촉진하고 조기 영농정착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 사업 추진이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5,630백만원	5,990백만원	5,429백만원
	50.0%	50.0%	50.0%
자치단체부담	5,630백만원	5,990백만원	5,429백만원
	50.0%	50.0%	50.0%
민간단체부담＊	0백만원	0백만원	0백만원
(자부담)	%	%	%
합계	11,260백만원	11,980백만원	10,858백만원
	100.0%	100.0%	100.0%

○ 2017년도 예산불용액이 0.8%로 적절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와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

○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체를 조직화하여 농가 간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농번기에 품앗이 활동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농촌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을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사전에 제시하여 국비 50%, 지방비 50%의 재원부담을 통해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선정단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성과측정단계 등 단계별 내역에 대한 명시로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2-2. 보조사업자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와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S)를 통해 사업의 계획수립, 집행, 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 운영
  · 사업계획보고(3월) : 사업개요(목적, 내용, 예산, 기대효과), 계획 입력
  · 예산집행상황(분기별) : 분기별 1회 예산집행상황 입력
  · 사업결과보고(11월) : 사업결과, 성과 등 입력
-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S) 운영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3월) : 강소농 선정 농가 기본현황 입력
  · 사업운영 현황 보고(수시) : 농업경영체 경영 및 역량 진단·분석 등

○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앙 : 사업기획, 모니터링, 피드백, 평가
- 시도 : 집행점검 및 모니터링, 현장기술지원 등 피드백
- 시군 : 사업집행, 사업운영 및 피드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조금 집행현황, 및 실집행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 우수 또는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매년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의 운영 및 사후관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주요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여 사후관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조금 반환, 정산 등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명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의 절차에 의거 사업의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를 충실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토록 하여 사후관리의 충실성을 기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충실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업인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가 제외되어 있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업경영정보종합시스템(AMIS)에 사업 참여농가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고 이를 DB화하여 부정수급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메뉴얼 제작활용,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부정수급 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대·내외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에 대한 위협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경영체 및 조직체 자립역량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상추진함

○ 농가의 자립적인 경영역량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하는 강소농 육성모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미래성장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상태를 진단·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및 조직체 자립역량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으나 기존 성과지표 외에 농가경영개선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의 실질적인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래에 새로운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농업경영 사업주를 중심으로 새로 귀농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다양한 파일럿 사업을 개척하는 것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촌진흥청
사 업 명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0.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9.1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본사업은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를 생성 분석하는 중요사업으로 재정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되기에 정상추진함 · 본 사업은 작목별 농산물소득을 조사·분석하여 농장경영진단 및 설계 등 농가경영개선 연구·지도와 농업정책 의사결정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성과측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사의 샘플링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조사의 신뢰도도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지속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촌진흥법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56호(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3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농촌진흥법 >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작목별 농산물소득을 조사・분석하여 농장경영진단 및 설계 등 농가경영개선 연구·지도와 농업정책 의사결정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제14302)로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조사작목은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므로 각 시군센터에서 해당지역 농가를 조사 하고, 각 도농업기술원에서는 해당지역 조사자료를 1차 검토 하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전국조사자료를 최종 취합 및 검토하여 공표하는 추진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농산물 소득조사는 사업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와 경영기록장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결과 활용에 있어 효과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판단됨

* 조사농가수 : 5,300호
*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 : 1,500호 (연 2회 방문조사)
* 경영기록장 조사 : 3,800호 (연 6회 방문조사 및 컨설팅)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계획한 115작목 5,300농가 조사 완료
*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농축산물 소득자료집과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발간 및 보급
* 2018년 통계청 품질진단결과 : 4.5/5.0(우수)
* 2018년 농산물 소득조사 만족도 : 88.8점(전년대비 1.3점 상승)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조사작목은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어 각 시군센터에서 해당지역 농가를 조사하고, 각 도농업기술원에서는 해당지역 조사자료를 1차로 검토하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전국조사자료를 최종 취합 및 검토하여 공표하는 추진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따라서 해당지역의 조사작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조사대상농가와의 친분이 있어 조사협조를 받기가 용이한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소득조사 담당자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자체수행보다 조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국가의 농업경영연구·지도와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속적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폐지시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으로 지속적 재정지원이 필요함

* 법원의 영농손실보상 소송관련 사실조회 기준자료 부재로 보상 근거 산출 문제 발생
* 토지수용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 기준 마련 애로 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액 산정 문제 발생
*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 산정 곤란
* 병무청의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자격심사 곤란
* 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도 애로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자치단체보조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1,270백만원	1,786백만원	1,607백만원
	100%	100%	100%
자치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 *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1,270백만원	1,786백만원	1,607백만원
	100%	100%	100%

○ 본 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 편성시부터 도원 담당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조사작목 및 적정농가수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조사 전문성 및 지역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본 사업의 수요자는 농업인, 학계, 농촌지도기관, 농업 연구기관 및 정책부서, 법원 등으로 광범위하므로 국고보조 100%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는 지역 주산물에 대한 소득 및 비용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의사결정 및 지역농가 컨설팅에 활용하고자 하고, 지역 농가에 대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산정에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가 필요하여 농산물 소득조사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실정임

- 따라서 조사 준비를 위한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해당 조항에 따른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는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자 집행의 적정성

○ 농산물 소득조사 연간 추진 계획 및 개선방안을 수립('18.4)하여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 소득조사 신뢰성 및 체감도 제고 방안

*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 활용도 제고 방안 등

○ 보조금 집행실태 등 현장점검단 구성·운영과 종합관리시스템(ATIS)을 통한 사업 이력관리로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표 및 농가경영기록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중요재산 구입과 관련이 없고, 또한, 계획된 농가 조사에 문제 발생시 유사 농가를 대체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등에 문제가 없어 사후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후속 이행계획(2014.12)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부처별 검토과제 추진방안(2015.1)을 준수하여 사후관리에 충실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조사표 및 경영기록장에 조사대상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고, 이를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표, 경영기록장 및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서 조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완료 시 사례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제에 대응하는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작목별 농산물소득을 조사·분석하여 농장경영진단 및 설계 등 농가경영개선 연구·지도와 농업정책 의사결정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가 재정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당지역의 조사작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조사대상 농가와의 친분이 있어 조사협조를 받기가 용이한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소득조사 담당자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자체수행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재정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의 성과측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추진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사의 샘플링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조사의 신뢰도도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촌진흥청
사 업 명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제주계정)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1.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사업내용이 타당하고 효과성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음.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수혜자가 협소한 면이 있으나 낙후된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와 발전을 위한 산업고도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 ·연간 예산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만족도나 농업경영인들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필요 ·수혜의 범위나 효과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높여 보조율을 재조정하여 사업규모를 재조정할 필요 ·사업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의한 외부 만족도 조사, 매출액 등 경영활동 성과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법적근거는 명확함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전통식문화계승활동지원, 농촌교육농장육성 사업 모두 법적 근거에 의하여 포괄적 또는 구체적으로 지원 근거 제시

○ 농촌진흥법 :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2017.1.17.>
<권한위임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법률>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에 관한 법률 :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제16조(권한의 위임) <2017.1.17.>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창업지원), 제23조(판로지원사업),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2018.2.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업의 발전과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목적이 타당함

○ 일차적인 수혜자는 농업분야 종사자로서 협소함

- 농업분야의 발전과 자립을 통하여 경제시스템 전체에 원활한 발전에 기여하는 간접적 효과적인 효과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산업에 존재하는 산업적 지원의 요구일 것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전통식문화계승활동지원, 농촌교육농장육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내역사업은 농업분야의 종사자 역량강화와 농가소득증진방안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됨

○ 농가소득 증진, 농업인의 업무역량강화, 창업역량 증진 등의 목표는 타당하며 명확하게 설정되고 각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음

○ 대체로 성과관리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 활용하고, 결과지표를 보조지표로 활용

2018	○ 지역자원 활용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 - 제주지역 향토음식, 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식문화계승 교육과정 운영 : 3개소 10건 - 농외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가공상품 개발 : 1개소, 2종 - 시범농가 매출액 증가율 : 19.2%

- 향후 사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 지속필요

- 창업지원에 따른 실제 창업수, 창업기업의 존속여부 등의 산출지표 활용가능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사업에 의한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필수적임

- 전통식문화에 전문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쟁력향상 활동이 필요

○ 농업분야에 지원프로그램으로써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은 존재하나 내역사업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사업간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봄

○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분야의 생산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본 내역사업에 대한 사회적 니즈는 일정기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은 지속되어 왔으므로 점진적으로 감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 사업이나 특화된 맞춤형 농업기술 전수 프로그램으로서 상대적 고유한 가치 인정됨

- 제주 계정의 경우 제주지역에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지역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있음

○ 국고보조 50% 지방자치단체 50%로서 다른 보조사업에 비하여 이례적인 수치는 아님

- 보조사업을 통해 혜택을 보는 농업인들이 지역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확대가 적절하다고 봄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간접적인 기여하나 산업적인 성격으로 타산업에 비하여 직접적인 기여는 크지 않음

- 농업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여 포용적 지역사회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 따름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국고보조사업의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을 정비하여 적용
- 농촌지도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집행 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함

○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를 고려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집행 절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적절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음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내용이 타당하고 효과성도 확인할 수 있음

-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수혜자가 협소한 면이 있으나 낙후된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와 발전을 위한 산업고도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

- 사업규모의 경우 연간 예산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 및 완료까지 사업을 유지 필요

○ 제주계정으로서 지역적 성격이 강한 지원으로 국가의 지원의 범위를 줄여나갈 필요

3-2 정책 제언

○ 종합적으로 사업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인정됨

○ 소규모사업으로 맞춤형 접근을 하고 있음

- 각 내역사업에 대한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노력은 제고되어야 함

○ 농업분야에 대한 산업적 지원이라는 면에서 장기적으로 민간의 역할 강화, 보조율 조정, 사업규모 축소 등의 노력필요

○ 본사업은 사업완료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위의 점을 고려하면서 산업의 니즈를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는 준비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촌진흥청
사 업 명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지역지원계정)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9.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0.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3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사업내용이 타당하고 효과성도 확인할 수 있음.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수혜자가 협소한 면이 있으나 낙후된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와 발전을 위한 산업고도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 ·연간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만족도나 농업경영인들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필요 ·종합적으로 사업자체는 계속 추진사업으로 인정하되 사업관리의 효율화 노력 지속 필요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자에 의한 만족도 모니터링, 경영체의 경영성과 모니터링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내역사업에 대한 근거가 다양한 법규에 존재

○ 농산물가공기술보급, 농업인창업·마케팅기술지원,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 지급근거 명확함

-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산업에 대한 지원의 내용, 수익적 내용을 담을 경우 재량적 지원표현임

○ 농촌진흥법 :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2017.1.17.>

<권한위임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법률>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에 관한 법률 :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제16조(권한의 위임) <2017.1.17.>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창업지원), 제23조(판로지원사업),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2018.2.21.>

○ 식생활교육 지원법 :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제29조(권한의 위임 위탁) <2013.8.1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재정지원),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2017. 10. 3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농촌 지역경제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산업화 및 농산물가공기술보급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일정한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봄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국정과제와 연관성 있음

○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할 때 혜택은 협소한 문제를 안고 있음

- 농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을 인정하되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방식의 사업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농업이 발전하여 정상화될 경우 농업분야 경제시스템 전체가 원활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으므로 혜택이 국가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농산물가공기술보급, 농업인창업마케팅기술보급,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금,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관리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창업에서 생산공정, 마케팅에 이르는 전체 공정에 적절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들이 농업경영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준비에서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경영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교육, 훈련하고 있음

- 각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설정은 명확

- 사업의 최종목표가 경영체의 자립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화가 요구됨

○ 성과계획서를 매년 수립하고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를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016~2018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구분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성과계획서	시범농가 매출액 증가율(%)	2016	41.0	43.1	105.0
		2017	43.7	44.5	101.8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실적(건)	2018	2.24	2.89	129.0
성과관리 시행계획	시범농가 소득증가율(%)	2018	17.4	19.2	110.3

- 성과계획서에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설정된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일정정도 적극적인 목표설정, 프로그램의 산출물에 대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의 다양화, 성과목표의 상향 조정이 필요

- 보다 적극적으로 만족도나 농업경영인들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필요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의 문제

- 농업경영인에 대한 역량강화는 지식전수, 기술훈련,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으로 농업분야의 전문 기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농식품부, 농진청,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음

- 협업, 조정에 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복성 있는 사업은 없음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 대한 역량강화의 필요성 높고 이에 대한 니즈 지속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 높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체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예산규모가 정체 또는 증가분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외소득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사업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산물가공기술보급, 농업인창업마케팅기술보급,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의 경우 중앙과 지방이 50%,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관리운영의 경우 중앙정부가 100%임

- 농업부문의 중앙정부이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정한 보조율 비율로 파악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직간접적인 기여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을 포함한 농촌지도사업 전체의 보조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 신청 협의회 및 예산배정 심의회를 추진하여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해여부 등을 검토

○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합한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시행을 공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

○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사업내용, 보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이에 대하여 보조사업 내용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는 지 파악 필요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적절함

-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 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국고보조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농촌지도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조사업 관리체계에 따라 집행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음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내용이 타당하고 효과성도 일정정도 확인할 수 있음

-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수혜자가 협소한 면이 있음
- 낙후된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와 발전을 위한 산업고도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의 타당성은 인정됨
- 연간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만족도나 농업경영인들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필요

○ 다만 사업목표에 대한 목표치의 상향조정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센터의 활용도 등 보다 다양한 산출지표를 사용할 필요

3-2 정책 제언

○ 종합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인정됨.

○ 다만 사업목표 달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만족도나 농업경영인들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필요. 농업경영자들의 자립적 경제활동에 지원하는 역할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사업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확대, 민간부분의 역할 강화 등의 방식으로 국고보조부담 축소할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촌진흥청
사 업 명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5.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5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병식변경 ·본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이 대체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본 사업의 5년평균 실집행률이 민간보조는 92.5%, 지자체보조는 94.6%로 높지 않은 수준임. 실집행 수준이 1개 연도에 대해 일시적으로 낮은 경우는 해당 연도만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5년동안 지속적으로 실집행 수준이 낮은 경우는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존재하며 이것이 해결되기 어렵거나 예산편성액이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편성된 것을 의미함 ·당초 감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처가 위의 사항을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고 기속력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실집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 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 아래에 부처의 향후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 등을 담은 공문서를 첨부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아래의 다양한 법령에서 본 사업 및 내역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이며, 반드시 보조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는 기속 규정은 아님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제19조(교육훈련 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경비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의2(안전교육) *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새로운 농업 R&D 기술의 현장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이 대체로 높은 교육훈련으로 볼 수 있음

○ 농업과학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다양화·복잡화·융합화, FTA 시장개방, 이상기상 PLS 등 농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지식·기술에 대한 교육과 학습 확대가 필요한 것이 인정됨

○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시군에서 농업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대학 등 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 (약 24만명)이며 그 범위가 대체로 광범위 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내역사업이 사업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내역사업의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내역사업별로 대체로 명확하고 상호 연계되어 있음

○ 본 사업이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대체로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음

○ 그러나, 본 사업의 5년평균 실집행률이 민간보조는 92.5%, 지자체보조는 94.6%로 높지 않은 수준임

- 실집행 수준이 1개 연도에 대해 일시적으로 낮은 경우는 해당 연도만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5년동안 지속적으로 실집행 수준이 낮은 경우는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존재하며 이것이 해결되기 어렵거나 예산편성액이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편성된 것을 의미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만약 본 사업을 농촌진흥청과 연계없이 지자체가 주도할 경우 지역 간 농업기술보급 격차 심화, 지역별 교육(기획, 개발, 운영, 평가) 조직편재로 비효율적 운영, 농촌진흥청 등 연구 및 지도기능과 이원화로 농업교육품질이 약화될 우려

○ 본 사업과 농식품부의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간 유사·중복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이주후 정착단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며 농식품부의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은 이주전 준비단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 점에서 실제 유사·중복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국가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현장보급 및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일정 수준 존재한다고 판단됨

○ 만약 본 사업이 폐지된다면 『연구-지도-교육-현장』 선순환적 농업과학기술개발보급체계가 다소 부실화될 수 있고, 농업연구·지도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다소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5년평균 실집행률이 민간보조는 92.5%, 지자체보조는 94.6%로 높지 않은 수준임. 실집행 수준이 1개 연도에 대해 일시적으로 낮은 경우는 해당 연도만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5년동안 지속적으로 실집행 수준이 낮은 경우는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존재하며 이것이 해결되기 어렵거나 예산편성액이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편성된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사업비는 적절한 수준이 아니며 현장에서 무리없이 실집행 할 수 있는 규모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관련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기준보조율(50%) 준수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부처는 본 사업으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회적가치를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조사업 설명회(3월)와 예산계상신청(수요조사, 4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역사업과 사업량을 배정(신청한 지자체에만 배정)하는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상자 선정은 사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하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술보급사업 예산배정 심의회(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근거)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인학습단체(비영리법인)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보조사업을 발굴 신청(신청주의에 근거)토록 하며, 신청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 후 반영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 교부절차가 대체로 준수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적정한 관리체계와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각종 협의회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현황과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효율화를 위해 평가를 통해 패널티를 적용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며 중요재산 관리, 정산, 회계감사 등의 사업 관리를 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e나라도움 시스템의 지원으로 향후에도 부정수급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 책자 배부, e나라도움 부정수급 관리기능 교육 등 부정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이 대체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본 사업의 5년평균 실집행률이 민간보조는 92.5%, 지자체보조는 94.6%로 높지 않은 수준임. 실집행 수준이 1개 연도에 대해 일시적으로 낮은 경우는 해당 연도만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5년동안 지속적으로 실집행 수준이 낮은 경우는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존재하며 이것이 해결되기 어렵거나 예산편성액이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편성된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사업비는 적절한 수준이 아니며 현장에서 무리없이 실집행 할 수 있는 규모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3-2 정책 제언

○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 아래에 부처의 향후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 등을 담은 공문서를 첨부함

저장 : 이희용 / 교육훈련지원과 (2019-03-20 11:34:56)

보안이 튼튼한 나라 국민이 편안한 나라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실집행율 제고방안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붙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실집행률 제고방안(시행) 1부. 끝.

주무관	이희용	지도관	박수선	교육훈련지원 과장	김순자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장 직무대리	전결 2019.3.20. 김사균

협조자

시행 교육훈련지원과-264 접수

우 5487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420, (중동) / http://hrd.rda.go.kr

전화번호 063-238-1831 팩스번호 063-238-1815 / heey@korea.kr / 대국민 공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문서관리카드교육훈련지원과-264 1 - 1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실집행율 제고방안

❑ 새롭게 달라지는 점

구분	2018년	2019년~
실집행률 점검	▸ 1회(결과보고 시)	▸ 4회(분기별 실시)
예산집행 허용범위 조정	▸ 36개 세부내역	▸ 6개 내역으로 통합
전문지도연구회 편성비목 확대	▸ 국내여비로만 편성	▸ 국내여비, 수용비, 재료비 등 확대 * 도 단위에서 회원 대상 교육 시행
신규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 추가모집 시 행정절차 복잡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엄격	▸ 행정절차 간소화 * 사업대상자 선정 자율성 확대

❑ 현황

○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5년 평균 실집행률**이 지자체 보조의 경우 94.6%, 민간보조는 92.5%로 **높지 않은 수준임**

☞ 실집행률이 **낮은 원인 분석**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 원인분석

○ 사업 관리단위 별 **사업수가 다르고** 5~36개로 **제 각각 구분됨**

관리단위	예산 내역설명서	e-나라도움	농촌지도사업 지침	보조금 확정 통보
사업 수	6개 내역, 12개 세부내역	10개 내역	12개 내역, 36개 세부내역	6개 내역, 36개 세부내역

- **사업관리 지침**인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은 **36개 세부내역 단위로 사업·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의 집행이 비효율적**임

○ 일부 내역사업은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을 위해 집행범위 최소화**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지도연구회[1] 참여를 위한 국내여비로 편성·집행을 한정하여 '18년 집행잔액이 247백만원 발생함 (전체 불용액의 31.0%)

○ 정책사업인 신규농업인 정착지원의 경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

☞ '18년 집행잔액이 230백만원 발생함(전체 불용액의 28.9%)

❑ 조치계획

○ **(실집행률 점검 강화)** 분기별 점검으로 예측 문제 선제적 해결('19. 2분기~)

○ **(예산집행 허용범위 조정)** 36개 세부내역을 **6개 내역으로 통합**('19. ~)

- 내역에 포함된 세부내역 간 사업의 예산집행 통합사용 허용 추진
- 세부내역사업의 집행 잔액에 한해 통합하여 부작용 최소화

* 세부내역사업비는 80%이상 집행, 20%미만의 잔액에 한해 4/4분기에 허용

○ **(편성비목 확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에 대한 **유연성 제고**('20년~)

- (현행) 국내여비 → (확대) 국내여비, 수용비, 재료비 등

* 도 단위에서 전문지도연구회원 대상 역량향상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추진

○ **(사업추진방식 개선)** 신규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19. ~)

- **행정절차 간소화** : 사업대상자 선정에 기관의 자율성 확대로 **중도 포기자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추가모집 절차 완화**

❑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시도 예산담당자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협의(3월) • 전문지도연구회 총회 시 개선방안 논의(3월)	•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변경 시달(4월) * 예산내역통합, 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 • 실집행률 점검(5월)	• 실집행률 점검(8월) * 예측문제 모니터링 및 해결방안 계획수립 • '20년 예산편성지침 개선(8월)	• 실집행률 점검(10월) *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시행

1)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문제해결,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 2018년 12월 현재 53개 연구회 2,309명의 회원(지방 지도직의 약 58%)이 활동. 농촌진흥청은 40개 전담부서와 120명 이상이 기술자문관과 명예회원으로 참여

<참고 1>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실집행률

□ 보조금 집행률('13~'17)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과출연 · 과보조 기관 등)						
		예산액(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2017	합계	12,959	12,959	12,959	-	12,959	12,259	50	650	94.6
	민간단체보조	1,604	1,604	1,604	-	1,604	1,601	-	3	99.8
	자치단체보조	11,355	11,355	11,355	-	11,355	10,658	50	647	93.9
2016	합계	12,501	12,501	12,501	5	12,506	11,949	4	553	95.6
	민간단체보조	1,710	1,710	1,710	5	1,715	1,702	-	13	99.5
	자치단체보조	10,791	10,791	10,791	-	10,791	10,247	4	540	95.0
2015	합계	12,081	12,081	12,081	5	12,086	11,450	5	581	98.2
	민간단체보조	1,960	1,960	1,960	5	1,965	1,924	5	36	98.2
	자치단체보조	10,071	10,071	10,071	-	10,071	9,526	-	545	94.6
2014	합계	13,650	12,704	12,704	5	12,709	11,975	-	734	87.7
	민간단체보조	3,540	2,594	2,594	-	2,594	2,473	-	121	69.9
	자치단체보조	10,110	10,110	10,110	5	10,115	9,501.8	-	613	94.0
2013	합계	11,224	11,224	11,224		11,224	10,695	5	524	95.3
	자치단체보조	11,224	11,224	11,224		11,224	10,695	5	524	95.3

* 불용액 : 집행잔액(자치단체보조의 경우 165개 지자체 당 평균 3.5백만원)

□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집행률(직접 사업비 포함, '13~'17)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집행률(C/A)	집행률(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7	15,693	-	-	15,693	15,365	97.9	97.9	213	115
2016	15,128	-	-	15,128	15,027	99.3	99.3	-	101
2015	14,795	-	△148	14,647	14,618	98.8	99.8	-	29
2014	15,870	-	-	15,870	14,818	93.4	93.4	-	1,052
2013	15,263	-	-	15,263	15,208	99.6	99.6	-	55

* 2014 불용(1,052백만원) : 민간사업자 사업포기로 946백만원 불용, 집행잔액 106백만원
* 2015 이전용(△148백만원) : 과수 화상병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재원마련
* 2017 이월(213백만원) : 농업기계전시관 공사 지연으로 213백만원 이월

<참고 2>

예산 내역설명서 기준 내역 현황('19)

내역설명서내역	내역설명서(세부내역)	e-나라도움(내역)
6개 내역	12개 세부내역	11개 내역
1.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지방)	1. 농업인대학 운영 2. 농업기술전문교육 3.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4.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	1.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2.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3.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4.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2.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	5. 영농정착기술교육 6. 현장실습교육 7.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5.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6.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7.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3.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지원	8.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	8.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	9. 지역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지방)	9.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5. 우리쌀이용가공 기술교육	10.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11.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10.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6.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12. 성공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11.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참고 3>

보조금 확정통보의 사업 기준 세부내역 현황('19)

* 6개 내역, 36개 세부내역(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도 유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단위	사업비(천원)
합계	**농업전문인력양성**	25,984		12,041,000
내역 1.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지방)	3,894		5,933,000
세부 1-1.	농업인대학	145	개소	1,890,000
세부 1-2.	농업기술전문교육	324		1,735,000
세세부 1-2-1.	전문농업기술교육	162	명	873,000
세세부 1-2-2.	기초영농기술교육	162	명	862,000
세부 1-3.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3,113		1,690,000
세세부 1-3-1.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453		850,000
○	기술보급실무(2주, 선택학습)	80	명	128,000
○	농업경영전문인력양성(2주, 선택학습)	40	명	72,000
○	현장실습교육(2~3일)	150	명	60,000
○	전문연수(2개월,10개월,2년)	64		307,100
-	전문연수(2개월)	40	명	80,000
-	농업문제해결(10개월)	15	명	135,000
-	농업컨설팅전문가(2년과정, 1년차)	5	명	52,500
-	농업컨설팅전문가(2년과정, 2년차)	4		39,600
○	경영자워크숍	40	명	24,000
○	변화관리리더	40	명	24,000
○	조직학습(도,시군)	39		234,900
-	조직학습(도)	9	명	112,500
-	조직학습(시군)	30	명	122,400

구분	사업명	사업량	단위	사업비(천원)
세세부 1-3-2.	지도공무원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2,548	명	625,000
세세부 1-3-3.	지도공무원글로벌역량향상	112		215,000
○	국제협력	11	명	31,400
○	팀제훈련	43	명	77,400
○	국제교류	44	명	79,200
○	국외기술지도	14	명	27,000
세부 1-4.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	312		618,000
세세부 1-4-1.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도)	9	개소	25,200
세세부 1-4-2.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시군)	140	개소	98,400
세세부 1-4-3.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도)	9	개소	32,400
세세부 1-4-4.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시군)	154	개소	462,000
내역 2.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	**6,132**		**3,953,000**
세부 2-1.	영농기초기술교육	5,252	명	1,313,000
세부 2-2.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730	명	2,190,000
세부 2-3.	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	150		450,000
내역 3.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200**		**400,000**
내역 4.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218**		**500,000**
세부 4-1.	4-H양성교육	17	개회	143,000
세부 4-2.	한국4-H도본부교육지원	9	개회	117,000
세부 4-3.	농촌지도자양성교육	160	개회	128,000
세부 4-4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양성교육	32	개회	112,000
내역 5.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40**	**개회**	**900,000**
내역 6.	**우리쌀이용가공기술교육**	**15,500**		**355,000**
세부 6-1.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3,500	명	175,000
세부 6-2.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12,000	명	180,000

<참고 4>

내역사업별 불용액 현황('18)

사업명	불용액(백만원)	비율(%)
합계	**797**	**100.0**
□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지방)	**428**	**53.7**
○ 농업기술전문교육	62	7.8
○ 농업인대학 운영	72	9.1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247	31.0
○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	47	5.9
□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	**230**	**28.9**
○ 영농정착기술교육	45	5.7
○ 현장실습교육	158	19.8
○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7	3.4
□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8**	**1.0**
○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8	1.0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	**1**	**0.1**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	1	0.1
□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23**	**2.9**
○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	23	2.9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지방)	**31**	**3.9**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지방)	31	3.9
□ 기타	**76**	**9.6**
○ 기타	76	9.6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촌진흥청
사 업 명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보조)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8.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9.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5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9.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본 사업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보조사업은 식물방역법 제1조(목적), 제31조(방제), 제31조의4(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등),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의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함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3개의 보조 내역사업 병해충 진단실(예찰포) 운영,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역사업은 식물방역법에 근거를 가져 연계성도 높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농작물의 병해충은 특정 지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협업이 중요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본 사업은 타당함.

○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농민이나, 병해충 예찰방제의 효과는 농작물의 유통·소비자 전체에 미치므로 2차적 수혜자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한 편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병해충 진단실(예찰포) 운영,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역사업은 병해충 예방과 관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으로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목표달성여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치를 달성하여 사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림축산업의 보호를 위한 검역과 병해충 예방사업의 민간대체는 불가능하며 유사 중복성 및 조정·통합 가능성은 낮음

○ 검역 및 해충의 효율적인 예찰·방제를 위한 수요가 존재하여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 지연 및 폐지 시 농작물 피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규모와 보조율 등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나 각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가급적 정확히 예측하여 병충해 예방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하여 기준보조율 (50%) 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병해충 방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지자체에 재원을 집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농촌지도사업관리시스템(ATIS) 활용하여 이력관리, 제도개선 등 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집행의 이상유무를 관리하며, 부당사유 발생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나 특정년도에 일부 미집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예상 병충해 미 발생으로 인한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향후 병충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종합적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농진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추진하였음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였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3년간 부정수급 발생 사례 없으며,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 통한 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

3-2 정책 제언

○ 세부사업의 수요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 불가피한 예산 미집행을 줄여 병충해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촌진흥청
사 업 명	농작업재해예방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본 사업은 정상추진함 · 사업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농작업재해예방에 대한 예방활동은 농업분야가 다소 낙후된 산업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산재에 대한 보험이 농업분야에서도 동일함. 재해방지는 개인들의 노력보다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 높음 · 사업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업의 규모가 소규모로서 농촌사업 지도 및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내역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을 구성해 체계화할 수 있겠음 · 향후 재해예방에 관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작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다수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함

○농촌진흥법 :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2017.1.1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6조(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2018.5.1.>
* 위임사항 : 통계자료 수집, 실태조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2017.10.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018.9.18.>
* 제3차 2015~2019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산업안전 / 농작업 안전 대책 수립·시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2018.3.20.>
* 2항2호 :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 내역사업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농작업재해예방 사업관리 운영이 있으며 법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으나 포괄적으로 본 내역사업의 내용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은 국가적 타당성이 있음

- 다른 분야의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험이 필요하며 농업의 경우도 산업안전을 유지하는 업무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함

- 산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시장보다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예방활동이 바람직함

○ 일단 본 사업의 수혜자는 농업종사자, 보조사업의 대상자에 한정되어 협소한 편임

- 유사한 산재보험이 다른 산업에 존재한다는 면에서 농업분야의 산재는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는 작목단위의 특화된 안전관리 맞춤지원으로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노력

- 농작업재해예방 사업관리운영은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 협업, 홍보 등의 활동
- 내역사업이 농작업 안전 모델에 근거하여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됨

○ 내역사업이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에 따라 위험요소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장별 전문가 컨설팅 등 재해방지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재해 안전에 대한 보험이나 개인들의 노력은 시장실패의 현상으로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부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조성과 홍보 등의 활동은 일부 필요하다고 봄

○ 유사중복성의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본 사업에 대한 사회적 니즈는 지속적으로 존재함. 재해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때까지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의 예산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보조사업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함

- 농업인 산재관리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점차 사업규모 줄여나가는 추세 바람직함. 일반산업 근로자 수준의 산재관리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업규모의 유지

○ 50%로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의 사례와 같음. 본 사업은 농업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서 50%의 보조율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봄

1-6 사회적가치 실현

○ 재해 안전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 따름

- 농촌진흥청, 도농원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고 있음
- 지자체 선정에 대한 절차 확인 필요

○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를 고려

- 사업신청, 선정 등의 단계에 단계별 지침을 구비하여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적절함

-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 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및 국고보조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진행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음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농작업재해예방에 대한 예방활동은 농업분야가 다소 낙후된 산업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재해방지는 개인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 높음
- 산업의 주체인 농업부문 경영자의 1차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3-2 정책 제언

○ 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사업의 규모가 소규모로서 농촌사업 지도 및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내역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을 구성해 체계화할 수 있겠음

○ 향후 재해예방에 관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효율화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율화 노력 필요

- 예방사업과 사후보장의 연계, 법적 관리 등의 정책 강화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촌진흥청
사 업 명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보조)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2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는 농업 정보 자료 조사 및 입력과 같은 필수 사업이 아닌 간접 사업으로 사업비의 **감축과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본 사업 내역사업인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는 정보화와 관련이 다소 부족한 행사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의 경우도 자료입력건수, 행사참가인원 등 산출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움 · 정보화 경진대회 중 정보화와 관련이 없는 식대, 학술행사, 홍보용품 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경진대회 시상금 및 우수사례 보급 교육에 예산을 사용하길 권고함 (2017년 예산기준 내역사업 정보화 경진대회 예산 175 백만원 중 식대, 학술행사, 홍보용품 등 행사성 예산 **54백만원 감축**) ·농업기술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 지표 개발과 관리가 필요함 ex) 농업정보자료 이용건수, 정보화 대회 참가자 매출 증가율 또는 만족도 등.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법적근거는 명확하고 관련 각 내역사업은 법령과의 연계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등에 직접적으로, 전자 정부법 제 16조와 65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에 간접적으로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는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지역농업정보화 확산을 통하여 농가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정보화와 관련이 관련이 다소 부족한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동 사업은 농업인 전반이 일차적 수혜자가 되고 간접적으로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등 국민 전체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지역특화 농업기술 인력지원 및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지원 사업 등을 내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각 내역사업의 내용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됨

- 다만 정보화 경진대회의 일부 사업내용이 정보화와 관련이 부족한 행사성 사업으로 구성 되었음

○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사업은 영농현장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통한 농가경영개선 지원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는 농업분야 ICT 활용 확산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동 사업은 농업기술 정보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자료입력건수, 지원인력 채용현황, 정보화 대회 개최현황은 산출지표로서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데이터 입력 및 관리의 단순 일자리의 질적 전환을 위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정보화 촉진은 국가적 및 지방적 관점에서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농업인 정보화 경진 대회의 일부 사업은 정보화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업 정보화 기술 제고라는 특화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중복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농업관련 DB의 양, 농업경진대회 참가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이 폐지될 경우 농업인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기회가 사라지고 관련 인력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정지원 규모(2015년 1,008백만원, 2016년 806백만원)는 사업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의 경우 정보화와 관련이 없는 일부 행사성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화와 관련된 시상과 우수사례 보급 및 교육 사업에 재정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부터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고보조 40%, 지자체 60%의 비율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정보지원 인력운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일부 기여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였음

○ 적정 절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농 촌 진 흥 청(종합계획수립)	
○ 시·도 희망량 파악 → 사업량 책정 및 예산편성 및 배정, 사업추진지침 시달, 평가	
도 농업기술원(사업조정)	
○ 시·군 희망량 파악 및 조정	○ 사업추진 진행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사업추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평가 및 홍보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체계 및 규정 등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다만, 지자체가 수행한 일부 사업의 미집행 불용 (1%)이 발생했으므로 지자체 예산집행 완료를 위해 적절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 측면에서 동 사업의 큰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알려진 부정수급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인 경진대회의 경우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절차마련과 사후관리가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에 대해 일부사업을 감축하고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3-2 정책 제언

○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의 경우 일부 행사성 사업을 감축하고 우수 정보화 사례의 발굴, 보급, 교육에 사업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함

- 학술대회 및 식대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국제산림협력공적개발원조(ODA)
목재생산및품질관리
산림경영계획작성
산림경영지도
산림교육치유활성화
산림복원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생활림및정원조성관리
임산물수출촉진
한국수목원관리원지원
한국임업진흥원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국제산림협력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6.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해당 사업은 감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정함 ·감축 규모는 사업의 성과와 집행 잔액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감축 수준은 2019년 예산의 20% 수준(2018년도 집행 잔액의 50% 수준)인 2억 원으로 함 ·해당 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고 관련한 법적 근거도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함 ·사업의 추진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역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고 또 집행 잔액의 규모도 보조금 전체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지원 기업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사업의 지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내역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제23조 등의 조항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

- 동법은 제23조 제1항은 “정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를 “1.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정함

- 또한 해당 업무의 위임과 경비에 관한 보조와 관련한 규정도 두고 있음

○ 동법의 시행령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의 경우 필요한 집행계획과 지급 기준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외산림자원 확보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은 국제적인 자원확보 경쟁의 환경에서 국가가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해당 사업이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음

○ 각 내역 사업의 수혜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과 관련 전공 학생 및 종사자임

- 구체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환경조사과 해외조림선진기지구축사업 1차적 수혜자는 기업이고 해외산림인턴의 1차적 수혜자는 산림전공 대학생(재·졸업생), 산림관련 종사자인데 이들이 입은 수혜가 국가적 차원에서 광범하게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측정하기가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인 해외산림개발 환경조사, 해외조림선진기지구축사업, 해외산림인턴은 사업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또한 그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각 내역 사업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추가 자료로 제출한 해외조림 누적면적 지표를 보면 2016년 이후 목표치의 수준이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는데 2017년의 경우는 목표의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6년과 2018년의 경우도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14	'15	'16	'17	'18	
해외조림 누적면적 (천ha)	목표	340	377	431	468	**477**	해외조림 누적 면적의 총합계
	실적	357	399	431	454	**481**	

- [첨부자료2]에서 제시된 해외인턴 실적도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연도	해외산림 인턴(명)	취업내역(명)			진학 (유학)	대학 재학	미취업
		계	산림분야	산림분야 외			
합 계	**219**	**127 (58%)**	**97 (44%)**	**30 (14%)**	**7**	**9**	**76**
2009	15	11 (73%)	9 (60%)	2 (13%)	2	0	2
2010	26	21 (81%)	19 (73%)	2 (8%)	1	0	4
2011	16	10 (63%)	9 (56%)	1 (7%)	3	0	3
2012	21	13 (62%)	10 (48%)	3 (14%)	1	3	4
2013	25	16 (64%)	14 (56%)	2 (8%)	0	2	7
2014	37	13 (35%)	12 (32%)	1 (3%)	0	0	24
2015	42	29 (69%)	16 (38%)	13 (31%)	0	1	12
2016	19	9 (47%)	6 (32%)	3 (15%)	0	1	9
2017	18	5(28%)	2(11%)	3(17%)	-	2	1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산림분야의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국격 제고, 해외산림자원의 확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배출권의 확보 추진 등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산림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와 같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 등 경제여건의 악화와 그로 인한 기업이나 관련 전공자 등의 사업 지원 동기 부여 상실의 문제는 해당 사업의 규모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요소인 것으로 판단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특히 해외산림인턴과 해외산림개발 환경조사 등의 내역 사업은 기준 보조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보조율을 산정한 것으로 평가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업 중 해외산림인턴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으나 파견 인턴 총 219명 중 127명이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제한적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내역 사업 중 해외조림선진기지구축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이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산림인턴과 해외산림개발 환경조사는 공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협력법> 시행령 제17조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기관 및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로 한국임업진흥원이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기본적으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집행 점검 등의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해외산림인턴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집행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2018년의 경우 예산액과 실집행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함

구분	합계	배정액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잔액
해외조림 선진기지구축	706	706	706	313	393
-민간경상	305	305	305	293	12
-민간자본	401	401	401	20	381
해외산림인턴 (민간경상)	286	286	286	273	13
해외산림자원개발 환경조사 (민간경상)	250	250	250	215	35

- 특히 해외조림선진기지구축 사업은 실집행잔액이 교부액의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내 수요 감소 등의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액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사후관리와 사업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및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음

-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통해 보조금 취소 여건을 보조사업자에게 공지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고 관련한 법적 근거도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사업의 추진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역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고 또 집행잔액의 규모도 보조금 전체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따라서 보조금액을 감축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방식의 변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3-2 정책 제언

○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이 국제적 자원 경쟁이라는 환경에서 지니는 의미와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파급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원 기업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사업의 지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내역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집행잔액의 발생 문제도 동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문제의 해결책도 같은 접근을 통해 찾을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국제산림협력공적개발원조(ODA)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해당 사업은 정상 추진 사업으로 평가함 ·해당 사업은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으며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음 ·국가 간의 신뢰 등의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무상원조계획 심의회에서 2021년까지 연 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심의·통과된 사업이라는 점도 인정됨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장기적 차원에서 현재 규모의 조림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막화방지 정도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향후의 평가 및 재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지니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의 시행령은 위 조항에 따른 보조가 가능한 사업으로 “황사·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조사사업”을 들고 있음

○ 또한 해당 사업의 공적개발원조 방식의 수행은 <산림기본법> 제9조와 제32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와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당 사업은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동북아에 가장 큰 환경 현안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황사 방지를 위해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해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부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됨

○ 또한 해당 사업은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58(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세부과제인 동북아 협력강화(58-5)의 이행과제로 지정되어 있음

-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사업수행자인 민간단체로 판단되나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는 외교적 차원,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가 대기질의 개선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예산설명서에서는 2018년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확대 실적으로 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구성과 목표와의 연계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2017년과 2018년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된 점은 확인됨

<2017년 계획 대비 실적>

구 분		계획량	수행량	시행률
작업별	묘목보호사장	96,000 m	96,000 m	100 %
	도로보호사장	156,000 m²	156,000 m²	100 %
	주작업 임도	1.3 km	1.3 km	100 %
	간이작업 임도	3.5 km	3.5 km	100 %
수종별	포플러	8,000 본	8,015 본	100 %
	사 류	312,000본	312,680 본	100 %
	혼합풀씨	150,000립	150,000립	100 %

<2018년 계획 대비 실적>

내역	구분	계획량	완성량	시행률
수종별	포플러나무	3,000 본	3,000 본	100 %
본수	사류	397,000본	397,000 본	100 %
사장설치	묘목보호사장	198,500 m	198,500 m	100 %
	도로보호사장	36,000 m²	36,000 m²	100 %
작업임도	주작업임도	1.3 km	1.3 km	100 %
	간이작업임도	4.0 km	4.0 km	100 %
풀씨파종	혼합풀씨	330 kg	330kg	100 %

○ 국정과제 사업이고 동시에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무상원조계획 심의회에서 2019~2021년까지 예산규모 연 5억 원으로 심의 통과된 사업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성과를 현재와 같이 투입 위주의 지표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예산설명서의 2017년 자료에 제시된 것과 같이 최소한 사막화방지 조림 활착률 정도의 지표로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당 사업의 목표나 성격을 감안하였을 때 현재와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다만 기초조사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국가는 종자돈 성격의 보조금을 투입함으로써 기업 및 NGO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면 향후의 성과지표로 국가 이외의 민간참여 수준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해당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에 있어 상호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재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됨

-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규모의 조림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막화방지 정도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9년을 기준으로 예산은 묘목 구입 및 식재비용 등 480백만 원, 활착률 조사 및 모니터링 등 20백만 원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수행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됨

- 다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한국임업진흥원의 해당 사업 수행을 위임한 것은 법률적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조항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 실제 사업수행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 공모를 통한 선정절차 등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집행점검을 명시하는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사업 집행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현지점검 제도 운영하여 연2회 현지점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의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평가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교부조건을 통하여 부정수급 관련 사항, 잔액 및 이자액에 대한 반납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한 사후 관리를 위한 절차를 적절히 갖추고 있음

-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를 보조사업자인 한국임업진흥원이 확정하였음

- 다만 정산확정 이외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사례는 없음

- 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점검은 조림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회계검사 등과는 거리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은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으며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음

- 국가 간의 신뢰 등의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무상원조계획 심의회에서 2021년까지 연 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심의·통과된 사업이라는 점도 인정됨

-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해당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3-2 정책 제언

○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장기적 차원에서 현재 규모의 조림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막화방지 정도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평가 및 재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사업
보조유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2.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9**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2.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불용은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함 본 사업은 사업의 법적 근거와 보조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높으며, 내역사업이 명확하고 사업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됨. 불용액 발생으로 2019년도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사업 전반에 적절하게 수행되어 정상추진으로 최종 판정함 · 본 사업의 특성상 재해 미발생으로 예산 불용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효과성에서 내역사업 중 목재품질관리는 보조금 비율이 높지 않지만 양질의 목재 품질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향후 관련 업체의 등록과 취소, 관리 등을 시군구 해당 담당자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등록이나 취소 여부가 사업성과의 간접적 지표가 될 수 있음으로 향후 내역사업의 국가 정책방향의 부합도, 보조사업의 수혜대상 범위나 외부효과 등에서 확장성 재고가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절성 영역 전반에서 보조금 지급 지침 외 사업관리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어 보조사업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4조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8조에 해당 보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의 내역사업별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있음. 긴급벌채의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법률 제23조에, 목재제품 품질관리의 목재이용법 제27조, 제38조에 각각 해당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 국정과제나 계획사업이지는 않으나 내역사업은 국가지원 여부의 필요성이 차이가 있음

- 긴급벌채 내역사업은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국가적 보조가 필요한 사업임

- 목재제품 품질관리 내역사업은 양질의 목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업체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조 사업으로의 타당성이 있음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은 수혜범위가 모호하나 연도별 등록 및 등록 취소업체들의 추이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범위 추산이 되는 것이 본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

- 긴급벌채의 수혜자와 수혜범위, 외부효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인적 수혜자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수혜범위로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어 사업 타당성이 충분함

- 목재제품 품질관리의 수혜범위를 제품 구매하는 국민 전체로 제시하고 있음이 인정되나 향후 직접적 수혜대상을 추산하는 재고가 요구됨. 또한 외부효과는 업체관리를 통해서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의 효과성 제시에 있어서 내역사업들이 전체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함

- 긴급벌채의 내역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 예방이나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 목재제품 관리 내역사업은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목재 제품 생산과 수입업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됨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의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에 목표 대비 실적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의 2017~2019년도 예산 설명서 및 추가 자료에서 품질단속건수 등의 실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단속건수의 비율 변화나 개선 조치 등을 향후 성과지표화 하는 바는 방안 고려 제안함.

- 긴급벌채의 경우 산불, 강풍, 설해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집행이 되었으며 2017, 2018년도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6년도는 재해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으로 전반적으로 계획대비 목표가 달성됨. 그러나 향후 재해 미발생시에 발생하는 불용액의 활용방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목재제품 품질관리 내역사업의 미등록업체의 전체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연도별 등록업체의 증가 추이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업의 향후 방향 등을 예측하여 목재의 생산과 수입관리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요구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은 시급성의 성격을 띠지 않지만 예비적 성격을 갖는 사업과 향후 지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임

- 내역사업 중 목재제품 품질관리는 보조사업의 예산 비중이 크지 않지만 해당업체 등록이나 취소, 중간 관리를 통해서 목재제품 생산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임

- 본 보조사업의 두 내역사업은 타 사업과의 사업 중복사성이나 유사성이 크지 않은 독자적인 사업임

- 내역사업 2가지 모두 사업의 긴급성이나 연장 필요성, 사업폐지시의 재정적 손실이나 문제점에 대한 근거가 제시하고 확인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2016-2018년도의 예산 집행과 불용액발생, 사업내용의 목적성 부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9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적절함

- 해당부처의 증액 요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 긴급벌채의 예산 증액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어야 하나 재정성과 평가보고서 및 첨부자료로 증액 요구의 타당성이 낮음
- 목재제품 품질관리사업의 경우 해당 등록업체의 증가가 예산 증액의 근거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음. 내역사업이 목재의 수출입 관련 관리가 목적인 점을 반영하는 재정 규모와 증액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국가보조가 100%인 사업으로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현재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이 산정됨

1-6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2와 9의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제시하였고 해당 내용이 직, 간접적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의 사업자선정에 대한 적절성은 산림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함

- 본 사업의 사업주체가 지자체 시군구 해당부서임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절성이 확보하고 있음
- 증빙자료들은 교부금 신청 및 집행한 자료에 해당하며 사업집행의 적절성에 있어서 지자체 해당 담당자가 업체의 지도, 감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확인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의 보조사업 집행의 관리, 감독계획, 단계 집행 점검 등 집행관리 체계 규정 역시 보조금 지급 관리 지침으로 마련하고 있음

- 목재제품 품질관리 보조 사업에서 매뉴얼을 개발하여 업무 지침에 따라 목재 생산업 등록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비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매뉴얼을 통해서 사업집행의 관리, 감독이나 점검에 대한 절차와 규정은 제시하고 있은 실제 점검 결과나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사업의 집행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집행 점검을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목재제품 관리 관계자 대상 교육이 보조사업 집행 적절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업무 매뉴얼 교육이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한 효율적 측면을 재고하여 매뉴얼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의 보조금 반환이나 중요재산 관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은 마련되어 있음

- 정산보고에 대한 규정과 실제 증빙자료는 제출하여 정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실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회계감사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평가하기 어려움. 만일 별도의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노력들도 필요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사업의 부정수급은 최근 3년간 발생하지 않았고, 지자체 직접사업으로 수행됨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음

-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감독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되어 있음
- 부정수급방지대책은 보조금 관리 지침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은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사업명과 내역사업내용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보조사업과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함
- 긴급벌채와 목재품질관리의 2개 내역사업이 상이하여 사업간 개연성은 낮으나 전체 사업과의 관련성이 높음
- 사업의 시의성과 연속성, 사업 종결 시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나 예방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업효과성에서 성과지표로 제시한 실적은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목재품질관리사업 전망을 예측하여 사업규모나 방향을 재고해야 함

- 사업의 수혜대상자 명시가 모호하고,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음으로 이를 반영하여 수혜자 확장성과 외부효과 등을 파악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사업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지침들이 산림청 소관의 국고보조금 기준에 준하고 있어 사업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현재 개발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별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필요함

- 내역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 긴급벌채사업은 재해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함으로 예비비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산림경영계획작성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해당 사업은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근거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방식변경을 통한 사업 성과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함 ·전기 평가의 결과와 지적 사항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 관리의 적정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음 ·기본적으로 산주의 책임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대해 보조금을 통한 지원과 세제를 통한 혜택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대한 산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비율을 재산정하고 수익자 부담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지원단가가 규정에 따른 작성대가기준의 29%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만 해당 사업이 현재의 방식으로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동시에 성과의 제고를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의무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사유림 소유자가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68조는 위 조항에 따른 사업비 보조 대상 산림 사업으로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을 포함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해당 사업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갖추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당 사업은 전체 산림의 64%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하여 조림·숲 가꾸기·목재생산·임도시설·소득사업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함

- 또한 해당 사업은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하나 사유림 경영의 영세성으로 계획적인 산림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도 판단함

○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기본적으로 산림경영자 혹은 산림소유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산림경영을 통한 파급효과는 국민 전체에게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1983년부터 35년 이상 시행된 해당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림경영 계획 수립율이 34.7%에 머무르고 있는 등 성과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인 사유림 소유자의 경영계획을 뚜렷한 성과 없이 35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의 단일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성과는 '사유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한 인가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해당 성과지표는 사업을 통한 파급 효과 등 산출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지원 실적을 평가하는 투입 지표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더구나 해당 사업의 실제 성과는 아래와 같이 목표치의 하향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4년	'15년	'16년	'17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ha)	사유림경영계획 작성 예산에 따른 계획물량	목표	84,473	101,300	75,395	75,395
		실적	92,668	101,651	62,591	83,681
		달성률 (%)	109.7	100.3	83.0	111.0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산림의 공익적 성격은 인정하나 사유림을 경영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영계획 작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부담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사유림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의 예산지원단가는 산림청장이 <산림자원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자(인부)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의 약 29%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35년 이상 동안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 기준으로 사유림경영계획 수립률이 34.7%에 불과한 것은 국가의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림 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함

○ 전기 평가에서 해당 사업은 사업방식변경 판정을 받으며 구체적으로 "산림청의 사유림경영활성화대책에 부합하여 국가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내로 사업지원대상의 변경이 필요 (현행 개별산주에 대한 지원방식은 폐지)"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러나 현재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에서 단서 조항으로 산주의 신청 등 사업량이 부족할 경우 경제림육성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산지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부처는 “우리나라 사유림 전체면적 425만ha 중 이미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사유림 면적 145만ha로 매년 재수립 시기가 돌아오는 약 145천ha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경제림 육성단지 내 수요가 부족할 경우 임업후계자 등 경제림육성단지 외의 산림에 대해 경영계획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함

- 그러나 산림청은 2018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시행 2018.1.1)하여 사유림 산주의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등 산주의 책임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대해 보조금을 통한 지원과 세제를 통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통한 합리적 경영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사유림을 경영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영계획 작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부담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지원단가가 규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의 약 29%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이를 통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물량을 산림소유자로부터 동의 및 요구를 받아 지방비 50% 부담을 전제로 사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추진의 기본적 절차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 결정, 교부 결정을 통지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현장 점검은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입력미흡, 산주 동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음

- 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 없이 현장점검이 민원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의 적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산림경영계획작성 종료 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해당지자체에서 실적보고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매년 2월경에 정산처리를 하여 미집행액 반납절차 이행 등 회계정산 제도를 구비하는 수준의 기본적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관련한 기본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규정, 지침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은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근거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진하며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이 자율성에 맡겨져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전기 평가의 결과와 지적 사항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 관리의 적정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음

3-2 정책 제언

○ 위의 여러 사항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 사업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산주의 책임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대해 보조금을 통한 지원과 세제를 통한 혜택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대한 산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비율을 재산정하고 수익자 부담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해당 사업이 1983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예산지원단가가 규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의 약 29%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단계에서 감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산림경영지도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2.5% 수준인 5억 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판정함 ·감축 규모는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2019년 예산이 대폭 증액한 산림조합특화사업의 2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경우 1개소 당 5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6개소에서 5개소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1978년부터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이 활동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산림경영지도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으며 현재의 인센티브나 관리체계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산림조합특화사업의 성과도 2015년 이후 하향하다가 2018년 다소 회복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보조금 감축 판정과 다른 차원에서 현재 수준의 부진한 사업 성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의 전반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선발 및 퇴출 기준의 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 가운데 산림경영지도 사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관련 규정과 '산림경영지도원 운용규정' 등에서 명시되어 있음

-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 중 산림조합특화사업 및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산림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임업을 선도하는 모델경영체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조합법>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짐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산림경영지도 사업의 목적은 선진 임업기술·지식·정보의 보급과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지도를 실시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임업인 소득 증대 도모하는 것으로 이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함

- 산림조함특화사업은 산림조합, 생산자단체, 임업인의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국산임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시스템 지원을 통하여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함

○ 해당 사업이 1978년 이후 4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조사업의 수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예산설명서를 통해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추가 자료를 통해 실적을 제시하고 있음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단위사업 성과지표와의 중복여부	목표대비 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①산림경영지도 만족도(점)	경영지도 고객만족도 점수	○	목표	신규	78.0	80.0	82.5
			실적	75.1	82.0	82.4	84.4
			달성률(%)	-	105.1	103	102.3

- 그러나 2018년 실시된 산림경영지도사업 평가에 의하면 산림경영지도사업 실적 평가 결과는 전국 평균 68.7점에 그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평가결과의 최저점수가 대부분 50점대에 머무르고 있음

<평가결과>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합수	20	15	10	16	13	22	24	20	2
순 위	5	7	4	2	3	9	8	6	1
평균점수	70.0	66.5	70.1	72.7	71.1	65.5	66.3	68.9	77.8
최 고	88.8	79.8	92.2	85.2	77.0	78.3	78.8	76.3	80.1
최 저	56.4	54.3	54.9	55.1	61.4	56.5	55.4	57.5	75.4

- 이 같이 부진한 사업 실적 평가 결과는 엄격한 평가 기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실적의 부진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반지도사업의 경우 산림경영지원시스템 활용(1인 평균 0.4회), 산림지 등 수기작성(1인 평균 0.0회), 지도원 직무교육(0.2건), 핵심지도대상 신규선정 인원 평균(1인 평균 0.6명), 산주/임업인 소득지원 사업(1인 평균 0.5건) 등 과정 및 산출지표 전반에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도 평균 점수는 성과지표 상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만족도가 일반지도사업과 전담지도사업 5점 만점에 1~2점대를 포함하여 3.5점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조합의 수가 각각 15곳과 11곳으로 나타나고 있음

- 40년 이상 지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산림경영지도와 경영지도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산주의 비중이 각각 5.4%와 7.67%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림경영전담지도와 경영지도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산주의 비중이 각각 3.58%와 4.98%로 나타나고 있음

○ 산림조합특화사업의 성과 역시 2015년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사업성과의 내실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균손익은 2012년 이후 성장 없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함

<산림조합특화사업 연도별 총매출액>

<산림조합특화사업 연도별 총 손익>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산림경영지도사업은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1978년 이후 시행되어 현실적으로 800명 이상의 산림경영지도원이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다른 정책수단의 가능성을 고려하기는 어려움

- 위의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의 지속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함

○ 산림조합특화사업의 경우 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 보조액이 300%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를 고려한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함

- 산림경영지도사업 역시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부진한 성과를 감안한 경영평가를 통한 퇴출 등의 방식으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보조율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나 산림규모, 인구분포 등을 고려할 때 활동중인 산림경영지도원의 지역적 분포 및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 2019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 상의 재정소요액 수준을 초과하여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18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18~'22 계획	18,724	19,386	21,300	21,300	21,300		
'19~'23 요구	18,724	21,386	21,810	22,110	22,389	22,579	
'19~'23 검토	18,724	21,386	21,810	22,110	22,389	22,579	
(전년대비 증감율)		(-)	(2.0)	(1.4)	(1.3)	(0.8)	1.4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임업인들의 임업활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직접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연간 소득증가율은 30%, 소득 증가액 평균 8백만원 등의 자료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과 공모절차 등에 의거하여 적정성이 인정됨

-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산림경영지도 점검(분기별), 경영실태 점검('18. 3), 결산보고서 점검('18. 3), 산림조합특화사업 성과 점검('18. 3),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산림경영지도사업 평가('18. 12), 보조금 집행 현지 실사('18. 3, 6, 11), 산림경영지도사업 내실화 방안마련('18. 12) 등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함

- 산림경영지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실태점검 계획 수립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 및 실행체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 실시하고, 1회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지침을 통하여 패널티 부여와 보조금 반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산림경영지도사업 평가의 결과 부진의 기준이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 성과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등의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감사권을 위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 사후관리 규정을 적절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사례는 없음

- e-나라도움 시스템 및 자체 점검계획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이행 추진하는 등의 부정수급 방지 제도와 회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한 구체적인 내부 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1978년부터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이 활동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사업관리 체계도 적절히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성과가 매우 부진한 산림경영지도원 혹은 지역 조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수준은 현재의 인센티브나 관리체계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함
- 산림조합특화사업의 성과도 2015년 이후 하향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8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등 안정적으로 성과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감축은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폭 증액된 산림조합특화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구체적 감축 규모는 산림조합특화사업의 20%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나 해당 사업이 1개소 당 5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2019년의 6개소에서 1개소 축소한 5개소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5억 원으로 정함

3-2 정책 제언

○ 평가를 통해 성과가 지극히 부진한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교육의 의무 이수와 이후 평가 개선 정도를 고려한 퇴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사업의 성과를 고려했을 때 사업 전체의 규모를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하기는 힘든 수준으로 판단하고 보조금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300% 증액된 산림조합특화사업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예산을 보수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감축 판정과 다른 차원에서 현재 수준의 부진한 사업 성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의 전반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선발 및 퇴출 기준의 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산림교육치유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1.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3.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6.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본 세부사업은 '감축('21년 750백만원)' 및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지자체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청소년 체험숲 조성'은 단기성 인프라 공급사업에 해당되어 '20년 준공 이후 '21년부터 예산을 감축함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내역사업은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산림레포츠대회 개최 등으로, 기존의 사업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부 지자체 혹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성격이 강함 - 특히, 산림레포츠 내역사업은 수혜자가 대회 참여자에 제한되고, 지자체 혹은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산림레포츠와 일부 중복성이 있는 반면,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및 산림문화전집 제작 등의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수행될 필요성이 있음 ·산림레포츠 관련 등록단체의 재정자립도(평균 12%)가 낮고, 지자체는 산악마라톤 등 특정 인기 레포츠 위주로 개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산림레포츠 종목 및 선수 발굴·육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개최하지 않는 취약한 레포츠 종목 위주로 국가에서 보조함이 타당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활성화, 청소년 체험숲 조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산림기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사업내용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법령 명 및 조항>

- 산림기본법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산림치유·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2개의 내역사업은 '산림기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각 조항에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청소년 체험숲 조성 내역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바람직하나,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내역사업은 본 세부사업 목적 달성과의 부합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 체험숲 조성 내역사업은 수혜자가 광범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내역사업은 수혜자가 대회 및 공모전 참여자 위주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청소년 체험숲 조성사업은 산림문화 수요 충족과 산림레포츠 체험·확산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목표와 어느 정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됨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는 '15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보조사업의 추진목표 대비 실적관리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의 효과도 세부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내역사업 중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사업은 수혜자가 대회 및 공모전 참여자 위주로 제한되고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대회와 일부 중복성이 있는 반면, 청소년 체험숲 조성 사업은 청소년에게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조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인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사업은 참여자 및 수혜자 범위, 내역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산림레포츠와 관련하여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와 일부 중복성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산림레포츠 종목 및 선수 발굴·육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타 세부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될 가능성은 낮음

○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내역사업은 수혜자의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추진이 시급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움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내역사업은 연간 390백만원(산림레포츠 150백만원, 산림문화작품 공모 240백만원)으로 재정지원규모는 '15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체험숲 조성 내역사업의 예산 16억원은 시설조성에 투자되는 비용임

○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내역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매년 사업의 내용 및 예산규모에 대해 기획재정부 심의 및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이 확정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사업인 청소년 체험숲 조성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부산시가 선정된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 내역사업인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공모 및 선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를 준수함

○ 내역사업인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교부, 집행, 점검, 실적보고, 정산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 시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며,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받아 보조금을 정산・확정・반환조치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후관리절차를 준수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추진이 필요하나,

○ 지자체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청소년 체험숲 조성' 및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내역사업은 '감축('21년 750백만원)' 및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지자체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청소년 체험숲 조성'은 단기성 인프라 공급사업에 해당되며,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내역사업은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산림레포츠대회 개최 등으로, 기존의 사업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부 지자체 혹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성격이 강함

- 특히, 산림레포츠 내역사업은 수혜자가 대회 참여자에 제한되고, 지자체 혹은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산림레포츠와 일부 중복성이 있는 반면,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및 산림문화전집 제작 등의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수행될 필요성이 있음

- 산림레포츠 관련 등록단체의 재정자립도(평균 12%)가 낮고, 지자체는 산악마라톤 등 특정 인기 레포츠 위주로 개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산림레포츠 종목 및 선수 발굴·육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개최하지 않는 취약한 레포츠 종목 위주로 국가에서 보조함이 타당함

3-2 정책 제언

○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활성화' 내역사업이 본 세부사업의 취지에 더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및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대회 및 공모전 조사를 수행하여 산림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중복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취약한 분야 위주로 보조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산림생물다양성증진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5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6.6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4.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7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1억, 2019년예산 기준 5%) 및 사업방식변경 ·협약사업은 사유림에 소액지원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10년 전 사업초기와 비교할 때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협약사업 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1억 감축(5%)으로 판정함.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높고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가지치기, 안내판설치, 데크조성 등)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고, 소수의 사유림 일반적 관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협약 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적정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산림자원법 42조에 의해 산림청장과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보호법 제10조에서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산림보호법 제10조>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면적·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4. 6. 3.>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탐방 및 안내 시설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 사업은 다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다수의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연구, 조사,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기본계획에 연구, 조사, 예방 등이 적시되어 있어 개별 내역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물의 조사·보호·증식 및 연구·개발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는 산림자원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각 시도에 국유림 뿐 아니라 사유림에 대해서도 이를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100대명산 폐기물처리 사업 중 실태조사의 국가책임성에 비해 처리사업은 시도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지원받은 곳의 지역주민이지만, 잠재적으로 전 국민이 간접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인 내역사업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산림토양산성화조사, 100대명산폐기물처리 사업, 기후변화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임,

-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 사업은 사유림인 산림유전자보호구역에 대한 보호관리 비용을 정부가 일정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으로 보아 전체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도가 낮음.

- 사유림 중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인데, 연간 사업량이 매우 작아 이 사업을 통해 사유림 산림유전자보호구역 관리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표. 협약사업 추진 현황

연도	사 업 내 용(나주)
2010	· 외과수술 3본, 가지치기 137본, 대나무 베기 0.72ha, 잡목제거 0.1ha · 데크시설 90m
2011	· 외과수술 4본, 가지치기 140본, 주변정비 3.5ha, 대나무 베기 0.15ha · 수목표찰 300본, RFID시스템 300개, 데크시설 65m
2012	· 외과수술 32본, 가지치기 250본, 주변정비 9.6ha, 대나무 베기 0.35ha · 수목표찰 135본, RFID시스템 315개, 데크시설 54m
2013	· 외과수술 30본, 가지치기 250본, 주변정비 5.7ha, 비자나무 식재 150 · 데크시설 25m, 수목표찰 250본, RFID 시스템 250개
2014	· 외과수술 21본, 가지치기 320본, 주변정비 4.9ha, · 데크시설 47m, 수목표찰 320본, RFID 시스템 320개
2015	· 외과수술 36본, 가지치기 340본, 주변정비 4.4ha · 수목표찰 340본, RFID 시스템 340개, 비자나무 식재 25본
2016	· 외과수술 37본, 가지치기 320본, 주변정비 0.3ha · 수목표찰 320본, RFID 시스템 320개, 비자나무 식재 36본
2017	· 외과수술 26본, 가지치기 320본, 주변정비 0.6ha · 수목표찰 320본, RFID 시스템 320개
2018	· 외과수술 32본, 가지치기 400본, 주변정비 0.39ha · 수목표찰 400본, 수관경합목 정리 64본, 데크보수 1식

연도	사 업 내 용(장흥)
2009	· 식생정리 및 경합목 제거 3.0ha, · 안내판 제작 1개
2010	· 기본계획 1식, 외과수술 22본 · 소형안내판 제작 1개소, 수목번호표 제작 184개
2011	· 수목관리시스템 1식 · 대나무제거 1.0ha, 하층식생정리 2.0ha
2012	· RFID태크설치 1식, 안내판 보수 2개 · 고사목 제거 및 가지치기 3.0ha, 외과수술 10본
2013	· RFID태크 부착 1식, 산책로 정비 3km · 경합목 및 방해목 제거 3ha
2014	· RFID태크 유지 및 보수 1식, 대나무 제거 3,600㎡ · 고사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 60본
2015	· RFID태크 유지 및 보수 1식, 조릿대제거 3,600㎡ · 가지치기 및 경합목 제거 59본, 외과수술 5.62ha
2016	· 후계림 조성 200본, 대나무 베기 2,000㎡ · 가지치기 및 경합목 제거 4.62ha
2017	· 산책로 정비 500m, 대나무류 제거작업 2,100㎡ · 가지치기 및 경쟁식생 제거 22본
2018	· 기본설계 1식 , 산책로 정비 560m · 식생정리 및 경합목 제거 4본, 1,900㎡, 조릿대 제거 11,000㎡

연도	사 업 내 용(문경)
2011	• 천연림보육 및 임내정리 8.0ha, 간벌 3.0ha, 수집3.0ha • 산림보호원 고용 2인
2012	• 천연림보육 및 임내정리 15.0ha, • 산림보호원 고용 2인
2013	• 천연림보육 및 임내정리 15.0ha • 산림보호원 고용 2인
2014	• 천연림보육 및 임내정리 9.0ha • 산림보호원 고용 2인
2015	• 천연림보육 및 임내정리 9.8ha • 산림보호원 고용 2인 • 안내간판 1식
2016	• 천연림보육 및 임내정리 6.8ha • 산림보호원 고용 2인 • 안내간판 1식
2017	• 천연림보육 및 임내정리 8.8ha • 산림보호원 고용 2인 • 안내간판 1식
2018	• 천연림보육 및 임내정리 17.8ha • 산림보호원 고용 2인 • 안내간판 1식

○ 개별 보호구역의 사업 추진이 매년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전남 장흥의 경우 매년 사업 추진에 있어 소유자(보림사)의 요구로 인해 사업 발주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하며 금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확인결과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회기내 사업완료 가능(2018.9월 기준)
▪ 사업 수행이 미진한 경남 지역에 대해 재 현장조사 및 지속적인 실적 확인 추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자체부담 확대, 자부담, 융자 모두 가능한 내용의 사업임.

○ 폐기물처리 사업의 경우 영농폐기물, 해양폐기물과 대상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중복 가능성이 없음.

○ 협약사업의 내용(가지치기, 안내판 정비 등)은 산림청 보조사업 중 숲가꾸기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성 있음.

○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인정됨(100대명산폐기물실태조사, 산림토양산성화조사, 기후변화취약산림식물종 적응사업).

○ 기 투입된 재정에 대한 재정적 손실이 없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2억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비용이 명확하지 않음.

○ 협약사업은 지난 10년간 계속 진행해 온 사업으로 현재 3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차별적 지원, 특성에 맞는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적정한 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부담, 자체 부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00대명산 폐기물처리사업 중 실태조사사업과 처리사업은 보조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처리사업의 경우 지자체 부담 확대 가능함.

- 광역 도 단위 재정자립도 기초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임.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가치 실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개별 지자체 선정 절차 및 공고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사업자 선정 판단이 어려움.

○ 수도권의 인구 비중 상 폐기물 처리가 시급한 지자체에 지원했다고 볼 수 있음.

- 100대명산 중 광역 시도별로 등반객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00대명산 폐기물 처리사업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7,115	1,031	1,551	1,696	1,709	1,128
실태조사	89	33	34	22	-	-
수거・처리 (직접) (보조)	7,026 (404) (6,622)	998 (58) (940)	1,517 (87) (1,430)	1,674 (96) (1,578)	1,709 (98) (1,611)	1,128 (65) (1,063)
대상 명산 개수 (시・도)	81	12 (서울.경기)	17 (강원)	19 (인천.대전. 세종.충북. 충남.전북)	20 (광주.전남. 대구.경북)	13 (부산.울산. 경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산림청 세부 지침이 규정되어 있고, 협약사업 지침,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 지침을 통해 집행이 규정되어 있음.

○ 일부 사업에 관해 사업지 점검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산림청 세부 지침이 규정되어 있고, 개별 내역사업에 대해 관리지침이 적정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자체 자본, 경상보조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산림청 세부 지침이 규정되어 있고, 개별내역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관련 규정이 적시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협약사업의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10년 전 사업초기에 비해 국가보조의 타당성인 낮아진 바 협약사업을 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1억 원(4.5%) 감축으로 판정함.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높고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고, 소수의 사유림 일반적 관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3-2 정책 제언

○ 개별 보조사업 사업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유림 유전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정부 보조지원 수요, 100대 명산 폐기물사업에 대한 수요를 감안한 보조사업 계획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생활림 및 정원 조성관리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5.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4.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4.7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2.1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생활림 및 정원조성관리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 변경에 따라, 내역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목적이 변경될 필요가 있음 ·'무궁화동산조성 사업'은 전국 무궁화 확대 보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됨 ·다만 '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은 '순천만국가정원'이 이미 조성완료된 상태이나 적자운영상태이므로, 국가지원은 지속하되, 1)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2) 적자해소방안 등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예를 들어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제도 도입, 입장료 및 관람차 요금 인상, 유료 입장객 확대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생활림 및 정원 조성관리 사업은「산림기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둠

- '무궁화동산조성' 사업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에 사업시행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64조(자금지원)에 의해 재정지원 근거를 둠
- '국가정원관리' 사업은「「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국가정원의 지정 등)제18조의2 1항과 2항에 사업시행과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강제규정은 아님

「산림기본법」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생활림의 개념: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생활림 및 정원조성관리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은 아니나, 국정과제와 연계됨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12-4 산림부국실현(도시숲 확충 등으로 산림가치 극대화)

- 기초보고서 상 세부사업 목적은 '도시화에 따른 생활권 녹색공간의 확보와 미세먼지저감, 도시열섬화현상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명기되었으나, 이는 세부사업 '생활림조성사업'(※ 세부사업명 변경:'19년 '생활림 조성관리'→ '생활림 및 정원조성관리')의 목적으로 판단됨. 따라서 세부사업명의 변경에 따라, 내역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목적 역시 변경하여야 함
  - 무궁화동산조성 사업의 목적: 국가상징인 아름다운 나라꽃 무궁화를 생활권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 나라꽃을 보전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기여
  - 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의 목적: 국가정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정원의 품질을 유지·개선하여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정원문화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사업대상지 주민들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 민간단체, 방문객임.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는 있으나, 외부효과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음

- 국가정원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보고가 있음(일자리 제공, 관광객 증가 등)

※ 국가정원 방문객 수(만명) : ('16) 543 → ('17) 612

※ 국가정원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연간 4100억원으로서 일자리 250여개와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전남 CBS, 2018.4.1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성과관리체계, 성과지표 및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사업효과성 검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내역사업 '무궁화동산조성 사업' 관련지표인 '무궁화동산 조성 면적(ha)'으로 2017년과 2018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함. 다만 '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성과지표가 없음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15	'16	'17	'18	
무궁화동산 조성 면적(ha)	목표	-	(신규)	8.0	10.0	무궁화동산 조성면적
	실적	6.9	10.2	9.6	10.0	

- 사업효과로 제시된 '생활림 조성관리 확대 효과' 관련자료를 보면, 도시숲 조성을 통한 생활개선 효과(미세먼지 저감, 기후완화, 소음감소 등) 및 생활권내 쾌적한 도시녹색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는 인정되나, 국가정원관리 사업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음

○ 2019년 생활림 및 정원조성 관리사업(前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은 '무궁화동산조성 사업'와 '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의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 변경에 따라, 내역사업 '국유지도시숲 조성관리' 가 타 사업으로 이관되어 '무궁화동산조성'만이 남게 됨에 따라, 세부사업의 명칭 및 목적과 달리 사업내용이 생활림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세부사업 운영 소관 국 변경: '17년 산림자원국→산림복지국

※ 내역사업구성 변경:'19년 운영 소관 국 변경으로 '국유지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되고, '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이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사업에 본 세부사업으로 이관

※ 세부사업명 변경:'19년 '생활림 조성관리'→ '생활림 및 정원조성관리'

○ 생활림조성관리사업은 2017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우수'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의 생활림 및 정원조성관리사업과 내역사업구성이 상이하여 평가결과를 승계할 수 없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무궁화동산조성 사업'의 경우, 무궁화는 국가상징(나라꽃)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보급할 의무가 있으며, 전국 무궁화 확대 보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됨

○ '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은 1)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2)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이 유일하고, 3) 이미 조성은 완료된 상태로 최근 3년간 유지관리비용(화훼연출사업, 기반, 조경시설물 등 매년 발생하는 보수 및 리뉴얼)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다만 아직까지 적자운영 상태이고, 정원이 단순 시설사업이 아닌 수목과 화훼를 기반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성장시키는 정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지원은 필요하나, 적자해소방안 등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제도 도입, 입장료 및 관람차 요금 인상, 유료 입장객 확대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검토

○ 2016년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270백만원 감축을 이행함

<보조사업 최종판정 결과>
대규모 도시림사업은 지자체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되 소규모 생활림사업은 해당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무궁화동산 관리사업(2억7천만원) 즉시폐지

<부처 조치결과>
지자체 실행 무궁화동산 관리 예산 270백만원 폐지

○ 사업의 유사·중복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상징(나라꽃)으로서의 무궁화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은 산림청만 추진하고 있는 고유사업임
- 국가정원은 산림청만 추진하고 있는 고유사업임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이 야기되지는 않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7년 7,361백만원, 2018년 4,685백만원, 2019년 7,065백만원으로 내역사업 이관 등의 이유로 매년 큰 폭의 증감이 나타남

- 실집행율을 보면 무궁화동산조성관리 사업은 최근 3년 평균 96.6%, 국가정원조성관리 사업은 92.4%로 미집행분이 많음

※ 무궁화동산조성관리: '16년 93.0%, '17년 98.1%, '18년 98.7%(낙찰차액)

※ 국가정원조성관리: '16년 100.0%, '17년 95.2%, '18년 81.9%(미집행)

연도	'16			'17			'18			불용사유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1,020	948	72	750	736	14	750	740 (잠정)	10	낙찰 잔액
국가정원 운영관리	3,600	3,600	-	4,500	4,283	112(이월) 105(불용)	4,112	3,367	745(이월) -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지침으로 기준보조율을 규정함

- 보조금의 구성은 보조금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을 적절히 준수하여 국유지에 국가 직접은 국비 100%, 지자체 보조율은 기준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을 배분

- 무궁화동산 조성·관리는 국가상징인 나라꽃 무궁화를 확대·보전할 의무가 있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배분
- 국가정원사업은 보조율의 산정 기준이 없어 유사사례 비교를 통해 보조율을 산정

면적	30~60ha	60~90ha	90ha 이상
국비보조액	20억원	30억원	40억원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④ 일자리 창출,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정원 서비스(무료입장), ⑩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생활권에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무)에 기여함이 부분적으로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법적으로 적합하고 지방비 확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조사업 선정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여 추친

○ 보조금집행지침에 따라 적정사업지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할 타당성 심사결과를 제출받고 추진계획 및 실적 관리를 통한 사업 모니터링 실행

○ 관련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계획, 집행점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의 무궁화 식재·관리에 대해 법률 마련 및 무궁화 진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의 관리체계는「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5항(2015.7.20.신설)에 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문제성이 있을 경우 개선조치 실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무궁화동산조성사업과 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 모두 사업단계에서부터 전산시스템(d-brain)으로 예산 확인

○ 관련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시스템(d-brain)으로 보조금 집행사항, 집행잔액, 이자액 반납, 조성결과 보고(연보)로 적정히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사항, 집행잔액, 이자액에 대한 반납 등 처리

○ 관련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반환 및 자금지원 제한 규정 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사후 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으로 정산 처리를 실행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생활림 및 정원 조성관리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사업대상지 주민들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 민간단체, 방문객임.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는 있으나, 명확한 외부효과 입증자료는 없음. 다만 국정과제와 연관되며, 사업내용이나 성격상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 변경에 따라, 내역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목적이 변경될 필요가 있음

○ '무궁화동산조성 사업'은 전국 무궁화 확대 보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됨

○ '국가정원 운영관리 사업'은 1)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2)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은 이미 조성 완료된 상태로 최근 3년간 유지관리비용(화훼연출사업, 기반, 조경시설물 등 매년 발생하는 보수 및 리뉴얼)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다만 아직까지 적자운영 상태이고, 정원이 단순 시설사업이 아닌 수목과 화훼를 기반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성장시키는 정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지원은 필요하나, 적자해소방안 등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예를 들어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제도 도입, 입장료 및 관람차 요금 인상, 유료 입장객 확대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 2016년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270백만원 감축을 이행함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실제수행 내용자료를 확인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산림복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8**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세부사업은 '정상 추진'이 필요함 ·사업내용 및 성과관리가 양호하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됨 –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에 기반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역사업별 성과관리 및 예산 집행률이 양호함 ·'14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이후에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19년부터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예산배분을 차등화하고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방식을 개선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백두대간·DMZ일원 등을 중심으로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지역주민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사방사업법'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 사방사업법

>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 라. 산지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본 세부사업은 백두대간 산림복원 및 보호활동, 백두대간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사방사업법'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 81-4번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높으며,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18.3)의 '사회적 가치 중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실현'에도 부합하므로 지방보다 국가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높음

- 백두대간 등 산림은 지자체 및 민간의 소유물이 아니며, 국가 차원의 공공재적 성격이며, 국토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본 세부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 직·간접적 수혜자로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의 주요 내용은 산림생태복원, 가리왕산 재해관리,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대규모 산림복원, 백두대간 모니터링, 백두대간 보호활동,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주민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본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산림생태계 복원면적, 복원식생의 생존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이 목표를 상회하고 있음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① 산림생태계 복원면적 (ha)	**목표**	-	(신규)	43.3	복원면적	산림복원 결과보고서
	실적	-	-	집계중		
② 산림생태계 복원율 (%)	목표	(신규)	70.1	-	누적 복원면적 / 복원목표면적(665ha) × 100	산림복원 결과보고서
	실적	-	71.0	-		
③ 한반도 핵심 생태계 복원율(%)	**목표**	41.8	-	-	백두대간·DMZ일원 등 누적 복원면적 / 복원목표면적(709ha) × 100	산림복원 결과보고서
	실적	58.9	-	-		
④ 복원식생의 생존율 (%)	**목표**	92.5	93.0	94.6	복원식생 생존본수 / 식재본수 × 100	산림복원 결과보고서
	실적	92.8	97.9	집계중		
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용자 수 (명)	**목표**	(신규)	46,237	50,939	생태교육장 이용자수	생태교육장 이용자수 결과보고서
	실적	42,034	46,308	집계중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세부사업은 국토 전반에 위치한 백두대간 보호사업으로 지자체나 민간이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됨이 타당함

○ 본 세부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없음

○ 본 세부사업은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지원이 시급한 사업이며, 중장기 계획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 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수립한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복원 계획('13년, '19년) 중 산림청은 25개소에 대해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지속 추진 필요(현재 복원실적은 10개소 수준임)

- 백두대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추정액은 54,088억원/년(B*4.3%), 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면적(A)은 4.3%(275천ha/6,335천ha), 산림의 공익적 가치(B)는 1,257,860억원/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득감소분 지원, 보호활동, 산림복원 등 사업내용별 재정지원 규모는 사업 추진효과, 보호 대상 산림면적의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최근 4년간의 예산집행률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백두대간 주민지원 : 백두대간 주민지원 대상 시·군의 '05년 대비 '17년 임산물생산액 증가율은 159%로 비지원 시·군 △19%의 약 9.4배에 해당됨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 지원 대상 산림면적은 13,493ha('15년 기준)이나 예산확보 산림면적은 1,027ha 수준임
- 백두대간 보호활동 :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의한 혜택 추정치는 54,088억원 수준인 반면, 백두대간 보호사업비 평균 사업비('16~'18, 행정비용 제외)는 4,301백만원/년 수준임
- 산림복원사업 : 산사태, 산불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훼손면적이 매년 증가함(훼손면적 : 80년대(8,221ha) → 90년대(10,211ha) → 00년대(13,717ha))

○ 본 세부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사업, 산림복원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기준 보조율 : 백두대간 주민지원(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국고 100%), 백두대간 보호활동(국고 100%), 산림생태복원(국고 70%, 지방비 30%), 대규모 산림복원(국고 70%, 지방비 30%),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국고 70%, 지방비 30%)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세부사업은 백두대간 훼손 방지를 통하여 매년 54,088억원/년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함으로써 1ha당 매년 공익가치(대기정화, 산림경관, 산림휴양, 생물다양성, 산림동물보호,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가 14.7백만원 발생하여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소득감소분 지원사업, 산림복원사업 등은 사업 추진여건을 검토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절차

공고 및 안내 (시·군)	→	신청서 접수 (시·군)	→	사업성 검토 (시·군)	→	공개심의 선정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 산림복원을 위한 사업은 사업시행 전년도에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과 비용부담능력, 사업추진의지, 사업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매년 결산분석 및 사업수요 파악을 통해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및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등의 절차를 준수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현장점검하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및 현장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계별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및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7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8장(보조사업 사후관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으로 통지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및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실적 보고 및 정산, 현장점검 등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건이 있음(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중 보조금 수급을 위한 위장 전입에 대해 보조금 환수 완료)

○ 자체 연도별 사업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정산까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인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세부 내역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차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감안할 때 향후 정상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에 기반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함
- 내역사업별 성과관리 및 예산 집행률이 양호하여 정상 추진함
- '14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이후에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함
- '19년부터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예산배분을 차등화하고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방식을 변경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임산물수출촉진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5.6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5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임산물수출촉진 사업은 사업방식의 변경이 요구됨 ·동 사업은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 유기적으로 설정되어있음 ·'수출활성화' 사업의 경우 일부 내내역사업은 사업내용 면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매촉진비(물류비), 위생검사비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예산을 단계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출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자포기 등의 이유로 실집행율이 낮아(2016년 29.5%, 2018년 25.1%), 2019년 예산규모 및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바 있어,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감축은 부적절하나,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임산물수출촉진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와 동법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강제규정이 아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임산물수출촉진 사업의 목적은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해외 홍보로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 동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과 연관되지 않으나, 국정과제와 연계되어있음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81-4

○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임산물 수출업체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수출업체와 연결된 생산자 및 유통업체 등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넓지 않음. 임산물수출촉진을 통해 임가소득이 증가한 부분은 인정되나 그 범위가 넓지 않아,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 없음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수출기반구축', '해외시장개척', '수출활성화'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 유기적으로 설정되어있음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내용
수출기반구축 (*목표: 수출을 견인할 핵심조직 육성)	수출특화지역 육성	임산물 주산지에 자동선별장비,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수출 공동 시설·장비 조성(수출일관시스템)
	품목별 수출협의회 육성	수출업체간 정보교류, 수출질서 확립 및 해외 공동마케팅 추진(총 9개 수출협의회)
	수출선도조직 육성	규모화된 수출업체를 수출선도조직으로 집중육성(3년 이상)
해외시장개척 (*목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다각적 홍보·마케팅 추진)	국제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바이어 상담, 소비자 홍보·반응조사 기회 제공
	해외 판촉홍보	주요 유통매장에서 해외 소비자 시식 등 판매촉진 지원
	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 유망바이어 초청, 수출업체에 상담 주선
	해외안테나숍 운영	해외유망시장 내 홍보, 시장조사를 위해 판매점 운영
수출활성화 (*목표: 수출여건을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판매촉진비	수출 물류비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국 기호에 적합한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생산이력관리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생산이력관리비 지원
	해외인증	할랄, 글로벌 GAP 등 해외 인증비 지원
	위생검사	잔류농약, 식품위생 검사비 등 지원
	수출용 기계장비	품질관리 및 가공용 장비 지원

○ 성과지표, 성과관리체계 및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출액 증가 등 일부 사업효과가 인정됨

- 성과지표는 '단기임산물 수출액(~'17년)'과 '수출지원 임산물 수출액('18년~)'으로, 2015~2017년 성과지표인 '단기임산물 수출액' 지표는 3년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2018년 성과지표를 '수출지원 임산물 수출액'으로 변경한 후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함

※ '16년 국정감사: 무역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목재가공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8년 성과지표에 단기임산물 뿐만 아니라 '목재류'도 포함한 지표로 변경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구분	'15	'16	'17	
단기임산물 수출액(백만$)	목표	65	68	56.3	HS코드 기준 수혜 대상 단기임산물의 수출액 * 주력품목(새털제외) 수출액
	실적	54	53.6	55.3	
	달성률(%)	83.1	79.4	98.2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구분	'15	'16	'17	'18	
수출지원 임산물 수출액(백만$)	목표	-	-	(신규)	277	HS코드 기준 수출지원 임산물의 수출액 * 목재류 및 단기임산물(새털 제외)
	실적	225	239	264	302	

- 임산물 수출액은 최근 3년간(2015-2017) 13.2% 증가하였고, 주요 단기임산물 수출액은 2.4% 증가함. 2018년도 수출액은 5.2억 달러로, 목표액인 5억 달러를 초과달성함

※ 임산물 수출 중장기 목표
: '18년 5억$ → '22년 5.8억$→ '37년 12억$

(성과관리체계)

- 각 내역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사업별 사업 성과관리 체계는 없으나, 내역사업별 실적과 성과가 인정됨

연도	사업실적
2016	판매촉진비(15품목, 89업체), 수출촉진검역비(353톤), 수출이력관리비(218임가), 박람회(홍보관 4회, 개별박람회 4회 지원), 시장조사단(7회), 판촉전(10회, 미국6, 일본1, 대만1, 베트남1, 중국1, 홍콩1), 수출선도조직(1품목, 2조직), 마켓테스트(9회), 해외정보조사(심층테마조사 6종, 목재류 조사 12회 등), 해외바이어초청(수시바이어 초청 12회), 수출용 홍보물 제작 등
2017	판매촉진비(26품목, 66업체), 수출촉진검역비(160톤), 수출이력관리비(139임가), 박람회(홍보관 4회, 개별박람회 8개 업체 지원), 판촉전(14개 업체, 7개 국가), 수출선도조직(1품목, 2조직), 마켓테스트(6회), 해외정보조사(심층조사 3종, 해외시장 맞춤조사 12회), 해외바이어초청(수시바이어 초청 6회 등), 수출상품화(10개 업체, 6품목 지원) 등
2018	판매촉진비(31품목, 71업체), 수출촉진검역비(277톤), 수출이력관리비(264임가), 박람회(홍보관 3회, 개별박람회 7개 업체 지원), 판촉전(28회), 수출선도조직(2품목, 2조직), 해외정보조사(심층조사 3종, 해외시장 맞춤조사 5회), 해외바이어초청(24회), 수출상품화(9개 업체, 7품목 지원) 등

: 내역사업별 사업성과 사례

내역사업	주요 성과 사례
수출기반구축	* 수출특화지역 수출현황: '13년 18→ '15년 171→ '17년 2,465천$ * 수출선도조직 수출현황: '16년 3,347→ '17년 4,701→ '18년 4,776천$
해외시장개척	* 곶감류 수출현황: '14년 529→ '16년 1,609→ '18년 3,696천$ * 베트남 곶감류 수출현황: '13년 0→ '16년 533→ '18년 1,053천$ * 조경수·분재 수출현황: '15년 470→ '16년 2,574→ '17년) 1,415→ '18년 1,862천$
수출활성화	* 수출임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15년 해외인증·수출보험비 신규 지원 및 이력관리비 대상품목 확대(밤→표고·감 추가) '16년부터 식품위생검사비 신규 지원 * 판매촉진비 지원 : '14년 17억→ '15년 19억→ '16년 18억→ '17년 18억원 * 이력관리비 지원 : '14년 173임가→ '15년 285임가(대상품목 확대, 표고·감 추가)→ '16년 218임가→ '17년 139임가 * 해외인증 지원 : '15년 5건(신규 지원 시작) → '16년 10건→ '17년 10건

- 동 사업은 2017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음

※ '15~16년 평가결과는 '보통', '17년 평가결과는 '미흡'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임산물 수출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시행해야할 사업이기는 하나 산림의 공익성과 민간역량이 아직 높지 않은 점,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내역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사업 필요성이 상이한데, 인프라구축 성격의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나, '수출활성화'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판매촉진비(물류비), 위생검사비 등의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예산을 수출경쟁력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사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사업(박람회, 해외판촉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 수출바우처 지원,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 등)이 있음

- 농림추간식품부와 해외시장개척 분야의 협업체계를 기 구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내역사업 중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활성화의 경우 긴밀한 협업 체계가 필요함(국제박람회, 홍보관, 해외판촉홍보, 바이어초청, 해외안테나숍)

※ '16년 국정감사(산림청 국정감사) : 임산물 수출촉진 해외안테나숍, 연계·단일화 필요.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이 크지 않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6년 72억원, 2017년 67억원, 2018년 68억원, 2019년 60억원으로 3개 내역사업에 각 20억원 내외를 책정

○ 실집행율은 내역사업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인프라구축 사업에 해당되는 '수출기반구축' 사업의 2016년 29.5%, 2018년 31.6%로 매우 낮아 사업성과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불용 사유 : 수출기반구축 내 세부사업인 '수출특화지역' 사업자 포기로 불용 발생

- 이에 따라 부처에서는 2019년부터 수출특화지역 사업규모를 축소하고(2개소/년 → 1개소/년),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강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역사업 '수출기반강화' 사업 중 '수출특화지역 육성'의 예산을 2017-2018년 2,000백만원에서, 2019년 1,000백만으로 50% 감액함. 또한 수출특화지역 목표 10개 중 8개가 완공 또는 추진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감액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단위: 백만원, %

구분	구분	현액(A)	집행(B)	이월	불용	집행률(B/A)
2016년	계	6,700	5,092	1,000	608	76.0
	수출기반구축	2,270	670	1,000	600	**29.5**
	해외시장개척	1,890	1,884	-	6	99.7
	수출활성화	2,540	2,538	-	2	99.9
2017년	계	6,677	6,553	-	124	98.1
	수출기반구축	2,670	2,653	-	17	99.4
	해외시장개척	1,535	1,431	-	104	93.2
	수출활성화	2,472	2,469	-	3	99.9
2018년	계	6,677	4,733	1,827	117	70.9
	수출기반구축	2,670	843	1,827	-	**31.6**
	해외시장개척	1,535	1,440	-	95	93.8
	수출활성화	2,472	2,450	-	22	99.1
계		20,054	16,378	2,827	849	81.7

○ 2016년 보조사업평가 최종판정 결과를 이행함

[2016년 보조사업평가 최종 판정결과]

시장개척단과 같은 인프라 성격이 없는 내역 보조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식품 위생 및 관련 연구개발 등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처 조치사항]

· '17년부터 시장개척단 사업 폐지 및 사업간 조정 (5.7% 예산 감축)
· 식품위생검사비 지원 범위 확대
'16년 식품위생검사, 잔류농약검사 → '17년 영양성분검사, 중금속검사 추가
· R&D 연구를 통해 수출용 임산물 저장·유통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강화
「중국 등 FTA 확대에 대응한 임산물 고부가 수출전략상품개발」('14~'17, 한식연)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국내 수출업체 대상 수출지원 보조율 지급 형평성을 위해 농림부, 해수부 등 유관기관의 수출 보조율을 고려하여 산정)

※ 지자체사업인 '수출특화지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53항에 따라 국고보조율 50% 적용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함이 인정됨

- 수출로 유발되는 일자리는 수출 10억원당 7.7명으로(통화신용정책보고서 '17.7) '17년 기준 임산물 수출로 인해 유발된 일자리는 3,773명임('17년 임산물 수출액은 434백만$, 약 4900억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사업과 민간사업 모두 보조사업자 선정시 적정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특화지역은 지자체 매칭 사업(50:20:30)으로 선정·평가시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 적정성, 사업추진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공모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 의견 검토서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항에 따른 교부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연 2회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있음

- 임산물수출 보조사업자는 임산물 수출 등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객관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근거로 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을 수행기관으로 정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항에 따른 교부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항에 따른 교부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리

○ 지원 보조금의 반납조치 및 지원대상 제외 등 제재사항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과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추진계획에 규정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를 준용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항에 따른 교부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수출특화지역 시설 관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시설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2015.12.29)

○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에 의거 연 2회 전수 조사하여 관리 감독하고,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적정성을 점검

※ 조합 등과 중앙회에 대한 감사: 「산림조합법」 제123조(감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 위반시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본 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이 수행되는지 여부를 파악(상·하반기)

○ 유관기관 및 지자체, 수출업체 등과 수출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과정을 피드백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보조금이 고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임산물수출촉진 사업의 목적은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해외 홍보로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하고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있음.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연관규정을 찾을 수 있으나, 재정적 지원은 강제규정이 아님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임산물 수출업체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수출업체와 연결된 생산자 및 유통업체 등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넓지 않고,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 없음

○ 동 사업은 '수출기반구축', '해외시장개척', '수출활성화'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 유기적으로 설정되어있음

○ 임산물수출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시행해야할 사업이기는 하나 산림의 공익성, 민간역량부족 등을 감안할 때 인프라구축 성격의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수출활성화' 사업의 경우 일부 내내역사업은 사업내용 면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매촉진비(물류비), 위생검사비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예산을 단계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사업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한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성 배가 노력이 필요함(특히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수출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자포기 등의 이유로 실집행율이 매우 낮아(2016년 29.5%, 2018년 25.1%), 2019년 예산규모 및 사업규모를 이미 대폭 축소한 바 있어, 추가적인 감축은 현재 시점에서 불필요하나, 철저한 사업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한국수목원관리원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4.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개원 초기이고(2018년 개원), 세종수목원이 2020년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 다소 이른 시점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비중, 자체수입(연구용역, 교육사업 등) 비중 등을 조정하는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현재 백두대간수목원에 대한 기능 및 효과가 불확실하고, 입지조건을 고려하면 예산 운용 효율성을 위해 감축이 필요하지만, 2018년 대비 2019년 30억 자체수입 부분이 기 반영되어 예산 감축분 30억이 2020년에도 예상됨. ·즉, 2020년 예산감축 30억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현재 입지여건, 2018년 성과를 고려할 때 단기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추가 감축하지 않음. ·연구용역, 교육사업, 관람객 수 증가를 위한 주변 학교 등의 단체 홍보 등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3에 의해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원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8조의13, 16>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13(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8조의16(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 이 사업은 한국수목원관리원지원 단독 내역사업으로 내역사업의 근거 또한 명확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 사업은 법률에 의해 국립수목원(광릉) 이외에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하여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원이 타당하고, 국정 과제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함.

-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대경권 사업으로 채택되어 2015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되었고, 이를 관리하는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지원하는 내용임.

- 향후 국립세종수목원(2020), 국립새만금수목원(2026) 등의 수목원도 운영·관리 계획이 있음.

○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립수목원 이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의 국가의 역할이 인정되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원에 대한 지원 역시 사업초기라는 점에서 보조 100%가 타당함.

- 자체사업 확대 등 자체 역할이 장기적으로 필요함.

○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지원받은 곳의 지역주민이지만, 잠재적으로 전 국민이 간접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이 사업의 목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지속적·체계적 유지 관리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내용으로 보기에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움.

- 215억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97억 원(관리원운영비 포함)임.

-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인지, 인력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목표인지 명확하지 않음.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17년 개원 이후 18년 방문객 수가 불과 8만 명 증가하였음. 19년 목표 방문객 수 70만명이 적정사업량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Seed Vault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및 성과지표가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현재 한국수목원관리원의 특성 상 연구개발 역할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자체 수익사업 확대가 가능함.

○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목원이 이미 개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국가별로 비교할 때 수목원 확대 필요성이 인정됨.

- 국립수목원(2), 공립수목원(29), 사립수목원(24), 학교수목원(3) 등 수목원 전체 현황으로 미루어 보아 국립수목원의 추가 설립이 다소 필요함.

표. 국가별 수목원 수준 비교

구분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수목원 수	58	202	914	96
인구수(천명)	51635	68800	332667	66673
수목원당 인구비(천명)	890	341	364	698

○ 기 투입된 재정에 대한 재정적 손실이 다소 있음.

- 국가 지원이 중단 될 경우 국립수목원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 투입된 재정에 대한 손실로 연계될 수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량 및 사업목표 대비 다소 큰 편임.

- 인건비 및 경상경비 비중이 높고, 사업비 중에서도 관리원운영비가 70%이상 차지하고 있어 목표 달성에 적정한 예산 지출 구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5개년 재정추계가 되어 있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함.

- 17년 중기계획에서 18년 중기재정계획 변동사유로 관리원 설립 법적 근거로 인건비 변동요인이 적시되었으나 이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합리적 중장기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움.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7.4.30 시행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직원 175명 중 '17년 136명, '18년 39명 채용 예정으로 인건비 변동요인 발생

○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중장기 경영목표에 의거한 예산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국가재정운영계획에는 인건비 변동요인만 반영되어 있음.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중장기 경영목표에 근거한 예산 계획이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사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음.

○ 산림청 지원 예산을 제외한 한국수목원관리원 자체 사업에 따른 총예산이 고려되지 않았으나 현재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어려움.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및 한국수목원관리원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지침을 두고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집행 시 불용되었을 때, 산림청의 관리감독(패널티 적용, 개선조치) 행위가 제시되지 않았음.

표. 한국수목원관리원 사업 실집행율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	-	-	-	-	-	-	-	-	-
2016	-	-	-	-	-	-	-	-	-	-
2017	12,315	12,315	12,315	12,315	-	12,315	11,153	-	1,162	90.6
2018. 11월	20,889	20,889	20,889	20,889	-	20,889	17,865	-	-	85.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산림청 세부 지침이 규정되어 있고, 관리원의 내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정산보고서, 감사 등을 통해 적정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산림청 세부 지침이 규정되어 있고, 회계관리규정을 통해 관리원 별도의 대책은 규정되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현재 백두대간수목원에 대한 기능 및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운용 효율성을 위해 감축이 필요하지만, 2018년 대비 2019년 30억 자체수입 수지차 부분이 기 반영되어 예산 감축 30억이 2020년에도 예상됨. 개원 초기이고, 세종수목원이 2020년 개원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 사업방식변경으로 판단함.

- 2020년 예산감축 30억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현재 입지여건, 2018년 성과를 고려할 때 단기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고 판단됨.

○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전체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고, 국립수목원 운영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2018년 2월 개원하여 10개월의 경영성과임을 감안하였음.

3-2 정책 제언

○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존재 이유인 백두대간수목원, 세종수목원(추진 중), 새만금수목원(계획)의 사업타당성은 수목원의 관람객수 뿐 아니라 우리 수종의 보존역할인 바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됨.

- 연구용역, 교육사업, 관람객 수 증가를 위한 주변 학교 등의 단체 홍보 등

- 광릉수목원과 달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력구조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세종수목원 지원사업과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한국임업진흥원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9.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4**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1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3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 추진. · 임업진흥법에 타당한 근거 보유함. 각 내역사업의 구성이 타당하고 효과성 확보하고 있음. · 향후,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예: 산림경영 인증사업) 수혜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여 수익자가 자체 부담하는 비중 상향시키는 방안 강구 필요함. 성과관리 지표 역시 포괄성, 대표성 확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운영 등),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사업 수행, 지원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 근거를 갖추고 있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
>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 2. 제12조에 따른 목재·목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
> 3.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 4.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 6.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 7. 그 밖에 임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은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시설비, 예비비, 자체 수입의 6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 수행근거는 「임업진흥법」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확인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임업은 타 산업군 예컨대 농업·어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비중이 낮으며, 대부분 영세 임업인 혹은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품질관리 및 기술 개발이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국가 보조사업의 타당성 존재한다고 판단됨.

○ 사업의 수혜자는 단순히 임업인 및 임산업뿐만 아니라, 임업·임산업의 생산물인 청정임산물 및 목재 제품 등을 소비하는 일반국민까지 수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수혜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인정됨.

- 좁게는 임업인 및 임산업체 대상으로 소득증대 및 산업 저변 확대의 혜택을 줄 수 있고, 넓게는 일반 국민에게는 임산물 먹거리 및 목재제품, 산림 효과 등으로 효과 추정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은 '12년부터 지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 시설비, 예비비 및 자체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타당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 행안부 정부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및 국무총리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등 사업의 우수성 인정

○ 세부사업은 6개로 목재 제품 품질관리,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안전한 목재제품, 청정임산물 유통을 통한 대국민 안전 확보), 임업지식·신기술보급, 임산업 활성화 지원(임업 관련 신기술의 신속한 실용화 및 현장보급, 산업 활성화 노력 등을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진 기여), 산림경영인증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임업인·산주 대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확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바, 대체로 합리적으로 구성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이 보조사업은 공공성과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수행되는 목재제품 및 특별관리임산물 시험·검사, 산림인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의 업무와 산림정보 구축이나 임업분야 신기술 실용화 지원 등을 망라하고 있어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필요성 인정됨.

○ 현재로써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

○ 목재와 임산물의 생산,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기반 강화, 그리고 국민안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으로 정부의 지속적·적극적인 개입 혹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됨.

○ 정부 보조사업의 지원이 중단 될 경우 법정사업인 목재제품 및 임산물 안전관리를 수행할 주체가 없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임업인 및 임산업체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가능성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관 경영실적보고서상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관리운영비 및 행정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계량관리업무비'가 '16년 17.5%, '17년 16.2%로 관리되고 있어 본 사업은 행정비용을 감안하고도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정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 재무예산 전략 이행을 위한 재무목표 수립이 3가지 시나리오별로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함.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유의미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됨.

-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산림형 사회적 기업 등 양질의 산림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16) 370명 → ('17) 407명 → ('18) 600명(추정치)
  - ▸ 임금피크제 도입 후 추가 채용 ('17) 1명 → ('18) 2명
  - ▸ 장애인 고용 규모 확대('17) 7명 → ('18) 11명, 경력단절 여성 신규 고용(1명)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자 공모절차,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확인됨.

* 제2장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 제5조(보조사업의 선정기준)~제9조(보조사업자 공모)

* 위 지침에서는 교부조건, 방법과 관련하여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동법 제29조의3제3항에 의거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 적합성을 갖추고 있음.

○ 현장실사를 비롯한 실행체계 점검 체계와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사실 인정됨.

* 제3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관련 : 제13조(보조금 사용방법)~제30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

○ 실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하는 사실 인정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정산제도를 구비하고 있어, 사업추진 익년도 1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산내역을 제출받아 잔액, 이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받고 있는 사실 인정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에 의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음.

-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교부조건을 통해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 반환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회계연도 종료된 후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연도별 정산보고서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통해 검증결과에 대한 오류사항은 정정 및 재정산을 실시하는 사실 인정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사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 부정수급 점검·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이 인정됨.

- 제3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35조(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제36조(부정수급 점검), 제36조의1(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 대상에 관한 법인「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타당한 근거 보유함.

- 타당성, 필요성 인정되나 효과성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예: 산림경영 인증사업) 수혜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여 수익자가 자체 부담하는 비중 상향시키는 방안 강구 필요하다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성과관리 측면에서 성과지표가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품 생산율(%), 임업기술교육 이수자수(명),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이행률 3개에 불과하여, 전체 내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내역을 대표하는 성과지표로 보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중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이행률(%)은 산양삼 재배이력 시스템 등록 실적(누적)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등록 사실의 확인과 유인 그리고 미등록 실태에 대한 확인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특허청

발명교육활성화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여성발명진흥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지식재산연구활성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특허청
사 업 명	발명교육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0.4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3.5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민간경상 => 민간경상 + 지자체경상) ·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에서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 경상의 사업방식을 혼용하는 것 필요함. · 장기적 시행과 수요에 대비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혹은 시도교육청 매칭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성과지표를 구체적 효과와 질적 성장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발명진흥법과 지식재산기본법에 '할 수 있다'는 형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지식재산기본법"및 "발명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에 대한 사항, 발명교육 사업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에 의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명확.

<발명진흥법>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지식재산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명 교육 인프라 구축, 발명(영재) 교육 강화, 특성화고 발명특허 교육,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발명창의력 대회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대체적으로 합리적 설계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발명 교육의 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산을 위해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됨.

-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부터 체계적으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발명교육과 연계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혜와 성과의 대상이 주로 민간부문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외부효과(spill -over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전국의 발명교육 참여 초·중·고 학생 및 교원으로써 사업 수혜자가 광범위함.

- 본 보조 사업은 단순 재정지원이 아니고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발명(영재)교육 강화, 특성화고 발명특허 교육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내역으로 이루어져 혜택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며, 특정 지역 및 집단이 아닌 전국의 학생, 청소년, 교원 등이 대상으로, 수혜대상이 전국적으로 볼 수 있음.

○ 국정과제(국정과제 번호: 54)에 포함되어 정부의 주요 추진 사업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 과제목표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이고 발명교육의 정의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 증진 및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교육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의 구성과 기간 등이 대체적으로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발명영재교육 강화”, “특성화고 발명·특허 교육확산”, “우수인재 발굴 발명·창의력 대회운영”으로 내역사업을 구성하여, 발명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실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중인 것으로 사료됨.

- 발명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내역에서 발명교육센터 수강생 수, 발명 교원 양성은 실제적 역량과 질적 성숙을 반영하기 어려운 성과지표 설정이고, 발명교육센터 교육생 만족도는 일방적인 ‘만족도’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구체적 효과와 질적 역량 제고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 보조금 방식이 효과적이고 민간 차원의 재원이나 방식이 즉각적으로 착상되기 어려운 사업으로 인정됨.

- 장기적 시행과 수요에 대비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 혹은 지방 교육부서와 명실공히 매칭 방식의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시행 주체 및 사업 기간, 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유사한 타 기관의 지원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명 교육의 활성화 관점에서 발명 교육, 지식재산의 이해 및 활용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전문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됨.

○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및 "발명교육기본계획"을 통해 예측한 수요를 볼 때 여전히 22년까지 발명교육확산 을 통해 더 많은 학생,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타당성 인정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정지원 규모가 대체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나, 효과적인 재원의 활용과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래에 추가적인 재원의 확대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방 교육기관과 매칭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이 발명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인 한국발명진흥회에 국고보조금이 100%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체험형 나눔 발명교육프로그램, 발명교육 소외지역인 도서지역 학생 대상 발명교육 운영 등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신청, 보조금 지급 결정, 보조금 교부 조건,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사업자 선정 및 교부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됨.

- 발명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발명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가 업무위탁기관으로 사업 수행하고 있음.

○ 선정 및 교부 단계에서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 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인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감독 및 집행점거에 대한 규정 마련하고 있는 사실 확인됨.

- 사업 계획부터 종료까지 일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자체 감사(정기·수시)를 실시하고 있음.

○ 보조사업 실 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하는 사실 확인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분기별 세부 집행정보(보조사업자, 수급자, 지출증빙 등)를 점검하고 있음.

- 매 분기 보조금 교부 시 교부 조건에 법령 및 교부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인정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에 대한 절차 및 규정 등을 마련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경비 증빙서류 등 일체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변동현황을 보고토록 하여 절차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 확인됨.

- 보조사업자가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부터 종료까지 단계별로 관리·감독을 하는 사실 인정됨.

○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별 사업별 운영관리지침에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선정취소, 참여 제한, 사업의 협약 변경 및 해제 또는 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사항을 조문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 확인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발명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가사업으로서의 타당성, 계속적 필요성 인정됨.

- 장기적 사업 시행과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혹은 시도교육청과의 매칭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수강생 수, 발명 교원 양성은 실제적 역량과 질적 성숙을 반영하기 어려운 성과지표 설정이고, 발명교육센터 교육생 만족도는 일방적인 '만족도'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역량' 차원의 객관적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2 정책 제언

○ 보조금 방식이 효과적이고 민간 차원의 재원이나 방식이 즉각적으로 착상되기 어려운 사업으로 인정됨.

- 다만, 지역별 의지와 자원의 수준에 편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교육 담당 기관 혹은 지자체와 매칭을 확대하여 사업을 구상하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양적 그리고 질적 역량 제고를 추구하는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적 효과 및 질적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특허청
사 업 명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9.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7.1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2.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동 사업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이 다년간 시행되어 온 만큼, 산업계의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동 교육과정이 일자리 장출에는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취업률 향상 등 동사업의 직접적 수혜자 중의 하나는 대학이므로, 대학 스스로도 동 사업내용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법령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지식재산기본법 33조, 34조
- 발명진흥법 4조, 6조 및 발법진흥법 시행령 2조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7조, 12조, 15조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대학(원)에 지식재산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됨.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 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의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이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조사업 수혜자는 대학·대학원생, 기업재직자, 교수 등으로 다양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용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각 대학은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채용하여, 18학점 이상의 지식재산 정규강좌 개설 및 운영하고 있음.
- 취업연계 IP지역인재 양성: 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요에 대응한 지식재산 강좌 개설 및 운영하고 있음.
-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 특허분쟁 대응전략, IP경영전략, 지식재산 실무와 라이센싱, 글로벌 IP교육 등의 교과로 구성된 실무 중심의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수강생 확보, 만족도 등 성과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외 사례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함.

- 기업 등 민간에서는 전문 인력을 수요하고자 하지만 자체적으로 양성하기는 역부족임.

○ 지식재산 분야와 관련된 대학교육 사업은 타 부처의 대학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총사업비('18년 기준) 4,696백만원 중 행정비용이 384백만원이고, 직접비가 4,312백만원(91.82%)이어서 사업 목표 달성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국고보조금	4,696백만원	4,696백만원	4,896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4,696백만원	4,696백만원	4,896백만원
	100%	100%	100%

1-6.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원 대학과 지역 내 기업·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지는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발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 특허청 고시 제2018-9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2018.5.31. 개정)'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집행함.

-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자체감사(정기,수시)를 실시하고 있음.
- 각 사업별 관리운영지침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부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 취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 없음.
- 분기별로 집행현황 보고 및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이 다년간 시행되어 온 만큼, 산업계의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동 교육과정이 일자리 창출에는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취업률 향상 등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 중의 하나는 대학이므로, 대학 스스로도 동 사업 내용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교원으로 채용된 인력들이 사업종료 후에도 전담 지위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대학스스로도 정부지원 유무에 관계없이 동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특허청
사 업 명	여성발명진흥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0**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9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 ·보조사업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타당성이 높아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의 보조타당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발명협회 외 여성발명활동 촉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단체의 발굴 및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발명진흥법 제6조에서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8조에서 여성 발명 활동을 촉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여성발명인에 대한 교육, 사업화, 여성 발명진흥 행사 개최 등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발명진흥법 제8조>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제목개정 2014. 1. 28.]

○ 개별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 여성 IP환경기반 조성, IP여성기업 사업화 지원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 사업은 개별 주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은 바, 국가 지원이 타당한 사업임.

- 우리나라는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인력이 많음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36개국 중 32위)

표. OECD 주요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 국	54.90%	55.20%	55.60%	57.00%	57.90%	58.40%
일 본	63.00%	63.40%	65.00%	66.00%	66.70%	68.10%
미 국	67.80%	67.60%	67.20%	67.10%	66.90%	67.30%
OECD 평균	61.80%	62.30%	62.60%	62.80%	63.00%	63.60%

※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발명박람회, 발명창의교실 참가자이지만, 잠재적으로 발명에 관심이 있는 전체 여성에 영향을 미침.

표. 여성발명진흥 사업 수혜자 내역

사업명	수혜자 내역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치)
여성발명창의교실	교육참가자	2,134	2,817	2,820
생활발명코리아 지원	아이디어등록자, 네티즌투표 참가자, 공개행사 참석자	2,650	3,113	3,120
여성발명 웹진	이메일 구독자	9,130	14,988	15,495
여성발명품박람회	박람회 참가업체, 전시관람 중 이벤트 참가자	1,500	1,096	1,100
세계여성발명대회	세계대회 국내출품작 건수	150	225	225
세계여성발명포럼	포럼 참가자	200	200	200
글로벌여성 IP리더십아카데미	아카데미 참가자	93	83	90
합계(명)		15,857	22,522	23,05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은 여성IP환경기반 조성과 IP여성기업 사업화 지원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 IP환경기반조성: 발명창의교실, 웹진발간

- IP여성기업 사업화 지원: 생활발명코리아 지원, 발명품박람회, 세계대회 포럼

○ 보조사업의 내용이 명확하지만, 사업 목표치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음.

- 박람회 참가자 수 증대,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 등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음.

○ 개별 내역사업은 여성발명진흥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행 중인데, 어느 정도 계획대로 집행되고, 개별 목표(창의교실 수업 횟수, 웹진 발간 횟수, 지원 건수 등)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자체부담 확대, 자부담 확대 모두 가능한 내용의 사업임.

○ 발명, 사업화와 관련된 중소기업 부문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

○ 우리 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타 국가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나 발명진흥을 통해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이 높지 않음.

○ 기 투입된 재정에 대한 재정적 손실이 없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5억 소규모 사업으로 한국여성발명협회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3천만 원으로만 계상해도 행정비용이 높은 편임.

○ 발명품박람회, 세계대회·포럼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예산 내역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자부담 능력이 미미하므로 전액보조하고 있음. 협회의 자부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 다소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40조에 의거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민간법인인 한국여성발명협회 이외에는 여성의 발명활동을 촉진할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선정 절차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여성발명협회의 경우 자부담 능력을 제고하고, 타 단체, 협회 활성화를 위한 부처 노력이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특허청 국고보조금 총괄 관리지침을 두고 주기적으로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특허청 별도 지침이 규정되어 있음.

○ 정산보고서, 감사 등을 통해 적정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특허청 내부 규정이 지침으로 있고, 한국여성발명협회 부정수급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타당성이 높아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의 보조타당성이 높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발명협회에 대한 매년 단순 지원보다는 학회, 협회, 단체 등에 연구사업비 발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필요

3-2 정책 제언

○ 여성발명협회의 예산 구조 상 자부담 능력이 미미해 소규모 사업 대비 행정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음.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및 협회의 활발한 활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박람회, 포럼의 경우 관련 전시회 등 홍보 활동으로 내내역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특허청
사 업 명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7**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9.9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6.8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해당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내역 사업도 창업과 창업 기업의 성장을 구체적인 목표로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여타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해당 사업의 차별성을 위하여 사업 성과에서 지식기반 요소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IP나래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대상 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의 확대가 보조금 지원의 기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성과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은 <지식재산기본법>과 <발명진흥법> 및 동법의 시행령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

- <지식재산기본법> 제25조는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적시하고 있음

- <발명진흥법> 제4조는 “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발명진흥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시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당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IP 종합지원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장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감으로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는 것을 그 필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정과제 39번의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과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함

- 창업을 통한 혁신과 성장은 국가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됨

○ 해당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창업자인 것으로 판단하나 지원을 통한 창업의 성공과 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 혁신 기반의 경제 성장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국가 전체에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특허기반 창업 아이템 도출을 지원하는 IP디딤돌 프로그램과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IP나래 프로그램으로 내역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 IP디딤돌 프로그램은 2017년과 2018년 1,693건의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지원하였고 이 중 328건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실적을 기록하였음

구분	IP권리화 지원 (수혜자)	창업	IP전문 상담	IP창업 교육 (횟수)	타사업 연계 실적
'17년	758건 (678명)	129건	3,508건	630명 (38회)	179건
'18년	935건 (825명)	199건	3,294건	1,503명 (77회)	221건
합계	1,693건 (1,503명)	328건	6,802건	2,133명 (115회)	400건

- 해당 내역 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식 기반 창업 건수와 연계 건수가 되어야 하는데 매년 수혜자 대비 창업률(19.0%→24.1%)과 창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전년대비 54.2%↑)하고 있고 연계 건수 또한 증가(23.5%↑)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IP나래 프로그램의 성과는 지식 기반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성장인데 지원 이후 고용인원의 증가는 수혜기업 당 2017년의 경우는 1명 미만, 2018년의 경우는 2명 미만의 수준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의 성과와 차별성이 있는 정도인지 판단을 유보함

연도	목표건수	신청건수	지원건수	달성률	경쟁률	컨설팅만족도
'17년	270	636	294	**109%**	**2.16:1**	**88.5점**
'18년	420	1,258	425	**101%**	**2.96:1**	**90.8점**

<수혜기업 고용증가 현황>

구분	지원 전(조사연도)	지원 후(조사연도)	비고
'17년 수혜기업 (294개사)	2,294명(2016.12)	2,568명(2017.12)	**274명 증가**
'18년 수혜기업 (425개사)	2,894명(2017.12)	3,640명(2018.12)	**746명 증가**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당 사업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기업 성장을 통해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됨

- 또한 지식재산 기반이라는 요소를 강점으로 여타의 창업지원 사업과는 차별화 된 서비스(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 도출, 강한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분쟁예방 전략 도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를 제공함으로써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준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나 IP디딤돌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40%씩을 부담하고 개인이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IP나래 프로그램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35%씩 부담하고 기업이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자 부담과 지원자의 자부담 능력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다만 보조사업의 규모는 전체 창업기업의 수 등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

- 특히 IP나래 프로그램의 경우 2017년 270개, 2018년 420개, 2019년 453개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의 확대가 보조금 지원의 기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성과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기업, 청년 및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를 통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지역별 지원의 균형성 확보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등에 근거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1차 보조사업자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2차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운영지침 및 업무가이드북 등에 근거하여 실제 사업의 지원을 받는 창업자 및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 및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해서는 평가 규정과 지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분기별 세부 집행정보(보조사업자, 수급자, 지출증빙 등)를 점검하고, 지역 지식재산 예산집행 실적관리시스템(www.bs.ripc.org)을 통해 수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사업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삭감·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집행 사항 점검 및 패널티 적용 등의 관리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에 대한 절차 및 규정 등을 마련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음

○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산, 중요재산 관리, 회계감사, 감사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일련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사례는 없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통해 부정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을 포함해서 매년 현장지도를 통해 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점검 및 자체 클린신고센터, 중앙위원회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인 창업을 통한 혁신과 성장은 국가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법적 근거도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함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내역 사업도 창업과 창업 기업의 성장을 구체적인 목표로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평가함

- 여타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해당 사업의 차별성은 특허 등 지식기반 요소의 반영 정도와 이를 통한 여타 지원 사업과의 차별적인 성과 도출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임

3-2 정책 제언

○ 사업을 통해 지식기반 지원을 통한 특허 출원 건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성 있는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의 경우 창업, 재창업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여타 사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차별성을 위하여 사업 성과에서 지식기반 요소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또한 내역사업 중 IP나래 프로그램의 경우 2017년 270개, 2018년 420개, 2019년 453개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의 확대가 보조금 지원의 기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성과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특허청
사 업 명	지식재산연구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1**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3.0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7.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9.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해당 사업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지식재산과 관련 연구의 공공재적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내부 규정을 통하여 사업의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해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나 연구 및 관련 활동의 목표가 연구 성과물의 활용도, 특히 정책, 학술, 홍보 등의 활용도에 있으니 만큼 성과관리전담 부서를 통해 관련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발명진흥법>과 <지식재산기본법> 등의 조항에 의해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

- <발명진흥법> 제51조는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연구원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식재산기본법> 제35조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당 사업은 국내·외 지재권 연구를 활성화하여 국가와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재권 관련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재권 분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식재산과 관련 연구가 지니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연구원의 연구 및 관련 성과는 정책 연구자 및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또한 관련 분야의 정책 결정 수준과 연구의 질 제고를 통해 더 큰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및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내역 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 연구 및 관련 활동의 성과는 연구의 활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성과지표는 이런 점을 반영하여 설정되었고 목표도 적절히 달성된 것으로 평가함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목표치 산출근거
지식재산연구 정보이용건수 (만 건)	목표	-	신규	235.7	282.3	최근 3개년 실적치의 표준편차 (0.5σ=0.71)를 '18년 실적치(추정)에 합산
	실적	179.0	218.6	264.8	-	
	달성도	-	-	112.3	-	

○ 기초연구과제의 활용도는 정책 분야만 부침이 있는 가운데 2017년의 성과가 2015년의 성과를 상회하고 있으며 학술이나 홍보 분야는 성과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

활용분야	'15	'16	'17	계
정책	30건	58건	46건	134건
학술	18건	20건	22건	60건
홍보	19건	20건	75건	114건

- 다만 해당 성과에 대해 기초보고서의 자료, 1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그리고 소명의견서의 자료가 모두 상이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성과 관리 상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련 분야의 유일한 기관으로 현재까지의 지식 및 정보의 축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민간 등의 기관을 통한 대체 가능성이 낮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기준보조율 적용 대상은 아니고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에 준하여 인력을 구성하고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식재산연구활성화 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는 보건복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동체 이익실현 및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정책 수립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관련 조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거치지 않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하면 사업 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과 함께 교부 결정 통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인 <특허청 국고보조금 총괄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집행점검 기준, 집행점검평가단 구성인력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특허청 국고보조금 총괄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음

- 그 내부규정 “1. 일반지침 기본방향”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회계감사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본사항은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보조사업 정산,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적절히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2017년 이후 부정수급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 및 처리를 위하여 <특허청 국고보조금 총괄 관리지침>의 규정으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납부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적정하게 부정수급 관리를 이행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발명진흥법>과 <지식재산기본법> 등의 조항에 의해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지식재산과 관련 연구의 공공재적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내부 규정을 통하여 사업의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 및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내역 사업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기초연구과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종합적으로 해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연구성과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성과를 높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사업의 연구 및 관련 활동의 목표가 연구 성과물 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활용도에 있고 일반적인 활용 보다는 정책, 학술, 홍보 등의 활용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만큼 관련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연구성과관리 전담 부서가 성과의 관리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문화예술활성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새만금개발청
사 업 명	새만금 문화예술 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5.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3.5**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3.2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10.5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19.2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단계적 폐지를 권고함 ('21년)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목적 및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음 – 이 사업이 새만금지역을 넘어 전국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부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로 인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상 국가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새만금 상징축제(새만금 노마드 축제) 개최가 보조사업의 유일한 사업 내용임

- 축제는 연 1회(2박3일) 시행함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2조, 39조), 관광기본법(제7조) 등에서 본 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음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지역 축제 형태의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의 취지 및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음

○ 보조사업의 수혜자의 범위의 크기는 논의가 필요함

- 지역, 나이, 성별, 국적 불문하여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지자체, 특정 대상, 민간단체가 아닌 전 국민을 수혜자로 지정하고 있음.
- 그 근거로 제 1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참가자별 거주지(국내+외국인) 분포에 따르면 내국인 설문응답자 중 73.3%가 새만금권역(전북) 외에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 분포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새만금과 가까운 지역(대전/충청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주민들이 높은 비율(78.9%)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으로 인한 외부성이나 누출효과의 크기는 논의가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17년~19년 새만금 문화예술 활성화의 내역 사업은 '새만금 노마드 축제 지원'의 단일 사업으로 구성

- 토목공사의 이미지가 강한 새만금에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 및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향후 투자 및 새만금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

○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로 인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지표에 제시된 지표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고 제시함.

- 참가자들의 만족도 외에 지역경제활성화 정도 등 다른 지표들의 개발 및 측정이 필요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필요함. 한국관광공사의 「새만금 노마드 축제 발전방안 연구」에서 축제 안정기(3단계)의 추진과제로 참가자가 20만 명 이상을 설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근거의 제시가 필요함

- 또한, 지속적인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이 추진의 시급함을 의미하진 않음.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급한지와 지속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축제를 통해 창출 되었던 지역 경제의 규모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음.

- 축제를 통한 관광객유입과 이로 인해 지역홍보, 이미지 제고, 특산물 판매 등의 간접적 지역 경제 생산 효과의 유발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함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의 상향 조정(6억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함

- '17년 ~ 18년 각 2억원의 부족예산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 및 다양한 홍보, 협찬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기준보조율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준수하고 있음

- '17년 배정예산 100%(2억원), '18년 배정예산 100%(2억원). '19년 배정예산 100%(3.5억원)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축제를 통한 직, 간접적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활동으로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근거를 정비하고 해당 근거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17년 제1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사업자를 공모가 아닌 임의(수의)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음
- '18년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공모 및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 다만 접수 업체의 수가 3개로 공모에 입찰한 업체의 수가 많지 않았음

○ 재원을 집행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고 일관성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함

- '17년 제1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부득이 보조금 1회 일괄 교부
- '18년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2회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하여야 함

-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보조금 집행 점검 및 자체 집행 점검을 실시하여 면밀히 감독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따라 적정 관리 감독하고 있음
- 분기별 사업수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 면밀히 감독하고 있음
- 2018년 보조사업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평가단구성, 운영계획 수립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을 마련하여 감독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집행 관리, 정산 등을 실시하고 있음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새만금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관련 부정수급 발생 및 적발 건수는 없음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시 위반 항목 및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해당 사항을 위반 시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분기별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집행 내역을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목적 및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음

- 지역축제 형태의 사업으로 지리적으로 새만금과 가까운 지역(대전/충청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주민들이 높은 비율(78.9%)로 참여하였음.
- 이는 이들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이 새만금 지역을 넘어 전국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부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즉시 폐지 시 예상되는 충격을 감안하여 측면에서 단계적 폐지를 권고함 ('21년)

3-2 정책 제언

○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로 인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지표에 제시된 지표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고 제시함. 참가자들의 만족도 외에 지역경제활성화 정도 등 다른 지표들의 개발 및 측정이 필요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해양경찰청

총무활동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경찰청
사 업 명	총무활동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1.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8.2**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2.6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8.0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1.6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6.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3.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8.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3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대한요트협회와 공동으로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를 매년 행사하는 사업으로서 국가대표 요트선수를 겸하여 선발하고, 관련 선수나 후보선수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관람객의 경우 2018년 포항행사에는 3,500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분석하고, 대회 후에는 각종 사진을 첨부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대회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의지를 보임 ·다만, 약 20년 가까이 동일한 보조사업단체가 지방비까지 더했을 때 2019년 기준 약 9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점검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특히 행사사업의 경우 행사 개최기간만이 사업기간이 아니라 준비기간, 행사 후 정산기간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이전 및 이후 집행점검도 실시되어야 할 것임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육성하여야 함을 적시하고 있음

- 동법 제18조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체육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요트협회와 함께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요트계의 유망주를 발굴·육성함에 따라 상술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그 밖의 체육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에 따라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해양경찰청배 요트대회를 진행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비인기 종목인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꿈나무 육성 및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확대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함에 따라 요트 국가대표를 희망하는 꿈나무들이 반드시 출전하고 싶어하는 해양스포츠 대회로서 목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행사축제사업의 경우 선심성, 홍보용으로 이용되기 쉽다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지원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회와 더불어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사도 추진함을 고려할 때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이나 유사중복성 검토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사업의 수혜도 측면에서도 요트선수 후보나 관련자들, 요트대회에 관심을 가진 자 등이 대상이므로 그 범위는 좁으나 소액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상징성은 있다고 생각됨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7백만원의 소액사업이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됨을 감안할 때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업은 매년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약 5일간 개최되는 체육행사로서 매년 약 100명의 선수와 약 3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음

- 2018년의 경우 10개 종목 218명의 선수가 참가한 것으로 결과보고 되었으며 특히 해양경찰청 선수도 4명 참가하였음

○ 관광객이 약 3,000명이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직접 대회 참여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숙박, 음식업 등 개최기간에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자료들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민간행사에 정액 지원하고 마는 차원이 아니라 행사지원과 더불어 해양스포츠의 특성상 우려되는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18년 포항시 대회 개최당시 해양경찰청에서 총 28척의 함정과 179명의 안전요원이 투입되었음

○ 관람객의 경우도 2018년 포항행사에는 3,500여 명이 해양경찰 홍보관과 부대행사장을 관람한 것으로 자체분석함

- 대회 후에는 각종 사진을 첨부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대회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의지를 보임

- 요트대회 예산서의 경우도 집행방법(카드 또는 계좌이체)까지 명시한 세부내역을 매우 자세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본 보조사업은 행사비용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의 특성상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방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지되나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최근 3개년간 2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왔는데, 연도별로 국비:지방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40.3:59.7, 2018년 31.0:69.0으로서 총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 지원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 소액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업비보다 행정비용이 더 커져서 사업 본래의 목적보다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왜곡되는 부분일 것임

- 이러한 시각에서 비추어 볼 때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과의 공조로 진행되며 실제 예산서를 살펴보아도 현수막이나 음향시설, 초청장 인쇄, 시상대 설치 비용으로 지출됨을 볼 때 인건비 등이 아닌 실비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소액사업이지만 행정비용이 아닌 실제 다양한 행사지원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지출됨을 알 수 있음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1999년부터 대한요트협회와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창설하면서부터 운영되어오고 있고 2001년도부터 국가대표 선발을 겸한 요트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음

- 이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2항1호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2017년 기준 67백만원, 2018년 기준 87백만원이 투입되는 행사사업으로서 국비는 27백만원 정액이 보조되지만 공히 공적자금인 지방비가 각각 40백만원, 60백만원이 매칭되는 사업임에 따라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점검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함

○ 특히, 약 20년 가까이 동일한 보조사업단체가 지방비까지 더했을 때 2019년 기준 약 9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점검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행사사업의 경우 행사 개최기간만이 사업기간이 아니라 준비기간, 행사 후 정산기간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이전 및 이후 집행점검도 실시되어야 할 것임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행사사업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하물며 쓰레기봉투 예산까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행사준비 기간을 거쳐 행사 실시 및 정산까지 이어지는데 정산단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불용액에 대한 이자는 반납되었는지를 사후관리단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출내역별로 각종 증빙을 보조사업자가 잘 정리해서 제출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함

○ 행사사업의 경우 사후관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홍보, 기관간 연계 등 올 해 행사의 문제점과 잘된 점을 진단해보고 다음 행사 때에 개선해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접근성과 방문객 수, 협조도를 고려했을 때 개최지 선정이나 관광객 호응도 제고방안을 마련 및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요트대회사업관련 부정수급 발생이나 적발건수가 없었고, 보조사업자에게 관련법령 준수 및 위반 항목을 고지하였으며 e-나라도움을 통해 예산교부나 영수증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였으나, 법령이나 위반항목 고지와 e-나라도움을 통한 확인이 부정수급 근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다소 의구심이 있음

○ 부정수급 근절은 이에 대한 관리의지를 가지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관리노력을 통해 가능해질 것임

- 특히, 행사사업을 오랜 기간 한 보조사업단체가 수행한 경우 기득권 의식이 강할 수 있으므로 행사관련 다양한 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할 것임

- 향후 사업의 추진주체인 해경청은 위탁기관에 대해 불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서류와 실제 지출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나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대한요트협회와 공동으로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를 매년 행사하는 사업으로서 국가대표 요트선수를 겸하여 선발하고, 관련 선수나 후보선수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 관람객의 경우 2018년 포항행사에는 3,500여 명이 해양경찰 홍보관과 부대행사장을 관람한 것으로 자체분석함

- 대회 후에는 각종 사진을 첨부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대회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의지를 보임

3-2 정책 제언

○ 국비는 27백만원만이 투입되지만 지방비를 합치면 1억원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능한 각종 행사는 통폐합해서 대회 인지도와 시너지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해경청의 경우 개최지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는만큼 인지도가 낮은 대회들을 통합하여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들에 대한 홍보효과와 참가자들의 안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임

○ 약 20년 가까이 동일한 보조사업단체가 지방비까지 더했을 때 2019년 기준 약 9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점검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행사사업의 경우 행사 개최기간만이 사업기간이 아니라 준비기간, 행사 후 정산기간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이전 및 이후 집행점검도 실시되어야 할 것임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Ⅲ)